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

---

# WTO 도하개발아젠다 환경협상 대응방안 연구

---

2004. 6

연구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마크협회

환경부

# 제 출 문

환경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용역과제인  
『WTO 도하개발아젠다 환경협상 대응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4년 6월

연구 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마크협회  
연구 책임자: 강상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연구 참여자: 김종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초빙연구원  
김재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  
김만영 한국마크협회 책임연구원  
문승식 한국마크협회 연구원  
석승우 한국마크협회 연구원  
하현철 한국마크협회 연구원  
유수영 한국마크협회 연구원  
임현정 한국마크협회 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윤서성

## 국문요약

도하개발아젠다는 종전까지의 다자간 협상과 다르게 환경과 무역 연계 의제는 물론 개도국의 경제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다룰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이슈로 불리는 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의 투명성, 무역원활화 등과 관련된 논의를 포함하고 있어, 21세기의 세계경제환경을 규정할 중요한 시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협상의 명칭에 개발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데서 알 수 있듯이 개도국 경제개발에 대한 본격적인 국제사회의 검토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그동안 GATT/WTO를 통한 무역자유화가 선진국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가져왔을 뿐 개도국 경제개발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대다수 개도국의 주장을 일정부분 수용하여 무역자유화가 개도국의 경제개발에 실질적인 기여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별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입장에서 주요 수출시장의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반덤핑협정의 개정 등을 통해 대외무역환경이 개선될 경우, 협상에 따라 많은 혜택이 있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자유무역에 따른 세계경제의 성장 및 국제특화가 세계시장 공급을 위한 대량생산시설을 특정지역에 편중시킴으로써 생태계의 자정용량을 넘어서는 환경오염의 지역적 집중을 야기할 수 있고, 개방과 경제성장에 따른 소비수준의 증가를 유지하기 위한 과도한 자원이용을 초래하여 지구차원의 부존자원 고갈을 가져오는 등 국가 및 세계경제의 지속가능 발전기반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의제에 다수의 환경관련 의제가 포함된 것은 이를 반영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유무역과 환경보호, 개도국 발전 지원문제를 협상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8차에 걸친 무역협상과 확연히 구별되는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은 시장경제 기반의 세계경제 통합이 이운동기에 경도될 경우, 분배 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지구환경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등장하였고, 환경협상은 개방적이고 비차별적인 다자무역체제(MTS)의 확대를 통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국제사회의 구체적 노력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은 2002년 1월 이후 DDA 무역협상위원회(TNC)산하 각 협상기구에서 의제별 협상이 진행중이며, 환경서비스 시장개방협상은 서비스이사회 특별회의에서 既定 의제(Built in Agenda)로 2000년 1월부터 협상이 개시된 상태이다. 환경상품 무역자유화는 비농산물시장접근협상그룹에서 다뤄지며, 여타 협상 및 검토의제는 무역환경위원회(CTE) 협상회의에서 토의되고 있다.

DDA 협상의 중간평가 회의인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의 제5차 WTO 각료회의 실패로 현재 DDA 협상 전반에 대한 추진력이 약화된 상태에 있다. 싱가포르의제 협상에 대한 선·후진국간의 이견이 각료회의 실패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농업보조금 감축을 둘러싼 농산물 수출·입국간의 대립도 그 원인이 되었다. 그 이후 환경의제에 대해서는

2004년 3월 현재 제네바 주제 각국 대표부를 중심으로 협상촉진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환경관련 협상을 위해 WTO 무역환경위원회(CTE) 특별회의가 2004년 4월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본 조사연구는 환경과 무역연계 논의동향, 환경통상 분쟁, 환경서비스 시장개방협상 등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DDA 환경협상관련 연구결과를 검토하고 제5차 WTO 각료회의를 개기로 전개되는 최근의 협상동향을 정리하는 것을 일차적인 연구목표로 하며, 기 제시된 협상참여국가들의 의제별 대응현황에 기초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제시를 최종 연구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WTO와 다자간 환경협정 상의 특정무역의무 조항의 관계정립협상 논의동향 및 쟁점에 대한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협상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다음으로 환경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회원국 시장개방제안서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 관련 협상대표단 지원과 대내외 대응전략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며,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검토의제 가운데 협상의제로 전환 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라벨링에 대한 정부대응 입장을 검토해보았다.

그 결과, 2004년 침체기기에 있던 DDA 환경의제 협상은 일부 의제에 대해 중국, EC 등의 새로운 제안이 나오며 향후 활성화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협상의제 1과 관련하여 우선 MEAs 등 의제에 대한 향후 논의방식에 대한 공식입장을 다시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본문에서 언급한 논의가 예상되는 다자간 환경협약에 WTO 규범간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논의의 기초가 되고 있는 EC의 STO 범주별 대응입장 첫 번째로, 협상범주가 좁혀지는 경우 대부분 협상국들이 찬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WTO차원의 별도 검토절차 없이 해당 STO의 WTO 합치성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협상국간 협의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 범주에 대해 (STO-2) WTO자원의 합치성 검토절차를 거쳐 이를 규범체계 내에 수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세 번째 범주에 대해서는 앞선 두 범주보다 논란의 여지가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되나 기본적으로 합치성 검토절차를 거쳐 WTO내에 수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끝으로 네 번째 범주에 대해서도 일정한 WTO차원의 합치성 검토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수용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협상의제 3-a 환경상품의 시장개방 분석에 대해,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OECD 및 APEC 리스트를 기초로 환경부, 산업자원부 등 실국 검토를 거쳐 도출한 개방가능성 검토자료를 활용하였다. 동 검토결과에 따르면 총 183개 HS 6단위 대상품목 가운데 기술열위, 가격열위, 범용성 등의 이유로 개방불가로 분류된 품목을 제외하고 69개 품목이 개방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HS 10단위로 세분류하였을 경우 일부개방가능한 품목을 포함하여 총 95개 품목이 개방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아가 본 연구는 개방가능 환경친화상품을 발굴하기 위한 시도도 병행하였다. 이를 위해 환경친화상품은 생산단계에서의 환경영향을 제외하고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

해 사용 및 폐기단계에서 환경오염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자원 및 에너지를 상대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며, 또한 제품의 구조 및 기능방식 자체가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과 차별화되어 환경친화적 특성을 발휘하여야 함을 조건으로 하였다. 또한 환경친화상품 식별기준으로 HS코드 6자리를 대분류 기준으로 하되, 해당 HS코드 품목 내에서 구체적 환경친화상품을 특별표기(Ex)하는 방식으로 표시하였다.

환경친화상품의 시장개방 타당성은 첫째 우리나라 무역수지를 감안하였다. 검토대상 청정생산제품(59종) 및 에너지·자원관리물품(38종)의 HS코드 6자리 기준 품목별 2002년도 수출·수입액을 조사하여 수입액이 수출액의 2배 이상인 품목은 우리나라 제안품목에서 배제하였다. 두 번째로 검토대상 품목에 대해 해당품목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주요 생산제품의 기술경쟁력을 정성적으로 검토하여 주요 경쟁대상국가 대비 우세, 보합, 열세로 3분류하고 열세라고 평가된 품목은 우리나라 제안품목에서 배제하였다. 세 번째로 품목별 주요 생산업체(매출액 상위 3~4개 업체) 및 관련 단체 등 총 94개 기관 및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인하 찬반 여부에 대해 설문조사 실시하여 관세인하 반대품목은 우리나라 제안품목에서 배제하였다. 이를 위해 94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응답회신 23개 업체(회수율 24.5%)의 의견에 따라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형광등, 도자제품, 연료전지, 열펌프, 풍력발전 등은 개방불가품목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검토기준에 따라 시장개방이 유리한 품목, 점진적 개방가능품목, 개방이 불리한 품목으로 분류한 결과, 청정생산제품의 경우 전체 59종 품목 가운데 34개 품목이 개방가능, 20개 품목이 점진적 개방가능, 5개 품목이 개방불가품목으로 분류되며, 에너지·자원관리물품의 경우 전체 38종 품목 가운데 8개 품목이 개방가능, 6개 품목이 점진적 개방가능, 24개 품목이 개방불가로 분류된다.

협상의제 3b 환경서비스 부문과 관련해서는 먼저, 경쟁력이 취약한 환경서비스 분야의 경우 향후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예측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기술습득을 위한 컨소시엄 형태의 제한적 개방 입장과 개방불가 입장을 유지하는 2가지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이슈화 될 수 있는 공공서비스부문과 관련해서 선진국의 1차 양허제안서상 공공부문 미개방 의견을 사전 조사, 분석하고 개도국의 환경서비스 시장진출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고려하여 대응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다. 긍정적 효과로는 개도국 환경서비스 분야의 대부분이 공공서비스 분야임을 감안할 때 공공서비스 개방은 국내 환경산업체의 개도국 시장진입을 촉진할 수 있으며 선진 환경서비스의 국내 유입을 통한 환경서비스 수준과 질의 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 공공서비스 개방의 부정적 효과로 고려될 수 있는 점은 선진국에 비해 국내 환경서비스산업의 낮은 경쟁력 수준을 감안할 때, 국내 및 개도국 시장의 시장잠식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과 WTO 5차 각료회의 협상 결렬로 인해 DDA 서비스협상 전반에 개도국이 참여하지 않은 복수국가 형태의 협정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실질적인 개도국 시장진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21세기 새로운 국제 경제질서를 탐색하게 될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에 환경의제가 포함되었다는 점은 그간 경제적 관점을 중심으로 검토되어 온 시장개방협상에 대한 우리나라 대외통상정책의 기본 방향에 일정한 수정을 요구한다. 우리나라 환경통상정책의 기본방향은 우선적으로 환경보전과 자유무역의 관계를 상충보다는 보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한 도하개발아젠다 환경협상 대응정책 및 장기적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도하개발아젠다와 같은 다자간 무역협상은 물론 최근 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양자간 또는 지역간 무역자유화 협상전반에 대한 제도적 대응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도하개발아젠다에 대한 정부의 대응체계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정점으로 범정부적 협상체제가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협상참여 부처별로 대책반을 설치하고 소관분야 대책안을 마련하여 대외경제실무 조정회의를 거쳐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주요 의안으로 상정하여 결정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 의제 전반에 대한 포괄적 대응체계를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세부 협상의제를 다루는 실무협상대책기구 간의 이견 조정문제를 다룰 종합적인 검토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국제환경협약 또는 국제무역협정 관련 협상을 위한 대외 환경정책 및 통상정책의 수립 시행에 있어, 국내 담당부처 및 이해관계자와의 정책협의 절차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DDA협상에 대한 이해관계자 단체 및 국민과의 협의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민·관 합동포럼,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서도 적절한 대응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선진국 경제협력기구인 OECD에서는 이미 1994년 환경정책과 무역정책의 조화를 위한 상호 검토지침을 개발 제시한 바 있으나, 아직 국내에서는 이러한 검토지침에 입각한 체계적인 정책협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정책협의를 진행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부분 환경협상 혹은 무역협상에 참여하는 정부부처 협상 담당자를 중심으로 한 대책회의를 통해 검토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심도있는 검토와 그에 기초한 대외 협상대책 및 국내 대응방안의 체계적 도출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세계화를 통해 전통적인 관점의 국가간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정책 협의 절차는 비단 대외 환경 및 통상 정책의 수립시행은 물론 국내 환경 및 경제정책의 수립시행에 있어서도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셋째, 국내 환경전담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과제로 시장개방의 확대에 인한 국내환경에의 영향을 사전예측하고 관련 대응정책 개발을 목표로 하는 “대외통상정책의 환경성 평가절차 수립”을 들 수 있다. 자유무역의 확대 또는 다자간 무역협상에 따른 시장개방의 환경성에 대한 평가는 도하개발아젠다 관련 각료선언의 전문 제6조에 언급된 사안이다. 이 과제는 향후 협상에 임하는 우리나라의 기본 입장을 가늠하는데 필수적인 중요한 기초연구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다. 대외무역 정책의 환경과급효과에 대한

국가차원의 평가절차를 수립 시행 중에 있는 미국, EU 등 일부 선진국의 대응사례가 구체적인 국내 평가절차의 형태와 도입계획 수립에 참고가 될 수 있다.

## <제목 차례>

국문요약 .....	i
제 1 장 서론 .....	1
제 2 장 도하개발아젠다와 환경·무역 .....	4
1. 도하개발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	4
1.1 출범배경 및 의의 .....	4
1.2 도하개발아젠다 구성 .....	5
1.3 도하개발아젠다 논의동향 .....	9
2. DDA 환경의제 채택 배경 .....	11
2.1 환경통상분쟁 심화 .....	11
2.2 OECD 무역과 환경 전문가회의(JWPTE) 권고 .....	13
2.3 WTO 무역환경위원회(CTE) 논의 .....	16
2.4 UN기구와 MEA 무역규제 확산 .....	23
2.5 국제표준화기구(ISO)와 환경라벨링 논의 .....	25
3. DDA 환경의제 .....	27
3.1 환경의제 구성 .....	27
3.2 환경의제 논의동향 .....	29
제 3 장 DDA 환경협상의제 논의 및 대응전략 .....	31
1. 협상의제 1: WTO와 MEAs의 관계 .....	31
1.1 각료선언 31조 1항 .....	31
2. 협상의제 2: WTO와 MEAs의 정보교환 절차 등 .....	46
2.1 각료선언 31조 2항 .....	46
3. 협상의제 3-a: 환경상품 시장개방 협상 .....	48
3.1 각료선언 31조 3항 .....	48
3.2 협상논의동향 및 주요국의 입장 .....	49
3.3 쟁점사항 .....	55
3.4 환경상품의 정의와 분류방법 고찰 .....	57
3.5 우리나라 환경산업 현황분석 .....	62
3.6 환경상품 시장개방 가능성 검토 .....	72

3.7 환경상품 관세인하 무역효과분석 .....	86
3.8 환경상품협상 대응방안 .....	89
4. 협상의제 3-b: 환경서비스 시장개방 협상 .....	96
4.1 각료선언 31조 3항 .....	96
4.2 협상동향 .....	96
4.3 대응전략 검토 .....	100
<b>제 4 장 DDA 환경검토의제 논의 및 대응전략 .....</b>	<b>102</b>
1. 검토의제 1: 환경과 무역 및 개발의 연계 .....	103
1.1 각료선언 32조 1항 .....	103
2. 검토의제 2: TRIPS 협정과 환경 .....	106
2.1 각료선언 32조 2항 .....	106
2.2 주요국 입장 및 관련 기관 논의 .....	106
2.3 쟁점별 평가 및 대응전략 .....	112
3. 검토의제 3: 환경목적의 라벨링요건 .....	126
3.1 각료선언 32조 3항 .....	126
<b>제 5 장 결론 및 향후과제 .....</b>	<b>133</b>
<b>참고문헌 .....</b>	<b>138</b>
부록#1 : DDA 각료선언문 서언 요지 .....	141
부록#2 : DDA 환경서비스 1차 양허제안서 .....	143
부록#3: 주요국(22) 1차 환경서비스 양허안 .....	144
부록#4 : 우리나라 시장개방가능 환경상품리스트(안) .....	166
부록#5 : 우리나라 개방가능 환경친화상품리스트(안) .....	173
부록#6 : 환경목적 라벨링 .....	174
부록#7 : 한국과 EU PPMs 기준 비교 .....	191
<b>Executive Summary .....</b>	<b>194</b>

## 〈그림차례〉

그림 1-1 기존 무역협상과 도하협상의 구별 .....	2
--------------------------------	---

## 〈표 차례〉

표 1-1. 도하개발아젠다 구성 .....	1
표 2-1 DDA 분야별 작업계획 .....	5
표 2-2 무역과 환경정책 조화를 위한 절차적 지침(OECD, 1993.6) .....	14
표 2-3 무역환경전문가회의 주요활동 .....	15
표 2-3 WTO/CTE 10대 의제 및 주요쟁점 .....	18
표 2-5 도하개발아젠다 환경의제 구성 .....	27
표 3-1 Para 31(i) WTO 규칙과 MEA 특정 무역의무간의 관계 .....	31
표 3-2 WTO 규범과 MEA STO .....	33
표 3-3 노르웨이 특정무역의무 기준 제안 .....	34
표 3-4 STO와 WTO 규범간 관계설정 기준(아르헨티나) .....	35
표 3-5 WTO 와 MEA STO 간 관계규정 협상(호주제안) .....	35
표 3-6 미국의 STO 규정조건 .....	36
표 3-7 MEA 사무국과 관련 WTO 위원회간 정기적 정보 교환 및 옵저버 지위 문제 .....	46
표 3-8 Para(iii) 환경상품 및 서비스 자유화(상품) .....	48
표 3-9 무역환경위원회 환경상품 논의현황 .....	49
표 3-10 WTO 환경상품협상관련 제안문서 .....	50
표 3-11 환경친화상품 예시 .....	60
표 3-12 환경상품리스트 및 제안품목 개수 .....	62
표 3-13 APEC 및 OECD 리스트 품목비교 .....	62
표 3-14 세계 환경산업 시장규모 및 전망 .....	63
표 3-15 국내환경산업 시장규모 .....	64
표 3-16 국내 환경오염방지 지출규모 .....	64
표 3-17 환경마크 인증제품 시장규모 .....	65
표 3-18 우리나라 환경상품 무역수지 .....	66
표 3-19 오염처리물품 2002년 수출입 .....	66
표 3-20 환경친화상품 2002년 수출입 .....	67
표 3-21 APEC-OECD 분류 환경상품 수출시장 .....	67
표 3-22 환경친화상품 수출시장 .....	68
표 3-23 우리나라 환경과학기술의 기술수준 .....	69

표 3-24 지역별 해외진출 환경업체 및 실적 비교 .....	71
표 3-25 환경산업체의 분야별 해외진출 .....	71
표 3-26 품목별 검토체계 .....	72
표 3-27 HS 6단위품목 용도별 개방가능성 검토결과 .....	73
표 3-28 상품유형별 개방가능성 검토결과 .....	73
표 3-29 OECD·APEC 품목별 개방가능성 검토결과 .....	74
표 3-30 환경친화상품 관련 주요 제안품목 .....	80
표 3-31 환경친화상품 시장개방 타당성 검토결과 .....	82
표 3-32 오염방지물품 수출시장 .....	86
표 3-33 환경친화상품 수출시장 .....	87
표 3-34 APEC·OECD 분류 환경상품 수출증가예상 .....	87
표 3-35 개방가능 환경친화상품 수출증가예상 .....	87
표 3-36 APEC·OECD 리스트 비교 .....	90
표 3-37 Para(iii) 환경상품 및 서비스 자유화 .....	96
표 3-38 DDA 서비스협상의 포괄적 합의사항 .....	96
표 4-1 Para 32(i) 환경과 무역 및 개발의 연계 .....	102
표 4-2 인도의 환경요건 개발 제안사항 .....	104
표 4-3 Para 32(ii) TRIPS 협정과 환경과의 관계 .....	106
표 4-4 전통지식과 관련논점(브라질 제안) .....	107
표 4-5 27조 3항 (b) 재검토 관련 6개 쟁점사항 .....	111
표 4-6 Para 32(iii) 환경목적의 라벨링 요건 .....	126
표 4-7 환경목적 라벨링 관련 스위스 공개 질의 사항 .....	127
표 4-8 환경라벨링 관련 토론의 기본 틀 제안(캐나다) .....	128
표 4-9 환경라벨링에 관한 EC 제안 .....	131

# 제 1 장 서론

UR 이후 새로운 다자무역협상(뉴라운드) 출범을 논의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주요 협상의제를 담은 ‘각료선언’과 ‘지적재산권 및 공중보건에 관한 선언’, ‘WTO 협정 이행 관련 결정문’ 등을 채택함으로써 21세기의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정립을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협상은 “도하개발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로 통칭된다.

표 1-1. 도하개발아젠다 구성

각료선언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과 19개 협상의제에 대한 작업계획 및 작업일정 명시</li> </ul>
지적재산권 및 공중보건에 관한 각료선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검토 및 AIDS, 결핵과 같은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에 대한 공동대처방안 모색</li> </ul>
WTO협정 이행에 관한 결정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R 당시 합의된 WTO 협정상의 제반 합의사항에 대해 적기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결정문에 개도국 의견을 반영</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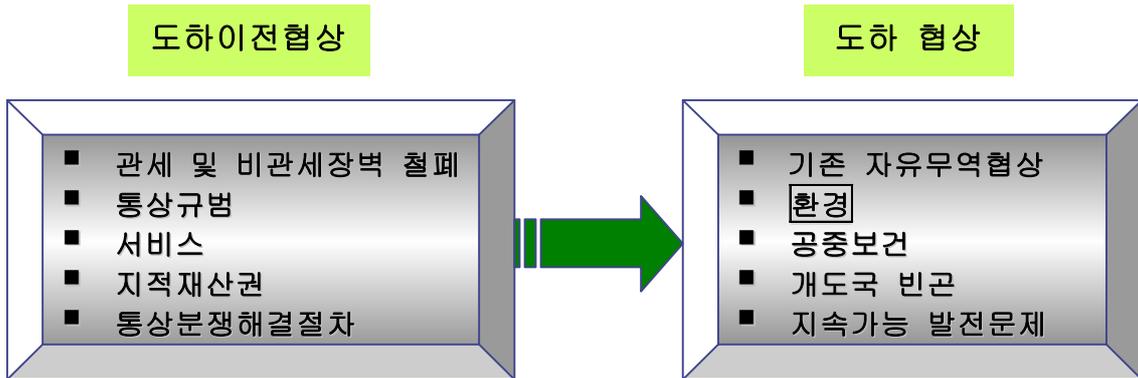
각료선언 전문<sup>1)</sup>은 현재 세계적인 경제침체 상태에도 불구하고 각 회원국은 WTO가 추구하는 원칙과 목적을 재확인하고, 보호주의 조치를 억제하며 각국 무역정책의 개혁 및 자유화를 계속 추진토록 한다는 협상목적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제무역이 빈곤퇴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전제 하에 다자통상체제로부터 얻어지는 혜택을 모든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동 선언문에서 채택되는 모든 작업 계획이 개도국 특히 최빈국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특히 개방적 비차별적 다자통상체제의 유지와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발전의 증진이 상호보완 관계에 있으며, 각 회원국은 자국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수준의 건강, 안전, 환경보호를 위한 국내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갖는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동시에 그러한 조치들이 보호주의적 목적에서 남용되지 않도록 보장해야한다는 점을 재확인함으로써 향후 전개될 도하개발아젠다 환경협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2001년 11월 카타르의 도하(Doha)에서 출범한 WTO DDA협상(제4차 각료회의)은 각료선언에서 협상종료시점을 2005년 1월 1일로 제시하였다. 또한 제 5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협상 진전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결정을 채택하며, 일괄협상방식에 따라 모든 분야의 협상이 종료된 시점에 특별 각료회의를 열어 협상결과를 확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의 감독기구로 일반이사회 산하 무역협상위원회(Trade Negotiation Committee)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1) 각료선언 요약내용 부록1참조

기준에 8차에 걸친 GATT체제하 무역협상(1947~1994)과 달리 도하협상은 상품과 서비스 외에 좀더 넓은 협상범위를 포괄한다. 다음 그림은 도하이전과 그 이후 협상의 차이를 포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1-1 기존 무역협상과 도하협상의 구별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통상문제로 대표되는 기존 GATT체제하의 무역협상과 달리 도하협상은 자유무역과 환경보호, 개도국 발전지원 문제,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문제를 협상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특히 시장경제기반의 세계경제통합이 이운동기에 경도될 경우 분배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지구환경악화가 우려되는 시점에서 등장한 도하개발아젠다의 환경협상은 개방적이고 비차별적인 다자무역체제의 확대를 통해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

환경문제는 21세기 들어 급속히 대두되며 도하협상에 주요한 협상의제로 처음 등장하였으나 주요 국제기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인간과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1972년 UN 인간환경회의에서의 UN인간환경선언을 필두로 지구환경의 감시와 조정을 담당하는 국제기구인 UN환경계획(UNEP)과 UN환경개발회의(UNCED)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환경과 경제 혹은 환경과 무역의 연계문제에 대한 구체성 있는 논의는 국제경제기구인 OECD와 WTO 산하의 전문기구를 중심으로 90년대 초반 이후 활발히 전개되어 왔다. 이 시기에는 환경과 무역의 관계는 상호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지지적 특성이 존재한다는 점이 강조되었고, 자유무역체제는 효율적 자원배분을 통해 생산과 소비를 증가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은 물론 환경보호에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며, 반대로 건전한 환경보전은 지속가능한 개발에 필요한 생산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국제무역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무역·환경의 상호지지적 연계가 국제사회 공동의 인식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각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설정하면서 도하개발아젠다의 환경부문 협상의제

가 중요하게 이슈화되고 있다. 주요한 협상이슈로는 국제환경협약(MEAs)이 정한 무역규제조치와 WTO 자유무역규범간의 관계, 양체제의 정기적 정보교환 절차, 환경상품 및 서비스 교역자유화 확대, 환경정책과 무역정책의 상호작용에 대한 검토,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및 환경목적의 라벨링요건 검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보고서는 상기 도하개발아젠다의 환경협상이슈에 대해 향후 우리나라의 협상대책 마련, 03년 제5차 WTO 각료회의 대비 환경협상 확대논의에 대한 대응방안 구축 및 향후 협상대책을 위한 조사연구를 그 목적으로 한다.

우선 WTO와 다자간 환경협정 상의 특정무역의무 조항의 관계정립에 관한 협상 논의동향 및 쟁점에 대한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협상대응 전략을 제시하며, 다음으로 환경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회원국 시장개방제안서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 관련 협상대표단 지원과 대내외 대응전략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검토의제 가운데 협상의제로 전환 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라벨링에 대한 정부대응 입장을 검토할 것이다.

본 연구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도하개발아젠다(DDA)와 환경의제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도하개발아젠다(DDA)와 환경의제의 등장배경 및 관련 환경·무역연계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3장 이하에서는 각 의제별 세부 협상동향과 함께 DDA 환경협상 관련 대내외 대응전략을 검토하겠다.

본 조사연구는 환경과 무역연계 논의동향, 환경통상 분쟁, 환경서비스 시장개방협상 등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DDA 환경협상관련 연구결과를 검토하고 제5차 WTO 각료회의를 개기로 전개되는 최근의 협상동향을 정리하는 것을 일차적인 연구목표로 하며, 기 제시된 협상참여국가들의 의제별 대응현황에 기초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제시를 최종 연구목적으로 한다.

## 제 2 장 도하개발아젠다와 환경·무역

### 1. 도하개발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 1.1 출범배경 및 의의

도하개발아젠다는 지난 UR 협상 성과에도 불구하고 농산물과 서비스분야의 시장에는 추가적인 시장개방 여지가 있으며, 공산품분야에서도 여전히 상당한 무역장벽이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UR 협상에서의 합의결과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등 세계화 진전에 따른 무역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무역규범이 필요하다는 회원국 공통의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도하협상의 출범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미국 등 주요국들이 세계경제의 침체 및 세계무역의 위축을 추가적인 무역자유화로 극복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각료회의에 임함으로써 포괄의제에 대한 협상출범이 가능했다.

세계경제의 통합 기조 속에 초국가적 경제체제(transnational economy)가 등장하는 현실에서 진행되는 다자협상은 산업화의 확산과 국제교역의 확대로 대중소비의 물적 기반인 경제성장 및 사회후생이 개선되는 가운데 효율적 부존자원 배분을 통해 세계 경제 전체의 생산력 증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sup>2)</sup> 도하개발아젠다의 출범은 통상마찰의 심화와 지역주의의 확산이라고 하는 세계화 과정의 난제를 앞에 두고 국제사회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체제가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세계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대안임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도하개발아젠다는 종전까지의 다자간 협상과 다르게 환경과 무역 연계 의제는 물론 개도국의 경제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다룰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이슈로 불리는 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의 투명성, 무역원활화 등과 관련된 논의를 포함하고 있어, 21세기의 세계경제환경을 규정할 중요한 시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협상의 명칭에 개발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데서 알 수 있듯이 개도국 경제개발에 대한 본격적인 국제사회의 검토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그동안 GATT/WTO를 통한 무역자유화가 선진국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가져왔을 뿐 개도국 경제개발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대다수 개도국의 주장을 일정부분 수용하여 무역자유화가 개도국의 경제개발에 실질적인 기여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별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입장에서 주요 수출시장의 시장개

2) 관련 연구결과들은 무역장벽이 1/3로 감축될 경우, 약 6,100억불에 해당하는 세계경제의 추가 성장효과를 예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2% 대의 국내총생산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KIEP, 2002).

방이 확대되고 반덤핑협정의 개정 등을 통해 대외무역환경이 개선될 경우, 협상에 따라 많은 혜택이 있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자유무역에 따른 세계경제의 성장 및 국제특화가 세계시장 공급을 위한 대량 생산시설을 특정지역에 편중시킴으로써 생태계의 자정용량을 넘어서는 환경오염의 지역적 집중을 야기할 수 있고, 개방과 경제성장에 따른 소비수준의 증가를 유지하기 위한 과도한 자원이용을 초래하여 지구차원의 부존자원 고갈을 가져오는 등 국가 및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 발전기반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의제에 다수의 환경관련 의제가 포함된 것은 이를 반영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유무역과 환경보호, 개도국 발전 지원 문제를 협상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8차에 걸친 무역협상과 확연히 구별되는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은 시장경제 기반의 세계경제 통합이 이윤동기에 경도될 경우, 분배 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지구환경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등장하였고, 환경협상은 개방적이고 비차별적인 다자무역체제(MTS)의 확대를 통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국제사회의 구체적 노력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 1.2 도하개발아젠다 구성

도하개발아젠다의 중심이 되는 각료선언은 전문과 19개의 협상이슈에 대한 작업계획, 그리고 향후 작업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표 2-1은 각각의 협상이슈에 대한 작업계획을 정리한 것이다.

표 2-1 DDA 분야별 작업계획

세부협상분야	내용
1. 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하고 시장지향적인 무역체제의 수립이 장기 목표임을 확인</li> <li>▪ 협상 결과를 예단하지 않으면서 3대 협상분야별 협상목표를 아래와 같이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substantial improvement)</li> <li>- 수출보조의 단계적 폐지(phasing-out)를 목표로 한 감축</li> <li>- 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substantial reduction)</li> </ul> </li> <li>▪ 개도국 우대는 협상의 불가분의 일부로서 양허표 작성 및 규범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할 것을 합의</li> <li>▪ 비교역적 관심사항(NTC: Non-Trade Concerns)이 협상의 고려사항임을 확인</li> <li>▪ 협상방식(modalities) 수립 시한은 2003.3.31., 양허안 제출시한은 5차 각료회의 이전으로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협상종결은 전체 뉴라운드 협상 종결과 합치</li> </ul> </li> </ul>

표 2-1 계속

세부협상분야	내용
2.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0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협상의 진전에 대한 만족을 표명</li> <li>▪ GATS 상의 서문, 4조, 16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협상을 계속함에 있어서 2001.3.28 채택된 서비스협상 가이드라인이 그 기초가 됨을 재확인</li> <li>▪ 양허안 요청은 2002.6.30., 양허안은 2003.3.31 까지 제출</li> </ul>
3. 비 농산물 시장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침두관세, 고관세 및 경사관세 문제를 포함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삭감 또는 철폐를 위한 협상 개시</li> <li>▪ 협상대상 상품 범위는 포괄적이어야 하고 선협적 제외가 있어서는 안됨.</li> <li>▪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의 이익 고려</li> <li>▪ 이를 위하여 LDC들이 협상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합의할 세부원칙에는 필요한 연구(appropriate studies) 및 능력배양 프로그램 (capacity-building measures)을 포함토록 함.</li> </ul>
4. 지적재산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도주와 증류주의 지리적 표시에 대한 통보 및 등록을 위한 다자체제 설립 협상 마무리</li> <li>▪ 지리적 표시 보호를 여타 상품에도 확대하는 문제는 TRIPS 이사회에서 검토</li> <li>▪ TRIPS 협정과 CBD(생물다양성협약)간의 관계, 전통지식보호, TRIPS 협정이 신기술발전을 수용하는 문제에 대해 TRIPS 이사회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다룰 것에 동의</li> </ul>
5. 무역과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경간 장기 투자 특히 무역확대에 기여할 외국인직접투자자에 대한 투명하고 안정적이며 예측가능한 다자적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제5차 각료회의에서 결정되는 협상방식에 따라 5차 각료회의 이후 협상을 개시</li> <li>▪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에 대한 개도국의 필요를 인정하며, 이를 위해 UNCTAD를 비롯한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조 그리고 지역 또는 양자 채널을 통해 지원을 제공</li> <li>▪ 제5차 각료회의까지 각종 요소의 명확화를 위한 작업을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협정의 접근방식에 기반한 범위 및 정의, 투명성, 비차별, 설립 전 약속에 대한 조항 및 국가간 분쟁해결조항 등</li> <li>- 상기 다자규범은 투자국 및 유치국간의 이익을 균형적으로 반영해야 하고 정부의 규제책임 및 경제개발목적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li> </ul> </li> </ul>

표 2-1 계속

세부협상분야	내용
6. 무역과 경쟁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무역과 개발에 기여할 경쟁정책에 대한 다자적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제5차 각료회의에서 결정되는 협상방식에 따라 5차 각료회의 이후 협상을 개시</li> <li>▪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에 대한 개도국의 필요를 인정하며, 이를 위해 UNCTAD를 비롯한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조 그리고 지역 또는 양자 채널을 통해 지원을 제공</li> <li>▪ 제5차 각료회의까지 각종 요소의 명확화를 위한 작업을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명성 비차별 절차의 공정성 중핵카르텔 규정을 포함한 핵심 원칙, 자발적 협력을 위한 방식(modalities), 능력배양을 통한 개도국 경쟁기관의 점진적 강화 등</li> </ul> </li> </ul>
7. 정부조달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조달 투명성에 관한 다자협정 필요성 및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제고 필요성을 인정하여 제5차 각료회의에서 결정되는 협상방식에 따라 5차 각료회의 이후 협상을 개시</li> <li>▪ 이 협상은 정부조달 투명성 작업반에서의 진전사항에 기초하고, 개도국의 개발 우선순위를 고려</li> <li>▪ 협상은 투명성 분야에만 제한되어야 하며, 각국이 국내 공급품 및 공급자를 선호할 여지를 제한하지 말아야 함.</li> </ul>
8. 무역원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품의 이동 통관을 촉진시킬 필요성 및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제고 필요성을 인정하여 제5차 각료회의에서 결정되는 협상방식에 따라 5차 각료회의 이후 협상을 개시</li> <li>▪ 5차 각료회의시까지 상품이사회는 GATT 94 협정 제5,8,10조의 유관 분야를 검토, 명확화,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회원국들의 무역원활화 수요 및 우선순위를 파악</li> </ul>
9. WTO 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의 규율을 명확히 하고 개선할 목적의 협상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협정의 기본개념, 원칙, 유효성 및 그 수단, 목적은 유지</li> <li>- 첫 번째 단계에서는 무역왜곡적 관행을 포함하여 각국이 명확화 또는 개선을 희망하는 조항을 제시</li> </ul> </li> <li>▪ 동 협상의 맥락에서 수산 보조금 관련 규율을 명확히 하고 개선하는 것도 목표로 함.</li> <li>▪ 지역무역협정에 적용될 WTO 조항을 명확히 하고 개선할 목적의 협상 개시</li> </ul>
10. 분쟁해결양해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쟁해결양해 개정에 대한 협상 개시</li> <li>▪ 협상을 통해 2003년 5월 이전에 균형된 개정안을 도출해야 함.</li> </ul>

세부협상분야	내용
11. 무역과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역과 환경의 상호 보완성을 제고하기 위해, 결과를 예단하지 않으면서 아래 분야에 대한 협상을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TO 기존 규범과 MEA 무역관련 의무와의 관계</li> <li>- MEA 사무국들과 WTO 위원회간 정기적 정보 교환 및 옵저버 자격 절차</li> <li>- 환경관련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감축 또는 철폐</li> </ul> </li> <li>▪ 수산 보조금이 규범 분야 협상의 일부임에 유의</li> <li>▪ 무역환경위원회(CTE)는 현재 소관 범위 내의 모든 의제에 대한 작업을 계속하되, 특히 다음에 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조치의 시장접근에 대한 효과, 무역규제 및 왜곡을 철폐 또는 삭감하여 무역·환경 개발에 도움이 되는 상황</li> <li>- TRIPS협정의 관련 규정</li> <li>- 환경 목적의 라벨링 요건</li> </ul> </li> <li>▪ 상기 작업은 관련 WTO 규범의 명확화 필요성의 파악을 포함하고, CTE는 제5차 각료회의에 보고를 하며, 협상 필요성을 포함한 장래 작업에 관한 권고를 제출</li> <li>▪ 동 작업 및 para. 31의 협상 결과는 다자무역체제의 비차별성과 조화되어야 하며, 기존 WTO 협정상 회원국의 권리 의무를 추가 또는 감소하지 말아야 하고,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변경하지 않으며, 개도국과 최빈 개도국의 필요를 감안</li> </ul>
12. 전자상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네바 각료선언이후 일반이사회 및 다른 기구에서 행해진 작업에 주목하여 전자상거래에 대한 작업계획을 계속함.</li> <li>▪ 일반이사회는 작업계획을 다룰 가장 적합한 제도적 장치를 고려하여 5차 각료회의에 보고서 제출</li> <li>▪ 5차 각료회의까지 전자적전송물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 관행 연장</li> </ul>
13. 소규모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이사회 감독 하에 소규모 경제국(small economies)을 다자무역체제에 더 효과적으로 통합할 문제를 검토하는 작업 계획 수립</li> </ul>
14. 무역, 부채,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이사회에서 무역, 부채, 금융간의 관계를 검토</li> </ul>
15. 무역과 기술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이사회에서 무역과 기술이전의 관계 및 개도국에로의 기술이전을 촉진할 가능한 권고 방안을 검토하고, 이 문제를 다룰 제도적 장치를 고려하여 5차 각료회의에 보고</li> </ul>
16. 기술협력 및 능력배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협력대상국이 WTO 규범을 보다 잘 이해하고 협정상의 권리 및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협력계획이 고안되어야 함. 또한 제네바에 대표부가 없는 국가를 우선시하여 기술지원이 행해져야 하며, 예산행정위원회가 보다 장기적인 기금조성 계획을 작성하여, 올해 12월 일반이사회가 그 계획을 채택하도록 함.</li> </ul>

표 2-1 계속

세부협상분야	내용
17. 최빈개도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빈개도국의 무역체제 통합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며, 최빈개도국을 위한 작업계획 고안시 올해 5월 제3차 UN 최빈개도국회의에서 채택된 브뤼셀 선언을 고려해야 함. 또한 최빈개도국을 위한 통합계획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에 기반한 신탁기금의 확대를 위해 노력함.</li> <li>▪ LDC 산품(產品)에 대한 무관세, 무쿼터 목표에 대한 약속을 확인</li> </ul>
18. 개도국 우대(S&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amp;D 조항을 보다 정확·유효하게 운영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모든 관련 조항을 검토</li> <li>▪ 이행 관련 결정문 내용중 S&amp;D 작업계획 부분을 승인</li> </ul>
19. 작업계획의 조직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상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상종료시점 : 2005.1.1</li> <li>- 제5차 각료회의는 협상 진전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결정을 채택</li> <li>- 모든 분야의 협상종료시 특별 각료회의에서 동 결과를 채택</li> </ul> </li> <li>▪ 협상감독기구로 일반이사회 산하 무역협상위원회(TNC)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회의 개최: 2002.1.31 이전</li> </ul> </li> <li>▪ 협상방식 : 협상 부문간 이해관계의 조정이 가능한 일괄타결방식(single undertaking) (DSU 개정은 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협상을 하나의 package로 처리</li> <li>- 그러나 조기 합의사항은 조기 시행 가능</li> </ul> </li> <li>▪ 협상 참가국 : WTO 회원국 및 가입협상 진행국</li> <li>▪ 무역개발위원회와 무역환경위원회는 협상의 개발측면과 환경측면을 검토.</li> </ul>

출처: 외교통상부, [www.wtodda.net](http://www.wtodda.net) 참조

### 1.3 도하개발아젠다 논의동향

도하개발아젠다에 대한 협상은 2002년 2월 무역협상위원회(TNC: Trade Negotiation Committee)가 설치되고, 각각의 협상의제를 관리하는 7개 협상그룹들이 구성, 운영됨으로써 본격화되었다<sup>3)</sup>. 협상의제에는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공산품, 임수산물)에 대한 시장개방 의제영역과 기존협정개정(반덤핑, 보조금/수산물보조금, 지역협정, 분쟁해결) 및 신규규범제정(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 투명성)을 포함하는 규범관련 의제영역, 그리고 기타 의제영역으로 환경과 무역연계, 지적재산권 문제가 포함되며 협상과 병행하

3) 도하개발아젠다 가운데 농산물과 서비스 협상의제는 UR당시 미완의 상태로 협상이 종결되어, UR종료이후 5년 이내 재협상을 개시하기로 정해진 BIA(Build in Agenda)에 해당하여 2000년 1월부터 협상이 개시되어 있었다.

여 개도국 개발문제가 별도로 검토된다.

협상의제 가운데 개발,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은 WTO의 기존 산하기구에서 논의키로 결정되었고, 농업 및 서비스, 비농산물, 규범, 환경,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등 7개 분야에 대해서는 2002년 2월 별도의 협상기구가 설치되어 다음 달인 3월부터 분야별 논의가 개시되었다. 협상방식에 있어서는 조속한 협상타결을 위하여 전체 협상을 하나의 패키지로 간주함으로써 협상 부문간 이해관계의 조정이 가능한 일괄타결 방식(Single Undertaking)을 취하고 있다.

WTO 회원국들은 당초 협상종료 시한인 2004년 말까지 협상을 끝내기 위해 농산물, 비농산물, 서비스 등 전산업 부문에 걸쳐 시장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기존 무역규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WTO 규범개정 작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비 농산물협상 형식(Modality) 확정문제의 미해결, 분쟁해결양해(DSU) 개정협정 지체 등 전체적인 협상에 상당한 차질을 빚어오고 있다. 결국 2005년 1월 이전 종료를 목표로 시작된 DDA 협상은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의 제5차 WTO 각료회의에서 협상 중간점검 및 주요부문 협상타결, 기타부문 의견조율 등에 결정을 갖기로 하였으나 주요 선진국과 개도국간 참여한 대립양상을 보이며 협상결렬과 함께 각료회의가 종결되고 말았다.

도하개발아젠다의 주요 분야별 협상동향을 살펴보자. 먼저 농업부문에서 미국·호주·아르헨티나 등 농산물 수출국은 시장접근의 대폭 확대와 보조금의 대폭감축을 포함한 시장지향적 농산물 무역을 주장하였다. 이에 EU·일본·한국 등 NTC 그룹은 식량안보, 농촌개발 등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을 주장하며, 각국 실정에 맞는 점진적 농업개혁을 주장하였다.

서비스부문에서 선진국은 개도국 서비스시장의 폭넓은 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며, 개도국은 선진국에 대한 인력확대에 관심을 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산업경쟁력 및 진출가능성을 고려하여 시장개방요구서(initial request) 및 시장개방제안서(initial offer)를 각각 요구·제출하였으며, 미국·일본·EU 등으로부터 시장개방요구서를 접수하기도 하였다.

비농산물 부문에서는 환경상품 교역자유화를 포함한 비농산물 관세 및 비관세장벽 감축 또는 철폐를 목표로 개도국의 이익을 특별히 고려한다는 원칙하에 진행되고 있다. 또한 UR보다 높은 수준의 협상목표 설정과 양허품목 확대에 대해 대부분의 나라가 공감하면서 자국에 유리한 관세감축방식을 채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규범에 관하여 도하각료선언문에서는 보조금 협정, 반덤핑협정, 지역협정 관련 규정의 개선 및 검토를 지시하였으며, 보조금 상환의 일환으로 수산보조금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 수산보조금 분야에서는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자원고갈 및 왜곡을 강조하는 미국·뉴질랜드·아이슬랜드 등과 수산보조금에 대한 규제도입을 반대하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 등 싱가포르 이슈에 관하여, 도하개발아젠다는 제 5차 WTO 각료회의에서 협상방식을 결정한 후 협상을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는 협상에 소극적인 개도국과 싱가포르 이슈 관련 다자규범 수립을 희망하는 EU·일본·우리나라 등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이렇듯 도하개발아젠다는 출범이후 다각도로 협상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중간점검일정으로 개최된 제5차 WTO 각료회의에서 싱가포르이슈에 관한 개도국과 EC간의 견결충 실패, 농산물 부문 수출보조금 철폐조항에 대한 이견 등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칸쿤 각료회의가 종료되었다.

그러나 도하개발아젠다 본연의 주제와 부합하도록 분야별 협상이 다시 시작되었고 각 분야별 협상회의 및 그룹별 공식, 비공식회의를 통해 DDA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2004년 1월 비공식 통상장관회의를 통해 금년도 DDA 협상에서 중점되어야 할 의제 및 협상진행 계획에 대해 논의를 재개하였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협상 기본골격이 필요한 농업, 비농산물, 싱가포르 이슈 등을 언급하였으며, 개도국들은 관심사항인 개도국 우대, 면화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2004년 2월 WTO 일반이사회가 개최되어 WTO 의장단을 선임하고 제6차 각료회의 개최일자 등을 논의하였다. 이후 각 정주기구 및 협상기구 주도로 DDA 의제들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sup>4)</sup>.

## 2. DDA 환경의제 채택 배경

### 2.1 환경통상분쟁 심화

무역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대한 국제적 관심의 등장은 환경오염이 관련된 국제분쟁 발생빈도의 증가, 지구환경 문제의 대두, 환경보호 명분의 신보호주의 확산 및 GATT 및 WTO 체제하의 국제무역 증가와 더불어 빈발하는 국가간 환경통상 분쟁 등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유독성 폐기물의 국가간 위장거래로 인한 국제분쟁의 대표적 사례로는 1976년 유독성 다이옥신에 오염된 토양이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위장 수출된 세베소(Sebesso) 사건이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폴리염화비페닐(PCB) 폐기물이 선진국으로부터 나이지리아에 반입되어 유기된 코코(Koko)농장사건이 거론되기도 한다.

자유무역의 환경과급효과에 있어서도 국제분쟁과 특화는 대량 생산설비의 지역적 집중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흥산업국과 후발개도국의 산업화를 촉진시켰다. 이러한 산업화의 진전은 적정 지구환경용량을 넘어서는 수준의 환경오염을 야기하였고, 인간의

4) 최근협상동향의 주요내용은 WTO DDA협상 홈페이지 <http://www.wtodda.net> 참조

생활환경은 물론 자연생태환경의 보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냉동기기의 냉매, 전자제품 제조공정에 세척제 등으로 사용되는 염화불화탄소(CFC)의 경우, 대기 성층권에 존재하는 오존층을 파괴하여 지표면에 도달하는 유해자외선(UV-B)량을 증가시켰고, 그 결과 식물성장과 농작물 수확을 억제하고 수중생물을 사멸시키는 등 생태환경에 악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페인트 및 나무와 같은 옥외노출 자재의 내구연한을 단축시키는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화석연료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집적도 지구온난화현상을 초래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생태계의 변화는 물론 인류의 거주환경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WTO 기반의 자유무역체제 등장과 같은 무역자유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의 결과로 수량규제, 관세를 통한 수입규제가 어려워지는 등 국내시장 보호를 위한 전통적인 무역정책 수단의 이용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환경규제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대부분의 교역당사국들에게 새로운 보호주의적 무역규제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선진국들은 환경기술우위를 이용한 독점적 지대(rent)의 실현을 위해 환경기준이 낮은 개도국들을 대상으로 환경규제기준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환경보호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이는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환경규제가 국가경제 및 산업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방지하고자 하는 각국 정부의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으며, 환경과 무역연계 논의의 핵심을 자유무역과 환경보호의 조화로 온 발전을 위한 제도적 대안모색에 두는 계기가 된다.

돌고래 보호장구를 장착하지 않은 참치어선에 의해 포획된 참치의 국내수입을 제한한 미국의 규제조치에서 비롯된 참치-돌고래분쟁을 시작으로 적지않은 환경과 무역 연계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참치-돌고래분쟁의 경우, GATT 분쟁해결 패널은 수입제품이 국내규정에 어긋나는 제조공정에(PPMs)에 의하여 생산된다는 이유로 이를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미국의 규제조치가 GATT 규범에 위반된다는 평결을 내린바 있다. 개별 환경·무역 분쟁 이외에도 국제 환경규범과 무역규범의 상호위상에 관한 분쟁발생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환경관련 규정도 문제가 된다. 동 협정 당사국들은 "국제환경협약상의 무역제한조치 규정은 무역자유화 규범에 우선한다"는 규정에 합의함으로써 국제환경규범과 무역규범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국제법 질서에 적지 않는 논쟁거리를 제공하였다.

이 같은 환경과 무역연계 쟁점에 대하여 환경론자들은 현행 WTO를 중심으로하는 다자통상체제(MTS) 내에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경우, 국제무역이 자원을 고갈시키고 환경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우려가 있으며 환경규제기준이 낮은 국가에 우월한 가격경쟁력을 부여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위험을 강조하고 있다. 반대로 무역론자들은 국제무역의 증대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촉진시키고 소득과 복지를 증진시켜 궁극적으로는 빈곤을 타파하고,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재원조달을 가능케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환경과 무역연계논쟁의 서로 다른 두 축을 구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보호 우선론과 자유무역 옹호론의 대립이외에도 국제사회에는 선·후진국간의 뚜렷한 입장 차이가 확인된다. 개도국은 환경보전을 위한 무역규제의 도입이 개도국에 대한 불공정한 차별로 악용될 수 있고 기술 및 재정능력이 열세인 개도국과의 항구적인 발전격차를 유지하려는 선진국의 숨은 의도가 담겨져 있음을 지적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무역규제 도입에 반대한다. 반면, 선진국은 강화된 환경규제가 보다 환경친화적인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며, 관련제품의 시장확대에 기여한다는 시각에서 환경보전에 는 직접적인 무역규제 수단으로부터 경제적인 수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제수단이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어야함을 주장하는 대립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상반된 입장은 종종 국제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당사국간에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협상공조그룹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다음에 기술할 주요 국제기구에서의 환경과 무역 연계논의에 대한 기본적인 대립구도를 구성한다.

## 2.2 OECD 무역과 환경 전문가회의(JWPTE) 권고

1991년 6월 구성된 OECD 무역과 환경 전문가회의(Joint Working Party on Trade and Environment)는 무역위원회와 환경위원회의 공동 주관으로 매년 약 두 차례의 정례회합을 통해 무역과 환경 연계문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진전시켜왔다.

이들 작업결과를 바탕으로 1993년 무역과 환경정책을 조화시키기 위한 절차적 지침(Procedural Guidelines)이 개발되었고, 동 절차지침은 각국의 무역정책과 환경정책의 입안자들로 하여금 양 정책이 여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함으로써 무역과 환경 연계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무역과 환경 전문가회의는 또한 무역자유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1995년 보고서를 통해 적절한 환경정책이 수반되는 경우 무역자유화는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들은 또한 무역자유화의 환경적 파급효과는 실제로 개별 국가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OECD 회원국들로 하여금 환경정책과 무역정책의 상호 통합 및 양립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와 함께, 환경정책이 국가경쟁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WTO 규정에 반하는 보호주의적인 무역조치를 취하거나 수출확대를 위해 자국의 환경 및 보건기준 등을 낮춰서는 안된다는 개별 국가차원의 환경정책 한계를 분명히 밝힌바 있다.

이외에도 환경친화적인 생산공정을 촉진할 목적으로 제품의 생산공정 및 생산방법에 기초한 무역규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고, 제품의 성격과 관련이 없는 생산공정에 근거한 무역규제 조치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으나, 국경을 넘는 오염의 확산이나 지구환경에 위협을 주는 오염문제와 관련된 환경규제는 국제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유연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환경보호가 배출된 오염을 제거하는 형태의 사후처리 개념으로부터 제품의 개발단계부터 오염유발 가능성을 줄이고자하는 사전예방 차원으로 발전해 가면서 제품의 전과정에 입각한 환경성 평가(Life Cycle Assessment)개념이 도입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전과정평가기법이 현재 개발초기 단계에 있으므로 이에 근거한 환경규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개진하고, 전과정평가 과정의 투명성 제고, 국제적 기준의 정립, 개별국 인증제도의 상호인정 등 전과정평가제도의 정립에 우선적인 관심이 주어질 것을 촉구하였다.

회원각국에서 환경친화적 조세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다양한 환경세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환경세제를 도입한 국가의 산업체들이 추가적인 세부담으로 인하여 국제경쟁력을 상실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현행 WTO체제 내에서 환경세의 국경조정을 허용하는 규정이 있음을 상기하였으며, 이 경우 최종제품에 부과되는 환경세 뿐만 아니라 최종제품의 생산에 투입된 요소에 부과되는 환경세에 대해서도 국경조정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함을 밝혔다.

이상에서 보듯이 OECD 무역과 환경 전문가회의의 작업은 제품의 생산공정 및 생산방법(PPMs)에 근거한 환경규제, 제품의 생산으로부터 소비에 이르는 제품전과정(Life cycle)에 대한 환경성 평가, 환경보호목적의 조세에 대한 국경조정 등 환경측면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주제들에 대한 분석적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어, 자유무역의 원칙을 우선하는 입장에서 환경정책의 무역과급효과를 중점논의하고 있는 WTO 무역환경위원회(CTE)의 활동과는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표 2-2 무역과 환경정책 조화를 위한 절차적 지침(OECD, 1993.6)

사안	주요내용
Transparency and Consult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국 정부는 무역 및 환경정책의 개발과 이행의 잠재적 이행당사자와 긴밀히 협의하는 동시에 투명성을 유지해야한다.</li> </ul>
Trade and Environmental Examinations, Review, and Follow-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국 정부는 무역 및 환경정책이 여타 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검토 점검하고 그 결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li> </ul>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국 정부는 환경정책의 효율성 제고 및 부정적 무역효과 제거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li> </ul>
Dispute Settl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역 및 환경관련 분쟁발생의 경우 당사국은 환경적·무역적 및 과학적·전문적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li> </ul>

표 2-3 무역환경전문가회의 주요활동

분야	조사내용
<p><b>무역자유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적으로 적절한 환경정책만 이행된다면 무역자유화는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됨.</li> <li>▪ 무역자유화가 환경에 미치는 효과는 국가에 따라 다르며 관련분야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li> <li>▪ OECD 국가는 환경정책과 무역정책의 상호통합 및 compatibility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함</li> </ul>
<p><b>환경규제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높은 수준의 환경보전이 각국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경쟁력과 환경정책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것으로 결론</li> <li>▪ OECD 국가는 환경정책에 따른 부정적인 경쟁력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WTO 규정에 반하는 보호주의적인 무역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권고</li> <li>▪ 또한 OECD 국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무역증진을 위해 환경 및 보건기준 등을 낮출 수 없음을 확인</li> </ul>
<p><b>환경보호 목적의 무역규제 수단 사용의 정당성 여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보호 목적의 무역수단의 사용시에는 국제적 합의가 필요함을 지적</li> <li>▪ 불필요하며 왜곡적인 성격의 무역조치를 방지하기 위해 다자간 환경협약(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 MEA)상 규정된 국제환경 목적달성을 위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무역규정의 채택 필요성 인정</li> <li>▪ PPMs에 근거한 일방적 수입금지 조치 등을 포함하는 일방적 무역조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규정</li> </ul>
<p><b>환경보호 목적의 생산공정 및 생산방법의 규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제품 관련 PPMs에 근거한 무역규제 조치에 관한 다자무역 규범은 부재한 상황이며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됨을 명기</li> <li>▪ 월경성 및 전지구적 차원의 환경효과를 수반하는 PPMs에 관련된 환경문제는 국제협력을 통해 논의되어야 함을 명기</li> <li>▪ 특별한 상황하에서는 다자간 환경협력이 PPMs에 근거한 무역규제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자간 무역체제와의 관계에 대한 추가 검토가 요망됨을 지적</li> </ul>

표 2-3 계속

분야	조사내용
<p><b>제품의 life cycle에 입각한 환경규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CA(Life Cycle Assessment) 분석이 현재 개발초기에 있으며 국제적으로 합의된 방법론 부재로 조기 사용시 여러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음을 지적</li> <li>▪ LCA분석의 사용을 위한 투명성 제고 및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과 상호인증 방안강구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이와 관련된 ISO의 작업을 평가</li> <li>▪ OECD 국가는 LCA에 근거한 정책 사용에 따른 불필요한 무역효과를 제거해야 하며 LCA 사용의 경우, 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함을 명기</li> </ul>
<p><b>환경보호 목적의 경제적 수단의 사용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적 수단은 불필요한 부정적 무역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다자무역원칙에 따라 개발되고 이행되어야 함.</li> <li>▪ WTO 규범은 일반적으로 제품 및 제품에 물리적으로 포함된 요소에 대한 국경세 조정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그외 투입요소 및 생산과정에 따른 국경세 조정문제는 추가검토가 필요함을 지적</li> </ul>
<p><b>환경정책과 기준들의 국제적인 상호조화 가능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기준의 상호조화 및 심층분석 방법의 조화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OECD 국가가 공통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기준의 조화문제를 계속 검토할 것을 권고</li> </ul>
<p><b>무역 환경분쟁의 해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TO 분쟁해결 절차가 관련전문가의 활용을 명시함으로써 환경과 관련된 무역분쟁 해결에 유용한 수단을 제공함을 인정</li> <li>▪ OECD 국가가 MEA내 관련 분쟁해결 절차 메커니즘을 포함토록 노력할 것과 분쟁발생시 무역전문가 활용이 보장될 것을 권고</li> </ul>

### 2.3 WTO 무역환경위원회(CTE) 논의

1994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을 논의한 마라케쉬 각료회의는 무역과 환경에 관한 결정을 통해 개방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형평성을 갖는 다자간무역체제를 유지하는 일과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사이에는 정책적 모순이 있어서는 안되고, 또 그러한 필요성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라케쉬 각료회의는 이어 무역과 환경 연계문제를 다룬 무역·환경위원회(CTE)의 설치에 관한 권고에 따라 WTO 일반이사회는 1995년 3월 무역·환경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동 위원회는 1996년 12월까지 14차례의 공식회의를 갖고 무역과 환경 연계문제를

표 2-3에 정리된 10개의 의제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검토결과와 관련 정책권고안 등은 CTE 활동보고서의 형태로 1996년 12월 개최된 싱가포르 각료회의에 제출되었으며, 1997년 이후의 논의는 10개 의제에 대해 이루어진 그간의 이론적 분석토대 위에서 각국의 상이한 경제·사회적 여건을 감안한 구체적 사례 및 경험에 입각한 분석과 토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논의의 효율성을 위하여 당초의 10개 의제는 상호 연관성에 따라 시장접근에 관련된 의제그룹(의제 2, 3, 4, 6), 다자간 환경협약과 다자간 무역체제간의 연계에 관련된 의제그룹(의제 1, 5, 7, 8), 및 기타 의제그룹(의제 9, 10)으로 묶여 논의되고 있다.

그간의 논의경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개도국은 선진국의 높은 환경기준 및 일방적 환경규제가 개도국 상품의 수출시장접근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주장을 펴면서 WTO가 다자간환경협정(MEAs)상 무역조치를 자동 수용하게 될 경우 보호무역 조치의 남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등 WTO 내에서의 환경논의에 소극성을 보이고 있는 반면, 선진국들은 개도국이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환경정책과 여타 경제·무역정책간의 국내적 조정 및 통합기능이 부족하여 무역편향적인 시각을 갖고 현상 유지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고 비난함으로써 무역과 환경 연계문제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첨예한 이견대립이 노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3 WTO/CTE 10대 의제 및 주요쟁점

의제	주요쟁점
의제 1: 환경목적의 무역조치와 다자통상체제(MTS)상의 관련 규정과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EA상 무역조치와 WTO 규정과의 조화문제</li> <li>사전적, 사후적, 절충적 도입방식에 대한 논의</li> </ul>
의제 2: 국내환경정책과 MTS와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별 자체환경정책과 MTS 관계 설정</li> </ul>
의제 3: MTS 규정과 아래사항과의 관계 (a)환경목적의 부과금 세금 (b)기술규정 및 표준, 포장, 환경마크, 재활용 등 환경관련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경세 조정대상(투입물의 해석, 동종상품의 개념)</li> <li>제품무관한 PPMs에 근거한 Eco-labelling의 TBT 협정의 적용 여부</li> </ul>
의제 4: 환경관련 무역조치의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조치처 설치여부</li> <li>환경목적의 무역조치에 대한 투명성 증진</li> </ul>
의제 5: MTS와 MEA의 분쟁해결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역분쟁에 있어 환경전문가의 참여 문제</li> <li>환경분쟁에 있어 무역전문가의 참여 문제</li> </ul>
의제 6: 환경조치와 시장접근, 무역왜곡조치 제거를 통한 환경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조치가 시장접근에 미치는 영향(환경기준 등)</li> <li>무역왜곡 제거(경사관세 및 보조금 철폐문제)</li> </ul>
의제 7: 국내 판매금지품(DPG)의 수출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련 검토사항(투명성증진, 능력형성 등)</li> <li>DPG 협정의 필요여부 검토</li> </ul>
의제 8: 지적재산권(TRIPs) 협정과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의 개발 및 이전과 TRIPs 협정과 관계</li> </ul>
의제 9: 서비스와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ATS 14조가 환경보호에 충분한지 여부</li> </ul>
의제 10: 기타기구와의 관계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GO 및 NGO와의 정보 및 자료 교류 문제</li> </ul>

논의가 집중되었던 주요 의제로는 의제 1, 3, 6, 8등을 들 수가 있으며, 각국의 제안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 주요 논의동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의제 1 : 환경협약상 무역규제와 다자간무역체제간의 연계

환경목적의 무역조치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현행 다자간무역체제(MTS)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 개별 회원국의 일방적인 역외성 규제조치와 다자간 무역체제와의 관계, MEAs와 MTS간의 협력증진방안 등이 주요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문제되는 자유무역규범의 일반원칙으로는 GATT 1조 최혜국대우조항, 3조 내국민대우조항, 11조 수량규제금지조항을 들 수 있다.

논의과정에서 WTO가 MEA 무역제한 조치를 수용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5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다.

사전적 접근방식(ex-ante approach)은 EU 및 스위스가 제안한 것으로 자유무역원칙에 대한 일반적 예외사항을 규정한 GATT 20조를 개정 또는 확대 해석하여 MEA상의

무역조치가 사전에 합의된 특정한 요건 또는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이러한 무역조치를 WTO 규범의 예외로 인정하여 WTO내에 사전적으로 수용하자는 안이다. 환경협약과 WTO협정간에 법적인 일치성을 확보하고 환경협약상 무역조치의 독립적 보장효과가 있으나, MEA상의 무역조치에 관한 백지수표(cartre blanche)를 부여함으로써 환경보호를 내세운 보호주의적 무역규제조치의 남발이 우려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후적 접근방식(ex-post approach)의 경우 홍콩 및 아세안이 제안하고 있으며, WTO 회원국이 MEA상의 차별적인 무역조치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례별로 WTO협정 제9조에 의거 WTO 회원국 3/4 과반수의 승인을 받아 WTO협정의 의무에 대한 의무면제(waiver)를 부여하자는 안이다. 개별적인 무역조치에 대한 사례별 대응으로 보호주의적인 무역조치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MEA상의 무역조치가 다자간 무역체제의 승인을 받아야만 정당화 될 수 있으므로 MEA가 WTO의 하위 규범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반론을 받고 있다.

뉴질랜드 및 한국이 제안한 절충방안의 경우, MEA상의 무역조치의 구체성 여부와 당사국간 조치여부에 따라 무역조치 유형을 분류하여 WTO내에서 차등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으로 합리적이란 평가를 얻고 있으나, 차등수용의 대상이 되는 무역조치의 구체적 분류에 따르는 어려움이 있다.

일본이 제안한 Guideline 접근법의 경우, GATT 제20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환경협약상의 무역조치에 대한 일정한 지침을 작성, 운영하는 방안이 있으며, 다자간 무역체제의 수정 및 변화에 반대하여 현행규범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현상유지안(Status-quo)이 있다.

무역환경위원회의 현재 입장은 환경목적의 일방적 무역조치를 배격하고 국제적 합의에 근거한 다각적인 접근방법을 지지하면서 환경협약에 주어진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환경규제보다는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 등의 촉진정책들이 우선되어야 하나, 특정한 경우 구체적으로 합의된 규정에 근거한 무역규제조치가 취해 질 수 있으며, 비당사국에 대한 무역조치의 적용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MEA상의 무역조치와 WTO 규범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현행 WTO 규범에 환경목적의 무역조치를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MEA와 WTO와의 협력을 위해서 CTE의 관련논의에 환경협약들이 옵저버로 참가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MEA와 WTO간의 분쟁해결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WTO 회원국이 WTO/DSU(분쟁해결규칙및절차에관한양해)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며, MEA상 무역조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당사국이 WTO 당사국인 동시에 모두 MEA 당사국이라면 MEA의 분쟁해결 체제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의제 3 A : 환경목적의 부과금·세금과 다자무역체계와의 관계**

회원국간 상이한 조세제도에 따른 경쟁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인정되는 국경세 조

정(Border Tax Adjustment : BTA)에 관한 GATT 규범을 환경세 및 부과금에도 적용할 것인지 여부, 특히 제품의 특성과 관련이 없는 제조공정 및 방법에 부과되는 환경세 및 부과금이 국경세조정(BTA)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다.

GATT/WTO 규범하의 국경세 조정원칙은 소비지과세의 원칙에 따라 각국의 국내 조세체계는 유지되면서 교역시 조세와 관련된 경제 여건을 균등화하기 위해 재화가 소비되는 국가에서 조세가 부과되도록 하는 과세조정 방법으로 수입품에 대한 조세부과 및 수출품에 대한 조세환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세와 관련하여, 오염유발 제품의 소비에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간접세인 환경제품세는 국경세 조정의 대상이 되나 환경오염 생산공정 및 시설에 간접적으로 부과되는 직접세인 환경공정세는 국경세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지배적 의견이다.

GATT 국경세조정작업반은 관련 보고서에서 제품무관한 제조공정에 부과된 환경세 및 부과금의 국경세 조정관련, 개도국은 조정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선진국은 허용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세부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대립이 있음을 확인하는 이외에 WTO 규범의 범위내에서 회원국 정부가 독자적인 환경부과금 및 환경세를 부과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국경세 조정문제는 계속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 **의제 3 B : 다자무역체제와 환경마크(Eco-labelling)와의 관계**

환경마크제도와 WTO 규정과의 관계에 있어서 환경마크는 수입국의 환경보호를 위한 자발적 조치이나 수입제품에 대한 차별적인 무역효과를 유발하므로 자유무역에 관한 WTO 규범을 저촉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있으며, 기술적무역장벽(TBT)협정 상의 투명성 관련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검토되고 있다.

강제적 환경마크제도는 TBT협정 제2조 9항이 정한 통보 및 투명성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 회원국들의 동의가 형성되어 있으나, 제품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제조공정(PPMs)에 근거한 자발적 환경마크제도에 대해서는 미국, EU, 캐나다가 TBT 협정의 관련규정이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반면 다수 개도국은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무역환경위원회는 환경마크가 환경목적 달성을 위해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무역효과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 환경마크의 무역효과 방지를 위해 투명성 증진이 필요하다는 점, 현행 TBT규정이 투명성 증진에 참고가 된다는 점에 회원국의 일반적인 합의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제품무관한 PPMs에 근거한 환경마크가 투명성 조항을 포함한 TBT협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회원국간 의견대립이 있음을 확인하고, WTO회원국은 TBT협정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 WTO TBT협정과 환경마크(Eco-labelling)

환경마크는 수입국의 환경보호를 위한 자발적 조치이나 수입제품에 대한 차별적인 무역효과를 유발함으로써 WTO 규범 적용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 TBT)협정상 투명성 관련 조항을 환경마크에 적용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제품 무관련 PPMs에 근거한 자발적 환경마크의 TBT협정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환경마크는 자발적 기준으로 TBT 협정상 "standards"에 해당하지만, 부여기준에 제품무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NPR-PPMs)이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WTO/CTE에서는 자발적 환경마크 기준이 TBT협상의 투명성 조항과 통보조항의 적용을 받는지의 여부와 TBT협정이 NPR-PPMs에 근거한 자발적 환경마크 제도에도 적용되는지의 여부에 논의가 집중되었고, 강제적 labelling requirement는 TBT협정 제2조 9항의 통보 및 투명성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에 동의가 형성되었으며, 일부국가는 환경마크제도 외에도 포장 및 폐기물 처리기준 등 환경제품에 대한 여타 requirement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NPR-PPMs에 근거한 자발적 환경마크 제도에 관해서는 미국, EU, 캐나다가 TBT 협정이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 반면 다수 개도국이 NPR-PPMs는 TBT협정의 관할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환경마크제도가 환경목적 달성을 위해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무역효과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 환경마크의 무역효과 방지를 위해 투명성 증진이 필요하다는 점, 현행 TBT 규정이 투명성 증진에 참고가 된다는 점 등에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으나, 제품 무관련 PPMs에 근거한 환경마크가 투명성 조항을 포함한 TBT협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와 관련, 회원국간 의견대립으로 결국 제품 무관련 PPMs에 관한 TBT의 적용 및 의무에 대한 회원국의 견해를 예단(prejudice)하지 않고, WTO회원국으로 하여금 TBT협정을 준수하도록 권고하는 선에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향후 작업계획과 관련, 환경라벨링의 시장효과 및 접근성 증진문제에 합의 하였으나, 상응성, 상호인증, LCA분석, 적합판정 절차 등에 대해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결국 모든 이슈에 대하여 TBT위원회 및 여타기구와 협력할 것을 합의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으며, 환경마크에 대한 TBT협정 조항의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통보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제품 무관련 PPMs에 근거한 환경마크에 대한 WTO 규범의 포괄문제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확인한 점은 향후 작업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 의제 6 : 환경조치의 시장접근 효과 및 무역왜곡 조치제거의 환경편익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조치가 개도국의 시장접근에 미치는 영향, 무역왜곡조치 제거의 환경과급효과, 무역자유화와 각국 환경정책간의 상호 지지적 관계형성을 위한 WTO의 역할 등이 주요쟁점으로 제시되어 있다.

무역자유화는 소득을 증대하여 전반적으로 환경개선과 지속발전에 기여하지만 적절

한 국내환경정책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환경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데 다수 회원국이 동의하고 있다. 개도국은 선진국의 각종 경제조치(조세 및 부과금, 기술이전 및 규정)가 비관세 장벽을 형성, 개도국의 시장접근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므로 재검토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선진국은 높은 환경기준은 자원사용의 효율성을 높여 생산자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며, 새로운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등 시장접근의 기회를 향상시킨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개도국은 주요 수출품인 의류, 신발, 가죽제품, 산림 관련제품, 수산제품에 관련된 무역왜곡 조치의 제거가 개도국의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을 주장하는 반면, 선진국은 개도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개도국의 환경악화에 기여한다는 이유로 수입규제 조치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특별히 농산물 수출국그룹(케언즈그룹)은 농업보조금이 보조금 지급국가의 환경과피는 물론 국제 곡물가격 형성체계를 왜곡시켜 곡물수출 개도국의 국제시장 접근에 장애요인을 제공하며 수출개도국의 소득감소와 환경과피를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그 철폐를 요구하고 있으나, EU, 일본 등은 농업보조금 문제는 각국의 독특한 환경적 여건, 사회 경제개발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무역환경위원회 논의에서는 환경규제조치가 개도국 중소기업의 시장접근 기회와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시장접근의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되고 있다. 위원회는 또한 무역왜곡 조치를 포함한 무역자유화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환경이익을 가져올 수 있음을 인정하며, 동시에 각국은 무역에 의한 성장이 지속가능하기 위해 국내차원에서 적절한 환경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의제 8 : TRIPs 협정과 환경과의 관계**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과 환경친화기술의 개발 및 이전과의 관계, 다자간 환경협약과 TRIPs협정과 관계 등이 주요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기술개발 및 이전과 관련된 TRIPs 협정의 본래 취지가 지적재산권 소유자와 사용자의 권리 및 의무 관계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란 점에 회원국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친화 기술의 이전촉진을 위한 TRIPs 협정의 보완 필요성 문제, 특히 특허인정,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ing), 반경쟁관행 관련규정의 보완 문제에 대해서는 개도국과 선진국의 현저한 입장 차이가 있다. 개도국은 지재권이 환경 친화적 기술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하고 관련 기술의 가격을 상승시켜 개도국의 시장접근은 물론 환경오염방지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인도의 경우 환경협약에 정한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청정기술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TRIPs 규정, 특히 제31조 강제실시규정의 개정이 필수적임을 주장하고 있다.

선진국은 지적 재산권 보호가 기술개발 촉진기능을 수행하며, TRIPs 협정 내에 이미 기술이전에 관한 제반규정이 포함되어 있음을 들어 협정개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

고 있다. 유전자 변형 생물체(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의 특허 문제에 있어서는 윤리적, 종교적인 이유로 일부 국가들에 의해 TRIPs 협정에 의거하여 유전물질, 신종미생물 등에 특허가 부여되는 것에 이의가 제기되고 있다. TRIPs 규정과 생물다양성협약(CBD)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선진국은 CBD와 TRIPs 협정간에는 상충되는 점이 없음을 주장하나 개도국은 토착 및 전통지식의 TRIPs 협정에의 수용 등을 위해 TRIPs 협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 견지하고 있다.

무역환경위원회 논의에서는 적절한 지적 재산권의 보호가 기술혁신 및 이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생산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과 환경친화기술의 접근 및 이전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필수적이란 점에 회원국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기타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합의하고 있으며 CBD 협정과 CTE간의 추가 정보교환 작업을 촉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2.4 UN기구와 MEA 무역규제 확산

인간과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1972년 UN인간환경회의에서의 UN 인간환경선언을 필두로 지구환경의 감시와 조정을 담당하는 국제기구인 UN환경계획(UNEP)과 UN환경개발회의(UNCED) 등을 중심으로 본격화되었다. 이 가운데 환경과 경제 혹은 환경과 무역의 연계문제에 대한 구체성 있는 논의는 UN이 관여한 다양한 다자간 환경협약 등을 중심으로 90년대 초반 이후 활발히 전개되어 왔다. 이들 논의를 통해 환경과 무역의 관계는 상호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특성이 존재한다는 점이 강조되었고, 자유무역체제는 효율적 자원배분을 통해 생산과 소비를 증가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은 물론 환경보호에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며, 반대로 건전한 환경보전은 지속가능한 개발에 필요한 생산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국제무역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무역·환경의 상호지지적 연계가 국제사회 공동의 인식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유엔차원의 무역과 환경연계에 대한 논의는 주로 환경목적을 위한 무역조치의 사용에 대한 국제적 합의의 형성 및 무역과 환경 문제간 연계에 대한 기본방향 정립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해결은 UN산하기구들의 관리하에 고유의 독립적인 환경보호 목적을 위해 체결된 개별 다자간환경협약(MEA)의 무역규제관련 조항들로 구체화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19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채택된 Rio 선언 원칙 12조는 환경목적의 무역조치가 자의적이고 불공정한 차별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방주의를 회피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 같은 유엔차원의 환경과 무역연계 논의의 시발점을 제공하였다.

동 회의에서 이행계획으로 합의된 의제 21(Agenda 21)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목표에 합치되고 비교우위에 따라 지구차원에서의 생산의 적정배분을 유도하는 다자간 무역체

제는 모든 무역 당사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명기(제2조 제5항)하였고, 환경과 무역은 상호 지지적이어야 하고 다자적 무역체제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생산과 소득의 향상에 기여하고, 경제성장과 개선된 환경보호에 필요한 재원을 공급한다는 점과 건전한 환경은 지속가능한 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무역의 지속적인 활동에 기여하며 적절한 환경정책의 지지를 받는 다자간 무역체제는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제2조 제19항)하였다.

UN이 주요 논의대상으로 삼는 지구 환경문제는 선진국과 후진국이 관계된 남북문제일 뿐만 아니라 현세대의 번영과 후세대의 생존기반에 관한 세대간 형평성에 관한 문제이며 국제환경협약은 이 둘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제공한다.

국제환경규범의 주요한 법원을 구성하는 국제환경협약은 자유무역의 확대라는 공통의 목적을 위해 고안된 국제무역규범과 비교할 때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독립적 규범체계로 발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국제환경규범의 일반 원칙으로는 환경오염비용부담 책임에 관한 오염자부담원칙(Polluter Pays Principles)과 사전적인 환경오염 대응을 의미하는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그리고 최근 들어 주목을 받고 있는 지속가능성 원칙(Sustainability)를 들 수 있다.

지구환경 보호를 위하여 현재 발효 중인 주요 국제환경협약은 대기보전, 해양환경보전, 생물의 종 보전, 수질보전, 유해 및 독성폐기물 규제 및 천연자원보전 등에 걸쳐 약 240여 개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약 21개 협정이 무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규제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명시적 무역규제 규정을 가진 주요 환경협약으로는 멸종위기에 처한야생 동식물의국제무역을관한협정(CITES), 몬트리얼의정서(Montreal Protocol),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등이 거론 된다.

환경보호목적과 환경협약 상의 무역규제 조치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법적, 경제적, 정치 및 과학적 고려를 포함하는 다각적 과제로 등장한다. 일반적으로 특정조치의 도입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비용·편익 분석으로부터 과학적 요소나 입법 과정에 관한 구체적 평정을 포함하는 다양한 측정방법이 요구된다. 특히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자간 국제환경협약 및 환경규제조치의 영역은 해당 환경문제를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순수 환경정책 수단에 그치지 않고, 일반적으로 국제경제정책 수단의 일부로 알려져 있는 무역조치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국제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난다. 환경협약 내로 인입된 무역규제 규정들은 자체의 무역파급 효과뿐만 아니라 여타 환경규제 규정들과 결합하여 다자환경협약상의 환경보호 목적에 기여한다.

이와 같은 무역규제 조치는 제품의 생산, 거래, 소비에 이르는 전단계(life cycle)에 걸쳐 다양한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 2.5 국제표준화기구(ISO)와 환경라벨링 논의

ISO는 국가 표준화 단계(즉 국가 회원 기관)의 전세계적인 연합체이다. 국제규격을 준비하는 작업은 보통 ISO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에서 담당한다. 기술위원회가 다루는 주제에 관심있는 각 국가 회원기관은 기술위원회에 대해 그 나라를 대표할 권리를 갖는다. ISO와 연계하여 정부 및 비정부 국제조직 또한 그 작업에 참여한다. ISO는 전기 기술 규격과 관련된 모든 작업에 대하여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한다. 기술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국제규격안은 투표를 위하여 국가 회원기관에 배포된다. 국제규격안이 국제규격으로 발행되기 위해서는 투표에 참가한 회원국의 75%이상의 동의를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기업경쟁력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시험, 검사를 통하여 기업이 생산한 제품자체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방법과 제품 개발, 생산, 판매, 서비스와 관련된 기업 제반 경영체제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으며, ISO가 다루는 시스템 인증제도는 후자에 해당하는 방법으로서, 제3자가 기업의 경영체제가 관련 시스템 표준에 적합함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즉, 대부분의 ISO 표준이 특정한 제품, 원료 또는 공정에 대한 규정인데 반하여, ISO 9000(품질경영)/14000(환경경영) 등 시스템 표준은 경영체제에 관한 규정이며 기업의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분야에 적용 가능한 것이다.

이 가운데 환경과 무역연계논의와 관련이 있는 ISO 14000 시리즈에는 환경경영체제, 환경감사, 환경라벨링, 환경성과평가, 수명주기평가, 제품환경기준, 용어 및 정의별 국제규격제도가 포함된다. 1991년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공동대응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유엔환경개발위원회(UNCED)에서 ISO/IEC에 환경관리에 관한 국제표준 제정을 요청하였다. 1993년 ISO/IEC는 환경전략자문그룹(SAGE)을 설치하고, 동 그룹의 건의에 따라 ISO/TC207을 설립하여 1996년 ISO 14001 국제규격이 제정되고 각국에서 ISO 14000 인증제도가 시작되는 개기를 마련하였다.

ISO 14000 관련 표준은 현재 11종의 규격이 제정 완료되어 있으며, 주요 규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환경경영체제규격(EMS, ISO 14001, 14004)은 환경경영체제 인증을 위한 요건 및 지침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다음으로 환경심사규격(ISO 14010, 14011, 14012)에는 심사반 구성, 심사절차, 심사원의 자격요건 등 심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무역과 환경논의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환경라벨링규격(EL, ISO 14020, 14021)은 환경라벨링의 유형별 사용 방법 및 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환경경영체제 규격이 조직 경영체제의 환경성 평가규격인데 반하여, 환경라벨링 규격은 제품의 환경성을 평가하는 규격이다. 다음으로 환경성과평가규격(EPE, ISO 14031)은 조직체의 환경경영 노력의 결과를 객관적 지표에 의거 평가하는 기법을 정하고 있으며, 전과정평가 규격(LCA, ISO 14040, 14041)은 제품의 원료 채취로부터 제조, 유통, 소비, 폐기 및 재활용에 이르는 전과정 동안 소모되고 배출되는 에너지 및 물질의 양을 정량화

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기법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환경라벨링 인증을 위한 기술적 기반으로 사용된다. 용어 규격(ISO 14050은 ISO 14000 규격에 활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기타 규격으로 제품설계에서 환경측면 고려를 위한 지침 등이 있으며, 상기 각 분야에 대하여 10종의 규격이 추가 제정될 예정이다.

환경과 무역연계 논의에 있어서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설치된 환경기술위원회가 국가간 환경요건의 차이가 새로운 무역분쟁화 되지 않도록 각국의 환경관련 규격의 조화를 추진하고 있다. ISO 14000 시리즈는 각국가가 자동적으로 시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고사항이지만 사실상 소비 및 생산패턴에 영향을 주어 무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제품자체보다도 제품의 제조공정(PPMs)에 대한 전반적 평가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제품무관련 PPMs에 의한 무역제한조치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WTO 무역장벽협정(WTO/TBT)상 관련 규정과의 충돌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 3. DDA 환경의제

#### 3.1 환경의제 구성

환경과 무역 연계문제의 협상의제화에 대한 유럽연합의 강경한 지지입장과 G77그룹을 중심으로 한 대다수 개도국의 반대입장 사이에 균형추 역할을 하던 미국이 제4차 각료회의 종료시점을 앞두고 EU 입장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G77그룹과 EU 사이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선진국의 적극적인 대개도국 지원과 DDA 협상범위 내 환경의제 포함을 맞교환하는 데 대한 일정한 합의가 도출됨으로써, WTO 제3차 각료회의를 무산 시킨 환경·무역연계 이슈의 협상의제화 문제가 해결되었다.

표 2-5 도하개발아젠다 환경의제 구성

구 분	내 용
협상의제 (각료선언3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협약(MEAs)상 무역조치와 WTO무역규범의 관계</li> <li>○ 환경협약(MEAs)과 WTO의 정기적 정보교환 절차</li> <li>○ 환경상품 및 서비스 교역자유화에 대한 협상</li> </ul>
검토의제 (각료선언3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정책과 무역정책의 상호작용</li> <li>○ 무역관련지재권협정(TRIPs)의 환경측면</li> <li>○ 환경목적의 라벨링 요건에 대한 검토</li> </ul>

도하개발아젠다 상의 환경의제는 국제환경협약(MEAs)이 정한 무역규제조치와 WTO 자유무역규범간의 관계, 양체제의 정기적 정보교환 절차, 환경상품 및 서비스 교역자유화 확대, 환경정책과 무역정책의 상호작용에 대한 검토, 무역관련지재권협정(TRIPs) 및 환경목적의 라벨링 요건 검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료선언 제31조 1항에 정한 바와 같이 환경과 무역의 상호보완성을 제고하기 위해 협상결과에 대한 예단 없이 “WTO 기존 규범과 MEA가 정한 특정무역 관련 의무와의 관계”에 대한 즉시협상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동 협상의 범위는 WTO 당사국이면서 동시에 MEA 당사국인 회원국에 대한 기존 WTO 규범의 적용문제로 한정되고 있으며, MEA 비당사국인 WTO 회원국의 제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부가됨으로써 협상의 여지가 상당정도 축소된 인상을 남기고 있다.

각료선언 제31조 2항에 정한 협상의제인 “MEA사무국과 WTO위원회간 정기적 정보교환 및 읍저버 자격 절차” 문제 또한 국제환경규범과 자유무역규범간의 상호협력관계를 강화할 목적에서 제안된 것으로 개별 회원국의 특정한 이해 관계를 내포하고 있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 각료선언 제31조 3항에 언급된 “환경관련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세 및 비관

세 장벽의 감축 또는 철폐”는 환경상품 및 서비스의 국가간 이동을 촉진함으로써 여타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확대에 따른 환경오염의 심화를 비용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특히 환경산업을 수출전략 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관련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교역장벽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유용한 개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안이다. 물론 동 의제가 협상대상으로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환경서비스의 경우 이미 우르과이라운드 종결 당시의 합의에 따라 서비스부문의 추가적 시장개방에 관한 협상이 2000년 1월 이후 개시되어 진행 중에 있으며, 환경상품의 경우에는 비농산물 협상그룹에서 다뤄질 사안으로 환경상품 시장의 자유화에 대한 협상이 참가 회원국에게 별도의 추가적인 부담을 야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APEC에서의 조기자유화 논의 등을 통해서도 상당정도 시장개방 확대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이 고려되어 있다.

각료선언 제32조에 언급 환경관련 검토의제에 있어 무역환경위원회(CTE)는 현재 주어진 소관(mandate)내의 모든 의제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계속하되, 특히 “환경조치의 시장접근 효과와 무역규제 및 왜곡 철폐로 긍정적 무역·환경·개발효과가 발생하는 요건”,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상의 (환경관련) 특정조항”, “환경목적의 라벨링 요건”에 관련된 WTO 규범의 명확화 및 협상 필요성, 향후 작업계획 등을 오는 2003년 개최된 제5차 각료회의에 보고토록 하였다.

이들 검토의제 가운데 각료선언 제32조 3항에 정한 환경목적의 라벨링 요건은 그간 WTO 무역환경 논의에 있어서 GMO 상품에 대한 라벨링과 같은 환경 및 보건관련 라벨링의 시장접근 효과를 둘러싸고 환경선진국 그룹에 해당하는 EU와 개도국 중심의 G77그룹에 연대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비EU권 선진국간에 첨예한 의견대립이 노출되었던 의제로서, 당초 협상의제에 포함시키고자 했던 EU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검토의제로 포함된 것이다.

각료선언 제32조 2항에 포함된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상의 (환경관련) 특정조항에 관한 문제는 주로 생물다양성 혹은 생물유전자원 보유국의 자원주권 보호를 위한 지적재산권의 제한 및 지적재산권의 남용을 억제하고 국제적 기술이전의 촉진을 위한 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sing) 실시요건의 완화와 같은 지적재산권협정의 개정 논의에 집중되어 있으나, 당사국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는 의제이다.

각료선언 제32조는 동 조항에 다른 검토작업 및 제31조에 따른 협상 결과들이 다자 무역체제의 비차별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기존 WTO 협정이 정한 회원국의 권리·의무와 그 균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는 한편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의 필요를 감안해야 한다고 언급함으로써 환경의제에 관한 검토 협상결과가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WTO체제의 기본 취지에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를 바라는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 협상당사국 모두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과 같은 도하개발아젠다 환경협상 범위(mandate)는 OECD 환경무역합동작업반

과 WTO 무역환경위원회(CTE) 논의에서 확인된 의제별 각국 입장과 현실적 협상가능성을 고려하여 합의 가능한 최소수준으로 설정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하개발아젠다 환경협상은 국가의 지속발전 근간을 개방기조의 국제경쟁과 협력에서 찾아야하는 우리입장에서 볼 때 간단치 않은 환경·경제적 파급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 3.2 환경의제 논의동향

2002년 1월 이후 DDA 무역협상위원회(TNC)산하 각 협상기구에서 의제별 협상이 진행중이며, 환경서비스 시장개방협상은 서비스이사회 특별회의에서 既定 의제(Built in Agenda)로 2000년 1월부터 협상이 개시된 상태이다. 환경상품 무역의 자유화는 비농산물시장접근협상그룹에서 다뤄지며, 여타 협상 및 검토의제는 무역환경위원회(CTE) 협상회의에서 토의되고 있다.

DDA 협상의 중간평가 회의인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의 제5차 WTO 각료회의 실패로 현재 DDA 협상 전반에 대한 추진력이 약화된 상태에 있다. 싱가포르 의제 협상에 대한 선·후진국간의 이견이 각료회의 실패 원인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농업보조금 감축을 둘러싼 농산물 수출·입국간의 대립 또한 쟁점이 되었었다. 2004년 3월 까지 제네바 주재 각국 대표부를 중심으로 협상추진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환경관련 협상을 위해 WTO 무역환경위원회 특별회의가 2004년 4월 16일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의제별 쟁점 및 각국의 입장을 정리하면 환경협정이 정한 특정무역의무 조항의 WTO 무역규범 내 수용여부 및 수용방식에 대한 협상인 협상의제 1: MEA 무역규제조치와 WTO 규범의 관계에서는 WTO 규범개정을 포함하는 자동 수용방식을 지지하는 EU, 제한된 범위의 선별수용을 주장하는 개도국, GATT20조 일반예외규정을 활용한 현상유지안을 선호하는 미국 등 입장이 대립된 가운데 협상대상 환경협정 및 특정무역조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무역조치를 배제하며 무역과 환경의 상호 보완성 제고를 위해, 결과를 예단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공산품 수출에 대한 선진국의 환경보호를 이유로 한 부당한 수입규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sup>5)</sup>. 협상의제 2: MEA사무국과 WTO위원회간 정보교환절차 협상은 정보교환 활성화를 위한 절차적 문제로 특별한 쟁점없이 진행되고 있다.

환경상품 교역자유화를 논하는 협상의제 3-a의 경우 환경상품 범위 및 자유화 방식이 협상대상이며, 현재 환경상품 목록에 환경친화상품을 포함시킬지 여부가 쟁점이 된 가운데 미국, 일본, 스위스 등의 제안서를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산업의 보호·육성과 환경질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상품 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련 협상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5) 외교통상부: [www.wtodda.net/](http://www.wtodda.net/)우리정부입장 참조

협상의제 3-b: 환경서비스 시장개방 확대의 경우, 서비스 협상일정에 따라 개방요구서('02.6) 및 개방제안서('03.3)를 교환하고 지난 5월과 7월 미국, 일본, EC, 캐나다와 1·2차 양자협상 진행중이다. EU, 미국, 일본 등 13개국이 음용수처리, 폐수 및 폐기물 처리, 토양오염복원 부문 등에서 우리나라의 추가시장 개방을 요구하였고, 우리는 중국, 인도네시아 등 9개 아시아지역의 시장 미개방 국가에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UR 환경서비스 양허계획안에 기재된 대부분의 제한사항을 철폐한 1차 양허제안서를 제출하였다. 2004년 현재 WTO 제5차 각료회의 실패로 2003년 10월 및 12월 실시된 3·4차 협상에서 실질적인 양자협상이 진행되지 않았다.

검토의제 논의동향과 관련 하여 환경조치의 시장접근에 대한 효과 및 무역, 환경, 개발에 대한 무역 규제·왜곡조치의 영향에 대한 환경유해보조금 감축, 생물다양성 협정과 TRIPs(지적재산권) 협정과의 관계 명확화, 환경라벨링과 기술적 무역장벽 해소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나, 여타 DDA 협상기구와 중복논의 우려로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WTO 제5차 각료회의시 이들 의제에 대한 협상개시 주장(EU)에 대한 반대 입장이 우세하였으며, 현재 동 의제에 대한 협상전망은 불투명한 상태였다. 그러나 2004년도 제 1차 무역환경위원회(CTE) 정례 및 협상회의<sup>6)</sup> 논의결과, 미국과 EC의 제안서 및 중국의 제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DDA 환경협상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6) 2004년 4월 19~20일, 스위스 제네바

# 제 3 장 DDA 환경협상의제 논의 및 대응전략

## 1. 협상의제 1: WTO와 MEAs의 관계

### 1.1 각료선언 31조 1항

협상의제 제1항은 다자간환경협약(MEAs)상 특정무역의무(STO)와 WTO규범의 합치 문제로 각료선언 31조 1항에서는 환경과 무역의 상호보완성을 제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

표 3-1 Para 31(i) WTO 규칙과 MEA 특정 무역의무간의 관계

#### << Paragraph 31(i) >>

무역과 환경의 상호 보완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각각의 결과를 손상시키지 않으며 다음의 협상안에 동의한다.

(i) WTO 기존 규칙(existing WTO rules)과 MEA 특정 무역의무(specific trade obligations set out in MEAs)와의 관계. 협상안은 MEA 당사국에 대해 WTO 기존 규정 적용(applicability of such existing WTO rules) 범위에서 제한된다. 협상안은 MEA 비당사국(Member that is not a party to the MEA in question)의 WTO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1.2 주요국 입장

#### EC<sup>7)</sup>

EC는 다자간 환경협약(MEA)의 경우 최소한 3개국 이상이 참여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협정을 의미하며 관련 지역협정을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또한 WTO

7) (TN/TE/W/1), 본 보고서에서는 'EC' 와 'EU' 가 혼용되고 있다. EC는 EU의 대표기구로써, 국제협상 및 회의의 공식문서에서 통용되고 있으며, EU는 회원국을 포함하는 지역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도 이러한 의미를 두고 함께 사용되고 있음을 밝혀며, 특정 제안서가 아닌 본문상의 혼용은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규범 범위 내에서 MEA를 정의한다고 하여 WTO가 MEA를 일반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으며, 이를 위해 UN이나 UNEP와 같은 소속기관, 또는 WTO 전 회원이 참여하는 협상에 의한 동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세계 환경 문제는 다자적 접근과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MEA가 중요하며 환경 정책은 WTO가 아닌 각국의 전문기술과 mandate에 따른 다자 환경 포럼에 근거해야 함을 강조하며 MEA와 WTO는 국제법상으로 동등한 기구임을 주장하였다.

EC가 분류한 특정무역의무 범위는 총 4가지로 첫째, MEA에 명백히 규정된 의무적인 무역조치, 둘째, MEA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비 의무적인 무역조치, 셋째, MEA에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당사국이 이에 응하기 위해 이행을 결정할 수 있는 무역조치, 끝으로 MEA에 의해 요구되지 않지만 당사국이 국제법에 따라 MEA상의 일반규정에 의해 이행을 결정할 수 있는 무역조치 등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이러한 특정무역의무는 WTO에 자동적으로 합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을 제안하였다.

당사국간 문제와 관련하여 당사국은 MEA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문제 해결노력을 해야하고 WTO 회원은 WTO와 MEA 관계 원리에 동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비 당사국을 포함한 WTO 규정 해석 논쟁에 있어서도 MEA규정은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 스위스<sup>8)</sup>

스위스는 EC가 제시한 특정무역의무상의 카테고리 정의 및 특정 무역 의무가 WTO 기존 규범에 위배되지 않는 조건 규정의 필요성을 제안하였고, 당사국간 관련 문제에 있어서는 당사국이 MEA 기본 구조, 부록에 서명한 국가만 포함되는지 여부<sup>9)</sup>, 그리고 부록의 특정 조항에 서명하지 않은 국가와의 협상시 WTO 규정적용 여부 등에 대한 정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WTO 규범과 MEA 특정무역의무간의 관계에 있어서 상호 우선적 권한<sup>10)</sup> 내에서 대등하고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고, 다른 규정에 영향을 주는 조치는 그로 인한 타규범에 대한 영향과 이익 그리고 권한, 존중을 고려하여 채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WTO 규범과 MEA의 특정무역의무간 관계조정 관해서 제안한 사항은 다음 표 3-2로 요약될 수 있다.

---

8) (TN/TE/W/1)

9) 즉, 부록에 미서명한 국가와의 협상을 '당사국간' 이라 할지 또는 '당사국-미당사국간' 이라 할지에 대한 결정.

10) 특정무역조치의 정당성에 관한 결정은 WTO권한이고 환경조치의 적법성과 MEA내 무역조치의 필요성은 MEA 권한임.

표 3-2 WTO 규범과 MEA STO

조정방법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b>분쟁조정기구</b> (DISPUTE SETTLEMENT MECHANIS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사건을 Panel이나 Appellate Body와 같은 분쟁조정기구에 따라 해결(Appellate Body의 Shrimp-Turtle사건 해결 예)</li> <li>▪ Shrimp-Turtle사건이 위 관계를 다루는 것이 아니며 Appellate Body의 경우 WTO 회원간의 특정사건을 해결할 뿐 위 관계에 관한 일반적인 규범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환경조항</b> (REFERENCE TO THE ENVIRONME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 관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환경조항을 채택(GATT 1994 부록 XX 재검토)</li> <li>▪ 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나 부록의 재검토는 논쟁을 다시 일으킬 것이라 보며 이에 WTO 회원들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견해</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해석양해</b> (INTERPRETATIVE DECIS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TO 회원에 의한 해석양해</li> <li>▪ 위 관계는 WTO 회원이 직접 해결해야 하는 본질적 사안이며 해석양해가 회원국들의 지위(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회원들의 환경 고려 책임을 강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지지함</li> </ul>

**일본11)**

일본은 MEA정의와 관련하여 MEA는 협정의 환경 목적을 공유하는 모든 국가에 열려 있고, 서명 또는 채택되었으나 미 발효 중인 MEA 조항도 포함시킬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특정무역의무에 대해서도 EU와 같이 4가지 분류를 제안하였으나 그 내용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첫째로 분류된 MEA에 명백히 규정되고 필수적인 무역조치는 EU항목의 첫 번째 분류와 동일하고, 두 번째로 MEA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결과의무”와 당사국의 의무 이행을 위한 잠재적 방법으로서 무역 조치로써 MEA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비 의무적인 무역조치로 분류한 EU와 상이함을 나타냈다. 세 번째는 MEA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MEA에 열거된 “결과의무” 이행을 위한 무역 조치이고, 끝으로 MEA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당사국이 MEA의 기본 틀 내에서 적절한 결정에 의해 취할 수 있는 무역 조치로 분류하였다.

일본은 WTO 규범과 MEA 특정무역의무 일치성에 대해 특정무역의무(STO) 1과 관련하여 MEA 당사국간의 WTO 규정에 일치한다고 간주하였고, STO 2의 “결과의무”와 관련해서는 무역 조치가 환경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그 범위와 정도가 MEA

11) (TN/TE/W/10)

목적에 비례할 때 WTO 규정에 일치한다고 간주하였다. STO 3, 4의 경우 MEA 범위를 벗어난다고 간주하고 사례별로 검토해야 하며 한 당사국이 이 조치를 취할 경우 영향을 받는 당사국들 간의 협의에 따라야 함을 주장하였다. 결과적으로 STO와 WTO 규정조정을 위해 구속적 해석양해 채택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증진시키고 특정조치의 MEA타당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노르웨이<sup>12)</sup>**

노르웨이는 회원국들이 제기한 해석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스위스의 의견에 동의하며 특정무역의무(STO) 기준에 대해 다음 표 3-5의 3가지 사항을 제시하였다.

**표 3-3 노르웨이 특정무역의무 기준 제안**

분류	내용
① 특정성(specificity)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정을 통해 어떠한 조치를 시행할 것인지가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하며, 특정한 단일 조치 뿐 아니라 기타 대안적인 조치 제공도 해당</li> </ul>
② 무역연관성(trade related)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입될 조치는 반드시 수입이나 수출과 연관되어야 함</li> </ul>
③ 의무성(obligation)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정상의 모든 의무규정 및 여러 조항들이 함께 특정한 무역의무를 규정하는 경우도 포함</li> </ul>

노르웨이는 어떤 조항이 STO에 해당하는가에 관한 회원국간 합의 도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따라 특정무역의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중요하고 도하 mandate에서 MEA와 WTO 규범간의 관계에 대한 협상이 회원국이 WTO 규정위반에 대해 패널에 제소할 권리를 제한하지 않으며, 동 협상이 MEA의 조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MEA와 WTO 규정간의 갈등 방지가 주된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임을 제안하였다.

**아르헨티나<sup>13)</sup>**

아르헨티나는 WTO 기존 규범은 현재 발효한 협상만을 포함하는 것이며, MEA란 UN이나 UNEP과 같은 국제기관의 후원하에 2개국 이상의 협약으로 한정되며, 미발효 협약은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또한 STO란 "의무(obligations)"를 수반하는 다자간환경협약규정을 포함하되, MEA상 비강제적, 비무역적, 비특정적 의무사항은 제외된다고 주장하였다.

12) (TN/TE/W/25)

13) (TN/TE/W/2)

STO와 WTO 규범간 관계설정 기준으로 한 사안에 다수 규정을 적용할 경우, 국제법 관행상 “기준”이 참고로 활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용어 기준을 제안하였다.

표 3-4 STO와 WTO 규범간 관계설정 기준(아르헨티나)

기준 용어	내용
보완 (complementar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동시에 적용 가능한 경우</li> </ul>
예외적 적용 (express derog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 협약의 적용이 다른 협약에는 예외사항이 되는 경우</li> </ul>
충돌 (confli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두 협약상의 의무가 상호 배타적인 경우</li> </ul>

또한 MEA 비당사국의 WTO권리 불가침 및 당사국과 비당사국간 WTO 원리와 불일치하는 STO 채택시 당사국의 경우 그 권리를 제한받게 됨을 주장하였다.

호주14)

호주는 협상의제1인 WTO와 MEA상 특정 무역의무 관계규정을 위한 협상 절차로 다음과 같은 3단계작업을 제안하였다.

표 3-5 WTO 와 MEA STO 간 관계규정 협상(호주제안)

단계	내용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EA 상의 STO 및 관련 WTO 규정 규명</li> </ul>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TO와 WTO 규정간 실제적인 이행상의 문제 규명</li> </ul>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기 결과를 토대로 협상결과 도출</li> </ul>

대만15)

대만은 MEA 당사국이 아니더라도 WTO 회원일 수 있으므로 MEA는 비당사국에도 공식적인 참여가 개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당사국의 WTO 기존 규범의 적용범위 내에서 협상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MEA상 특정무역조치가 자동적으로 WTO 규범에

14) (TN/TE/W/7)

15) (TN/TE/W/11)

합치될 수 없으며, 특정무역조치의 WTO 합치여부에 관한 원칙, 조건 등을 규정하는 해석결정 또는 양해를 협상결과물로 희망하고 WTO 회원국 중 MEA 회원국 및 비회원국 간 분쟁발생시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서 해결하기를 제안하였다. 또한 당사국과 비 당사국의 분쟁해결은 WTO 패널에 의해서만 해결해야 한다며 비 당사국의 WTO 권리 불가침에 대해 주장하였다.

**미국16)**

미국은 아래 표 3-8과 같이 특정무역의무(STO)의 규정조건을 제시하였다.

**표 3-6 미국의 STO 규정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EA에서 협약국들에게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조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EA상에서 규정되는 조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약국들이 서로 준수하기로 합의한 무역의무</li> </ul>

CTE 특별회의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본 협상에서 도출되는 결과들이 WTO 규칙과 MEA 간의 상호지지성과 통합성의 유지라는 목적과 부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MEA와 WTO 정책결정자 및 협상가들의 각국의 내부적인 조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MEA상의 특정무역의무의 구분은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무역의무로써 각각 수출국, 수입국 그리고 전 지구적 입장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수입국의 환경보호를 위한 수출국의 의무로써 수출국의 활동에 대한 통지, 수출대상물에 대한 통지, 수입국에서 원치않을 경우 수출제한조치, 수입국이 수출품의 적절한 관리 능력을 결여할 경우 수출제한조치, 그리고 모든 수출 제한 등을 제안하였다.

협정상 역할에 따른 무역의무로는 무역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핵심의무 및 보조의무와 수입 또는 수출 제한에 대한 추가적 측면을 제기하는 의무로 분류하였다. 또한 해당국의 개별 결정과 무관한 무역의무 및 해당국의 수출입을 제한하는 의무, 무역의무의 범위를 수정하는 절차를 명시하는 의무사항 등을 제안하였다.

도하 Mandate하 특정무역의무의 실례에 대해 논의의 대상이 되는 MEA의 범위와 관련 미국은 미발효 MEA의 포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MEA”, "의무(obligation)", "무역"과 같은 개념정의에 관한 논의는 불필요하다며 WT/CTE/160/Rev.1 상의 MEA 중 CITES, 몬트리올 의정서, 바젤협약, 로테르담협약, 스톡홀름 협약 및 카르타헤나 의정서와 같은 6개의 MEA의 경우 특정무역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미국은 CTE 특별회의의 진행사항에 대해 만족을 표명하고, 다음 단계인 후속조치로써 MEA와 WTO 규정간의 관계에 대한 실제적 자료 수집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1)

16) (TN/TE/W/20)

다른 회원국들도 미국이 제시한 WT/CTE/160/Rev.1상의 STO 사례를 규명하고, 2) 다른 회원국이 제기한 다른 조항에 대한 논의를 진전하는 한편 STO로 합의를 본 조항에 중점을 두며, 3) WTO 규정하의 이러한 특정무역의무들의 협상 및 논의에 대한 각 국의 경험 공유를 제안하였다.

#### 캐나다<sup>17)</sup>

캐나다는 다른 회원국들의 6개 MEA (CITES, 몬트리올 의정서, 바젤협약, 로테르담 협약, 스톡홀름 협약 및 카르타헤나 의정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자는 의견에 동의하며 MEA상 특정무역의무의 개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안하였다.

- 상기의 6개 MEA의 무역관련 조항이 규정하는 의무는 특정조항이나 여러 조항들의 조합을 통해 명시되며 이중 몇몇 조항들은 특정 무역조치의 이행 방식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 STO와 관련하여 회원국들은 1) 단일 조항이 아닌 여러 조항이 특정무역의무를 규정할 때 이를 STO의 일부로 취급해야 하는가, 2) MEA 조약국들의 결정을 STO 관련 논의에 포함할 것인가, 3) "MEA의 개정사항도 포괄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 또한 어떤 조항을 STO로 규정할 것인가 하는 논의와 관련, 전통적인 무역법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을 STO로 보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나 일괄적인 접근방식의 도입보다 각각의 MEA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몇몇 MEA의 조항들은 임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STO의 구체적인 분석 및 개념정의를 어렵게 하는 요소이다.
- MEA상 STO의 구체적 분석 및 개념 정의를 어렵게 하는 요소로는 1) MEA 조항들이 임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부분 2) 각각의 MEA 규정의 다양성 등이 있다.
- 회원국들은 상당한 자유재량을 허용하는 MEA 조항과 재해석의 여지를 주지 않는 WTO 규정들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인도<sup>18)</sup>

인도는 제안서를 통해 1) MEA의 유형과 2) 특정무역의무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는 한편 "무역조치표"를 제출하였다.

MEA의 자격요건으로는 UN 또는 UNEP와 같은 전문화된 국제기구의 후원을 받는 협약이어야 하며, 논의 절차에 모든 회원국 참여를 허용하는 협약이며, 서로 상이한 지역 및 경제, 사회 발전단계에 있는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협약, 후발 협정국의 참여

---

17) (TN/TE/W/22)

18) (TN/TE/W/23)

에 개방적이고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협약 등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일본측이 제시한 관련 주요국의 이해를 반영해야한다는 MEA 자격요건은 현재의 논의에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정무역의무(STOs)에 대해서는 STOs의 정의 관련 구체성, 무역적 요소 및 강제성 (obligation)의 세가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취하며 MEA가 포괄하는 무역 관련 조치는 다음의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 구체적으로 규정된 강제적 무역조치
- 최종 목표와 이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의 목록을 규정한 무역조치
- 최종 목표만 규정한 무역조치
- 당사국의 의무가 아닌 권리의 형태로 규정된 무역조치

또한 인도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조항(non-specific provision)은 STO로 규정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

#### 홍콩<sup>19)</sup>

홍콩은 MEA상 특정무역의무(STO) 논의사항에 대해 해당 조항 상의 개념정의에 대한 논의는 무의미하며, 미국과 입장을 같이하여 STOs의 구체적인 사례를 규명하고 이들 STOs의 이행과 협상에 대한 경험을 공유할 것을 지지하였다.

사무국 매트릭스(Secretariat Matrix)에서 규정한 MEAs 및 각각의 특정무역의무를 개별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하며, 이러한 제안의 근거로서 1) 사무국 매트릭스를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MEA들을 검토할 수 있으며, 2) 회원국들의 STO 이행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3) 관련 MEA 사무국을 끌어들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MEA들을 무역과 환경위원회 특별회의(CTESS)에 초청하자는 의장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MEA 검토 순서관련, 홍콩은 CITES, 몬트리올 의정서, 바젤협약의 세 가지 MEA의 우선적 검토를 제안하였고, 일부 회원국들은 서로 연관된 MEA의 STO를 함께 논의하는 수평적 접근방식(horizontal approach)을 선호하나 홍콩의 입장에선 상이한 MEA간 공통적 기준을 추출하기 어려우며 각국의 상이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따라서 개별 MEA를 순차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식임을 주장하였다.

#### 말레이시아<sup>20)</sup>

말레이시아는 도하 Mandate와 관련, 협상의제 1번은 WTO 규정과 MEA 특정무역의

---

19) (TN/TE/W/24)

20) (TN/TE/W/29)

무 간의 관계에 대한 협상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의 논의는 MEA의 정의, 대상 MEA의 범위 및 MEA에서 상 STO에 맞추어 진행되어 왔음을 강조하면서 각료선언 para 31(i)의 MEA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 UN의 후원하에 논의된 협약
- 협정이 모든 지역의 다양한 개도국 및 선진국의 적극적인 참여에 개방된 협약
- UN/WTO의 다양한 회원국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협약
- 환경보호라는 협약의 목적을 통해 그 환경적 특성이 규정되는 협약
- 비준된 협약의 성격을 가지며 협약의 조항들이 실제적 효력을 가지는 협약

따라서 제8항에서 기술된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지역 MEA들은 31(i)항 관련 논의의 대상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특정무역의무(STO)에 대해 말레이시아는 도하 Mandate상의 “구체적”, “강제성”, “무역”이라는 용어를 참고할 때 특정무역의무는 무역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효력을 가지는 사전적으로 특정한 행위나 규제조치를 명시하는 MEA 조항으로 정의하여, 강제적이고 구체적인 무역의무를 상술하는 STO에 논의를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또한 STO를 포함하는 MEA 당사자 총회의 결의나 권고의 효력과 관련하여 MEA에서 규정하지 않는 결정이나 결의는 협상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 사우디아라비아<sup>21)</sup>

사우디아라비아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논의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며, 현재 OECD 다수 국가는 높은 석유세를 부과하면서도 환경오염유발연료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에너지 정책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해 개발도상국가의 GDP성장 감소, 부의 불평등한 분배, 무역장벽의 형성, 세계무역에서 개도국의 역할 감소 등의 부작용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선진국들의 에너지 정책 개편과 에너지 정책의 논의가 협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 1.3 대응전략 검토

#### 1.3.1 주요 환경협약상의 무역규제 조항에 대한 평가

다자환경협약이 환경목적을 위해 취하는 무역관련 조치는 특정 제품이나 물질의 수

---

21) (TN/TE/W/7)

출입을 금지하는 직접적인 무역규제 조항으로부터 수출입허가, 사전통고 및 승인제도 (PIC)와 같은 특정 제품이나 물질의 수출입 절차규정, 그리고 포장재질에 대한 규제, 환경라벨링 요건처럼 무역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해당규정의 적용범위에 있어서도 협정당사국만을 대상으로 한 규정과 당사국 이외의 국가들에까지 파급효과가 미치는 규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현재 논의 중인 주요 다자환경협상의 개요와 관련 무역규제조항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sup>22)</sup>.

### CITES 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은 과도한 개발로 인한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감소, 야생 동식물 남획 및 남획된 동식물의 국제거래 등에 기인한 멸종 가능성 배제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CITES협정은 야생 동식물 국제거래가 종의 존속에 위협을 주지 않도록 법적 구속력을 행사하며, 특히 야생 동식물 상품수요가 종의 존속에 우려되는 정도의 과다 포획을 유발할 시에 이를 제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963년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의 “희귀 또는 위기종에 대한 수출경유, 수입의 규제에 대한 국제협약”의 필요성에 관한 결의의 채택, 1972년 UN 인간환경회의 협약채택을 위한 회의 개최 결정에 이어 1973년 3월에 협약이 채택되어 1975년 7월에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1993년 7월에 협약가입, 1993년 10월부터 발효되어 있다.

CITES협정은 부속서에 정한 특정 야생 동식물 및 종에 대하여 수출입 허가제도를 통하여 협약에 규정된 목적을 벗어난 국제거래를 규제하며 비당사국과의 거래는 협약조건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CITES협약상의 무역조치는 협약상의 거래규제, 비당사국과의 거래규제, 협약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로 크게 3가지이다. 그러나 동 협약은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만을 규제하고 있으므로 국내거래에 대한 규제는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가진다.

### Montreal 의정서

“몬트리얼의정서(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는 1974년 인공화학물질인 프레온 가스와 할론이 대기에 방출되는 경우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성층권에 이르러 오존층을 파괴한다는 과학적 입증에 근거한다. 1985년 3월에 채택, 1988년 9월에 발효되어 오존층 파괴에 대한 국제적 협력과 연구를 공식화하고 오존층 보호를 위한 개별규정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한 “비엔나협약”의 후속조치이며, 1987년 9월에 채택되어 1989년 1월에 발효되었다.

비엔나협약에 따라 과학적 평가에 기초하여 오존파괴물질(ODS: Ozone Depleting

22) 상세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통상분쟁 및 도하라운드 WTO-MEAs 관계정립논의 대응방안 연구’ 2002 환경부, pp.27-42 참조

Substances)의 생산과 소비의 감축 및 전폐를 목적으로 하는 세분화된 국제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의정서상의 무역조치는 비당사국과의 수입 및 수출 금지, 규제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수입 금지를 부과하고 있으며, 의무 불이행국에 적용되는 기사용, 재활용, 재생품의 수출금지, 회원국간 교역을 위한 허가제, 기능상 ODS를 필요로 하는 제품의 회원국간 교역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다.

### **Basel 협약**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바젤협약의 근원은 1980년대 초부터 구미 선진국의 일부 업체들이 자국의 엄격한 환경기준 저축을 피하기 위해 아프리카 등 개도국에 유해폐기물을 위장 수출하여 방치함으로써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데서 비롯되었다. UNEP는 이러한 현실에 주목하여 인간의 건강 및 환경에 피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국제규범 채택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정부간 회의를 거쳐 1989년 3월에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 체결된 것이다. 동 협약은 1992년 5월에 발효되었으며 한국은 1994년 가입하였다.

유해폐기물의 생산 및 국가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폐기물의 이동시 발생 가능한 사고 예방을 위하여 그 교역 및 이동절차를 통제하는 규정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유해폐기물 처리 및 관리능력이 없는 개도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진국으로부터 개도국으로의 유해폐기물 이동이 금지되며, 선진국은 해당 폐기물이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법으로 처리되도록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유해폐기물 수출입에 있어서 폐기물 수입금지국은 수입금지폐기물의 목록을 다른 당사국에게 통보해야하며, 사전통보승인절차(Prior Informed Consent, PIC)에 따라 수입국이 금지를 선언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출은 수입국의 서면동의를 허가요건으로 하고, 수입국(또는 경유국)은 수출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입각하여 유해폐기물을 자국 내로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 결정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회원국은 폐기물의 불법거래를 범죄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법적, 행정적 처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생물다양성 협약(CBD)과 생명공학 안전성의정서**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은 1987년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건의에 따라 UNEP가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국제적 행동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한 이래, 1992년 리우 UN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한국을 포함하여 158개국이 여기에 서명함으로써 성립되었다. 지구상의 생물종 감소는 인구증가, 상업적 목적의 자원 남용, 외래종 도입, 야생동식물의 남획, 각종 개발 및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자연 서식지의 변화와 파괴에 대하여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채택되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열대림을 보유하고 있는 개도국에서 경제개발을 이유로 다량의 산림을 훼손하기 시작하면서

생물종의 멸종속도가 가속화되고, 향후 20-30년 내에 지구 전체 생물 종의 약 1/4이 멸종될 수 있다는 예측에 근거한다.

동 협약은 생물자원에 대한 국가의 재산권을 인정하여 생물자원의 국제교역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에 따른 안전성 보장을 목적으로 채택된 부속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Bio-safety Protocol)”의 채택을 통해 과학적 정보 및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과학적인 확신이 없는 경우에도 수입국은 그 잠재적 악영향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에 대하여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기후변화에 관한 UN 기본협약과 교토의정서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도 리우회의를 계기로 채택된 국제환경협약의 하나이다. 에너지 소비의 증가에 따라 온실가스의 배출이 급증하게 되면서 지구대류권의 연평균 기온이 상승하게 되는 지구온난화현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의 결과이며, 기후체계가 위험한 인위적 간섭을 받지 않는 수준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감축시키는 것을 구체 목표로 한다. 협약체제는 기본협약(UNFCCC)과 부속의정서인 교토의정서로 구성되며,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배출억제를 위한 각 국의 의무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모든 협약 당사국에 대한 일반 의무사항과 부속서 I, II 등재 선진국에 대한 특정 의무사항을 구분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은 근본적으로 환경문제를 다루는 것이나, 온실가스 배출이 경제활동 특히 철강, 화학, 시멘트등 에너지 사용에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최근 국제 환경통상 현안의 선두에 있다.

직접적인 무역규제 조항은 없으나, 저감목표 달성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품 및 생산 공정 등에 강화된 에너지효율기준을 적용하여 기준미달제품에 대한 직접적 수출입 규제가 가능하다. 화석연료의 사용에 대한 에너지세, 탄소세의 도입 등도 연료 효율적 생산 과정의 도입 촉진과 기후변화 관련 비용의 내부화를 통해 국가 간 무역에 있어서 경쟁적 지위변화를 가져와 간접적 무역규제효과를 야기한다.

### 1.3.2 MEA 상의 STO 관련 논의동향에 대한 평가

현재까지의 논의 동향을 종합하면 협상의제 1에 대한 회원국의 입장은 크게 WTO 자유무역규범체계에 합치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다자환경협약 상의 특정무역의무에 대한 개념적인 정의를 바탕으로 해당 정의 기준을 충족하는 MEA 무역규제 조항들에 대해 WTO 합치성을 자동으로 인정하는 연역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개념적인 접근법(conceptual approach)과 WTO 합치성을 전제로 한 개념정의 없이 현존하는 MEA상의 개별 무역규제조항을 대상으로 이들이 특정무역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나가는 귀납적 접근법을 취하는 실질적 접근법(pragmatic approach)로 나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개념적 접근법을 지지하는 국가들로는 EC를 필두로 스위스, 일본, 노르웨이를 들 수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아르헨티나, 호주, 대만, 미국, 캐나다, 인도, 홍콩, 말레이시아 등이 실질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sup>23)</sup>.

개념적 접근법은 WTO 자유무역규범과 MEA상의 무역규제조항 간의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잇점은 있으나, MEA상의 무역규제조항에 대한 각국의 적절한 대응여지 또는 WTO 상의 자유무역 수혜권리에 대한 일정한 사전적 제약을 의미한다. 이에 반하여 실질적인 접근법은 협상대상이 될 다자간환경협정은 물론 동 MEA 상의 무역규제조항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어 협상 참가회원국의 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적절한 여지를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 접근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초기 합의형성이 어려운 개념적 접근법 대신 실질적인 접근법을 선호하는 가운데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sup>24)</sup>는 협상대상 MEAs의 범위에 대해서 기존 MEA와 향후 발효 예정인 MEA는 포함시키지만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역수준의 환경협정은 협상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DDA 각료선언문은 STO의 명확한 정의와 범주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문제되고 있는 MEA 내 특정무역의무 규명작업에 있어서도 자의적인 무역조치를 행할 수 없도록 “이행방안이 명백하게 규정된 의무적 무역조치”만을 STO로 인정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특정무역의무(specific trade obligations)의 개념적 정의에 대해 문구 각각의 사전적 의미에 기초하여 STO를 확인할 것을 제안하고<sup>25)</sup>, 이를 기준으로 하여 사무국 배경문서에 예시된 MEA를 대상으로 한 STO 확인작업을 실시하며 MEA상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구체적인 조치가 당사국 회의(COP) 결정에 위임된 STO에 대하여 결과를 예단하지 않으며, 추가검토가 필요할 것이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 1.3.3 STO 범주별 협상입장 제안

현 단계에서 WTO와 MEA 상의 STO에 대한 이번 협상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우리나라는 앞서 언급한 기존 입장을 향후 전개될 협상 과정에서도 유효한 대응전략의 하나로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기존 입장제시에서 나아가 보다 구체화된 협상대응 입장 정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범주의 STO 각각에 대해 차별적인 대응입장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입장은 우리나라가 기존 CTE 정례회의에서 취한 “무역조치의 구분에 기한 해결방안”의 연장선상에

23) 협상 이전 CTE 논의과정에서의 WTO와 MEA의 관계정립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은 “환경통상분쟁 및 도하라운드 WTO-MEAs 관계정립논의 대응방안 연구”, 환경부, 2002 pp.52-73

24) 우리나라제안서(TN/TE/W/13)

25) “obligation”의 정의로 당사국이 협정을 지키도록 구속하여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강제와 처벌이 가능한 것에 한정, “specific” 개념에 대하여 정확하고 명백한 규정을 요구하며 달성되어야 할 결과와 그를 위한 수단으로 당사국의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 것에 한정, “trade”는 국제교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서 검토될 수 있다.

먼저 STO규명 논의의 기초가 되고 있는 EC의 주장에 따를 때 MEA 상의 특정무역의무를 다음 네 가지 범주로 구별되며 이들 각각에 대한 협상대응 입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먼저 EC 제안 특정무역의무의 첫 번째 범주로 협상 범위가 좁혀지는 경우이다. EC 제안 특정무역의무의 첫 번째 범주는 명백히 규정된 의무적인 무역조치 즉 해당 환경협약에 무역규제 조치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또 당사국이 이 무역조치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STO-1)<sup>26)</sup>.

이러한 무역규제조항으로는 CITES 3~6조(부속서 I~III에 포함되어 있는 종의 표본 무역 제한): 멸종 위기에 있으며 무역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거나 받을 수 가능성이 있는 동식물(species)(부속서 I 규정)의 국제거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가 등, 바젤협약 4.1조(유해폐기물의 수입금지, 통보, 수출금지): "Parties shall prohibit or shall not permit the export of hazardous wastes and other wastes to the Parties which have prohibited the import of such wastes, when notified pursuant to subparagraph (a) above," 6~9조, 및 13조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환경친화적 폐기 또는 살충제와 같은 특정 사용/목적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일부 POPs의 수출입을 금지,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 :살아있는 변형된 유기체의 첫 번째 선적시 사전 통보된 동의절차 의무화 등이 있다<sup>27)</sup>.

대부분의 협상참가국들이 이러한 무역규제 조항을 특정무역의무로 보는데 찬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특정무역의무가 다자환경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WTO 차원의 별도 검토절차 없이 해당 STO의 WTO 합치성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나 협상차원의 회원국간 합의절차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EC 제안 특정무역의무의 첫 번째 범주 이외까지 협상이 확대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대응입장을 설정할 수 있다. 먼저 두 번째 범주(STO-2)는 MEA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비 의무적인 무역조치로, 해당 환경협약에 무역조치를 취할 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무역조치가 환경협약이 정한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및 조치의 하나로 예시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무역규제조항으로는 CITES 8조 1항, 교토의정서 2조 1항: "Each Party ..., shall: implement and/or further elaborate policies and measures in accordance with its national circumstances, such as: ... (i)...(v) ... fiscal incentives, tax and duty exemptions and subsidies..."이 있다.

당사국이 이러한 다양한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적으로 실행하여 협정이 정한

26) 환경통상분쟁 및 도하라운드 WTO-MEAs 관계정립논의 대응방안 연구“, 환경부, 2002 참조

27) “환경관련 국제무역규제가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례 분석 및 전략 조사-국제환경 협약 및 선진국의 환경관련 무역 규제를 중심으로-“, 외교통상부 2004, 참조

환경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해당 무역조치에는 “MEA상의 결과의무(obligation de resultat)가 수반되어 있다고 주장된다.[결과의무와 구별되는 법적개념으로 ”행위의무(obligation de comportement)가 있으며, 이는 일정한 결과를 이루는 수단 내지 행위까지도 법규정에 정해진 의무를 가리킴]-각주처리결과의무를 수반하는 무역조치는 그 결과에 있어 첫 번째 범주에 정한 무역조치와 같은 효과는 있으나, 법적으로 해당 MEA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또 결과의무가 국제법상 확립된 것인지도 불확실하다는 관점에서 협상대상 STO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협상의제 1의 궁극적인 목적이 WTO 자유무역규범과 일정한 긴장관계를 야기하고 있는 MEA상의 무역조치에 대하여 WTO 차원의 수용방안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일정한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양 국제규범간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자유무역의 확대와 환경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란 점에서 이를 두 번째 범주에 해당하는 STO에 대한 가능한 협상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비록 두 번째 범주의 무역조치에 대해서는 첫 번째 범주의 STO에 인정될 수 있는 사전적인 WTO 합치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보다 적극적인 WTO규범 내 수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환경협약이 예시한 정책 및 조치 가운데 두 번째 범주의 STO를 당사국이 취한 경우에 대하여 WTO 차원의 합치성 검토절차를 거쳐 이를 WTO 규범체계 내에 수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해당 무역조치의 WTO 합치성 검토기준으로는 필요성, 효과성, 비례성 및 최소무역제한성과 같은 GATT 20조 전문 상의 일반적 예외인정(waiver) 요건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동 무역조치를 취한 당사국은 이 같은 요건의 충족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

EC 제안 특정무역의무의 세 번째 범주(STO-3)로 의무적 무역조치는 물론 그 예시목록도 MEA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단지 협정이 정한 환경목적에 대한 결과의무만이 제시되어 있어 결과의무이행을 위한 정책 및 조치의 선택 여부가 당사국에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 MEA가 잠재적인 정책 및 조치 목록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각국이 MEA의 목적 달성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의 내용과 성격에 관해 보다 폭 넓은 재량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무역규제조향으로는 몬트리얼의정서 2A~2H조, 바이오안전성의정서 16조 1항 : "The Parties, taking into account Article 8(g) of the Convention, shall establish and maintain appropriate mechanisms, measures and strategies to regulate, manage and control risks ..."등이 있다.

이 범주의 무역조치에 대해서는 앞선 두 범주의 STO에 비해 논란의 여지가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되나, 기본적으로 일정한 WTO 차원의 합치성 검토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WTO내에 수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끝으로 제안 특정무역의무의 네 번째 범주, 즉 MEA에서 요구되지는 않지만 당해 당사국이 국제법에 따른 엄격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일반조항이 MEA에 포

함되어 있을 경우 당사국이 시행을 결정할 수 있는 무역조치로 대다수 환경협약들에 포함되어 있는 무역관련 조치, 특히 몬트리올의정서 2조 11항: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in this Article, Parties may take more stringent measures than those required by this Article.", PIC 15조 4항의 경우에도 일정한 WTO 차원의 합치성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WTO내에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 2. 협상의제 2: WTO와 MEAs의 정보교환 절차 등

### 2.1 각료선언 31조 2항

협상의제 2번째 항목은 MEAs 사무국과 WTO의 정례적 정보교환 및 읍저버 지위 부여에 대한 내용으로써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

#### 표 3-7 MEA 사무국과 관련 WTO 위원회간 정기적 정보 교환 및 읍저버 지위 문제

##### << Paragraph 31(ii) >>

무역과 환경의 상호 보완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각각의 결과를 손상시키지 않으며 다음의 협상안에 동의한다.

(ii) MEA 사무국과 관련 WTO 위원회간의 정기적 정보 교환 절차와 읍저버 지위 부여 기준

### 2.2 주요국 입장

#### 미국<sup>28)</sup>

미국은 WTO-MEA 협력 증진을 위한 제안으로 정보회의(Information Sessions)를 정례화 및 보고서 교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 지난 5년간 CTE 정보 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
-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 정보 교환을 위한 적절한 기회 제공, 특정 주제 중심으로 개

28) (TN/TE/W/5)

최, 쌍방향의 정보 교환

- 보고서 교환(Document Exchange)
  - WTO 옵저버 지위에 있지 않은 사무국을 포함시켜 모든 공적 문서 뿐 아니라 관련 보고서를 교환
  - 국내적 측면의 무역 및 환경 기관들간의 보고서 교환 강조

옵저버 지위에 대해서는 현재 많은 MEA 사무국이 옵저버 지위에 있지만 국제적 무역과 환경의 협력과 의사소통을 증진하기 위해 앞으로 옵저버 지위 부여 기준이 제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EC29)

EC는 MEA 사무국과 관련 WTO 위원회간의 정기적 정보 교환 절차에 대해 WTO와 MEA 사무국간 정보교환의 공식적 제도화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 MEA에 영향을 주는 WTO 기존 협정 이행과 DDA 프로그램 관련 이슈에 대한 포럼 개최
- 사전에 명확히 정의된 주제와 MEA에 영향을 미치는 WTO 이슈에 대해 논의
- UNDP, UNIDO 등 다른 국제기구와 UNEP와 MEA 사무국 초청
- WTO 웹사이트를 활용한 전자적 정보 소통 기반 마련

옵저버 지위에 대해서는 “핵심” MEA 사무국은 CTE에서 옵저버 지위를 부여받아야 하며 다른 MEA 사무국의 CTE 옵저버 지위 요구와 “핵심” MEA 사무국의 다른 WTO 위원회 옵저버 지위 요구가 신속히 받아들여 질 것을 주장하였고, UNEP이 CTE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 옵저버로서 WTO 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제안하였다.

#### 스위스30)

스위스는 WTO와 MEA간의 정보교환이 국제 규범과 국내 규범간의 조화를 이루고 역량구축(capacity building) 및 기술이전의 원활화에 기여함에 따라 정보 교환과 옵저버 자격부여의 강화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인지하였다. 이에 무역 관련 모든 MEA(비집행 조약 포함), UNEP 및 관련 여타 UN 부속기구들의 정보공유회의(information session) 참여가 필요하고 또한 EC 및 다른 회원국들의 제안에 동의하며 그 절차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

29) (TN/TE/W/15)

30) (TN/TE/W/30)

- 정보공유회의 정기화, 각 회의마다 아젠다 및 1차 문서 사전배포, UNEP, MEAS 및 WTO에 의한 1차 문서 마련, 공식문서의 일반에 대한 개방 제안
- '02.11.11일에 열린 정보공유회의에서 정보교환의 수혜 분야를 발굴키로 합의
- 정보공유회의는 MEA와 WTO간의 분쟁해결제도(dispute settlement mechanism) 및 협약준수문제, 보조금, 무역자유화의 통합평가 및 환경목적의 라벨링 분야의 논의에 유용
- WTO, UNEP 및 MEA간의 정보교환을 위한 인터넷 웹사이트 개설 제안

스위스는 읍저버 자격부여에 대해서 WTO는 현재 6개의 MEA와 UNEP에 임시 읍저버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수평적 수준에서의 읍저버 자격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도쿄의정서(UNFCCC) 및 카르타헤나 협정(CBD), 국제 식물보호 협약(IPPC), CITES와 함께 모두 13개의 환경협약들에 대한 CTE의 읍저버 권한부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CTE 특별회의에서 무역정책 대한 관심과 참여에 토대를 둔 유연한 기준을 설정하여 MEA와 WTO간의 읍저버 자격의 상호교환으로 연계시키자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관심을 표명하는 MEA들이 임시 읍저버로 정기회의 및 특별회의 참여를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 3. 협상의제 3-a: 환경상품 시장개방 협상

#### 3.1 각료선언 31조 3항

DDA 협상의제 3번째 항목은 환경상품에 대한 무역장벽 완화 및 철폐 등 상품자유화에 대한 내용으로 각료선언문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표 3-8 Para(iii) 환경상품 및 서비스 자유화

<< Paragraph 31(iii) >>

무역과 환경의 상호 보완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각각의 결과를 손상시키지 않으며 다음의 협상안에 동의한다.

(iii) 환경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세·비관세 장벽의 감소 또는 철폐

### 3.2 협상논의동향 및 주요국의 입장

도하개발아젠다에서 환경상품에 대한 논의는 우선적으로 무역환경위원회에서 환경상품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현재까지 8차례에 걸쳐 무역환경위원회 특별회의가 개최되었다. 8차례에 걸친 회의에도 불구하고 2004년 5월 현재까지 환경상품의 정의 및 분류기준에 대하여 각국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시장개방 대상품목 선정 자체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표 3-9 무역환경위원회 환경상품 논의현황

구분	일시	주요논의내용	문서번호
제1차 회의	2002/03/22	환경상품 정의에 대한 무역환경위원회의 역할	TN/TE/R/1
제2차 회의	2002/06/11	APEC 및 OECD 리스트 활용 가능성 검토	TN/TE/R/2
제3차 회의	2002/10/10	친환경상품, PPM 기준 적용 가능성 검토	TN/TE/R/3
제4차 회의	2002/11/12	(논의 없음)	TN/TE/R/4
제5차 회의	2003/02/12	일본 제안 친환경상품에 대한 각국 견해	TN/TE/R/5
제6차 회의	2003/05/01	EC의 PPM 적용제안 및 개도국의 자국 관심품목 제안	TN/TE/R/6
제7차 회의	2003/07/08	(논의 없음)	TN/TE/R/7
제8차 회의	2004/04/19	미국 제안 핵심/보조리스트 협상방식에 대한 논의	TN/TE/8

출처 : WTO Secretariat

현재까지 환경상품의 정의 및 세부품목 발굴과 관련하여서는 OECD와 Eurostat에 의해 작성된 OECD 환경산업분류에 따른 환경상품리스트와 APEC에서 조기자유화 품목으로 발굴한 APEC 리스트가 논의의 출발점으로 주로 논의되고 있다. OECD와 APEC에서 제시한 환경상품 리스트 이외에 일부 국가(미국, 일본, 카타르, 스위스 등)는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추가적으로 환경상품 분류기준 또는 환경상품의 유형을 제안하고 있으나, 환경상품에 대한 명확한 논리적 근거가 확립되지 않고 있다. 무역환경위원회에서의 환경상품협상과 관련한 각국의 입장은 크게 실용성이 높은 APEC 리스트에 근거하여 전통적 환경산업으로 현실적 범위설정을 하자는 미국, 친환경상품, 청정기술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정의를 기반으로 하자는 EU와 일본, 그리고 유기농산물, 천연자원 등 개도국 관심품목을 추가하자는 개도국의 입장이 맞서고 있음

표 3-10 WTO 환경상품협상관련 제안문서

제안자	일시	제목	문서번호
뉴질랜드	2002/06/06	환경상품	TN/TE/W/6
미국	2002/07/09	환경상품협상	TN/TE/W/8
카타르	2002/10/09	환경상품	TN/TE/W/14
일본	2002/11/20	비농산물시장접근	TN/TE/W/17
WTO사무국	2002/11/22	환경상품 리스트 - Paragraph 31(iii) 관련	TN/TE/W/18
카타르	2003/01/28	환경상품 : 저탄소·저배출 연료 및 기술	TN/TE/W/19 TN/MA/W/24
카타르	2003/04/25	가스 관련품목의 HS관세코드	TN/TE/W/27
UNCTAD	2003/05/09	환경상품 및 서비스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전문가 회의	WT/CTE/GEN/12
OECD	2003/05/21	무역환경공동작업반 : APEC 및 OECD 리스트 비교	TN/TE/W/33 WT/CTE/W/228
미국	2003/06/19	WTO에서의 환경상품 자유화 : 정의문제에 대한 접근	TN/TE/W/34 TN/MA/W/18
미국	2003/07/07	환경상품 협상방식에 대한 의견	TN/TE/W/38 TN/MA/W/18

출처 : WTO Secretariat

### 뉴질랜드 제안서<sup>31)</sup>

뉴질랜드는 환경 상품에 대해 1999년 APEC에 제출된 아래의 제안서 내용을 소개하며 APEC 협상 결과를 향후 환경 상품에 있어 관세·비관세 무역 장벽의 감소 및 철폐 논의에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 1999년 APEC에 제출된 제안서 소개
  - 무역자유화 협약 체결 기초로서 환경 상품 및 서비스를 정의·분류
  - 범위의 정확한 설정으로 환경상품에 대한 무역 장애 확인이 용이
  - 무역자유화로 환경상품과 서비스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되어 각국의 환경인프라 건설 및 환경 비용 감소에 기여

### 미국의 입장

미국은 환경상품협상이 조기에 실현가능한 수준에서 타결되기를 희망하며 따라서

31) (TN/TE/W/6)

APEC 조기자유화 대상품목으로 실무검토가 완료된 APEC 환경상품리스트를 협상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환경친화상품 및 생산공정의 친환경성에 근거한 환경상품 분류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 고수(기존 무역규범과의 충돌 문제)하며 환경오염 처리, 복원, 계측 등 최종용도(end-use)에 의해서 환경상품이 분류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며,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한국 등도 미국의 주장과 같이 APEC 리스트 선호 및 PPM 반대 입장 견지하고 있다. 미국은 이후 각 회원국의 다양한 주장을 수용하기 위해서 핵심리스트와 보조리스트를 작성하여 협상 유연성 높일 것을 주장하였다.

### 미국 제안서32)

2003년 6월 미국은 환경상품협상의 기초자료로 APEC 리스트 활용성 강조

- APEC 리스트는 관세인하를 전제로 환경적으로 중요하거나(important), 환경용도 활용도가 높은(prevalent) 품목을 선정하였음을 설명
- PPM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제품은 배제하되, 범용성 문제 해결을 위한 최종용도 증빙(end-use certificate)방식은 비현실적이므로 HS 6단위로 협상할 것을 촉구

### 미국 제안서33)

2003년 7월 미국은 환경상품 정의에 대한 완전합의 필요 없이 각국 주장을 최대한 포괄하고, 동시에 핵심 환경상품에 대해서는 시장개방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새로운 협상방식(modality) 제안

- Core list와 complimentary list를 구분하고 core list 품목에 대해서는 전체 회원국이 일괄적 관세철폐를 실시하되, complimentary list 품목에 대해서는 각국이 스스로 X% 만큼의 품목을 자국의 시장개방대상 품목으로 선정하여 관세철폐 실시
- Core list : 오염처리 및 예방 차원에서 중요한 물품으로서 회원국간 합의가 이루어진 품목 (오염처리 및 환경복원을 위한 물품과 소비 및 폐기단계에서 상대적으로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친화상품 포함)
- Complimentary list : 환경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회원국간 상당 수준의 공감대 형성되어 있는 환경상품 (단, 동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회원국의 상품제안절차와 일정분류기준 만족 필요)
- Core list에 대해서는 전체 회원국이 2010년 이내에 조속한 시일내 관세철폐를

---

32) (TN/TE/W/34)

33) (TN/TE/W/38)

- 추구하며, Complimentary list에 대해서는 회원국간 합의에 의해 정해진 개방품  
 목비율(X%) 만큼의 품목을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2010년까지 관세철폐 추구
- 개도국에 대해서는 특별히 시장개방 품목비율(X%)을 낮추어 줄 수 있도록 함  
 (less than full reciprocity)

## EU의 입장

EU는 환경상품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에 기반하여 전통적 사후오염처리물품 이외에  
 청정제품, 청정기술, 환경친화제품 등 다양한 품목이 포괄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즉, 생산공정 및 생산방식(PPM)의 환경친화성에 근거한 제품분류도 수용하여야 하며,  
 따라서 PPM 차별이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WTO 내에서 수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는 에코라벨링과 연계한 협상추진 시도로 보이며, 협상기초자료로서 OECD 리스트도  
 활용되어야 하며, 이외에 각국 주장 환경상품을 포괄적으로 처리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 일본의 입장

일본은 환경상품에 대한 정의는 OECD 정의를 따르되, 전통적 사후오염처리물품 이  
 외에 추가적으로 기후변화, 자원절약, 재활용 등 국제환경이슈에 부응하기 위한 상대적  
 환경친화품목도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 제기하였다. 일본은 기후변화 및 자원절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상품으로 에너지절약형 전기전자제품, 저배출자동차, 재활용처리기기 등  
 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제안품목에 대해 대다수 회원국이 개도국 이해에 부합하지 않으며,  
 APEC 및 OECD 리스트 가운데 자국에 유리한 상품만을 선별하였다는 비판 제기되었으  
 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스위스는 상대적으로 환경성과가 우수한 제품은 배제하고 기존  
 제품과 완전히 차별화되는 구조적, 물적, 기능적 특성을 가진 환경친화품목만을 환경상  
 품으로 간주하자고 주장하였다. (예; 태양발전기기, 천연섬유, 자전거 등)

## 일본 제안서<sup>34)</sup>

OECD 환경산업 정의 및 분류방법에 대한 보고서에 따라 환경상품을 오염처리물품,  
 청정자원절약제품, 자원관리물품 등 3그룹으로 분류하고 기후변화협약이나 재활용 등 국  
 제사회의 환경이슈를 고려하여 환경상품 제안하였다.

- 환경상품 분류기준으로서 PPM은 고려하지 않고 제품 자체의 특성에 따라 환경  
 상품을 분류하며, HS 6단위로 식별되지 않는 해당물품은 Ex 표기하여 각국 세관  
 에서 식별·관리할 것을 제안
- 환경상품에 대한 관세철폐 또는 인하수준 및 방식은 비농산물시장접근그룹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기를 제안

34) (TN/TE/W/17)

- 일본은 OECD 및 APEC 리스트를 근거로 HS 6단위 기준 총 155종의 환경상품 리스트를 작성하였으며, 이 가운데 환경친화상품 18종 및 자원·에너지관리용품 20종도 포함
- 환경친화상품으로는 에너지 및 자원절약기능을 채택한 전기전자제품(LCD TV, 인버터 에어컨, IH조리기기, 절수형세탁기 등)과 친환경자동차(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을 제안함
- 자원·에너지 관리용품으로 태양전지, 연료전지, 열펌프, 대체연료기기, 열회수보일러, 재활용설비 등을 제안

### 스위스 제안서(non-paper)

환경친화상품에 대한 분류기준으로서 PPM 환경친화성은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그 대신에 제품 자체의 물적 특성(physical characteristics)에 기초하여 소비 및 폐기단계에서의 환경영향에 따라 환경친화상품을 분류할 수 있음을 예시

- 생태적으로 건전한 대체 교통수단 및 기기 : 철도, 자전거, 태양력 운송수단, 무동력 선박, 태양열 조리기구 등
- 환경부하가 없는 대체 화학용품 : 생태독성 및 환경오염 발생이 없는 비누, 세제, 접착제, 식물성 염료 등
- 식물성 천연섬유 : 아마, 황마, 로우프, 끈 등

### 개도국의 입장

대부분의 개도국은 환경상품협상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PPM 기준의 적용, 친환경상품(특히 공산품)의 확대적용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이다. 단, 자국 관심품목의 환경상품리스트 포함에는 적극적인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인도는 APEC 및 OECD 환경상품리스트가 환경용도 이외로도 쓰이는 다용도(multi-use) 물품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순수한 환경용도로만 사용되는 물품만을 선별하여 협상하자고 주장하였으며, 중국, 말레이시아 등은 개도국 이해가 반영된 환경상품리스트를 별도로 만들 것을 주장하였다. 한편, 카타르는 천연가스, 정유설비 등 기존 제품에 비해 환경부하가 적다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상품을 환경상품에 포함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중국, 케냐, 베네수엘라 등은 유기농산물,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한 열대농산물 등은 환경상품에 포함 희망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개도국에서 개도국에 대한 특별우대조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 카타르 제안서<sup>35)</sup>

카타르는 에너지 부문에서 지속가능발전이 가능한 환경상품 · 서비스 · 기술을 제

35) (TN/TE/W/14)

안하고 이를 분류하며 이러한 에너지 분야를 협상 논의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 한국의 입장

우리나라는 무역환경위원회 특별회의에서 무역환경위원회가 환경상품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할 것으로 주문한 바 있으며, APEC 리스트를 기초로 협상대상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는 PPM 기준 및 환경친화상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경라벨링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PPM 기준이 수용되는 것은 어렵다는 견해를 보인바 있으나, 현재 국내 산업계의 의견수렴이 최종 결정되기까지 공식 입장표명을 자제하며 협상추이를 관망하고 있는 상태이다.

## OECD 무역환경공동작업반

2003년 5월 OECD 무역환경공동작업반(Joint Working Party on Environment and Trade)은 환경상품협상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고 있는 환경상품에 대한 구체적 분류기준을 검토한바 있다.

동 검토자료에 따르면, 기존 6단위 HS코드(국제표준화관세코드)에 따르면 비환경용으로 사용되는 제품도 포함되는 범용성의 문제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부 환경상품별로 별도의 HS코드를 제정하는 작업을 하여야 하나 이는 국제관세기구(WCO)의 협상주기상 2011년 이후에나 작업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구체적 환경상품을 표기(Ex heading) 하고 이에 대해서 각국에서 6단위 이상 세부 관세코드를 재정비하거나 세관에서 용도증빙 확인(end-use certification)을 하는 절차가 활용될 수 있으나 이는 세관 사후관리비용을 수반하며 각국의 이행을 확인하기 힘들다는 단점 있음도 지적하였다.

한편, PPM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동종상품 동일대우원칙과 상충될 여지가 있는 제품무관련 제조공정의 문제에 대한 원칙 수립이 필요하며, 제품과 직접 관련된 PPM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제품 자체가 식별 가능하여야 하며, 세관행정상 PPM 환경친화성을 비용효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일본이 제안한 에너지효율상품 등 상대적으로 환경친화적인 상품에 대해 관세인하조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환경친화성에 대한 일정한 평가기준이 있어야 하나 현재 이에 대한 국제기준이 미비하며, 국제기준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생산자가 기준충족 여부를 증빙하여야 하므로 추가비용 부담이 발생하므로 결국 현재 상태에서 환경상품을 분류하고 관세인하조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표준화가 이루어진 현행 HS 6단위 하에서 처리하되 특별히 환경상품을 구체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도표기를 하여 세관이 사후관리하는 방법이 유일하며, 환경친화상품이나 PPM 분류기준은 국제적으로 시행가능한 원칙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 UNCTAD 전문가회의

2003년 6월 UNCTAD 환경상품·서비스 전문가 회의는 WTO DDA 환경협상에서 현쟁점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는 환경상품의 정의·범위 설정 및 협상방식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미국, EU 등 선진국은 환경상품 및 서비스 시장개방이 선진국 환경산업 수출 확대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환경문제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일 수 있음을 강조한 반면, 대부분의 개도국은 국내 환경업체의 영세성과 선진국 대비 열위 수준의 환경상품·서비스 수준에 의한 국내 환경산업의 도산 등을 부정적 영향으로 지적하며, 환경상품 리스트 작성시 환경상품의 정의를 확대하여 개도국 주력 수출품목의 포함을 주장하였다.

오염방지물품 이외에 환경친화상품의 포함 여부에 대해 미국은 협상의 조기타결을 위하여 논의의 확대를 견제하는 입장인 반면, EU는 PPM의 환경친화성까지 감안한 환경친화상품도 환경상품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으며, EU는 환경친화상품의 분류기준을 에코라벨링으로 삼을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에코라벨링의 비표준화 특성 및 검증비용 과다를 이유로 반대하였다.

### 3.3 쟁점사항

환경상품 자유화에 대한 논의전개에 있어서 지난 2003년도 제2차 무역환경위원회 회의에서 미국측은 환경상품 정의와 APEC 환경상품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출발점으로 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APEC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국의 제의가 환경상품부문에 대한 논의진전에 환영의사를 표명한 반면, 개도국들은 제시된 환경상품의 core list 기준이 고부가 상품인데 거부감을 표명하고 개도국과의 이해관계 설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C의 경우 제한적인 환경상품 작성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또한 중국의 경우 최근 진행된 CTE 협상회의에서 환경상품을 common list와 development list<sup>36)</sup>로 분류, 목록화 방법을 제안하여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협상의제 3번째 항목 논의에 이슈화된 미국측의 환경상품 정의에 대한 견해는 Modality 개발을 위한 필수요소로 환경상품의 명확한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APEC 환경상품 목록을 환경상품 분류 논의를 위한 시발점으로 삼을 것을 제안하면서 생산공정방식(PPMs: Product and Process Methods)에 따른 환경상품 분류에는 반대 입장을 취하였다.

APEC 환경상품 제안에 대해 미국은 목록작성의 목적이 관세자유화에 있다고 밝혔으며 APEC의 환경상품 정의에 고려된 사항이 세관에서 특정 제품을 환경상품으로 구분하여 그에 준하는 관세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여부이므로, 이 경우 최종소비목적 인증 및

36)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각각 다른 리스트를 제출하는 방안

PPMs에 의한 환경상품 분류는 실용적으로 이행이 불가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현행 HS(Harmonized System Tariff headings)코드가 환경상품 구분에 현실적이지 못한 실정을 고려하여 APEC회원국들은 6자리 HS 코드를 포함하는 실용적인 방식 고안에 동의하였고, 범용상품인증이 비실용적인 것을 감안하여 환경보호에 중요한 수단이라고 인정하는 제품들을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결론적으로 APEC 목록은 1)환경복원/사후처리/오염방지 및 2)환경친화적 제품 또는 “청정기술”의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DDA 협상의제 3항은 환경상품의 교역자유화에 따른 경제·환경적 시너지 제고를 목표로 한 협상으로 DDA 비농산물시장접근 협상그룹에서 다뤄지나 무역환경위원회(CTE) 협상회의(Special Session) 의제이기도 해서 중복논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환경상품의 범위에 대한 OECD 및 APEC 환경상품리스트에 대한 검토와 각국이 추가하고자 하는 환경상품 목록에 대한 제안서(일본, 스위스, 카타르 등)들이 논의되는 단계로, 아직 환경상품의 구체적인 시장개방방식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정부는 OECD 및 APEC 환경상품리스트에 대한 검토와 국내 유관산업 현황에 대한 점검작업을 포함하여 향후 DDA 환경협상 전반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DA 환경상품협상에서 각국의 의견이 대치하고 있는 주요쟁점사항은 다음과 같다.

### **기초협상자료의 선정**

APEC 리스트, OECD 리스트, 각국 제안 환경상품 리스트 등 어떠한 리스트를 협상 기초자료(starting point)로 활용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 미국, 캐나다, 호주 및 APEC 회원국은 APEC 리스트 선호
- EU, 일본, 스위스 등 OECD 리스트 선호
- 개도국은 개도국 이해가 반영된 별도 리스트 작성 요구

### **범용물품 포함여부**

APEC이나 OECD 리스트가 다용도로 사용되는 물품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HS 6단위 분류에 따를 경우 환경상품이 아닌 물품도 개방대상에 포함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 인도, 말레이시아 등 일부 개도국은 범용물품 제외 주장
- 미국은 범용물품 배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HS 6단위 개방 주장
- OECD는 Ex 표기를 통해 각국 세관이 사후관리하는 방법이 있음을 제시

### 친환경상품 포함여부 및 분류기준

APEC이나 OECD 리스트는 청정생산기술 및 청정제품항목이 구분되어 있으나 세부 품목 제시가 미흡한바 친환경상품을 어느 수준까지 포함할 것인가가 쟁점 사항이다.

- EU, 스위스, 일본 등은 친환경 공산품 포함 주장
- 개도국은 친환경 농산물, 천연자원 포함 주장
- 미국도 core & complimentary 리스트를 통해 친환경상품 포함가능성 언급

또한 환경친화상품 분류기준으로서 PPM기준을 포함할 것인가, 물적 특성만 고려할 것인가, 상대적 환경친화성 평가기준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도 문제이다.

- EU는 PPM의 환경친화성도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
- 일본 및 카타르는 기능 또는 재질이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인 제품을 주장
- 스위스는 기존 오염유발상품의 대체상품(환경오염이 없는 상품)만을 주장
- 개도국은 유기농산물, 천연자원 등을 친환경상품에 포함 주장

### 협상방식(modality)의 문제

단일 리스트를 합의하고 이에 대해 일괄 시장개방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복수개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리스트별로 차별화된 시장개방 방식을 적용할 것인가가 쟁점사항이다.

- APEC 또는 OECD 리스트에 기반한 단일리스트 협상방식
- 미국이 제안한 core & complimentary 리스트 협상방식
- 중국 등이 제안한 선진국 및 개도국 리스트 분리 협상방식

### 관세인하수준의 문제

관세인하수준이 결정될 경우 비농산물시장접근그룹에서 합의한 관세인하공식(formula)을 적용할 것인가 또는 환경상품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세인하조치를 취할 것인가가 향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일본은 환경상품도 비농산물 관세인하와 동일 방식으로 처리 희망
- 미국은 환경상품에 대해 2010년까지 관세철폐 주장

## 3.4 환경상품의 정의와 분류방법 고찰

### 3.4.1 환경산업의 정의

국제적으로 널리 지지를 받고 있는 OECD/Eurostat의 환경산업의 정의 및 분류방법에 따르면 환경산업은 “수질, 대기, 폐기물, 소음진동, 토양, 생태계 등에의 환경피해를 측정, 예방, 처리, 복원하기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활동”이라고 정의(환경용도에 따른 정의)된다.

- 오염관리 : 수질, 대기, 폐기물 등 환경매체의 오염 계측·처리·복원산업
- 청정생산 : 오염 및 자원고갈 등 환경부하가 적은 공정·제품개발산업
- 자원관리 : 자원·에너지 효율관리 및 대체자원·에너지산업

한편, EBI (Environmental Business International)는 환경산업을 산업활동의 행태적 특성에 따라 환경설비(equipment), 환경용역(services), 자원이용(resources)으로 크게 3분류한 바 있다.

- 환경설비 : 수처리시설, 대기방지시설, 폐기물, 청정공정, 계측기 등 설비 및 기기 제조업
- 환경용역 : 폐기물 관리 및 처리, 하폐수 처리, 컨설팅 및 엔지니어링, 환경복원·정화, 분석·계측 서비스
- 자원이용 : 상수도사업, 친환경에너지사업, 자원재생사업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에 의하면 “환경산업은 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환경기술을 응용·활용해 환경시설 및 환경측정기구 등을 설계, 제작, 설치하거나 환경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산업 업종은 환경부 소관 12개 법령에 의거, 17개 업종(약 12,000개업소)으로 세분되며, 타부처 소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수산업법, 해양오염방지법 등에 의한 관련 업종을 포함하면 30여개 이상의 업종으로 세분된다.

한편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정생산기술을 생산공정에서 환경오염을 제거하거나 감축하기 위한 기술 및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 그리고 환경설비산업을 환경오염을 제거·감축하기 위한 기기 및 장치 관련 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 3.4.2 환경상품의 분류

OECD의 환경산업 가운데 상품분류기준에 따르면, 환경상품은 “환경오염처리를 위한 용도의 제품 및 설비”(pollution management - A그룹), “일반범용 물품 가운데 청정기술이 적용된 제품”(cleaner products and technologies - B그룹), 그리고 “자원 및 에너지

관리를 위한 용도의 제품 및 설비”(resource management - C그룹)를 포함한다.

- 오염처리용도 물품(A그룹)의 예 : 집진기, 가스여과기, 수처리제, 정수처리필터 등 오염처리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과 측정장비, 분석기기, 동력장치 등 이에 부속하는 물품
- 청정기술 적용물품(B그룹)의 예 : 에너지 절약형 TV, 물 절약형 세탁기, 연료 절감형 자동차, 재활용 종이 등 일반용으로 쓰이나 환경친화적 기능 및 특성이 있는 물품
- 자원관리용도 물품(C그룹)의 예 : 열 교환기, 태양력발전장치, 단열재, 연료전지, 재활용설비 등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

한편, APEC은 조기무역자유화 대상품목으로서 환경상품을 분류함에 있어 환경활동 유형별로 9가지 카테고리로 환경상품을 분류하고 있다.

- 대기오염관리물품
- 폐수처리 및 관리물품
- 고형폐기물·유해폐기물 처리물품
- 상수처리물품
- 소음·진동 저감물품
- 환경복원 및 정화물품
- 재활용 설비 및 시스템
- 열·에너지 관리물품
- 측정·분석·모니터링 물품

### 3.4.3 환경친화상품 분류기준

OECD는 특히 청정제품 및 기술에 대해서 “자원투입 절감, 에너지 사용절감, 폐기물 최소화, 사용단계 배출저감 등 환경오염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자원효율성이 높은 제품”이라고 규정하며, UNEP와 UNCTAD는 환경친화상품(environmentally preferable product)을 “동종 카테고리에 속한 상품 가운데 환경부하 발생이 적은 제품으로서 제품 자체의 내재적 속성(재활용성, 생분해성 등)에 기인하거나 생산·소비·폐기방식의 차이에 기인한 것을 모두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PPM도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상기 정의에 따라 제품 전과정(life-cycle)별 환경영향을 분류하고 이러한 환경영향 저감에 기여하는 상품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11 환경친화상품 예시

전과정	환경이슈	제품예시(최종재)	제품예시(원부자재)
사용단계	에너지소비 절약	절전형 TV, 절전형 에어컨, 고연비 가스보일러, 고연비 자동차 등	고강도경량 금속자재 인버터, 센서, 써모스타트, 단열재, 전원공급장치 등
	자원소비 절약	절수형 세탁기, 절수형 식기 세척기, 절수형 수도자재, 리필형 부탄가스 등	광촉매 전기분해장치, 리필용 용기, 수도용 감압밸브, 토수량 조정장치 등
	인체유해성 저감	중금속 저함유 페인트, 전자파 저방출 휴대폰, 포름알데히드 저함유 가구, 저독성 합성세제, 저자극 화장품 등	VOC 저함유 솔벤트/안료 PVC 대체 합성수지, 생분해성 계면활성제, 저독성 방부제, 전자파 차폐물질
	오염물질 배출저감	저배출 자동차, CO2 발생 저감 보일러, CFC 비사용 냉장고, VOC 저함유 접착제, 오존발생저감 복사기 등	연료전지, 수소연료, 탈황유, 천연압축가스, 고효율엔진, CFC 대체냉매, 천연접착용액, 오존필터, 에어필터 등
	사용수명 연장	내구성 강화 제품 부품/소모품 장기공급제품 등	-
폐기단계	고형폐기물저감	생분해성플라스틱제품, 포장재 간소화 제품 등	생분해성 수지원료, 재활용가능소재 포장재 등
	소각오염예방	브롬난연제 비사용 제품 PVC 비사용 제품 등	브롬난연제 비상용 합성수지, 비할로겐 합성수지
	독성노출예방	수은 저함유 형광램프, 무수은 배터리, 무연솔더링 전자제품 등	대체솔더링소재, 수소전지, LED발광체 등
생산단계	재활용원료사용	재생종이제품, 재생플라스틱 제품, 재생골재, 재생블럭, 간벌재 목재제품, 재생토너 카트리지 등	재생펄프, 중고섬유, 고철, 폐유지, 폐플라스틱, 폐아스팔트, 폐목재, 바이오매스 등
	오염배출저감	오염물질 저감공정적용제품, 청정연료 사용제품 등	
	자원투입절감	부산물 재활용공정 제품, 컴팩트 사이즈 제품 등	
	에너지투입절감	재생에너지 투입생산제품, 에너지 절약공정 제품 등	
기타	생태계보호	지속가능산림자원목재, 자연생태계보호상품, 유기농산물 등	
전과정환경영향 저감제품		에코라벨제품	

■ : PPM 연관상품 (제품 자체의 성능/특성과 무관한 친환경제품)

환경친화상품의 분류·평가기준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원칙은 없으나, 다음과 같은 제품 특성별로 평가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 기능, 구조 또는 재질 자체의 특성기준 : 하이브리드 자동차, LCD TV, 연료전지, 태양발전기기, CNG 가스, 재활용지, 생분해성 합성수지 등 제품의 기능방식이나 재질 자체가 환경친화적인 특성을 가진 상품
- 사용 및 폐기단계에서의 상대적 환경성과기준 : 제품의 에너지소비량, 자원소비

- 량, 유해물질 함량, 오염물질 배출량, 폐기물 배출량 등을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성과가 우수한 제품
- 생산단계(PPM)에서의 상대적 환경성과기준 : 생산단계에서 수질오염, 대기오염, 폐기물 등의 발생량이 적거나 자원 사용효율이 높은 공정을 채택하여 제조된 제품

#### 3.4.4 환경상품의 표시방법

환경상품에 대해 관세인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물품에 대한 수출입 통관관리가 필수적이거나, 현행 관세코드(HS code)는 환경상품 분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관세코드는 HS 6단위 기준이나 HS 6단위 품목 가운데 일부 품목만을 환경상품으로 정의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현행 HS 코드를 재분류하거나 HS 코드에 추가적인 표기를 하여 환경상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표기방법이 필요하다. APEC 및 일본은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HS 6단위 품목에 추가적으로 'Ex' 코드를 달아 환경상품임을 표시하는 방법 사용한 바 있다.

#### 3.4.5 기존 환경상품리스트 비교

현재 환경상품 세부리스트를 제안한 국가 및 기구로는 OECD, APEC 및 일본이 있으며, 이들이 제안한 환경상품의 범위는 약간 차이가 있다. OECD는 HS코드 6자리 기준 총 161종의 환경상품을 제안하였으며, 이 가운데 수질오염처리용도의 물품(69종)을 대폭 제안한 특징이 있다. 반면, APEC은 HS코드 6자리 기준 총 109종의 환경상품을 제안하였으며, 이 가운데 측정, 분석, 검사용 기기 및 장비(58종)를 대폭 제안하였으며, 환경친화상품에 대한 제안품목은 없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일본은 OECD 및 APEC 제안품목을 기초로 총 155종의 환경상품을 제안하였으며, 특히, 독자적으로 환경친화상품(18종)을 대폭 제안하였다. APEC 및 일본 리스트에는 HS 6단위 품목 하에 특정 환경상품만을 개방하기 위하여 특정물품에 대한 Ex 표기를 병행하고 있으며, Ex 표기물품은 각국에서 통관코드관리를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표 3-12 환경상품리스트 및 제안품목 개수

구분		OECD 제안	APEC 제안	일본 제안
오염 처리 용도 (A)	대기오염 저감	27종	7종	18종
	수질오염 저감	69종	15종	21종
	폐기물 처리	19종	15종	28종
	복원 및 정화	3종	3종	3종
	소음 및 진동 저감	3종	1종	3종
	측정, 분석, 검사	19종	58종	44종
청정 용도 (B)	오염발생저감형 제품	3종	-	5종
	자원·에너지 절약형 제품	-	-	12종
	재활용된(recycled) 제품	-	-	1종
자원 관리 용도 (C)	수자원 관리	4종	2종	-
	재생가능에너지 활용	5종	7종	11종
	에너지 효율관리	9종	-	4종
	재활용(recycling) 처리	-	1종	5종
	지속가능 농수산업	-	-	-
	지속가능 임업	-	-	-
	자연위험 관리	-	-	-
	생태관광	-	-	-
기타	-	-	-	
계		161종	109종	155종

표 3-13 APEC 및 OECD 리스트 품목비교

(단위 : 개)

구분	OECD 리스트	APEC 리스트	OECD+APEC
HS 6단위 품목	161	109	233
중복품목 제외	132	104	198
Ex 표기물품	-	44	13

※ OECD·APEC 중복품목 : 54개

### 3.5 우리나라 환경산업 현황분석

#### 3.5.1 환경산업 일반현황

환경산업에는 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관리 등 환경설비업부터 풍력, 조력, 태양력 등 대체에너지사업, 수자원, 생태공원 등 환경자원이용업, 청정생산 및 청정제품 제조·유

통업까지를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며, 1990년대 이후 급격한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EBI에 따르면 2000년 세계 환경시장 규모는 5,180억 달러이고, 향후 매년 5% 이상 성장하여 2005년 7,097억 달러, 2010년에는 8,635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세계 환경시장은 현재 미국(39.86%) 일본(18.46%) 독일(11%) 등 3개국이 70%를 점유하고 있어 선진국이 주도하는 산업이다.

**표 3-14 세계 환경산업 시장규모 및 전망**

(단위 : 억달러)

구 분	2000년	2002년	2003년	2005년	2010년	연평균 성장률(%)	
						'00 ~ '05	'05 ~ '10
시장규모	5,180	5,560	6,257	7,097	8,635	5.8	5.0

※ Environmental Business International(2003), 산업자원부(2001), 2010 산업비전

분야별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고품폐기물처리가 연간 1,054억달러로 가장 크고, 수자원, 수처리, 자원재생 등의 순이며, 성장률면에서는 환경에너지자원분야가 연평균 13%로 가장 높았으며 공정·방지기술, 장비 및 정보, 수질설비, 폐기물처리 등이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환경산업시장은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이 비중이 절대적이거나, 최근에는 이들 시장의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는 대신,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와 중남미 국가들은 경제발전 에 따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주요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전체 환경산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아시아 16%, 중남미 10%가 될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올림픽 특수 및 엄격한 환경규제기준 설정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시장의 성장률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시장은 베이징(北京) 대기질 개선과 보하이(渤海)만의 해양수질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33211 프로젝트' 등 대규모 환경 프로젝트가 다수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 환경보호총국은 중국의 환경시장이 연평균 19.8%씩 성장해 2010년에는 2,800억위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환경산업의 시장규모는 1995년의 5조9,110억원에서 매년 23.5%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1997년에 9조100억원으로 성장하였으며, IMF 외환위기 기간동안 성장률이 정체되었으나 1999년 이후에도 연평균 8.6%의 고속성장을 기록하며 2003년 12조 5,000억원으로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3년도 우리나라의 환경산업 시장규모는 세계 환경산업 시장규모 6,257억달러 대비 110억달러로 1.8%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환경산업 시장의 추이를 EBI 분류방식에 따라 살펴보면, 환경서비스업과 환경설비업의 시장성장률이 비교적 높은 편이며, 환경자원이용업은 시장성장률이 1999년 이전에는 저조하였으나 최근 시장성장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표 3-15 국내환경산업 시장규모

(단위 : 억원)

구분		2003년	2004년	성장률(%)
환경서비스업	고형/유해폐기물 관리	29,580	31,760	7.4
	수처리 용역	15,520	16,960	9.3
	환경복원 및 창조	6,140	6,740	9.8
	환경컨설팅/엔지니어링	1,100	1,230	11.8
	환경측정분석서비스	1,100	1,200	9.1
환경자원이용업	자원재생	37,720	41,220	9.3
	수자원 이용	2,390	2,690	12.6
	환경에너지자원	540	760	40.7
환경설비업	수처리 설비와 약품	13,510	14,630	8.3
	대기오염방지설비	12,610	13,510	7.1
	폐기물 관리설비	3,900	4,320	10.8
	청정공정 및 기술	460	610	32.6
	계측기기 제조	430	470	9.3
합계		125,000	136,100	8.9

자료 : 김태용, “2004 국내환경산업시장전망” 「환경보전」 (2004.1-2)

2003년의 국내 환경산업시장을 세부분야별로 살펴보면, 자원재생 분야가 3조 7,720억 원으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고형 및 유해폐기물 관리, 수처리서비스, 수처리설비와 약품, 대기오염방지설비 등의 순을 형성하고 있다. 시장성장률 측면에서는 환경에너지자원, 청정공정 및 청정기술, 수자원이용, 환경컨설팅 및 엔지니어링, 폐기물관리 분야가 비교적 높게 성장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행 환경오염방지지출 추계 결과에 따르면 오염매체별 환경오염방지지출은 수질·토양(47.7%), 폐기물(34.3%), 대기(14.5%), 소음·진동 등 기타 분야(3.5%) 순으로 나타난다.

표 3-16 국내 환경오염방지 지출규모

구분	1998	1999	2000	2001
환경오염방지지출	72,461	80,231	83,114	92,521
연간성장률(%)	-13.9	10.7	3.6	11.3
대 GDP비율(%)	1.63	1.66	1.59	1.70

자료 : 한국은행, 2001년중 환경오염방지지출 추계결과(2002.12)

### 3.5.2 국내 환경친화상품 시장규모

환경친화상품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관계로 환경친화상품의 시장규모에 대한 통계자료는 현재 찾아볼 수 없다. 단, 환경친화상품을 환경마크 인증제품에 국한하여 추정해 볼 때, 2003년 30개의 환경마크 인증제품의 국내 총생산량은 2002년 기준으로 약 1조 7천억원 규모에 달하며, 해당품목에서 평균 3.4%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품목별로 시장점유율을 볼 때, 형광등, 페인트, 가솔린엔진오일, 절수형 수도꼭지, 세탁비누, 화장지, 세탁용 합성세제 등 10여개 품목이 시장점유율 1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제품의 전체 생산량은 우리나라 GDP 대비 0.3% 수준의 매우 적은 비율이나 환경마크제도에 참여하는 산업체 수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표 3-17 환경마크 인증제품 시장규모

(단위 : 억원)

대상제품군	국내시장	인증제품		시장점유율
		생산업체수	제품수	
형광등	1,580	4	720	45.8%
페인트	22,380	17	6,367	28.4%
가솔린엔진오일	1,127	2	320	28.4%
절수형 수도꼭지	1,150	30	207	18.0%
세탁비누	204	8	37	17.9%
화장지	3,200	21	446	13.9%
세탁용 분말세제	2,660	2	347	13.0%
수도계량기	240	1	30	12.5%
프린트 용지	39,965	5	4,829	12.1%
대형차량용 타이어	4,037	2	410	10.2%
절수형 변기	1,672	4	138	8.2%
복사기	6,328	3	310	4.9%
프린터	6,872	1	285	4.1%
브레이크 패드라이닝	1,600	3	64	4.0%
승용차 타이어	3,694	2	116	3.1%
디젤엔진 오일	1,925	1	60	3.1%
형광등 안정기	425	2	13	2.9%
비디오 플레이어	16,513	1	357	2.2%
유압작동유	1,055	2	22	2.1%
산업용 배터리	6,715	1	130	1.9%
토너 카트리지	5,055	16	86	1.7%
석유	380,000	1	3,032	0.8%
가정용 가스보일러	4,271	1	17	0.4%
도막방수재	1,000	1	4	0.4%
벽지	3,000	2	8	0.3%
전기 케이블	10,800	1	13	0.1%

자료 : 환경마크협회(2003), “환경마크 인증제품의 시장규모 추정”

### 3.5.3 환경상품 수출입 현황

APEC, OECD, 일본리스트에 제시된 환경상품의 우리나라 수출입 규모를 평가하면 수입이 수출보다 2배 이상 많은 무역역조품목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일본 리스트에서 제시된 환경친화상품을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이 수입보다 1.5배 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된다. (단, Ex 세부물품별 교역통계 기준이 아니라 HS 6단위 기준 이므로 과대평가된 수치임)

표 3-18 우리나라 환경상품 무역수지

(단위 : 백만달러)

구분	수출(X)	수입(M)	X-M	X/M
APEC 리스트	3,470	7,619	-4,149	0.46
OECD 리스트	2,818	6,294	-3,476	0.45
APEC+ OECD	5,185	10,792	-5,607	0.48
Japan 리스트	19,231	12,639	6,592	1.52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데이터베이스 (2002년도 기준)

OECD 리스트 가운데 오염처리용도 환경상품 140종의 경우 2002년 우리나라 수출액은 2,934백만 달러인 반면, 수입액은 6,315백만 달러로 수입이 수출보다 2.2배 많다. 특히, 측정분석장비, 수질오염처리물품의 교역수지 기여도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도 우리나라 총 수출액 가운데 동 오염처리물품 수출비중은 1.8%에 불과하나 2002년도 수입비중은 4.2%를 차지하고 있다.

표 3-19 오염처리물품 2002년 수출입

(단위 : 백만달러)

구분	대기	수질	폐기물	측정·분석	계
수출액(X)	1,762	468	613	91	2,934
수입액(M)	2,995	1,291	1,232	797	6,315
(X/M)	0.59	0.36	0.50	0.11	0.46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2002년 우리나라 총 수출액 162,471백만 달러, 총 수입액 152,126백만 달러

OECD, APEC, 일본이 제안한 자원·에너지 관리용도 물품 25종은 수입이 수출보다 2.4배나 많아 교역수지 기여도가 떨어지나 수출입 영향이 매우 적은 품목이다. 자원·

너지 관리용도 물품의 2002년 수출액은 519백만 달러인 반면 수입액은 1,267백만 달러로서 초과수입 상태이며, 총 수출액 가운데 자원·에너지 관리용도 물품이 차지하는 수출비중은 0.3%, 수입비중은 0.8%에 불과하다. 25개 품목 가운데 열교환기, 폐의류 및 폐섬유, 역청질 광물성 재료혼합기 등 3개 품목만 수출초과 품목이다. 즉, 국내 에너지 관리기기 및 대체에너지 시장규모가 미미하며 기술개발수준도 선진국에 비하여 뒤떨어진 수준이므로 관세인하를 통한 단시간 내에 교역이익을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일본이 제안한 환경친화상품(청정기술 적용상품) 18종은 교역수지 측면에서 대체로 우리나라에 유리한 품목들인 것으로 파악된다. 2002년도 총 수출액의 가운데 이들 18종 품목의 수출비중이 10.5%를 차지하는 반면, 수입비중은 총 수입액의 4.4%로서 수출이 수입 보다 2.5배 많다. 물론 이는 HS 6단위를 기초로 조사한 자료로서 이 가운데 친환경상품을 별도 분리하여 수출입 통계를 집계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 통계는 없다. HS 6단위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18종 환경친화상품 가운데 우리나라 교역수지가 적자인 품목은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자동차용 네비게이터 2개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WTO 사무국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 제안 환경친화상품을 시장개방대상으로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는 DDA 환경상품협상을 통해 일본, EU 다음으로 많은 교역이익이 예상된다고 한다.

**표 3-20 환경친화상품 2002년 수출입**

(단위 : 백만달러)

구분	자원절약제품	오염예방제품	재활용제품	계
수출액(X)	9,133	6,298	1,693	17,124
수입액(M)	5,636	290	816	6,742
(X/M)	1.62	21.72	2.07	2.54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HS 6단위 기준)

한편 우리나라 환경상품의 주요 수출시장은 미국, 중국, 일본 및 동남아 국가로 볼 수 있다. 2002년도 APEC-OECD 리스트 183개 품목의 총수출액 5,188백만달러 가운데 고관세 국가군(동남아, 중국, 기타)에 대한 수출은 3,180백만 달러로 61.3%를 차지하고 있다.

**표 3-21 APEC-OECD 분류 환경상품 수출시장**

구분	미국	동남아	중국	일본	유럽	기타
금액(백만불)	1,115	1,043	991	571	322	1,146
비중(%)	21.5%	20.1%	19.1%	11.0%	6.2%	22.1%

※ 동남아에는 인도와 대만 포함하여 집계

또한, 일본제안 18개 환경친화상품의 총수출액 총 11,308백만달러 가운데 고관세 국가군(동남아, 중국, 기타)에 대한 수출은 6,211백만달러로서 54.9%를 차지하고 있다.

표 3-22 환경친화상품 수출시장

구분	미국	EU	중국	동남아	일본	기타
금액(백만불)	2,363	2,063	1,753	1,568	671	2,890
비중(%)	20.9%	18.2%	15.5%	13.9%	5.9%	25.6%

※ 동남아에는 인도와 대만 포함하여 집계 (HS 코드 6단위 기준으로 집계)

### 3.5.4 우리나라 환경상품 경쟁력

삼성지구환경연구소는 환경기술을 발전단계별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그에 따른 우리나라 환경기술경쟁력을 정성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 제1세대 : 배출된 오염물질의 처리를 중심으로 사후처리기술
- 제2세대 : 오염배출을 최소화하는 생산공정을 적용한 청정생산기술
- 제3세대 : 무배출(zero-emission), 완전 재활용 및 생태계 복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무공해 및 환경복원기술

동 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기 및 여과 집진기술과 습식배연 탈황기술, 소형 조각기술 등의 제1세대 기술인 사후처리기술은 선진국의 중·고급 수준에 도달하여 있으나, 제2세대, 제3세대 기술인 청정생산기술 및 환경복원기술의 경우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50% 이하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90년대부터 전체 환경기술투자의 50~80%를 청정생산기술 및 지구환경대책기술 등 첨단기술분야에 투자
- 우리나라의 경우 전반적인 환경기술의 평균수준은 선진국의 30~40%에 불과하고 사후처리기술의 개발에 치중하고 있다고 평가됨
- 특히 청정생산기술, 지구환경대책기술, 생태계복원기술 등의 첨단 환경기술수준은 초보적인 단계이며, 이에 대한 투자도 전체 환경기술투자의 26%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

표 3-23 우리나라 환경과학기술의 기술수준

(단위 : 억원)

기술분야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수질오염방지기술	고도정수처리기술	40 ~ 60
	산업폐수 처리기술	30 ~ 50
대기오염방지기술	배연·탈황·탈질기술	40
	고효율 집진기술	50
	악취 및 VOC 제어기술	40
	실내환경 제어기술	40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기술	60
폐기물관리기술	폐기물 처리·처분기술	40
	폐기물자원화기술	70
환경기반기술	방지기자제, 처리약품, 측정장비	40
청정기술	저오염/무공해 공정기술	20
	연료 탈황·탈질 공정기술	60

자료 : 산업연구원, 환경·신에너지산업의 발전전략, 1999

한편, 산업연구원 「환경·신에너지산업의 발전전략」에 따르면 1996년 기준 우리나라 환경산업은 미국을 100점 기준으로 할 때 가격지수가 20%정도 우위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술수준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기술개발력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우리나라 환경산업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낙후된 것은 우리의 기술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고, R&D 투자가 저조하고 취약한 환경전문인력구조, 연구관리 체제의 미흡에 기인한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환경상품에 대한 기계산업진흥회의 관련업체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기술수준은 유럽, 일본 등 선진국 업체에 비해 5~10년 낙후되어 있으며 따라서 주요 수출시장은 동남아 등 개도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 대기오염방지시설의 경우 집진설비는 선진국과 대등한 기술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배연 탈황설비, 탈질설비 등은 아직 선진국보다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남 (주요 수출국은 중국, 인도 등)
- 수처리 설비의 경우 물리적 처리설비인 스크린설비, 탈수건조설비 등을 중국, 인도, 베트남 등에 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필터류, 촉매 등 핵심설비는 미국, 일본 등에서 주로 수입
- 재활용설비의 경우는 일부 타이어 재생설비, 음식물 사료화설비, 유화설비 등을 외국사와 기술제휴 등을 통하여 생산하고 있으며 일부는 선진국과 대등한 기술수준으로 상용화되어 일본 등에 수출을 개시하고 있음
- 소각설비는 선진국의 90%이상의 기술수준으로 경쟁력이 있지만 소각가스과 악

- 취제거설비 등은 선진국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
- 소음·진동 방지 및 계측분석기 등 기타 환경기기의 경우 GC, LC, TMS 등 일부 계측분석기기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성능면에서 선진국의 기술수준과 많은 차이가 있고, 일부 분석기는 전량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한편, 환경친화상품에 대한 환경마크협회의 산업계 의견조사 결과, 우리나라 제품의 환경기술경쟁력을 감안할 때 전기전자업종은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으나 여타 분야에 대해서는 환경경쟁력에 대한 확신이 크지 않다.

- 전기전자업종에 있어서는 일본이 제안한 인버터 타입 에어컨, PDP TV, LCD TV, 무세제 세탁기, 초음파 세탁기, IH조리기기 등의 품목은 기술적으로 국제경쟁력이 우수한 품목들이어서 대체적으로 찬성을 표시
- 자동차업종에서는 일본 및 OECD에서 제안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의 경우 일본 및 유럽이 기술경쟁력에서 우위에 있으나 이에 대한 집중 연구개발을 추진중인 것으로 답변
- 제지업종에 있어서 재활용지의 경우 수출우위품목으로서 시장개방이 업계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나 펄프류를 포함한다면 수입초과 가능성 있음
- 기타업종에 있어서 페인트, 화학제품 등의 경우 환경친화제품들의 시장출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점진적 관세인하에는 동의하나 신중한 접근을 요망

### 3.5.5 환경산업체 해외진출 현황

2001년부터 추진중인 환경부 해외진출 지원사업결과를 살펴볼 때, 2002년 상반기 해외 진출한 환경산업체는 106개로 2001년 같은 기간의 78개보다 36%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중국이 59%, 동남아가 14.2%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 진출업체는 16%에 불과하다. 중국의 경우 지역별 진출분야가 확연히 구분되어 시멘트 공장이 많은 지린(吉林)성의 경우에는 탈황시설업체가, 건설붐이 일고 있는 베이징은 건설폐기물 업체의 진출이 활발한 실정이다.

표 3-24 지역별 해외진출 환경업체 및 실적 비교

지역	'02 상반기		'03 상반기		성장률(%)	
	업체수	실적(억원)	업체수	실적(억원)	업체수(%)	실적(%)
중국	51	222	62	420	21.5	89.1
동남아	12	69	15	158	25.0	128.9
선진국	11	74	17	58	54.5	△21.6
기타지역	4	849	12	4,171	200.0	391.2
계	78	1,214	106	4,807	35.8	295.9

자료 : 환경부, 환경산업체 통계조사(2003)

환경산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실적은 2002년 상반기에 1,214억원에서 2003년 상반기에는 4,807억원으로 약 300% 성장하였으며, 특히 이 기간 중국과 동남아에서의 실적합계는 578억원으로 2002년의 296억원에 비해 2배 이상 성장하였다. 전체 4,807억원(79건) 중 수질분야가 2,602억원(54%)으로 가장 많고, 대기분야가 1,941억으로 40%를 차지하며, 최근(2003년 상반기) 해외진출에 있어서는 수질 및 대기분야의 오염처리용도 물품의 진출이 두드러지며, 분야에서는 물품 및 설비분야가 주종을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해외진출 환경상품의 다양성, 규모, 수출기여도 등은 아직 초보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 3-25 환경산업체의 분야별 해외진출

지역	오염매체별(억원)					진출분야별(억원)		
	소계	대기	수질	폐기물	오염예방	설비	물품	친환경상품
중국	420	134	168	107	10	286	123	10
선진국	58	42	2	1	14	4	41	14
동남아	158	63	25	1	70	61	97	0
기타	4,171	1,702	2,407	59	2	4,144	25	2
계	4,807	1,941	2,602	168	96	4,495	286	26

자료 : 환경부, 환경산업체 통계조사(2003)

### 3.5.6 국내 관세수준

우리나라는 UR 협상 이후 공산품 관세율을 8%로 통일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환경상품 관세율도 8%가 적용되고 있다. 단, 계측분석기기 등 일부품목의 경우는 WTO 양허관세를 적용하여 8% 이하 세율 또는 무세화가 실현된 경우가 있으며, 환경오염 방지물품 가운데 국내 제작이 곤란한 품목이면서 최종재 생산을 위한 부분품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감면을 실시하고 있다.

### 3.6 환경상품 시장개방 가능성 검토

#### 3.6.1 APEC·OECD 환경상품리스트 검토

환경부 및 산업자원부는 공동작업으로 7차에 걸쳐 OECD 리스트 및 APEC 리스트 제안품목에 대해 관계부처 및 업종별 단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무세화 가능성 검토한바 있다. 동 작업에서는 시장개방 가능성 검토기준으로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품목은 시장개방 불가품목으로 선정하였다.

- 환경연관성 : 오염처리, 자원관리, 청정생산 등 환경용으로 사용되는가?
- 범용성 : 기타 산업 활용도가 높지 않고 주로 환경용으로 주로 활용되는가?
- 기술경쟁력 : 선진국 대비 국내 기술수준이 경쟁력이 있는가?
- 가격경쟁력 : 개도국 저가공세 피해가능성 및 역관세 문제 없는가?
- 교역수지 및 교역규모 : 교역수지상 무역역조 효과가 크지 않은가?
- 수요자 측면 : 환경상품 국내 수요자 입장에서 관세인하를 요구하는가? 또는 기 시행중인 관세인하 대상품목인가?
- 기타 : 향후 육성 필요성 또는 구조조정 필요성이 있는가?
- 비농산물협상과의 연관성 : 비농산물협상에서 개방대상으로 확정된 품목인가?  
(철강, 반도체, 종이, 섬유 등)

표 3-26 품목별 검토체계

구분	오염방지물품	자원관리물품	환경친화상품
대상품목	173개 품목	35개 품목	51개 품목
1차검토	환경부·산업자원부 공동검토 (2003. 4)		
2차검토	검토미흡품목 추가검토 (2003. 11)		
3차검토	산업자원부 및 환경부 최종협의 예정		

상기 시장개방 가능성 검토기준에 의거, 7차에 걸친 관련 정부부처 및 업종별 의견수렴과 3차에 걸친 민관합동 전문가회의 결과, HS코드 6단위 기준 69개 품목(일부 개방가능품목 포함시 95개 품목)이 개방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기오염, 수질오염 및 폐기물 처리를 위한 기계설비류의 경우 국내 기술경쟁력 열위 품목이 많으나 현재 양허관세율 0%가 적용된 품목 및 일부개방가능품목이 다수 존재하므로 이들은 개방가능하며, 대기, 수질, 폐기물 처리물품 가운데 일부 기계류와 수송기계, 전기전자품목은 가격·경쟁력 우위 품목도 일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질오염

저감품목의 경우 기초화학물질류는 범용도가 높고 중국 등 개도국 제품과 비교하여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반면 제품 차별화를 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대부분 개방이 불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계측기와 반도체 관련품목은 비농산물시장협상을 통해 무세화가 진전된 상태이므로 추가적 시장개방 손실이 없으므로 많은 경우 개방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27 HS 6단위품목 용도별 개방가능성 검토결과

분류	개방가능 품목(A)	일부개방 가능품목(B)	전체품목(C)	비율 ((A+B)/C)
대기	3	8	22	50.0%
수질	24	8	65	49.2%
폐기물	10	2	23	52.2%
복원/정화/소음/진동	4	1	7	71.4%
측정/분석	20	7	54	51.9%
청정/에너지절약	7	-	17	41.2%
기타	1	-	5	20.0%

※ HS 10단위 세부품목 검토결과 일부 품목 개방가능한 경우 HS 6단위 일부개방가능품목으로 산정 (환경부·산업자원부 종합검토결과 정리)

이들 환경상품은 유형별로 보면 기계설비, 화학약품, 계측기기, 기초소재, 기타용품류에 속하는 상품 및 부속품들로서 계측기기류의 개방가능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화학약품류의 개방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28 상품유형별 개방가능성 검토결과

구분	품목예시	대상품목	개방품목	비율
기계설비	여과기, 압축기, 분리기, 분쇄기, 가스 발생기, 터빈, 펌프류, 밸브류, 미터류	70	42	60.0%
화학약품	소석회, 가성소다, 이산화망간, 아황산 나트륨, 인산칼륨, 활성탄, 염소 등	28	8	28.6%
계측기기	크로마토그래피, 오실로스코프, 중량 측정기, 온도계, 편광계, 분광계 등	47	26	55.3%
기초소재	부식포, 서니일직물, 시멘트, 주물제품, 촉매, 매트류 등	12	5	41.7%
기타용품	탱크, 저장조, 내화벽돌, 용기, 내화도자 제품, 유리제품, 부교 등	26	14	38.5%
계		183	95	51.9%

※ 개방품목 : 개방가능품목 69개 + 일부개방가능품목 26개, 환경부·산업자원부 종합검토결과 정리

표 3-29 OECD-APEC 품목별 개방가능성 검토결과

(단위 : 천달러)

No	분류	OECD	APEC	HS코드	코드설명	수출	수입	개방여부	불가사유
1	대기		V	840410	보일러용 부속기기	63,115	5,423	O	
2	대기		V	840510	(가스발생기)발생로 가스, 수성가스 발생기,에틸렌 가스 발생기,유사 습식 가스 발생기	2,952	28,678	△	
3	대기	V	V	841410	진공펌프	12,910	73,813	X	기술열위
4	대기	V		841430	냉장설비용의 기체압축기	381,570	261,988	X	가격열위
5	대기	V		841440	에인용의 바퀴달린 사시위에 장착된 기체 압축기	1,041	11,024	O	
6	대기		V	841459	기타 팬	64,757	87,001	△	
7	대기	V	V	841480	기타 기체펌프와 기체압축기,기타 후드	70,003	209,149	△	
8	대기	V		841490	기체 또는 진공펌프, 기체압축기, 팬, 송풍기 등의 부분품	105,074	193,113	X	기술열위
9	대기	V	V	842139	기체용의 기타 여과기와 청정기	18,709	50,473	△	
10	대기	V	V	842199	액체,기체용 여과기와 청정기의 부분품	28,969	102,829	△	
11	대기	V		252100	석회석 용재,석회석,기타 석회질 암석 (석회,시멘트 제조용)	7	6,311	X	가격열위
12	대기	V		252220	소석회	76	317	X	가격열위
13	대기	V		281610	수산화마그네슘,과산화마그네슘	238	4,661	X	가격열위
14	대기	V		701990	기타 유리섬유 및 그 제품	8,853	14,602	X	범용성
15	대기	V	V	841960	기체 액화용의 기기	8	4,681	O	
16	대기	V		841989	온도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타 기기	233,903	199,702	X	기술열위
17	대기	V	V	841780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의 기타 노와 오븐 (비전기식의것)	13,418	25,656	△	
18	대기	V	V	851410	저항가열식의 노와 오븐	6,010	51,846	X	기술열위
19	대기	V	V	851420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의 노와 오븐	1,083	8,925	△	
20	대기	V	V	851430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의 기타 전기식 노와 오븐	6,336	32,472	X	가격열위
21	대기	V	V	851490	공업용,이화학용의 전기식 노와 오븐의 부분품(유도식,유전식)	1,654	18,383	△	
22	대기	V		852490	음성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현상이 기록된 기타매체	0	0	△	
23	수질	V		280110	염소	6	2,170	O	
24	수질	V		281410	무수암모니아	0	110,842	O	
25	수질	V		281511	고체의 수산화나트륨 (가성소다)	577	1,973	X	가격열위
26	수질	V		281512	액체의 수산화나트륨 (소다,액상소다)	20,786	6,701	X	가격열위
27	수질	V		281830	수산화알루미늄	1,916	45,166	X	가격열위
28	수질	V		282010	이산화망간	65	5,400	X	가격열위
29	수질	V		282090	기타 산화망간	18	2,558	X	가격열위
30	수질	V		282410	일산화연 (리타지,메시코트)	1,878	150	X	가격열위
31	수질	V		283210	아황산나트륨	67	1,907	X	가격열위
32	수질	V		283220	기타 아황산염	179	272	O	
33	수질	V		283510	포스포네이트 (하이포아인산염), 포스포네이트 (아인산염)	18	2,345	X	가격열위

34	수질	V		283521	인산삼암모늄	0	0	X	가격열위
35	수질	V		283522	인산일나트륨,인산이나트륨	0	267	X	가격열위
36	수질	V		283523	인산삼나트륨	25	300	X	가격열위
37	수질	V		283524	인산칼륨	973	847	X	가격열위
38	수질	V		283525	오르토인산수소칼슘 (인산이칼슘 )	1,030	10,661	O	
39	수질	V		283526	기타 인산칼슘	1,750	3,781	O	
40	수질	V		283529	기타 인산염	297	2,332	X	가격열위
41	수질	V		380210	활성탄	2,071	30,341	X	가격열위
42	수질	V	V	842121	물의 여과 및 청정용 기기	30,739	107,948	△	
43	수질	V	V	842129	액체용의 기타 여과기와 청정기	14,075	40,770	X	기술열위
44	수질	V	V	842199	액체,기체용 여과기와 청정기의 부분품	28,969	102,829	△	
45	수질	V	V	842119	기타 원심분리기, 여과기, 청정기	4,295	32,945	△	
46	수질	V	V	842191	원심분리기 (원심탈수기 포함)의 부분품	2,031	4,600	△	
47	수질	V	V	392690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290,150	191,835	X	범용성
48	수질		V	560314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초과의것 (인조필라멘트 부직포)	93,178	5,749	O	
49	수질	V		580190	기타섬유제의 파일 및 서니일직물	533	805	O	
50	수질		V	591190	공업용의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	5,114	10,213	O	
51	수질	V		730900	각종 재료용의 철강제 저장조,탱크,통 (용적이 30 0L초과)	44,284	21,157	O	
52	수질	V		731010	철강제 탱크,통,드럼,캔,상자 (용적 50L 이상 30 0L이하)	5,547	9,238	O	
53	수질	V		731021	납땀,크리핑으로 봉합되는 철강제 통 (용적이 50L미만)	1,283	3,193	O	
54	수질	V		731029	철강제의 기타 탱크,통,드럼,캔,상자 (용적이 50 L미만)	28,090	27,339	O	
55	수질	V		841000	수력 터빈과 수차			O	
56	수질	V	V	841011	동력 1,000KW이하의 수력터어빈과 수차	3	114	O	
57	수질	V	V	841012	동력 1,000KW초과 10,000KW이하의 수력터어빈과 수차	0	3	O	
58	수질	V	V	841013	동력 10,000KW초과의 수력터어빈과 수차	0	0	O	
59	수질	V	V	841090	수력터어빈과 수차 부분품 (조정기 포함)	3,007	1,571	O	
60	수질	V		842381	최대측정용량 30KG이하의 중량측정기기	24,773	569	X	범용성
61	수질	V		842382	최대측정용량 30KG초과 5,000KG이하의 중량측정기기	4,630	851	X	범용성
62	수질	V		842389	기타의 중량측정기기	371	2,069	X	범용성
63	수질		V	842833	벨트형의 기타 연속작동식 엘리베이터 와 콘베이어 (물품,재용용의 것)	84,972	32,279	O	
64	수질		V	847982	혼합기,반죽기,파쇄기,분쇄기,기계식 체,시프팅기,균질기,유화기와 교반기반	21,280	55,979	X	기술열위
65	수질	V		732510	비가단주철제의 주물제품	377	418	O	
66	수질	V		841320	수지식의 액체펌프	645	699	X	기술열위
67	수질	V		841350	기타의 용적형 왕복펌프	645	699	△	
68	수질	V	V	841360	기타의 용적형 회전펌프	8,746	46,903	△	
69	수질	V	V	841370	기타의 원심펌프	26,956	94,872	△	
70	수질	V		841381	기타 액체펌프	10,780	154,663	△	

71	수질	V		848110	감압밸브	677	12,206	X	범용성
72	수질	V		848130	체크밸브	8,242	12,533	X	범용성
73	수질	V		848140	안전밸브	1,654	26,289	X	범용성
74	수질	V		848180	(기타의 기기) 파이프,보일러의 동체, 탱크, 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 밸브와 유사한 장치	235,771	492,271	X	범용성
75	수질	V	V	854389	정수기	3,600	12,385	O	
76	수질	V	V	902610	액체의 유량 또는 액면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기기	4,666	44,105	O	
77	수질	V	V	902620	압력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4,297	31,536	O	
78	폐기물	V		681099	기타 콘크리트제품, 인조석제품 및 시멘트제품	2,478	898	○	
79	폐기물	V		780600	연계의 기타제품	3,173	1,318	X	범용성
80	폐기물	V		851629	전기식의 기타 난방기구와 토양가열기	42,409	9,863	O	
81	폐기물	V		901320	레이저기기 (레이저 다이오드 제외)	5,419	44,503	O	
82	폐기물	V		392490	플라스틱제 기타 가정용품과 화장용품	20,556	14,195	X	범용성
83	폐기물	V		960310	비와 부러쉬 (식물성 재료를 단순히 묶은 것)	659	3,152	X	검토불가
84	폐기물	V		960350	기타의 부러쉬 (기계,기구,차량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것)	3,981	3,933	O	
85	폐기물	V		960390	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 (수동식),모프와 깃면지털이	8,303	1,876	O	
86	폐기물	V		392020	프로필렌 중합체의 기타 판,쉬트,필름,박,스트립 (년 셀루라)	129,585	27,556	X	범용성
87	폐기물		V	846291	액압프레스	11,967	7,320	△	
88	폐기물		V	847290	등사기,주소인쇄기,우편물분류기를 제외한 사무용기계	77,627	136,910	O	
89	폐기물		V	847989	84798호에서 금속처리용의 것과 혼합기,반죽기,과쇄기,분쇄기,기계식 체,시프팅기,균질기,유화기와 교반기를 제외한 나머지	758,505	1,716,772	X	기술열위
90	폐기물		V	847990	부분품기기의 부분품	294,036	379,924	X	범용성
91	폐기물		V	847410	선별기,기계식 체,분리기와 세척기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	2,378	3,170	O	
92	폐기물		V	850590	기타 (부분품을 포함한다)	8,546	19,315	X	범용성
93	폐기물	V	V	842220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 또는 건조용 기계	896	6,479	O	
94	폐기물		V	847432	역청질과 광물성재료의 혼합기	20,093	939	O	
95	폐기물	V		847439	기타 혼합기와 반죽기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	1,163	1,372	O	
96	폐기물	V	V	847982	혼합기,반죽기,과쇄기,분쇄기,기계식 체,시프팅기,균질기,유화기와 교반기반	21,280	55,979	△	
97	폐기물		V	690210	내화벽돌류 (마그네슘,칼슘,크로뮴원소 함유량이 50%초과하는 것)	3,317	20,922	X	기술열위
98	폐기물		V	690220	내화벽돌류 (알루미나,실리카 함유량이 50%초과하는것)	2,972	21,298	X	기술열위
99	폐기물		V	690290	기타 내화벽돌,내화블록,내화타일 및 기타 건설용내화도자제품	3,980	36,141	X	기술열위
100	폐기물	V	V	841790	비전기식의 공업용,이화학용 노와 오븐의 부분품	7,512	8,424	O	

101	복원/정화		V	230210	옥수수에서 얻은 박류	16	421	X	검토불가
102	복원/정화	V		851629	전기식의 기타 난방기구와 토양가열기	42,409	9,863	O	
103	복원/정화		V	890710	인플랫터블식의 부교	9	2,151	X	기술열위
104	복원/정화		V	890790	기타 물에 뜨는 구조물	442,168	10,829	O	
105	소음/진동	V	V	840991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전용의 부분품	73,321	118,040	O	
106	소음/진동	V		840999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전용의 부분품	132,144	514,773	△	
107	소음/진동	V		870892	소음기와 배기관 (자동차용의 것)	20,930	726	O	
108	측정/분석		V	690310	기타 내화성의 도자제품	734	9,439	△	
109	측정/분석		V	690320	알루미나,알루미나와 실리카 혼합물이 50%초과인내화성 도자제품	3,925	10,128	△	
110	측정/분석		V	690390	알루미나,알루미나와 실리카 혼합물이 50%초과인기타의 내화성도자제품	2,630	15,017	△	
111	측정/분석		V	690919	이화학용,공업용의 기타 도자제품	2,639	49,228	X	가격열위
112	측정/분석		V	701710	석영유리제의 유리제품 (이화학용,위생용,약제용 의 것)	52	1,334	O	
113	측정/분석		V	701720	이화학용,위생용,약제용의 유리제품 (선팽창계수가 0-300도씨에서 1켈빈온도당 백만분의	0	6	O	
114	측정/분석		V	701790	이화학용,위생용,약제용의 기타 유리제품	1,423	9,135	X	범용성
115	측정/분석		V	841410	진공펌프	12,910	73,813	X	기술열위
116	측정/분석		V	841480	기타 기체펌프와 기체압축기,기타 후드	70,003	209,149	X	기술열위
117	측정/분석		V	841940	기체 또는 진공펌프,기체압축기,팬,송풍기 등의 부분품	3,311	9,085	X	가격열위
118	측정/분석		V	841960	기체 액화용의 기기	8	4,681	X	가격열위
119	측정/분석		V	842119	기타 원심분리기, 여과기, 청정기	4,295	32,945	X	기술열위
120	측정/분석		V	842191	원심분리기 (원심탈수기 포함)의 부분품	2,031	4,600	X	기술열위
121	측정/분석		V	901540	사진측량기기	0	194	X	범용성
122	측정/분석		V	901580	기타 토지측량기기, 수로측량기기, 해양측량기기,수리계측기기,기상관측기기	335	16,050	X	범용성
123	측정/분석		V	901590	토지측량기기,수로측량기기,측거의,수준기,기상관측기기 등의 부분품	1,292	5,443	X	범용성
124	측정/분석		V	902229	기타용도의 알파선,베타선,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	890	6,827	X	범용성
125	측정/분석		V	902290	엑스선,알파선,베타선,감마선을 사용하는 기타 기기및 그 부분품	12,146	29,983	X	범용성
126	측정/분석	V	V	902511	액체를 넣은 것(적시식의 것에 한한다)	83	249	X	범용성
127	측정/분석	V	V	902519	기타 온도계 (다른 기기와 결합되지 않은 것)	5,664	16,291	X	범용성
128	측정/분석	V	V	902580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측정기,고온계,습도계와 건습습도계, 기타의 기기	650	7,058	△	
129	측정/분석		V	902590	온도계,기압계,고온계,습도계,액체 비중계등의 부분품과 부속품	2,291	10,525	O	
130	측정/분석	V	V	902680	기체,액체의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타 기기	1,575	4,268	O	
131	측정/분석	V	V	902690	유량계,액면계,압력계,열측정계,풍력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7,671	21,683	O	

132	측정/분석	V	V	902710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	5,884	33,472	X	가격열위
133	측정/분석	V	V	902720	크로마토그래프와 전기영동 장치	765	48,899	O	
134	측정/분석	V	V	902730	분광계, 분광광도계, 분광사진기 (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1,966	68,656	X	가격열위
135	측정/분석	V	V	902740	노출계	53	141	O	
136	측정/분석	V	V	902750	기타의 기기 (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1,782	31,236	△	
137	측정/분석	V	V	902780	물리,화학 분석용의 기타기기, 측정, 검사용의 기타기기	8,501	135,377	O	
138	측정/분석	V	V	902790	마이크로도움,편광계,굴절계,분광계,노출계,조도계 등의 부분품,부속품	3,094	57,695	O	
139	측정/분석		V	902810	기체의 적산용 계기와 그 검사용 계기	5,118	10,465	X	기술열위
140	측정/분석		V	902820	액체의 적산용 계기와 그 검사용 계기	1,376	6,053	X	기술열위
141	측정/분석		V	902830	전기의 적산용 계기와 그 검사용 계기	553	2,341	X	기술열위
142	측정/분석		V	902890	기체, 액체, 전기의 적산용 계기와 그 검사용 계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1,942	4,718	O	
143	측정/분석	V	V	903010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 기기	58	7,450	O	
144	측정/분석		V	903020	음극선 오실로스코우프와 음극선 오실로그래프	4,953	22,050	X	기술열위
145	측정/분석		V	903031	멀티미터 (기록 장치가 없는 것)	11,247	8,004	O	
146	측정/분석		V	903039	전압,전류,저항,전력의 측정,검사용의 기타기기 (기록장치 없는 것)	21,986	84,754	O	
147	측정/분석		V	903083	기타 (기록장치를 갖춘 것에 한한 검사용 측정용 기기)	2,309	33,182	O	
148	측정/분석		V	903089	스펙트럼분석기	11,620	112,530	X	기술열위
149	측정/분석		V	903090	오실로스코우프,전압계,전류계,전항계,누화계,만곡율계등의 부분품	25,621	97,898	O	
150	측정/분석		V	903110	균형 시험기	2,376	5,608	X	기술열위
151	측정/분석		V	903120	테스트 벤치	183	4,898	X	기술열위
152	측정/분석		V	903130	윤곽 투영기	1,083	3,489	O	
153	측정/분석	V		903149	광학식의 기타기기	7,389	88,810	O	
154	측정/분석	V	V	903180	기타의 기기	75,884	424,479	△	
155	측정/분석		V	903190	균형시험기,윤곽투영기,포시미터,어군탐지기,로드셀,면적계 등의 부분품	30,873	139,460	O	
156	측정/분석	V	V	903220	매노우스타트	0	346	X	기술열위
157	측정/분석	V	V	903281	액압식 또는 공기식의 기기	4,232	30,752	△	
158	측정/분석	V	V	903289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타 기기	30,210	242,730	△	
159	측정/분석		V	903290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7,931	177,346	O	
160	측정/분석		V	903300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계측기기,정밀기기의 기타 부분품	7,538	17,387	O	
161	측정/분석	V	V	903210	온도 자동조절용 기기	16,264	18,007	X	기술열위
162	청정제품	V		284700	과산화수소	16,880	1,916	X	가격열위
163	청정제품	V		320910	기타 페인트와 바니쉬	4,452	4,722	O	
164	청정제품	V		320990	기타 페인트와 바니쉬	13,476	9,157	O	
165	상수도	V		220100	광수,탄산수 (감미료 향미 첨가 안한것)	36,144	206,952	X	검토불가

166	상수도	V		285100	기타 무기화합물(주류수, 전도로수와 이와 유사한 순도의 물을 포함), 액체공기(희가스가 제외된 것 여부 불문), 압축공기, 아말감(귀금속 제외)	462	1,688	X	검토불가
167	상수도	V		391400	이온교환수지(에틸렌중합체 또는 천연중합체를 기재로 한것)	2,714	19,762	X	가격열위
168	재생에너지	V		841911	가스식의 즉시식 물가열기(비전기식의 것)	1,658	5,481	X	기술열위
169	재생에너지	V	V	841919	기타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비전기식의 것)	918	825	X	기술열위
170	재생에너지	V	V	854140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 및 발광다이오드	158,525	458,073	O	
171	재생에너지		V	841381	기타 액체펌프	10,780	154,663	X	기술열위
172	재생에너지		V	850231	풍력의 것(발전세트)	57	1,928	X	기술열위
173	재생에너지	V		220710	에틸알코올(알코올분이 80도 이상) 변성에틸알콜과 기타 변성주정	710	43,962	X	가격열위
174	재생에너지	V		290511	메탄올(메틸알코올)	527	184,667	O	
175	에너지절약	V		381500	서포트된 촉매	36,144	206,952	X	기술열위
176	에너지절약	V		700800	유리제의 복층절연유니트	416	381	O	
177	에너지절약		V	840420	증기원동기용의 응축기	3	419	O	
178	에너지절약		V	840999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전용의 부분품	132,144	514,773	X	기술열위
179	에너지절약	V	V	841950	열교환기	100,319	46,309	O	
180	에너지절약	V		841990	열교환기의 부분품	29,991	51,185	X	기술열위
181	에너지절약	V		853931	형광램프(열 음극형의 것)	19,685	28,834	X	기술열위
182	지속농업		V	460120	매트류 및 밭(식물성 재료의 것에 한한다)	3,286	13,636	O	
183	지속농업		V	843680	기타 농업, 원예, 임업, 양봉용 기계(발아용 기기포함)	926	3,088	X	기술열위

※ O 개방가능, △ 일부개방가능, X 개방불가

HS 10단위 검토결과 일부 품목 개방가능한 경우 HS 6단위 일부개방가능품목으로 표시  
환경부·산업자원부 관련 실국 검토결과 종합

※  표시된 13개 품목은 무역후자품목임에도 개방불가로 분류된 품목으로서 재검토 필요

### 3.6.2 환경친화상품 개방가능성 검토

본 연구는 일본, OECD, APEC이 제안한 환경상품리스트 가운데 환경친화상품(청정 제품 및 자원·에너지관리물품) 해당품목과 관련 전문가 및 관련 기업체에서 제안한 추가 환경친화상품을 일차 검토대상품목으로 선정하여 시장개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 OECD : 전체 161종 가운데 청정제품 5종, 에너지·자원관리품목 18종 포함
- APEC : 전체 109종 가운데 에너지·자원관리품목 10종 포함
- 일본 : 전체 155종 가운데 청정제품 18종, 에너지·자원관리품목 20종 포함
- 전문가 및 기업 추가제안품목 : 총 38개 품목

표 3-30 환경친화상품 관련 주요 제안품목

제안자	일본	OECD	APEC
청정 생산 제품	인버터 타입 에어컨 에어컨 온도조절기 CFC 비사용 냉장고 초음파/무세제/절수형 세탁기 초음파/무세제/절수형 식기세척기 DVD ROM 자원절약형 전자레인지 IH 조리용 가열기기 IH 전기밥솥 자동차용 네비게이터 LCD/PDP TV LCD 프로젝터 LCD 모니터 하이브리드 자동차 저배출 차량 이중 유류탱크 가정용 쓰레기 분쇄기 재활용 종이	CFC 대체물질 수성 접착제 수성 페인트 및 바니쉬 이중 유류탱크 저소음 컴프레서 과산화수소 土炭(peat) 대체물품	(해당사항 없음)
자원 에너지 관리 물품	태양전지 연료전지 태양열 온수기 폐열 회수 온수기 열펌프 이용 온수기 열펌프 열교환기 유리제 절연체 중고 섬유제품(재활용원료) 로프 등의 폐품(재활용원료) 용기 재활용 설비 아스팔트 재활용 설비 선별·분리·유화 설비 풍력발전세트 수력터빈 및 수차 수력터빈 및 수차의 부품	재활용 종이 재활용제품(품목 미제시) 가스식 순간 온수기 비전기식 온수기 태양전지 풍력터빈 및 풍차 수력발전설비 매탄올/에탄올 유리제 복층 절연체 열교환기 열펌프 폐열회수 보일러 형광등 전기자동차 연료전지 가스·유량 적산기 씨모스타트	액체펌프 수력터빈과 수차 수력터빈과 수차의 부품 비전기식 순간 온수기 풍력발전세트 용기 재활용 설비 아스팔트 재활용 설비 선별·분리·유화 설비

검토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본 연구는 환경친화상품은 생산단계에서의 환경영향을 제외하고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사용 및 폐기단계에서 환경오염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자원 및 에너지를 상대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며, 또한 제품의 구조 및 기능방식 자체가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과 차별화되어 환경친화적 특성을 발휘하여야 함을 조건으로 하였다. 구조 및 기능방식상 차별성이 없지만 제품이 상대적으로 환경성과가 우수하다 할 경우 환경물품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환경물품 인증기준이 필요하고 검증과정이 필요하므로 이는 현재 현실적으로 적용 불가능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친화상품 식별기준으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관세코드는 HS코드이나 이는 6자리까지만 표준화되어 있으므로 HS코드 6자리를 대분류 기준으로 하되, 해당 HS코드 품목 내에서 구체적 환경친화상품을 특별표기(Ex)하는 방식으로 표시하였다. HS코드 6자리 기준의 품목분류는 상품 유형의 분류는 가능하나 일반제품과 환경친화제품을 구별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환경친화상품의 시장개방 타당성은 첫째 우리나라 무역수지를 감안하였다. 검토대상 청정생산제품(59종) 및 에너지·자원관리물품(38종)의 HS코드 6자리 기준 품목별 2002년도 수출·수입액을 조사하여 수입액이 수출액의 2배 이상인 품목은 우리나라 제안품목에서 배제하였다. 두 번째로 검토대상 품목에 대해 해당품목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주요 생산제품의 기술경쟁력을 정성적으로 검토하여 주요 경쟁대상국가 대비 우세, 보합, 열세로 3분류하고 열세라고 평가된 품목은 우리나라 제안품목에서 배제하였다. 세 번째로 품목별 주요 생산업체(매출액 상위 3~4개 업체) 및 관련 단체 등 총 94개 기관을 대상으로 관세인하 찬반 여부에 대해 설문조사 실시하여 관세인하 반대품목은 우리나라 제안품목에서 배제하였다. 이를 위해 94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응답회신 23개 업체(회수율 24.5%)의 의견에 따라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형광등, 도자제품, 연료전지, 열펌프, 풍력발전 등은 개방불가품목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검토기준에 따라 시장개방이 유리한 품목, 점진적 개방가능품목, 개방이 불리한 품목으로 분류한 결과, 청정생산제품의 경우 전체 59종 품목 가운데 37개 품목이 개방가능, 20개 품목이 점진적 개방가능, 2개 품목이 개방불가품목으로 분류되며, 에너지·자원관리물품의 경우 전체 38종 품목 가운데 8개 품목이 개방가능, 6개 품목이 점진적 개방가능, 24개 품목이 개방불가로 분류된다.

표 3-31 환경친화상품 시장개방 타당성 검토결과

A. 청정생산제품

(단위 : 백만달러)

No	구분	HS코드	코드설명	해당 환경물품 (Ex)	수출	수입	무역수지	환경용도	기술수준	업체의견	최종선별
1	추가	271019	경질석유 및 조제품을 제외한 석유와 역청유	생분해성 엔진오일	4,600,808	1,387,184	○	○	△	△	△
2	추가	3208	휘발성 유기용제 페인트 및 바니쉬	천연원료 사용 페인트	117,999	168,997	△	○	○	△	△
3	추가	3209	페인트와 바니쉬 (수성매질에 분산, 용해)	저VOC 페인트 및 바니쉬	17,929	13,879	○	○	○	△	○
4	○	320910	기타 페인트와 바니쉬 (수성매질)	수성 페인트 및 바니쉬	4,452	4,722	△	○	○	○	○
5	○	320990	기타 페인트와 바니쉬 (수성매질)	수성 페인트 및 바니쉬	13,476	9,157	○	○	○	○	○
6	추가	32151	인쇄용 잉크	수성잉크 (저VOC 잉크)	-	-	△	○	○	△	△
7	추가	3401	비누, 유기계면활성제	재활용 비누	17,795	31,273	X	○	△	△	△
8	○	3506	기타 조제접착제	수성접착제	129,382	97,475	○	○	○	△	○
9	추가	381900	유압제동액, 기타 조제유압전동액	생분해성 유압작동유	1,934	576	○	○	○	△	○
10	추가	3921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 쉬이트, 필름, 막, 스트립	생분해성 수지제 필름/시트	464,642	246,737	○	○	○	△	○
11	J	48	지와 판지, 제지용펄프, 지 또는 판지의 제품	재활용 종이	1,692,524	815,920	○	○	○	△	○
12	추가	480710	지와 판지 (내면을 역청물질로 적층한것)	수용성 점착층 종이테이프 및 라벨지	-	-	△	○	○	△	○
13	추가	4818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지	재생 화장지	89,909	30,773	○	○	○	△	○
14	추가	681310	브레이크라이닝 및 패드	비석면 브레이크 라이닝 및 패드	5,460	17,329	X	○	○	△	○
15	추가	6910	도자제의 세면대, 변기 등 위생용품	절수형 대변기 (≤ 6L/flush)	3,568	42,800	X	○	○	○	X
16	추가	6910	도자제의 세면대, 변기 등 위생용품	절수형 소변기 (≤ 4L/flush)	3,568	42,800	X	○	○	X	X
17	추가	7003	주입법, 롤법에 의해 제조된 유리	복층 단열 창유리	109	9,774	X	○	○	△	△
18	추가	700311	주입법, 롤법에 의해 제조된 유리	반사 창유리	-	-	X	○	○	△	△
19	추가	732490	철강제의 기타 위생용품과 부분품	절수형 수도꼭지(자폐, 정량지수식)	2,157	13,499	X	○	○	△	△
20	추가	732490	철강제의 기타 위생용품과 부분품	샤워헤드(개폐식, 즉시지수식)	2,157	13,499	X	○	○	△	△
21	추가	74032	동합금	무연 단련용 황동 (잉곳)	-	-	X	○	△	△	△
22	추가	74032	동합금	무연 주물용 황동 (잉곳)	-	-	X	○	△	△	△
23	추가	8402	증기보일러와 과열수보일러	콘덴싱 가스보일러	331,334	122,717	○	○	○	△	○

24	J	8415	공기조절기	인버터 타입 에어컨	1,311,008	76,797	○	○	○	○	○
25	추가	8415	공기조절기	CFC/HCFC 비사용 에어컨	1,311,008	76,797	○	○	○	○	○
26	J	841590	공기조절기 부분품	에어컨 온도조절기	92,118	19,234	○	○	○	○	○
27	추가	8418	냉장고, 냉동고, 기타 냉장냉동기구	CFC/HCFC 비사용 전기 냉온수기	955,191	95,050	○	○	○	○	○
28	추가	8418	냉장고, 냉동고, 기타 냉장냉동기구	CFC/HCFC 비사용 쇼케이스	955,191	95,050	○	○	○	○	○
29	J	8418	냉장냉동기구	CFC 비사용 냉장고	955,191	95,050	○	○	○	○	○
30	추가	842199	액체, 기체용 여과기와 청정기의 부분품	재보충 공기청정기용 여과재	28,969	102,829	X	○	○	△	△
31	J	842211	가정형 식기세척기	초음파 식기세척기	8,002	3,624	○	○	○	○	○
32	J	842211	가정형 식기세척기	세제절약형 식기세척기	8,002	3,624	○	○	○	○	○
33	J	842211	가정형 식기세척기	물 절약형 식기세척기	8,002	3,624	○	○	X	○	○
34	J	8450	가정형, 세탁소형 세탁기	초음파 세탁기	508,021	25,517	○	○	○	○	○
35	J	8450	가정형, 세탁소형 세탁기	세제절약형 세탁기	508,021	25,517	○	○	○	○	○
36	J	8450	가정형, 세탁소형 세탁기	물 절약형 세탁기	508,021	25,517	○	○	○	○	○
37	J	847170	기억장치	DVD-ROM	1,523,147	1,019,428	○	○	○	○	○
38	추가	850239	기타 발전세트	미세전력 생산용 자가발전기	3,690	39,629	X	○	△	△	△
39	추가	850239	기타 발전세트	자가발전식 리모트콘트롤러	3,690	39,629	X	○	△	△	△
40	추가	850910	진공소제기	원심분리형 전기진공청소기	264,826	20,856	○	○	○	○	○
41	J	850980	가정용의 기타 전기기기 (전동기 자장)	가정용 쓰레기 분쇄기	11,025	22,106	X	○	△	△	△
42	J	851650	마이크로웨이브오븐	자원절약형 전자레인지	723,805	870	○	○	○	○	○
43	J	851660	기타 오븐, 쿠키, 보일링링, 그릴러, 로우스터	유도가열(IH)전기조리 기구	58,375	29,955	○	○	○	○	○
44	J	851679	가정용 기타 전열기기	유도가열(IH)전기밥솥	49,898	23,544	○	○	○	○	○
45	추가	852190	기타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 기기	복합기능 비디오기기 (VCR+DVD)	697,850	44,514	○	○	○	○	○
46	J	852691	항행용 무선기	자동차용 네비게이터	34,533	66,069	△	○	○	△	△
47	J	852812	텔레비전 수신기, 모니터 및 영상프로젝터	PDP TV	1,666,979	115,738	○	○	○	○	○
48	J	852812	텔레비전 수신기, 모니터 및 영상프로젝터	LCD TV	1,666,979	115,738	○	○	○	○	○

49	J	852830	영상 프로젝터	LCD 비디오 프로젝터	186,167	136,096	○	○	○	○	○
50	추가	853931	형광램프 (열 음극형의 것)	저수은함유 형광램프	19,685	28,834	△	○	○	×	×
51	추가	8544	절연전선, 케이블, 기타 전기절연체	할로젠 비사용 전선케이블	668,440	408,043	○	○	○	△	○
52	J	870322	기타 차량, 1000-1500CC (불꽃점화식 엔진)	하이브리드 자동차	2,028,627	1,657	○	○	×	×	×
53	추가	870332	기타 차량, 1500-2500CC (압축점화식 엔진)	커먼레일 디젤 승용차	804,278	6,624	○	○	△	△	△
54	J	870390	기타 차량	전기자동차	942	2,461	×	○	×	×	×
55	J	890120	탱커	이중 유류탱커	5,196,947	83,122	○	○	○	△	○
56	J	901380	액정 디바이스 및 기타의 광학기기	평면 패널 디스플레이 장치	245,137	359,705	△	○	○	○	△
57	추가	903300	광학기기 등의 기타 부분품	재생 토너카트리지	7,538	17,387	×	○	△	△	△
58	추가	903300	광학기기 등의 기타 부분품	재생 잉크 카트리지	7,538	17,387	×	○	△	△	△
59	추가	950790	기타 낚시용구	세라믹 낚시추	52,959	24,093	○	○	△	△	△

## B. 자원·에너지 관리제품

No	구분	HS코드	코드설명	해당 환경물품 (Ex)	수출	수입	무역수지	환경용도	기술수준	업체의견	최종선별
1	추가	151800	동식물성 유지, 분획물, 혼합물	바이오디젤유	7,204	15,914	×	○	△	△	×
2	○	220100	광수, 탄산수 (감미료나 향미 첨가 안한것)		-	-	△	×	△	△	×
3	○	220710	에틸알코올, 변성에틸알콜과 기타 변성주정		710	43,962	×	×	×	△	×
4	○	280110	염소		6	2,170	×	×	×	△	×
5	○	285100	기타 무기화합물, 액체공기, 압축공기, 아말감	순수(증류수, 전도로수)	462	1,688	×	×	×	△	×
6	○	290511	메탄올 (메틸알코올)		527	184,667	×	×	×	△	×
7	○	38151	서포트된 촉매	반응온도조절용 촉매(지지체 포함)	-	-	△	×	×	△	×
8	추가	391510	에틸렌 중합체의 웨이트, 페어링, 스크랩	페 페트병(PET bottle)	736	41	○	○	○	△	○
9	추가	391520	스티렌 중합체의 웨이트, 페어링, 스크랩	페 EPS를 감용화한 잉곳	681	129	○	○	○	△	○
10	○	391400	이온교환수지 (에틸렌 또는 천연중합체 기재)		2,714	19,762	×	×	×	△	×
11	J	630900	중고의류 및 기타 중고섬유제품	재활용 원료	85,541	6,383	○	○	○	△	○
12	J	6310	넝마, 끈, 코오디지, 로우프, 케이블의 폐물	재활용 원료	13,865	558	○	○	○	△	○
13	O,J	700800	유리제의 복층절연유니트		416	381	○	○	○	△	○

14	O	701990	기타 유리섬유 및 그 제품		8,853	14,602	△	O	O	△	△
15	A,J	841011	동력 1,000KW이하의 수력터어빈과 수차		3	114	X	O	O	△	X
16	A,J	841012	동력 1,000KW-10,000KW 수력터어빈과 수차		-	3	X	O	O	△	X
17	A,J	841013	동력 10,000KW초과의 수력터어빈과 수차		-	-	△	O	O	△	X
18	A,J	841090	수력터어빈과 수차의 부분품 (조정기 포함)		3,007	1,571	O	O	O	△	O
19	J	841381	기타 액체펌프	열펌프, 풍력발전펌프	10,780	154,663	X	O	X	X	X
20	J	841480	기타 기체펌프와 기체압축기, 기타 후드	열펌프	70,003	209,149	X	O	X	X	X
21	O	841911	가스식의 즉시식 물가열기 (비전기식)		1,658	5,481	X	O	O	△	X
22	O,A,J	841919	기타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 (비전기식)	태양열 온수기	918	825	O	O	O	△	O
23	O,J	841950	열교환기		5,226	4,025	O	O	O	△	O
24	O,J	841990	열교환기의 부분품		1,694	3,734	X	O	O	△	X
25	A,J	842220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 또는 건조용 기계	용기 재활용 장치	448	1,073	X	O	△	△	X
26	A	847410	선별기, 분리기, 세척기 (광물질 처리용)	폐자재 재활용 장치	117	178	△	O	△	△	△
27	A,J	847432	역청질과 광물성재료의 혼합기	아스팔트 재활용 장치	-	-	△	O	△	△	△
28	J	847982	혼합기,반죽기,파쇄기,시프팅기,균질기,유화기	기타 재활용 장치	1,395	3,335	X	O	△	△	X
29	A	847990	기타 기계류 부분품기기의 부분품		294,036	379,924	△	X	△	△	X
30	A,J	850231	풍력의 것 (발전세트)		57	1,928	X	O	X	X	X
31	J	850680	기타의 일차전지	연료전지	2,669	8,980	X	O	X	X	X
32	J	851610	전기식의 즉시식, 저장식 물가열기	열펌프 이용 온수기	33,877	14,969	O	O	X	X	X
33	O,J	853931	형광램프 (열 음극형의 것)		19,685	28,834	△	X	O	△	X
34	O,A,J	854140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및 발광다이오드	태양전지	158,525	458,073	X	O	O	△	△
35	추가	854390	전기기기의 부분품	Standby Power 방지용 타이머	17,909	51,380	X	O	△	△	△
36	O	902810	기체의 적산용 계기와 그 검사용 계기		5,118	10,465	X	X	△	△	X
37	O	902820	액체의 적산용 계기와 그 검사용 계기		1,376	6,053	X	X	△	△	X
38	O	903210	온도 자동조정용 기기		16,264	18,007	△	O	O	△	△

주) 무역수지 : O (무역흑자) △ (보합세) X (무역적자)  
환경용도 : O (용도부합) X (용도부적합/범용물품 포함)  
기술수준 : O (우위) △ (보합) X (부족) - 주요 생산자 기준  
업체의견 : O (시장개방 희망) △ (무응답, 유보) X (시장개방 반대) - 주요 생산자 기준  
최종선별 : O (개방가능) △ (점진적 개방가능) X (개방반대)

### 3.7 환경상품 관세인하 무역효과분석

#### 3.7.1 관세인하 논의현황

환경상품 무역자유화 의제는 현재 무역환경위원회(CTE)에서 환경상품의 정의문제에 국한되어 논의되고 있으나 환경상품이 비농산물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비농산물시장접근 협상과도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 그러나 환경상품에 대한 관세인하방식을 비농산물시장 접근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차별화된 관세인하방식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명확히 논의된 바 없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은 비농산물시장접근그룹(NAMA)에서 여타 비농산물과 동일하게 환경상품을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으며, 반면, 미국은 환경상품에 대해서 2010년까지 완전 무세화를 주장한 경우가 있을 뿐이다.

#### 3.7.2 우리나라 관세영향

환경상품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APEC 및 OECD 리스트에 포함된 총 183개 품목(HS 6단위)과 우리나라 비교우위 환경친화상품 31개 품목(HS 6단위)의 현행 평균관세율은 7.8% 수준이다. HS 10단위로 부과되고 있는 우리나라 관세율에 따르면 소수의 반도체 제조용 부품, 산업용 원부자재 등을 제외하고는 일률적으로 8% 관세 부과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환경상품의 주요 수출시장은 미국, 중국, 일본 및 동남아 국가로 볼 수 있다. 2002년도 APEC·OECD 리스트 183개 품목의 총수출액 5,188백만달러 가운데 고관세 국가군(동남아, 중국, 기타)에 대한 수출은 3,180백만 달러로 61.3%를 차지한다. 또한, 2002년도 환경친화상품(31개 품목)의 수출액은 HS 6단위 품목 수출액 총 11,308백만달러 가운데 5% 미만(565백만달러 수준)일 것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고관세 국가군(동남아, 중국, 기타)에 대한 수출은 54.9%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NAMA 관세인하공식이 환경상품에 대해 적용된다고 가정할 경우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시장 가운데 중국, 인도, 동남아 등 고관세 개도국의 관세인하를 통한 수출증대가 기대된다.

표 3-32 오염방지물품 수출시장

구분	미국	동남아	중국	일본	유럽	기타
금액(백만불)	1,115	1,043	991	571	322	1,146
비중(%)	21.5%	20.1%	19.1%	11.0%	6.2%	22.1%

※ 동남아에는 인도와 대만 포함하여 집계

표 3-33 환경친화상품 수출시장

구분	미국	EU	중국	동남아	일본	기타
HS 6단위 상품수출	2,363	2,063	1,753	1,568	671	2,890
친환경상품 수출액추정	118	103	88	78	33	145
비중(%)	20.9%	18.2%	15.5%	13.9%	5.9%	25.6%

※ 동남아에는 인도와 대만 포함하여 집계  
친환경상품수출액은 HS 6단위 기준 수출액의 5% 가정

환경상품 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0.3이라고 가정하고 우리나라 관세 8%가 철폐될 경우 수입액은 2.4% point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OECD·APEC 분류 환경상품(183종) 수입액은 현행 10,827백만달러에서 260백만달러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환경친화상품(31종) 수입 추정액은 현행 164백만달러에서 4백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외국가의 환경상품 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도 0.3이라고 가정하고 각국의 관세가 철폐된다고 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 개도국 수출액은 약 3~4.9% point, 대 선진국 수출액은 약 0.8~1.3% point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OECD·APEC 분류 환경상품(182종) 수출액은 현행 5,188백만달러에서 약 150백만달러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개방가능 환경친화상품(31종) 수출 추정액은 현행 565백만달러에서 약 97백만달러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34 APEC·OECD 분류 환경상품 수출증가예상

구분	미국	동남아	중국	일본	유럽	기타	계
현행(백만불)	1,115	1,043	991	571	322	1,146	5,188
관세인하(%P)	3.6	15.0	16.3	2.7	4.3	10.0	8.65
증액(백만불)	12.0	46.9	48.5	4.6	4.2	34.4	150.6

※ 동남아에는 인도와 대만 포함하여 집계

표 3-35 개방가능 환경친화상품 수출증가예상

구분	미국	유럽	중국	동남아	일본	기타	계
금액(백만불)	118	103	88	78	33	145	565
관세인하(%P)	3.6	4.3	16.3	15.0	2.7	10.0	8.65
증액(백만불)	1.3	1.3	4.3	3.5	0.3	4.4	15.1

※ 동남아에는 인도와 대만 포함하여 집계  
친환경상품수출액은 HS 6단위 기준 수출액의 5% 가정

※ 가격탄력성 추정의 근거

- 가격탄력성 = 수요변화율 / 가격변화율
- 관세가 8%에서 3.1%로 인하될 경우 상품수입가격이 4.9% point 하락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에 따라 탄력성 0.3이 적용되면 1.47% point 수입수요 증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 단, 상품별 가격탄력성에 대한 자료가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공산품 가격탄력성을 평균 0.3이라 가정하고 분석하였음. 면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품목별 가격탄력성 산출할 필요 있음
- 한국은행 수출입 행태보고서(2001)에서는 우리나라 주요산업의 수출단가에 대한 수출탄력성을 0.12~0.50 (기계류 0.50, 전자제품 0.29)에 분포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수입단가에 대한 수입탄력성 0.06~0.77 (기계류 0.11, 전자제품 0.08)에 분포하는 것으로 추정

결론적으로 환경상품 관세철폐가 적용된다면 단기적으로 무역적자가 심화될 가능성도 있으나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환경상품 주력수출시장인 개도국의 시장개척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 3.8 환경상품협상 대응방안

DDA 환경상품협상은 회원국간에 개방요구서과 양허안을 교환하여 품목별로 협상하는 양허요구 및 수용(request & offer) 방식이 아니라 환경상품에 대한 정의를 기반으로 해당품목을 일괄 개방하는 방식으로서 환경상품정의에 대한 논리적 근거마련이 우선시 되는 협상방식이므로 협상논리의 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에 APEC 및 OECD 리스트 품목별 우리나라 산업경쟁력 분석결과, 총 183개 품목 가운데 개방가능한 품목은 그중 38%인 69개(일부개방가능품목 포함시 95개)에 불과할 정도로 대부분의 환경상품이 선진국과의 기술경쟁력 또는 개도국과의 가격경쟁력에서 열위를 보이고 있다. 대기, 수질, 폐기물, 계측기 등 다양한 상품군별로 수용가능성이 20~50%에 불과하나, 우리나라 국제경쟁력 열위품목을 제외하고 경쟁력 우위품목만을 환경상품으로 정의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친화상품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전반적 제품 환경경쟁력 수준이 낮으며, 따라서 기능 및 재질이 환경친화적인 신기술을 적용한 국제경쟁력 우위품목을 발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다. 환경친화적 재질특성을 가진 제품으로서 재활용제품, 천연소재제품, 생분해성제품 등은 대부분 국내 틈새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체 생산품목으로서 무역수지 기여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며, 대체에너지상품으로서 태양력, 풍력, 지열 등을 활용하는 제품 및 대체에너지 기술설비 등도 국내 기술수준이 낮고 내수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생산기반이 미약하다. 주력수출품목 가운데 하나인 자동차 산업의 경우 현재 친환경자동차기술인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등의 신기술이 연구개발단계로서 일본, 미국 등의 이미 상용화된 친환경자동차에 비해 경쟁력이 열위상태이다. 다만 생활화학용품 및 건축제품류의 경우 최근 인체유해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생태계 유해물질 배출이 적은 페인트, 바닥재, 건축자재, 세제, 섬유류 등의 출시가 급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수출주력품목 가운데 전기·전자제품류는 대기업의 환경기술투자 노력에 힘입어 최근 에너지효율기술, 자원절약기술, 유해성분대체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개발이 증가하는 추세로서 구조적·기능적 특성은 일본 가전제품들과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 3.8.1 협상대응논리 개발

##### 기초리스트 선택의 문제

환경상품협상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OECD 및 APEC 리스트를 대상으로 시장 개방 가능품목 포함비율을 살펴볼 때 APEC 리스트가 유리하나, 순수출액 기준에서는 OECD 리스트가 무역수지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OECD 리스트는 품목수는 많으나 화학약품류 등 우리나라 비교열위 저가품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APEC 리스트는 무역액이 비교적 많은 계측기기류가 대폭 포함되어 있어 우리나라 순수출 손

실이 높게 나타나나, 이들 품목 가운데 많은 부분이 관세인하 기시행 품목이므로 추가적인 관세인하 손실이 적다고 판단된다.

표 3-36 APEC·OECD 리스트 비교

구분	APEC 리스트	OECD 리스트
대상품목(HS6단위)	109개 품목	161개 품목
국내 개방가능품목	47개 품목	48개 품목
국내 개방불가품목	62개 품목	113개 품목
수출액 (2002년)	3,470백만불	7,619백만불
수입액 (2002년)	2,818백만불	6,294백만불
순수출 (2002년)	△4,149백만불	△3,476백만불

또한 OECD 리스트는 HS 6단위로만 기술되어 있으나, APEC 리스트는 HS 6단위를 기초로 하되, HS 6단위 품목 가운데 특정 환경상품만을 개방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해 지정품목 별도표기(Ex heading)토록 하고 있다. 즉, APEC 리스트에 따르면 Ex 표기물품에 대해서만 환경상품으로 인정하고 HS 6단위 전체를 환경상품으로 정의할 필요가 없으므로 APEC 리스트와 같이 Ex 표기물품에 대해 한정하여 관세인하를 실시할 경우 HS 6단위 전체를 개방하는 경우에 비해 국내 무역수지 기여도 차원에서 우월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 Ex 표기물품에 대해서는 자국에서 HS 6단위 이상 세부품목분류를 하거나 별도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통관관리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범용상품 문제

환경용도 이외로도 활용되는 범용상품을 환경상품 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 환경상품의 범위가 대폭 축소되어 우리나라 무역적자 최소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나, 이를 위해서는 상품별 환경·비환경 활용도를 따로 조사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환경상품 리스트에서 범용상품을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제한된다. 범용상품을 제외할 경우 APEC 리스트상의 대부분의 계측기류, OECD 리스트상의 화학약품류, 그리고 펌프류, 밸브류, 용기류 등의 보조용품 및 부분품이 제외되어야 한다.

그러나 범용상품을 환경상품 리스트 자체에서 제외하기 위한 근거자료의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대안으로 회원국 합의에 의해 환경전용상품과 범용상품을 차별하여 협상하는 방안과 각국 세관에서의 최종용도증빙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

최종용도증빙(end-use certification) 방법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입자재에 대한 관세환급제도에서와 같이 수입업체가 수입물품이 환경용도로 활용되었음을 증빙하고 관세인하 내지 관세인하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법이나, 이는 세관행정비용의

증가를 수반한다. 또 다른 대안은 미국이 제안한 core & complimentary 방식과 같이 범용도가 높은 상품을 회원국간 합의에 의해 보조리스트로 따로 구분하고 이에 대해서는 관세인하폭을 줄이거나, 개방범위를 축소하도록 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바 이것이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한 방안이라 판단된다.

### 친환경상품 문제

우리나라의 일반 공산품의 환경경쟁력 수준은 전반적으로 선진국(특히, 유럽 및 일본)에 비해 열위에 있으나, 선진국 소비자의 친환경적 소비패턴에 부응하고 경쟁 개도국 대비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필수적인 요건이다. 특히,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 등 국내 수출주도 대기업의 제품에 대한 환경투자가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차후 이들에 대한 수출대상국의 관세인하혜택 등 수출 인센티브가 마련될 필요 있다.

그러나 현재 단계에서 전면적인 환경친화상품의 시장개방이 합의될 경우 현재 선진국 대비 경쟁력 열위에 있는 주요품목(예: 친환경 자동차, 친환경 섬유제품, 친환경 중간소재 등) 및 친환경농산물 등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환경친화상품의 경우 정의상의 문제가 매우 큰 걸림돌로서 환경친화성의 판단 기준 등 환경친화상품의 정의에 대한 개념적 틀(conceptual framework)을 제대로 정립함으로써 각국의 협상 이해관계에 대한 예측능력을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차후 협상의 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판단된다. 즉, 환경친화상품을 환경상품으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환경친화성의 판단기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바, 다음과 같은 환경친화성 판단기준 및 적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및 인식공유가 필요하다.

- **상품의 재질, 구조, 기능방식의 환경친화적 특성**  
(예) PDP TV가 자원투입량은 일반 CRT TV 보다 절약되나 전력소비가 많다면 이를 환경친화적이라 볼 것인가?  
(예) 재활용제품의 경우 재활용소재함유율이 몇 %이면 환경친화적이라 볼 것인가?
- **상품 사용단계 및 폐기단계에서의 상대적 환경성과**  
(예) 에너지절약형 냉장고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소비효율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가?  
(예) 에너지효율성의 측정방법은 무엇으로 할 것이며 측정결과의 확인은 누가할 것인가?
- **상품 생산단계에서의 공정 특성 또는 상대적 환경성과**  
(예) 생산단계에서의 환경영향에 따라 시장접근상의 차별을 두는 것이 WTO 기준 무역규범과 어떻게 합치될 수 있는가?

(예) 생산단계 환경영향을 누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제3자에 의한 제품 친환경성 인증

(예) 제3자 인증제도가 국제 표준화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평가의 신뢰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

(예) 관세인하혜택을 받기 위해 인증비용을 기업이 추가 부담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따라서 친환경상품은 환경친화성 판별기준에 대한 연구를 병행하여 장기적 검토의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검토방식으로서 국제적으로 환경영향이 크고 무역기여도가 높은 일부 품목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비용효율적 환경친화성 판단기준을 협의·도출함으로써 무역자유화 품목을 넓혀 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 판단된다.

### 핵심·보조리스트 차별화 문제

미국이 제안한 핵심·보조리스트 별도작성 및 차별화된 시장접근방식 적용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범용상품문제, 환경친화상품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연한 협상방식이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추가적인 합의가 전제되어야 우리나라 이해관계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 핵심리스트에는 회원국간 합의가 이루어진 품목을 포함한다고 하였는데, 합의를 도출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 보조리스트는 회원국간 완전한 합의가 없더라도 어느 정도 인식공유가 이루어진 상품을 포함한다고 하였는데, 그러한 상품의 선별기준이 무엇인가?
- 보조리스트 해당상품에 대해 각국이 X% 만큼 자체 선정하여 시장개방 하도록 하였는데, X%를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가?
- 개도국에게는 X%를 낮추어 줄 수 있도록 하였는데, 개도국 지위의 인정수준과 어느 정도까지 X%의 감축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 개도국에게 관세인하 유예기간을 인정해 줄 것인가?

핵심·보조리스트 차별화 협상방식이 채택된다고 할 경우,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기회요인은 첫째, 핵심리스트에 범용상품 등을 배제하여 무역손실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둘째, 보조리스트에 우리나라 관심품목을 추가할 수 있다는 점, 셋째, 세부 상품분류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반면에 위기요인으로서는 첫째, 보조리스트는 상호주의가 보장되지 않음으로 인해 우리나라 관심품목이 상대국에서는 개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둘째, 친환경 판단기준에 대한 합의 없이 농산물,

천연자원 등 개도국 관심품목이 대폭 반영될 수 있다는 점, 셋째, 보조리스트 가운데 시장개방대상 품목을 각국이 스스로 선정하여야 하므로 산업계와 정부간 합의도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핵심·보조리스트 차별화 협상방식을 활용할 경우 우리나라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협상대응논리가 바람직할 것이라 판단된다. 첫째, 핵심리스트는 APEC 리스트를 근거로 범용성 문제가 적다고 회원국이 인정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작성하고 HS 6단위의 포괄성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Ex 표기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나라 무역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둘째, 보조리스트는 상호주의가 보장되지 않는(특히 중국 및 개도국 시장개방 가능성이 낮은) 품목이므로 우리나라 관심품목의 수출증진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의무개방품목(x%) 선정시 선택가능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기능 및 구조가 친환경적인 상품 가운데 주력 수출품목, 시장개방으로 인한 국내 산업영향이 미미한 품목, 수출용 상품에 투입되는 원부자재를 집중 제안하되, 국제 합의가능성이 낮으며 국내산업계에 불리한 영향이 있는 PPM 기반 친환경상품(유기농산물 포함)은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기타 고려사항

환경상품 시장개방협상은 어떠한 협상방식을 취하던 우리나라 전략 수출대상국인 중국, 동남아 등 개도국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는 방안을 지지할 필요 있으며, 개도국 우대조치가 최소화되는 협상방안 지지할 필요가 있다. 즉, 개도국 관세인하 유예기간 설정이나 시장보호품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지지하되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등의 대안을 통해 개도국의 참여를 유인하는 방안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국이 제안한 바와 같이 선진국과 개도국간 서로 차별화된 환경상품리스트(common & development list)를 기초로 협상하는 방식을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에게는 불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 리스트는 OECD나 APEC 리스트에 열거된 포괄적인 상품을 전면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개도국 리스트는 일부상품에만 국한되도록 함으로써 개도국은 시장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으나, 선진국은 폭넓은 시장개방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 3.8.2 후속추진사항

#### 환경상품리스트 제안

현재 환경상품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 가장 큰 쟁점은 세부품목 조정 보다는 환경상품의 판단근거에 대한 논리설정문제로서 우리나라에서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국제적으로 설득가능한 논리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개방 가능성 측면에서 수용가능성이 높고 무역자유화 대상품목으로 APEC 회원국간 합의에 의해 도출된

APEC 리스트를 기초로 하되, 환경용도가 명확한 세부품목에 대해 Ex 표기하여 이를 시장개방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자는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OECD나 APEC 리스트 이외에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증진 품목으로서 구조적·기능적 친환경성이 널리 인정되는 친환경제품을 따로 선별하여 추가 리스트로 제안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단, 현재 미국이나 중국 등이 기술적 정의문제를 생략할 수 있는 협상방식(modality)을 제안하고 있는바, 회원국의 협상동향을 관찰하면서 협상방식과 연계하여 우리나라 관심품목으로서 PPM 기준과 연계되지 않은 친환경 전기·전자제품류를 보조리스트에 포함하자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제안과 같이 보조리스트를 활용할 경우 일부 품목만 자체 선정하여 시장개방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비록 보조리스트가 우리나라 주력수출시장인 개도국 시장개방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나, 개방불가품목(자동차, 농산물 등)에 대한 시장보호효과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 환경친화성 평가기준 연구제안

환경상품 가운데 환경친화상품의 경우 향후 우리나라 수출경쟁력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중장기적으로 이에 대한 국제적 협의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비용효율적인 평가기준이 필요하나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평가기준이 없으며, 환경친화상품에 대한 인식공유가 진전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 논의를 진전시킨 이후 환경상품협상에서 이를 처리하는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회원국간 인식공유를 도출할 수 있는 환경친화상품은 대체에너지상품, 천연소재상품, 재활용상품 등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 국한되므로 1차적으로 제품 자체의 기능방식이나 재질 자체의 특성이 환경친화적이라고 널리 인정받는 일부 제품을 우선 환경친화상품으로 분류하고 이를 무역자유화대상으로 취급하는 방안을 지지하되, 나아가 환경친화상품에 대한 인식공유를 위한 전문가회의를 OECD, UNEP, UNCTAD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전문가작업그룹을 통해 국제무역규모가 크고 지구환경영향이 큰 품목을 선정하여 동 품목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환경성과 측정 및 평가기준을 정하여 동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무역자유화 대상으로 취급하는 방식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국제무역자유화 환경친화품목에 대한 검증방법 및 평가기준 등 기술적 사항은 기존의 ISO, IEC 등 국제표준화기구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즉, WTO 환경상품협상은 회원국간 무역자유화 환경친화상품 평가대상품목을 협의·선정하는 작업을 주로 하고, 평가기준 등 기술적 문제는 전문화된 국제기구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환경상품 협상의제 산업계 홍보**

환경상품 및 친환경상품에 대해 국제적으로 시장개방협상이 확대될 것임을 산업계에 적극 홍보하고 이에 따라 친환경상품 생산업체를 포함한 산업계와 연계한 협상대책기구의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상품 시장개방 협상대응전략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대기업, 환경전문가, 대외기구(해외공관, KOTRA 등)와의 공식적 네트워크 구축하고 이를 통해 국내 비교우위 환경상품 발굴 및 협상전략 수립을 선진국의 제품 환경규제 및 표준화 동향에의 대책마련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환경상품 국제경쟁력 강화대책 마련**

우리나라 환경산업(설비, 서비스, 부품 포괄)의 규모, 기술수준, 해외진출 등에 대한 기초 통계자료를 구축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오염관리용도 또는 에너지·자원관리용도 환경상품은 대부분 환경산업체가 플랜트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부분품으로 수요되므로 구체적으로 통계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DB 구축방안 마련 필요하다.

나아가 우리나라 환경산업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육성 환경상품 세부품목을 평가·선정하고 R&D 지원대책 수립하여 국가 환경연구개발지원사업(청정기술개발사업,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등)을 활용하여 환경상품 시장개방에 따른 중점 연구개발 필요품목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국내 친환경상품 국제경쟁력 비교 분석 연구 및 시장개방 대응 전략품목 발굴 작업을 실시하여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협상 대응카드를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제품 환경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기술·경영시스템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4. 협상의제 3-b: 환경서비스 시장개방 협상

### 4.1 각료선언 31조 3항

DDA 협상의제 3번째 항목은 환경상품에 대한 무역장벽 완화 및 철폐 등 상품자유화에 대한 내용으로 각료선언문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표 3-37 Para(iii) 환경상품 및 서비스 자유화

<< Paragraph 31(iii) >>

무역과 환경의 상호 보완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각각의 결과를 손상시키지 않으며 다음의 협상안에 동의한다.

(iii) 환경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세·비관세 장벽의 감소 또는 철폐

### 4.2 협상동향

#### 4.2.1 서비스 협상원칙

WTO 서비스 협상은 '94년 UR 서비스 협상 합의에 따라 '00년 2월부터 서비스 이사회 특별양허위원회에서 환경서비스를 포함한 12개 서비스 부문에 대해 협상이 시작되었다. DDA 서비스 협상에서 일반적으로 합의된 사항은 다음 표 3-11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표 3-38 DDA 서비스협상의 포괄적 합의사항

구 분	주요 합의 내용
협상목표	▪ 더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점진적으로 추진
협상범위	▪ 모든 서비스 분야를 포함
협상방식	▪ Request & Offer 방식을 원칙, 복수 및 다자간 방식 가미
협상일정	▪ 일반이사회 결정에 따라 서비스이사회에서 진행
개도국 우대	▪ 개도국에 대한 신축성 부여 등 개도국 관심사항을 폭넓게 반영

#### 4.2.2 제1차 양허제안서 교환

이전의 제4차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서비스 협상의 세부일정<sup>37)</sup>에 따라 우리나라도 협상일정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 2002년 6월 30일 자로 주요 아시아 9국에 대한 시장 개방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1차 시장개방요구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환경 서비스 시장이 형성단계에 있는 중국 및 동남아국가를 중심으로 제도적 시장진입장벽을 감축한다는 기본입장 하에 중국, 태국,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 파키스탄 등 9개국을 대상으로 시장개방요구서를 제출하였다.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요구서 대상국 선정시 고려된 사항<sup>38)</sup>으로 첫째 선진국 환경서비스 시장이 현재 시장규모는 크나 대부분 포화상태에 및 개방상태에 있다는 점, 둘째로 개도국은 현재 시장은 작으나 성장성이 연평균 10~15% 내외로 높은 점, 셋째로 우리의 대외경쟁력을 고려하고 해외진출가능성 및 지정학적 인접성, 협상력 등을 볼 때 동아시아 개도국을 선정하여 개방요구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우리나라가 접수한 시장개방요구서는 EU, 미국, 일본, 캐나다, 중국,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브라질, 대만, 멕시코, 칠레 등 13개국으로부터 접수하였으며, 음용수 집수·정수·배수, 중수도, 폐수처리, 폐기물처리, 배기가스 정화, 소음진동 저감, 토양오염 및 지하수 정화·복원서비스, 생물 다양성과 경관보호, 기타 환경보호서비스 등에 대해 개방을 요구하였다. 이에 우리나라의 1차 시장개방안은 일정정도 경쟁력을 확보한 UR 당시 개방분야를 중심으로 제한사항을 완전 폐지하는 선에서 1차 개방안을 마련하였다.

1차 개방안<sup>39)</sup> 주요내용은 ① 산업폐수처리 공급자수 제한 폐지, ② 산업폐기물처리 경제적 수요심사 및 영업구역제한 폐지, ③ 환경영향평가 경제적 수요심사 폐지, ④ 배기가스 정화 및 ⑤ 소음저감 서비스의 건설분야 제외 단서 삭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경쟁력이 취약한 토양오염복원 분야는 합작형태만을 허용한다는 방침아래 협상 전략상 1차 개방안에서 제외하였고 정부가 직접 혹은 민간위탁에 의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sup>40)</sup>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우리나라의 1차 양허제안서<sup>41)</sup>는 실국·협회·단체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제외하고 합의된 부분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개방요구서를 위주로 작성원칙은 명시적 합의가 없었던 관계로 W/120 상의 4개 부문을 기준으로 관련 CPC분류번호를 병

37) 1차 시장개방요구서 제출 - 2002년 6월 30일, 1차 시장개방제안서 제출: 2003년 3월 31일

38) 선진국 시장규모 - 민간부문 50%, 세계시장의 90% 이상 점유, 개도국 규모 - 세계시장의 약 7% 내외, 연평균 성장률 10~15% 내외, 우리나라 대외경쟁력 - 선진국의 60~70% 수준, 핵심부문은 해외의존도 높음. ;WTO 도하개발아젠다 환경서비스시장 양허방안 연구, 2003, 환경부. "환경서비스부문 주요 교역국의 양허 현황 조사연구", 2002. 환경부, "환경서비스 시장개방 확대의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2000, 환경부. 참조

39) 1차 DDA 환경서비스 양허제안서는 내용 전문(국문)은 부록 #2 참조

40) 생활폐수 및 폐기물 처리, 음용수 처리/공급, 위생 및 유사서비스, 자연 및 경관보호 서비스 등

41) 주요국(22개) 1차 환경서비스 양허안은 부록#3 참조

기한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주요 부문별 살펴보면, 시장접근제한에 대한 MA 모드 1의 Unbound 제약에 대해 “MA 모드 1의 unbound\* 제약“은 기술적 실현 불가능성에 따라 기재한 것이고, 현재 모드 1의 공급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그대로 유지하였다.

대만, 노르웨이, 중국, 브라질, EC, 뉴질랜드, 미국, 호주, 스위스, 일본 등이 모두 언급하며 삭제를 요구한 서비스 공급자수 25개 제한에 대해서 산업폐수 부문의 서비스공급자(면허)수 제한이 현재 철폐('96)되었으므로 관련국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산업폐수부문에 대해서 특히 노르웨이와 브라질은 직접언급하며 범위의 확대 요구하였고 그 외 대다수 국가들이 양허범위의 확대를 요구하였으나 폐기물부문으로 국한하였는데 그 이유로 생활계 오수, 분뇨, 축산폐수의 경우 지자체장 책임하의 공공서비스 영역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따라 국내의 민간자본참여가 가능해지는 등 공공서비스공급자의 성격에 변화가 있으나, 아직 영리차원의 민간서비스로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어 1차양허(안)에서는 이를 반영치 않고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뉴질랜드, 대만, 노르웨이, 일본, 중국, 브라질, EC, 미국, 호주, 스위스 등이 모두 삭제를 요구한 경제적 수요심사제한에 대해 산업폐기물 부문 및 환경영향평가부문의 모드 3(영업허가)에 대해서는 경제적 수요심사 제한이 폐지되었거나, 국내에 해당 범규가 없으므로 관련국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음을 밝혔다.

관할구역내 폐기물 수집·운반만 허용 부문은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영업구역제한이 있으나, 산업폐기물 부문에 대해서는 영업구역 제한이 폐지되었으므로 관련국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음을 밝혔다.

건설분야 제외에 대해서는 CPC 배기가스정화 및 소음방지 부문에는 건설분야가 애초에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복하여 기재할 필요가 없으므로 해당 제약조건을 삭제할 수 있다.

자연경관보호 제외부문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비스 가운데 자연경관보호 관련 부분은 국립공원관리 등 여전히 공공서비스 영역으로 남아있어 양허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제한사항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4.2.3 양자협상 진행

우리나라는 1차 양허안 제출 후 2003년 5월과 7월에 미국, 일본, EC,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 5개국과 양자협상을 진행하였다. 동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민간제공 서비스 대부분을 개방하게 됨을 강조하고 미개방분야는 정부 제공 공공서비스로써 개방불가의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또한 인도네시아 등 대상 개도국에 대해서는 환경서비스 시장개방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각국의 환경서비스 2차 양허제안서는 5차 각료회의시 2004년 4월까

지 작성하는 것으로 논의 되었으나 협상 결렬로 인해 차기 일반이사회에서 재논의 될 예정에 있다.

#### 4.3.1 주요국 양허제안서 검토<sup>42)</sup>

DDA협상의 환경서비스 부문은 UR 당시<sup>43)</sup>의 전체적 형식과 유사하나 환경서비스 시장 확대 및 세분화를 반영하면서 소부문이 보다 명시적으로 구분되어졌다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UR당시 우리나라에 양허요청을 했던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DDA 환경서비스협상에 제출한 1차 양허제안서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먼저 미국의 경우 시장접근이나 내국민 대우 항목에 대한 mode 1,2,3,4의 내용에 큰 변화가 없었다. 다만 UR시 제출된 양허안에서 기타부문으로 처리했던 항목을 보다 세분화하여 대기질 향상을 위한 배기가스 및 기타 배출저감서비스, 오염된 토양과 물의 복구, 처리, 소음경감, 자연 및 경관보호 서비스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EC는 UR 당시 제안서와 동일한 양허안 항목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개방 불포함을 명시하였고, EC멤버내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양허안 내 별도로 표기를 하였다. 예를 들면 고품/유해 폐기물 부문의 내국민 대우제한에 대해 mode 4에서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 사항을 이외에 양허불가 입장이나 핀란드는 ‘없음(None)’으로 별도 표기를 하였다.

중국은 배기가스 정화서비스, 소음 저감 서비스, 자연과 경관보호 서비스 등 보다 세분화된 양허안을 제시하였으며, 시장접근 제한에 대한 Mode1에서 환경컨설팅 부분을 양허안에 명시하였다. 이 부분은 UR당시 양허없음(Unbound)로 제시하였으나 이번 DDA환경서비스 협상에서 양허안으로 추가하여 좀더 유연한 협상안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전 부문에 대해 환경의 질 모니터링 및 오염원 검열은 배제한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일본은 UR때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양허안 내 하위부문 협상에 대해 합의되는 새로운 분류에 따라 양허가 이루어지도록 요청하였다. 즉 하위부문 분류에 대해 멤버들 간 논의 및 합의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또한 폐기물 처리부문의 시장접근 항목에서 mode3에 대해 UR제안서에서 표기한 바다, 선박으로부터 폐유처리 서비스 공급자 면허 제한안을 폐기하고 전면 양허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내국민 대우제한에 대해서도 mode3에대한 전면 양허안을 제시하여 환경서비스 부문에서 보다 개방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 외에 UR 당시 우리나라에 양허요구안을 제출한 국가 중, 캐나다는 UR과 동일한 양허안을 제출하였고, 호주의 경우 전 부문의 mode1에 대해 ‘양허없음’을 명시하여 UR

42) 각국의 양허제안서 전문내용은 부록 #2 참조

43) UR 당시 환경서비스 양허안에 대해서는 “ WTO 도하개발아젠다 환경서비스시장 양허방안 연구”, 2003, 환경부, pp. 40~ pp. 62 내용 참조

보다 더 보수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mode1에 대해서 양허없음 또는 기술적 제약으로 인한 양허없음을 제안하였으나 태국, 홍콩, 파나마, 폴란드 등은 시장접근제한의 mode 1에 대해 전면 양허를 표기하였다.

전반적인 DDA 환경서비스 1차 양허안을 종합해보면, 환경서비스 소부문이 UR당시 보다 세분화 및 확대 되었고, 각국은 이에 맞게 좀더 개방적인 양허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개도국과 선진국간 시장 차이를 반영하듯 개도국은 특정 부문에 대해 양허를 하는 입장이고 선진국은 전반적인 환경서비스 부문에 대해 양허안을 내놓았다. 중국, 일본 등은 기존에 제한을 두었던 외국인 투자 및 상업적 주재 항목에 대해 좀 더 유연한 양허안을 제시한 것 또한 이번 양허안의 특징적인 면이라 할 것이다.

#### 4.3.2. 양자협상전략

우리나라는 UR당시 양허를 불허했던 항목 중 폐기물 수집처리서비스 및 환경영향평가 서비스 항목에서 개방안을 작성해 보다 진전된 양허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1차 양허제안서까지는 특정 분야에 대해 기술적인 불가능으로 인한 양허불허 입장을 나타냈으며, 자연경관보호 등 소부문 환경서비스 항목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양허안 수준은 평균적으로 선진국에는 미치지 못하고 개도국과 유사하거나 또는 개방적인 상황이다. 주요국의 양허안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진행될 양자협상시 고려해야할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환경서비스 산업이 공공부문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미국, EC 등 주요 선진국들이 양허안 내에 공공부문의 배제를 명시하였으므로, 이들 그룹과의 양자협상 시 각 환경서비스 소 부문별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배제의사를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선진국에 기술적으로 떨어지는 부문에 대해서 기술습득을 위한 제한적 개방입장과 개방불가 입장을 나타낼 수 있다. 개도국과의 양허안을 비교해 볼때 아직까지 민간 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기술이전 등 시장진입을 위한 개방유도 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4.3 대응전략 검토

2차 양허제안서 작성시 쟁점사항은 1차 양허제안서상 미개방 분야에 대한 개방여부 결정 문제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1차 양허제안서 상 미개방 분야는 토양오염·폐수 정화·복원 서비스 분야 등 국내 관련 업종에 대한 법령이 준비 중에 있고, 국내 시장여건의 미성숙 및 낮은 기술수준의 환경서비스 분야 등 경쟁력이 취약한 환경서비스 분야이다. 또한 도로청소, 제설 및 제빙 서비스를 예로 들 수 있는 위생 및 유사서비스, 생물다양성 및 경관보호서비스 등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부문의 개방유보, 국내 법령 미비 및

시장여건이 미성숙한 중수도 서비스의 개방유보도 쟁점이 되는 공공서비스 분야라 할 수 있다. 특히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공급하는 서비스로 양허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부분이나, 최근 공사·공단·출자법인·관련업체 등에 의한 위탁 혹은 대행 형태로 일부 민간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생활폐기물, 오수·분뇨·축산폐수, 하수처리, 상수 및 먹는 물(음용수) 처리·공급서비스 등의 부분에 대한 양허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 부분의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르면, 비록 민간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익을 우선하고, 수수료 계약 형태 유지 등 영리활동에 제약이 있으며, 형사상 책임에 있어서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등 완전한 민간서비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음에 따라 개방을 유보한 부분으로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쟁점사항으로 대두될 수 있으므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경쟁력이 취약한 환경서비스 분야의 경우 향후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예측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기술습득을 위한 컨소시엄 형태의 제한적 개방 입장과 개방불가 입장을 유지하는 2가지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공공서비스분야의 개방문제는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각각 고려해야 할 것이다. 공공서비스 개방의 긍정적 효과로는 개도국 환경서비스 분야의 대부분이 공공서비스 분야임을 감안할 때 공공서비스 개방은 국내 환경산업체의 개도국 시장진입을 촉진할 수 있으며 선진 환경서비스의 국내 유입을 통한 환경서비스 수준과 질의 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 공공서비스 개방의 부정적 효과로 고려될 수 있는 점은 선진국에 비해 국내의 낮은 경쟁력을 감안할 때, 국내 및 개도국 시장의 시장잠식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과 WTO 5차 각료회의 협상 결렬로 인해 DDA 서비스협상 전반에 개도국이 참여하지 않은 복수국가 형태의 협정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실질적인 개도국 시장진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 제 4 장 DDA 환경검토의제 논의 및 대응전략

### 1. 검토의제 1: 환경과 무역 및 개발의 연계

#### 1.1 각료선언 32조 1항

DDA 환경협상 검토의제의 첫 번째 항목은 환경과 무역 및 개발의 연계에 대한 사항으로 환경조치가 개도국의 시장접근에 미치는 영향 및 무역왜곡조치의 제거가 미치는 긍정적 환경파급효과에 대한 협의사항으로 다음 표 4-1과 같이 각료선언문에 명시되어 있다.

표 4-1 Para 32(i) 환경과 무역 및 개발의 연계

#### << Paragraph 32(i) >>

CTE는 소관의제에 대한 현행 작업범위 다음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 (i) 환경조치의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 관련 시장접근효과와 무역제한 및 왜곡의 제거가 무역, 환경, 개발에 유익한 상황

#### 1.2 주요국 입장

##### 아르헨티나<sup>44)</sup>

아르헨티나는 CTE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무역과 환경 조치의 연관 관계를 확인하고 무역 제한과 왜곡을 제거하여 얻을 수 있는 환경적 이익에 대응하여야 함을 강조하면서 농업 부문에서 기존 무역 조치와 왜곡으로부터 가장 심각한 피해를 받는 환경·사회적 영향을 농촌 빈곤, 실업, 환경 질 악화 등 3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우선 농촌 빈곤(Rural Poverty) 개도국의 환경저하 외에 도시과밀화, 실업률의 상승과 사회적 불안을 야기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농촌 빈곤으로 인한 세계복지에의 영향 부분으로 1997년부터 개도국 수출상품인 주요 생활필수품의 수요가 감소하였고 이는

44) (WT/CTE/W/188)

가격의 하락, 공급의 감속으로 이어져 새로운 균형 가격 형성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해 각국은 보조금을 증가시키고 공급 과잉은 더욱 확산되었다고 언급하였다.

관세 확대는 개도국의 무역 정책에 경제적·사회적으로 피해를 주는 한 예

농업에 의존하는 개도국은 선진국의 관세와 보조금에 경쟁하지 못하여 농촌 인구가 감소하고 도시과밀화 현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도시에서는 불충분한 일자리로 실업이 발생하고 사회적 불안과 정치적 불안정이 가중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관세확대는 개도국의 무역정책에 경제적·사회적으로 피해를 주는 한 예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의 질 악화(Environmental Degradation)와 관련해 환경 보호는 단기간의 이익과 장래 투자 간의 협상이라 할 수 있으며 천연자원 보호는 단기가 아닌 장기적인 비용 부담을 요구하여 개도국에게 사치로 여겨질 수 있다고 명시하며, 단기간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가격보조 및 보조금은 장기적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자원 보존을 기대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

#### 인도 제안서<sup>45)</sup>

인도는 시장접근에 대한 환경조치의 영향에 대해 개도국의 경우 시장접근과 경쟁에 대한 환경 조치로 인한 역효과에 더욱 취약하다고 주장하였다. 그 원인으로 인프라의 부족, 기술 제한, 환경친화적 원료 부족, 정보에의 접근 곤란 등을 들수 있으며, 결국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조치는 사실상 개도국의 시장접근을 제한하게 되므로 개도국이나 최빈국에게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표준을 달성할 수 있는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개도국의 향후 나아갈 방향으로 첫째, 환경친화적 제품 개발로 이익을 증가시키고 환경적으로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 자국시장 접근을 제한해야 하며, 두 번째로, 수출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건을 확인하고, 그러한 요건 확보를 위한 자본 형성, 기술 이전·원조 등을 추진하고, 셋째, 환경적 의무 준수 비용의 효과적 해결 고려, 인프라에 대한 투자, 새로운 환경 요건에 관한 정보 보급 추진 등을 제안하였다.

개도국에 대한 환경친화적 제품 장려하기 위해서는 환경조치 적용 시 국가의 환경, 개발 상태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환경 조치의 설계에 있어 유연적인 태도를 보여 기준 자체는 다르나 내용이 같은 환경기준이나 환경친화적 제품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시장접근의 장애 제거 및 환경친화적 제품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예로 인도의 바다거북 종족보존 조취, 전통적 농법에 의한 농작물 등은 선진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개도국의 환경친화적 노력이라고 밝혔다. WTO는 이러한 분야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도국의 환경친화적 제품 생산을 장려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45) (WT/CTE/W/207)

결국 인도는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의 역효과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환경요건이 개발되고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제안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4-2 인도의 환경요건 개발 제안사항**

▪ 환경 조치 마련에 있어 개도국의 개발 필요성을 고려
▪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기준에 근거한 환경 조치
▪ 개도국에 대한 환경 조치 변화 정보 제공 체계 필요
▪ 개도국에 대해 장기간의 의무 준수 기간 부여
▪ 환경 기준의 융통성 있는 적용
▪ 개도국에 대한 기술 이전과 재정적 원조
▪ 개도국에 대한 추가적 시장 접근 제공으로 역효과 완화

**일본 제안서 46)**

일본은 기존의 OECD 및 APEC의 연구는 어업보조금이 반드시 어업의 초과생산능력 양산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부적절한 정책의 시행이나 어업 관리소홀이 수자원 남획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보조금이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은 수자원의 상태와 어업관리실태에 따라 변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 구체적 예로, 가다랑어 조업 관련 사례연구에 의하면 해당 자원이 풍부할 경우 어업보조금이 수자원 남획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산출할 가능성 희박함을 제시하였고, 동태평양지역의 건착망(Purse seine) 어업에 대한 사례연구는 관리가 소홀할 경우 어업보조금이 부재하는 경우에조차 수자원 남획 및 초과생산능력양산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다양한 상황 및 여타 변수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어업보조금을 금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고 어업보조금 규정 강화를 주장하는 회원국은 어업보조금이 수자원남획의 주된 요인임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1.3 대응전략 검토**

검토의제 1은 관련 논의동향 사안에 따라 ① 환경조치의 시장접근효과에 대한 검토와 ② 무역왜곡(보조금)제거의 환경편익 문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환경조치의 시장접근효과에 대한 검토에서는 그간 CTE 정례회의를 통해 선진국 환

46) (WT/CTE/W/226)

경규제조치가 개도국 혹은 최빈개도국 상품의 선진국 시장접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국내 환경정책에 대한 개별국 고유의 환경정책결정권한을 강조하는 선진국의 입장과 환경규제가 위장된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개도국의 입장이 개진되고 있으나 논의가 활성화되지 못하여 아직 구체적 쟁점이 부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규제조치의 시장접근효과에 대한 검토는 전통적으로 경제 혹은 통상담당 부처의 고려사항이었으나, 최근 환경과 경제의 통합 혹은 상생이 강조되면서 환경담당 부처의 관심영역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개별국 환경조치의 적용을 받는 우리나라 상품의 시장접근 장애사례에 대한 조사연구를 토대로 한 협상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무역왜곡(보조금) 제거의 환경편익 등에 관한 의제로 CTE 정례회의에서의 논의는 보조금 제거 혹은 감축 논의에 집중되어 왔으며, 특히 농업 혹은 수산 보조금과 자원고갈 및 환경파괴의 연관성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도하각료선언이 수산보조금 문제를 규범협상그룹과 무역환경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여 중복논의의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의제소관(mandate)에 대한 회원국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정부는 그간 논의에서 수산 보조금 관련 우리나라 입장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우리와 유사한 입장에 있는 일본과 연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 관련 환경부처의 관심은 NTC 유관부처와의 협조 하에 관련 농업 혹은 수산보조금의 환경파급효과에 대한 검토와 규범협상에서 다뤄질 환경보조금 존치 논의에 대한 대응입장 수립을 염두 해야 할 것이다.

## 2. 검토의제 2: TRIPS 협정과 환경

### 2.1 각료선언 32조 2항

DDA 검토의제 2번째 항목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의 관련된 세부내용과 환경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

표 4-3 Para 32(ii) TRIPS 협정과 환경과의 관계

<< Paragraph 32(ii) >>

CTE는 소관의제에 대한 현행 작업범위 다음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ii) TRIPS 협정의 (환경) 관련 조항(the relevant provisions)

### 2.2 주요국 입장 및 관련 기관 논의

#### 브라질 47)

협정 27.3(b)와 개발의 연계와 관련해서 이는 재검토의 과정에서 개도국의 필요를 고려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자세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협정 27.3(b)에 따른 특허권 보장과 관련된 기술적 이슈에 대해 협정 27.3(b)는 특허권 대상에 대해 식물·동물을 제외한 유전자 미생물체중 인간의 유전자 구성 조작이 있었던 것을 기준으로 규정할 수 있고, 많은 나라에서 발명에서부터 단순한 발견까지 넓은 범위로 실시되고 있는 특허권 부여는 법적 불명확성으로 특허 체계가 손상되고 특허에 의한 독점으로 유전자 물질 연구가 제한되는 실정이므로 협정의 예외규정과 “미생물 (microorganism)” 용어 정의를 포함하여 TRIPS 협정의 적용에 있어 용어의 과학적·법적·시장적 문맥에 따른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식물 다양성의 특수 보호를 위한 기술적 사안에 대해 식물 다양성 특수 보호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결정에 있어 회원의 융통성을 보장해야 하며 식물다양성 보호와 관련한 여러 국제협정간의 일치되고 조화로운 관계를 이끌어내는 노력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생명체 특허와 관련한 윤리적 사안에 관해 협정 27.3(b)는 기술의 도덕적, 문화적 기준에의 합당 여부 판단에 대하여 각국의 융통성을 인정하고 현재 각국의 입장도 일치되

47) (WT/CTE/W/186)

고 있지 않은 실정이므로 향후 인명, 보건, 농업 분야 등 관련 사안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유전물질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과의 관계에 대해 TBT 협정과 CBD(생물다양성협약: 15항)과의 갈등을 들며, 넓은 범위의 특허권 부여로 인한 독점 형성은 연구를 제한하고 국외 영토 대상에 대한 특허가 사전 동의나 이익 공유 없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므로 CBD의 기본 원칙에 부합되는 유전자원에 대한 특허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해 다음의 특허 조건을 포함한 협정 27.3(b)의 개정 주장하였다.

- ① 유전자원 소스 확인
- ② 관련된 전통 지식
- ③ 정당하고 공평한 이익공유의 증거
- ④ 특허 대상의 연구를 위한 정부나 전통 공동체로부터의 사전 동의

전통 지식과 농업자 권한과의 관계에 대해 전통지식은 여러 산업 분야<sup>48)</sup>의 중요한 이익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다음 표 4-4의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논의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표 4-4 전통지식과 관련논점(브라질 제안)**

구분	주요내용
<b>전통 지식과 관련된 식물, 동물, 미생물의 권한 없는 특허 방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는 상기 유전물질에 관한 TBT와 CBD의 관계와 유사하며 동일한 관점에서 협약 27.3(b) 개정 필요</li> </ul>
<b>전통 지식의 보호를 위한 기본 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적 메카니즘에 의한 최소한의 기준 규정이 필요하며 이에 지역적 공동체가 참여해야 함</li> <li>▪ 향후 다른 기구와의 시너지 효과에 의한 다각적 보호 방안 모색</li> </ul>
<b>전통 지식의 문서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허 결정에 대한 자료,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자료로서 전통 지식의 문서화가 필요</li> <li>▪ TRIPS 의회의 데이터베이스 수립에 대한 연구와 CBD에 따라 전통 공동체의 사전 동의가 필요</li> </ul>

**WIPO 정부간위원회 보고 문서<sup>49)</sup>**

WIPO는 1998년부터 무역과 환경 관련 지적 재산권을 연구하였고 특히 “세계적 지적 재산 사안(Global Intellectual Property Issues)” 명칭의 핵심 프로그램 11은 지적 재산

48) 특허 약업과 농업부문

49) (WT/CTE/W/196)

· 유전자원 · 전통지식 · 민속간의 관계 검토해 오고 있다. 제 26회 회의(2000.9.26)에서 세 가지 분야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 전통지식의 보존, 민속 보존 -의 논의 활성화를 위해 지적 재산 · 유전자원 · 전통지식 · 민속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 설립하였다. 정부간 위원회는 WIPO 모든 회원국에 개방되어 있고 관련 정부간 기구와 승인된 국제적 · 지역적 비정부기관은 옵저버 지위로 초청되고 있다.

WIPO 정부간 위원회 회의는 2001년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102개국, 18개 국제조직과 사무국, 15개 비정부기관의 참석으로 첫 회의가 개최되었고, 상기 세 가지 주제 관련 회원국의 지지를 얻은 사업에 관한 토론을 개진하였다. 2차 회의는 2001년 12월 10-14일에 개최되었다.

### **CBD 보고서<sup>50)</sup>**

CBD보고서는 서언에서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안은 CBD의 틀 내에서 논의되어야 함을 밝혔다. 3차 당사국 회의('96.11)에서는 지적재산권과 CBD상의 관련 규정간의 관계에 대한 공통 의견을 위한 향후 작업 필요성 인식하였으며, 관련규정으로는 15항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8항 (j) -전통 지식, 혁신과 관행, 16항 -기술 이전에 대한 접근, 19항 -생물 공학 논의와 이익 분배 등이 있다.

지적 재산권과 이익공유에 대해서 이익공유의 방법(공동 소유권, 로열티의 공유 등), 상호 합의된 용어, 지적재산권의 인정 조건, 가능한 금전, 비금전 이익 등을 열거하였고, 지적 재산권 적용에 있어서 유전자원 원천의 공표를 위해 (i)지적 재산권 대상에 쓰인 유전자원의 원천 확인과 (ii)제공국의 국가 공인 기관에 의한 사전 동의 통지 증거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지적재산권과 전통지식 보호에 관해서는 지적재산권의 적합성과 보호체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지적재산권의 적합성에 대해 지적 재산권은 개인적 지식과, 제한된 시간에 대한 보호이지만 전통 지식은 집단적 지식과 장기간의 보호가 필요하므로 많은 국가들이 부적합하다는 견해 표명하고 있으나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은 생명 공학 산업 특허권의 기반이 되므로 지적재산권이 특정 형태로서 전통지식을 보호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지적 재산권 보호 체계에 대해 5차 당사국 회의에서 지적 재산권 보호 체계의 중요성 확인하고 6차 당사국 회의에서 보호 체계에 대한 향후 작업의 필요성 논의하였다.

### **EC 제안서<sup>51)</sup>**

EC는 TRIPS 협정 27.3(B)조의 경우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이슈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 불충분하고, 동 협정의 7조 및 8조의 목표 및 원칙을 반영하는 한편 개발 이슈도 함께

---

50) (WT/CTE/W/210)

51) (WT/CTE/W/223)

고려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밝혔고, 한편 TRIPS 협정 27.3(B)조는 농업기술 및 농업 관련 유전공학기술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표명하였다.

특허보호관련 기술적 사안으로 ‘미생물’과 같은 동 협정상의 특정 용어를 정의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우선 회원국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어렵고, 본 사안에 있어 TRIPS 보다 WIPO가 적절한 논의의 장이며 회원국들이 조항을 각국의 특정한 상황에 맞춰 해석하므로, 이를 유연성 있게 운용할 여지를 제한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생명체의 특허화 가능성에 관한 윤리적 이슈에 대해서는 각국의 상이한 사회적 가치의 문제와 관련될 수 있다고 밝히고 특히 TRIPS 협정 27.3(b)조, 27.2조, 27.1조는 회원국이 유전공학기술에 의한 발명의 특허화 관련사안을 임의대로 조정할 여지를 제공하며, 현행 TRIPS 협정 27.3(b)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 표명하였다. 또한 현재 EC는 공공질서 및 윤리를 위협할 소지가 있는 유전공학 발명의 특허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회원국에게 유사한 접근방식을 취할 것을 제안하였다.

TRIPS 협정과 CBD 간의 관계에 대한 EC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법률적인 견지에서 TRIPS 협정과 CBD간에 갈등을 일으킬 여지 부재
- 두 협정간 법률상의 호환성이 실질적으로 원활한 실행을 보장하지 않으며 두 협정의 상당 부분이 서로 중첩
- 두 협정의 이행은 상호지지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 지적 재산권은 CBD 실행을 위한 효과적인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의견

TRIPS와 CBD의 상호지지적인 이행 수단 및 방법으로 각국은 법적, 정책적 및 행정적 조치를 통해 자국이 보유한 유전자원 접근을 위한 핵심조건들을 마련하고 혜택공유(benefit sharing)를 위한 최소요건을 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여러 국제기구간의 통합된 접근방식을 보장하기 위해 TRIPS와 CBD 관련 사안을 다루는 모든 포럼 내에서 정책적인 일관성 추구가 필요하며, TRIPS 위원회에서 CBD에 옵저버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TRIPS의 원산지 공개요건에 대해서는 유전자원에 관한 모든 특허 신청을 전 세계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자가공개요건 (self-standing disclosure requirement)과 같은 다자 체제 도입 지지하고, 이러한 자가공개요건 하에서 요구되는 정보는 유전자원이거나 전통지식의 지리적 원산지에 한정되며 공식적인 특허기준으로서의 효력을 부과해서는 안되며, 만일 본 요건의 위배시에는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은 특허법의 영역 밖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C가 제안한 전통지식 및 전승의 보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TRIPS 위원회에서 전통지식의 남용 방지 및 혜택공유 촉진을 위한 예방적 조치를 취할 것을 제기
- 데이터베이스나 등록제도를 통해 전통지식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 고안 필요
- 전통지식이 혁신적인 개발에 활용되었을 경우 원래 자료원을 공개
- WIPO에서 전통지식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식물변종의 독자적 보호(sui generis protection) 모형의 개발 지지
- TRIPS는 전통지식이나 전승과 같은 복잡한 문제를 다루기에 부적절함
- WIPO의 논의향방에 따라 향후 WTO에서 동 사안을 다룰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 식물변종의 효과적인 독자적 보호

특히 식물변종의 효과적인 독자적 보호 사안에 관한 개념의 정의가 결여되어있음에 따라 회원국들은 효과성의 기준을 충족할 법규를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의미를 부여하였다. 즉 각국의 고유한 상황에 맞추어 보호체계를 설계할 수 있으며, 비록 식물신 품종보호에 관한 국제조약(UPOV convention)이 TRIPS 27.3(b)항의 효율성 기준을 충족하나 다른 모형들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농민의 권리에 대해서 TRIPS 27.3(b)항 이나 30항 하에서 농민의 면제권리는 특정한 상황을 전제로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이며, 최빈국 또는 개도국의 농업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농민에게 특허받은 씨앗을 저장하고, 공유하고 되팔수 있는 권리를 허가하나 상업적인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농민의 경우 보다 엄격한 규칙 적용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 TRIPS 이사회

앞서 언급했듯이 주요국의 입장에서도 논쟁이 되고 있는 전통지식의 보호, 유전자원 개발이익의 공유, 등과 같은 환경관련 현안의 TRIPS 협정내 수용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문제가 검토대상이 될 것이다. 이러한 부분이 무역환경위원회에서 다뤄야한다는 입장과 TRIPS이사회에서 다뤄야한다는 입장이 대립되는 가운데 구체적 쟁점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간의 CTE 논의에서는 전통지식의 보호 혹은 유전자 주권을 강조하는 개도국의 입장과 이를 사적계약의 영역에 두려는 선진국의 입장이 대립되어왔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유전자원 빈국의 입장에서 보다 용이한 유전자원 접근과 활용여지를 강조하고 있으며, 관련 현안에 대한 지역 및 개별국가의 대응동향에 대한 조사·분석과 국내 현황을 고려한 정부 대응입장 정리, 국내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대한 적절한 보호체계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 표 4-5은 TRIPS 이사회가 설정한 주요 쟁점사항들을 열거해 놓은 것이다.

**표 4-5 27조 3항 (b) 재검토 관련 6개 쟁점사항**

1. 27조 3항 (b)와 발전문제(development)의 연계
2. 27조 3항 (b)하의 특허보호에 관련된 기술적 문제(미생물의 범위, 특허 가능 범위)
3. 식물변종에 대한 별도보호(sui generis protection)의 의미
4. 생명체 특허에 관한 윤리적 문제
5. (27조 3항 (b)와) 유전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과의 관계(TRIPs와 CBD간의 관계)
6. (27조 3항 (b)와) 전통지식, 종자에 관한 재배자 권리(farmers' rights) 개념과의 관계

이상에서 논의된 특허대상물 규정에 대한 TRIPs 27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허대상물을 규정한 TRIPs 27조 내용

<p>1.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는 제품 혹은 공정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기술분야에 있어서의 어떠한 발명에 대해서도 그것이 새롭고 혁신적이며 산업적 이용이 가능한 것이라는 조건 하에 부여될 수 있다. 제65조제4항, 제70조제8항 그리고 이 조 3항에 따라 특허는 발명의 장소, 기술적 분야에 관계없이 그리고 그것이 수입된 것인지 현지에서 생산된 것인지에 관계없이 부여될 수 있으며, 그 특허로 인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p> <p>2. 회원국은 자국영토 내에서의 발명의 상업적 이용의 금지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를 포함, 필요한 경우 공공질서 또는 공서양속을 보호하거나, 또는 환경에의 심각한 피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동 발명을 특허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제외는 동 이용이 자기나라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해서는 아니된다.</p> <p>3. 회원국은 또한 특허가능대상으로부터 다음을 제외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인간과 동물을 위한 처방, 처치 및 외과술.</li> <li>▪ b) 미생물이 아닌 식물과 동물, 그리고 비생물학적 및 미생물학적인 공정이 아닌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공정. 그러나 회원국은 식물의 변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허 혹은 실질적인 별도의 보호제도, 또는 이 두 가지 모두를 마련할 수 있다. 이 호(3항의 (b))는 WTO협정 발효후 4년 이후에 재검토하기로 한다.</li> </ul>
---

## 2.3 쟁점별 평가 및 대응전략

본 절에서는 브라질과 일본의 의견을 중심으로 위 표 3-16에 제기된 각 쟁점사항에 대해 검토한다.

### 1) 27조 3항 (b) 와 발전문제의 연계

브라질(IP/C/W/228)은 동 쟁점이 27조 3항 (b)에 대한 이사회의 재검토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와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인도(Non-paper JOB(00).6091)와 아프리카그룹(IPC/C/W/206)의 제안서가 관련 논의의 출발점이 된다고 평가하였다.

동 쟁점에 관한 이사회 합의사항은 27조 3항 (b)의 재검토 문제가 개도국의 무역과 발전에 대한 파급효과를 다뤄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인도(Non-paper JOB(00).6091)와 아프리카그룹(IPC/C/W/206)의 제안요지는 동 쟁점이 지적재산권이 어떻게 자연자원부존국에 대한 투자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기술, 연구개발, 및 혁신을 개발도상국으로 이전 내지는 전파시킬 것인지와 같은 구체적 이슈를 다뤄야한다는 것이었다.

일본(IP/C/W/236)은 동 쟁점에 관련된 27조 3항 (b)의 재검토 문제는 발전과 특허대상 “선택적 배제(optional exclusion)” 및 “배제의 예외(exception to exclusion)”와의 관계로 국한되는 것임을 전제하였다. 또한 동 쟁점에 대한 아프리카그룹의 견해에 대해서 발전문제와의 연계는 투자대상국의 투자환경 등과 같은 다양한 이슈와 연관되어 있으며, 특허대상물질에 대한 문제는 이들 이슈 가운데 일부분에 불과하며, 지재권의 보호를 받는 대부분의 기술들은 민간보유기술로써 이들의 국제적 이전은 시장메카니즘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을 밝혔다. 적절한 지재권보호는 또한 면허계약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지재권보호의 부실은 기술이전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피력하였다.

이상의 의견검토 결과 개도국과 선진국의 중간자적 위치에 있는 우리측 기본입장은 향후 우리나라의 발전전망을 고려하고 또 관련쟁점에 대한 실질적 논의효율성을 감안할 때 가능한 논의 범주를 한정함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일본의 입장과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2) 27조 3항 (b)하의 특허보호에 관련된 기술적 문제(미생물의 범위, 특허 가능 범위)

27조 3항 (b)의 검토에 대해 브라질은 식물과 동물의 변종을 특허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있어서 회원국 개개의 유연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관련 규정에 제시된 특허제외 대상에 대한 보다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특히 동 조항에

사용된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essentially biological)”, “비생물학적(non-biological)이고 미생물학적(micro-biological)인”과 같은 용어는 물론 미생물(microorganisms)과 같은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비교적 개방적 자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전제하면서도, 27조 3항 (b)에 제시된 특허제외 대상의 명확한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개념정의가 분명하게 내려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개념적 불명확성은 단순한 기법으로 분리된 미생물과 같이 특허충족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대상들에게까지 특허를 인정하는 “broad patent” 문제를 일으켜 특허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불명확성을 야기하고 연구목적의 유전자원이용에 일정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기도 하였다.

브라질의 국내법은 미생물의 특허가능 범위에 대해 단순한 발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특허부여에 관한 3가지 충족요건(새롭고 혁신적이며 산업적 이용이 가능해야 함)을 만족시키는 유전자변형 미생물을 제외한 식물과 동물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한 특허를 배제하고 있으며, 유전자변형 미생물이라 함은 식물과 동물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제외한 것으로서 그들의 유전적 구성에 대한 인간의 직접적인 개입에 의해 자연상태에서는 정상적으로 가질 수 없는 특성을 갖게 된 미생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특허대상에서의 제외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미생물과 특허대상에서 제외가 인정되는 동물, 식물의 인위적 구별이 모순성(incongruences)을 갖는다고 주장한 아프리카그룹의 입장에 대하여, 27조는 제1항에서 특허인정의 원칙을 제시하는 동시에 제3항의 (b)에서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3항의 (b)의 규정은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선택적인 배제를 규정한 것이란 관점에서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는 회원국의 입장에서는 모순성을 우려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일본 국내법의 경우, 식물 및 동물에 대한 발명과 미생물에 대한 발명이 모두 특허대상물질로 규정되어 이러한 문제가 없다.

또한 동물, 식물, 미생물의 구분법은 CBD를 포함한 많은 국제협약에서 널리 받아들여진 것이며, 이들 협약에서 미생물의 정의는 협약의 목적과 의도에 비추어 적절하게 해석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면서 TRIPs에서의 논의도 미생물에 대한 사전적 정의에 입각하여 진행되는 것이 가하다는 견해를 표명하여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 국내법도 미생물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는 미생물학의 발전에 따른 혁신과정에서 새로운 미생물들이 만들어지는 현실과 형식적인 정의보다는 관련 미생물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란 점을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혁신이 아닌 단순한 발견에 대한 특허부여와 관련하여 아프리카그룹이 제기한 우려와 관련하여, 일본 국내법에 따를 때, 인위적 개입이 없이 광석 또는 단순한 자연현상에 대한 발견은 특허대상으로 취급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특허대상의 발견에 분리, 정제와 같은 인위적 개입이 있었거나, 분리 정제된 물질이 그 이전에는 알려져 있

지 않은 것일 경우, 또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화학물질이나 미생물체가 그 주변적인 자연환경으로부터 인공적으로 처음 분리되는 경우 이는 발명으로 취급되어 특허의 대상으로 여겨진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특히 유전자의 경우에도 원래의 생물체로부터 분리 정제된 것이라면 이는 특정한 화학물질의 종류로서 발명으로 취급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특허를 부여받기 위해서 이들 발명은 그들의 구조, 변수, 또는 기타 적절한 수단에 의해서 특허청구 요건에 맞게 특징지워질 수 있어야하며, 화학 물질은 물론 미생물과 유전자들도 이러한 방식으로 충분히 특징지워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어떤 발명에 특허가 부여되기 위해서는 새롭고 혁신적이며 산업적 이용이 가능해야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며, 특정발명이 널리 알려진 것이라면 새롭지 않다는 점에서 특허가 인정될 수 없으며, 특정 미생물이나 유전자가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해서 이것이 널리 알려진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상의 의견검토결과 미생물의 정의와 관련하여 일본의 주장과 유사한 입장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분리 혹은 정제된 자연발생물에 대한 특허인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즉 분리 혹은 정제 과정이 인위적인 개입이라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그 결과 얻어진 자연발생물 혹은 자연적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물질에 대한 인식은 발명이라기보다는 발견에 가까운 것이라 할 것이며, 이 경우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발견된 대상물질보다는 이를 분리 혹은 정제하기 위한 기법 내지는 공정이라 할 것이다. 또한 분리 정제라는 단순 조작이외에 유전자 합성 등 보다 적극적인 인위적 개입이 이루어져 이를 발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특허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특허법령에 정한 특허인정 요건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3) 식물변종에 대한 별도보호(sui generis protection)의 의미

27조 3항 (b)의 검토에 있어서 브라질은 식물의 변종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보호제도 선택에 관한 회원국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표명하면서 식물변종에 대한 별도보호체제가 브라질에서 개발된 효율적인 보호수단이며 식물변종 보호협약(UPOV)이 27조 3항 (b) 검토에 있어서 하나의 준거가 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sup>52)</sup>.

브라질은 UPOV 1991년 규약(1991 Act)이 1978년 규약(1978 Act)에 비하여 보다 많은 가입국을 기록하고 있으나, 별도의 보호제도 선택에 관한 회원국의 유연성을 제약하고 있어 다수 개도국의 우려를 사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1978년 규약은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받는 식물변종의 종자를 저장하거나, 교환하거나 제한된 범위에서 판매하는 작물 재배자의 전통 관행과 관련하여 “작물재배자의 종자권(farmers' right)”을 인정하였으나,

52) 브라질은 새로운 식물변종의 보호와 관련된 국내법을 1997년 제정하였으며, 식물의 새로운 변종에 대한 보호협약의 1978년 규약(UPOV 1978 Act)에 가입함

1991년 규약은 이를 일반적인 권리라기보다는 특혜(privileges) 혹은 예외(exception) 사항으로 규정하여 재배자의 보호종자 보유권한에 대한 인정여부를 정부의 판단에 맡기도록 함으로써, 수확된 종자를 저장하고 배분하며 다시 심는 관행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다수 개발도상국내 지역공동체의 식량안보에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UPOV 1991년 규약이 재파종할 목적으로 수확한 식물변종의 종자를 보유하는데 일정한 특허료를 징구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은 대다수 인구를 흡수하고 있는 개도국 농촌지역 공동체의 소규모 생산자에게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하여 사회적 불균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UPOV 1991년 규약이 회원국 영토 내에서의 판매 혹은 상업적 이용에 관한 권리소멸(exhaustion of rights)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TRIPs 6조<sup>53)</sup>에 나타난 합의된 균형을 파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브라질은 국제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장치가 될 식량농업기구의 국제규약(International Undertaking) 또한 식물변종에 대한 별도의 보호제도가 재배자의 종자권에 대한 국제적 공약을 고려해야 하는 준거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며, 종자에 포함된 유전자와 같은 생물질에 관련된 생물다양성협약도 이익의 공유, 사전승인과 같은 이슈에 있어서 중요한 준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일본은 식물육종업자(plant breeder)의 권리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본입장에서 UPOV 협약이 식물변종에 대한 효율적인 별도의 보호제도라고 평가하며 식물육종업자(plant breeder)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종자와 종묘에 관한 법령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UPOV Convention에 합치하는 것으로 인식함을 피력하였다.

또한 아프리카그룹의 주장이 식물육종업자의 종자권(plant breeders' rights)과 수확된 종자의 저장, 분배, 재파종에 관련된 작물재배자의 종자권(farmers' rights)과의 관계에 관련된 이슈와 추가적인 육종을 위하여 보호 식물변종을 이용하는 다른 육종업자의 예외인정(exemption)에 관한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전자의 경우, UPOV 1991년 규약 제15조 2항이 식물변종이용 계약에 관련된 양 당사자가 합리적인 한도 그리고 육종업자의 정당한 이해가 보호된다는 조건 하에서라면 재배자로 하여금 자신이 보유한 보호변종의 종자를 파종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할 목적으로 그 어떠한 변종에 관한 것이건 육종업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후자의 경우에도 UPOV 1991년 규약 제15조 1항은 육종업자의 권리가 다른 변종의 육종을 위한 행위에까지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육종 촉진을 위한 보호 변종의 이용이 자유로움을 강조하고 있다.

53) ※ TRIPs Article 6: Exhaustion

“For the purposes of dispute settlement under this Agreement,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3 and 4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used to address the issue of exhaus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협정 하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내국민대우와 최혜국 대우를 규정한) 제3조와 제4조를 조건부로( 혹은 제외하) 이 협정상의 그 어느 조항도 지적재산권의 소멸문제에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결국 일본은 UPOV 협약이 식물변종에 관한 육종업자의 권리와 재배자의 권리를 균형있게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아프리카그룹에 의해 제기된 두가지 이슈는 UPOV 체제를 식물변종에 대한 보호체제로 채택함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의견검토 결과 식물의 변종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보호제도 선택에 있어서 회원국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며,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받는 식물변종의 종자를 저장하거나, 교환하거나 제한된 범위에서 판매하는 작물 재배자의 관행은 전통사회의 관습법적 지위를 갖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1991년 규약이 이를 일반적인 권리라기보다는 특혜(privileges) 혹은 예외(exception) 사항으로 규정하고 이를 동 작물종자의 이용에 관련된 계약 쌍방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고 있는 것은 당사자간 분쟁의 여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제15조 2항에 제시된 조건<sup>54)</sup>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작물재배자의 식물변종 종자보유권한에 대한 인정여부가 정부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는 브라질의 견해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일 사실일 경우 이에 대한 우리정부의 내부입장을 보다 상세한 수준에서 검토 정립하여 관련 법령에 반영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

#### 4) 생명체 특허에 관한 윤리적 문제

브라질은 생명체에 대한 특허인정에 관련된 윤리적, 문화적, 종교적 고려가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27조 3항 (b)의 검토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평가하며 여기에는 지적재산권 보호의 국내입법과정에서 회원국이 공익과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규제와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인정한 8조 1항과 또한 이와 유사한 27조 2항의 규정이 판단 준거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윤리적, 문화적, 종교적 믿음이 국가간은 물론 국가 내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생명체에 대한 소유권은 대부분의 문화 종교권에서 개별 동물과 식물에 대한 사적 소유권의 형태로 인정되고 있으나, 미생물을 포함한 생명체에 대한 특허권은 개별 생명체에 대한 통제는 물론 생물종 전체에 대한 통제를 의미하고 있으며, 이는 특정 종교권에서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또한 일부 선진국이 이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슈들에 대해서는 관련 생명체에 대한 특허부인 방식보다는 보다 직접적인 방법으로 관련 기술의 개발을 제한하는 형태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27조 3항 (b)가 회원국들로 하여금 이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슈와 관련하여 특정 생명체에 대한 특허인정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일본은 특허권자에게 특허가 인정된 발명에 대한 제약 없는 이용을 보장한다고 보지 않으며, 회원국이 사안에 따라 WTO협정에 저촉됨 없이 정당하게 국내법규에 의해 윤리

54) 합리적인 한도 그리고 육종업자의 정당한 이해가 보호된다는 조건

적 이유를 포함하는 다양한 이유로 특허권자의 특허인정발명 이용행위에 일정한 제약을 가할 수 있으므로, 특허인정발명 이용행위에 일정한 제약을 가할 목적에서는 생명체를 특허인정의 범위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또한 협정의 제27조 2항이 그러한 발명의 이용이 국내법에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발명을 특허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규정을 담고 있는 이유라고 설명하면서 동 조항은 회원국들이 어떤 발명이 국내법에 의해 특허인정이 가능한 것이라고 하여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 발명의 이용을 금지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생명체의 특허문제에 관련된 윤리적 이슈에 대한 많은 문제들이 공공질서나 도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특허인정거부에 의해 다뤄지고 있음을 상기하면서 비록 일부 선진국들이 공공질서나 도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생명체에 대한 특허부인의 적절성에 관해 재검토를 바라고 있기는 하나, 이 문제는 27조 3항 (b)의 재검토에 관련된 것이라기 보다는 27조 2항의 적용을 받는 것이란 견해를 표명하였다. 일본의 경우, 인간의 복제와 관련된 공정기술과 관행은 일본특허법 32조의 공공질서와 도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불법화되어 있으며, 동 32조는 TRIPs 협정 제27조 2항에 일치하는 규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일본은 연구물질에 대한 특허부여가 추가적인 연구진전의 장애가 될 수 있으며, 특허로 인한 보호에 따라 의약품 비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 연구개발이 공공의 보건을 위한 약물보다는 부자들을 위한 약물에 집중되고 있다는 아프리카그룹의 주장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있으며, 특허제도가 생태적인 동기를 약화시키는 경제적 동기를 제공한다는 인도의 견해에 대해서도 특허가 오히려 다양한 기술 가운데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한다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 외에도 일본 내에서는 이 대상 발명이 생명체의 일부분에 대한 것일 경우에 특허권의 효력은 관련 근원 생명체(original life forms)에 대해서까지 확장된다는 일부 회원국의 주장과는 달리 일본 국내법령은 그러한 특허효력의 확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의견검토 결과 특허가 특허권자에게 (특허가) 인정된 발명에 대한 제약없는 이용을 보장한다고 보지 않는다는 일본의 기본입장에는 동의하나, 회원국이 사안에 따라 WTO협정에 저촉됨 없이 정당하게 국내법규에 의해 윤리적 이유를 포함하는 다양한 이유로 특허권자의 특허인정발명 이용행위에 일정한 제약을 가할 수 있으므로 특허인정발명 이용행위에 일정한 제약을 가할 목적에서는 생명체를 특허인정의 범위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견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회원국이 사안에 따라 WTO협정에 저촉됨 없이 정당하게 국내법규에 의해 윤리적 이유를 포함하는 다양한 이유로 특허권자의 특허인정발명 이용행위에 일정한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것과 특정 생명체에 대한 발명을 윤리, 문화 및 기타 이유로 특허인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할 것이며, 문제되는 발명을 특허인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관련 문제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사전에 제거하는 근원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협정의 제27조 2항이 “어떤 발명의 이용이 국내법에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발명을 특허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규정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 일본의 견해가 정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27조 2항의 문언이 상당한 해석상의 불명확성을 내포하고 있는 때문으로 사료된다.

#### 5) 27조 3항 (b)와 유전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과의 관계(TRIPs와 CBD간의 관계)

브라질은 동 쟁점이 생물다양성협약과 TRIPs협정의 상호관계에 관련된 것으로 중요하다고 평가하며, 이들 관계의 규명이 27조 3항 (b)의 재검토 작업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CBD협정상의 상기 조항<sup>55)</sup>들이 유전자원의 이용과 보존에 관한 동 협약 8조 j항과 마찬가지로 TRIPs 협정의 전반, 특히 27조 3항의 (b)에 대한 재검토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파악하였고 또한 CBD 협정과 TRIPs 협정이 상호지지적이며, 지속가능한 자원이용을 촉진한다는 데는 동의하나, CBD의 보호를 받는 자연발생적 유전자원에 대한 특허문제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상호마찰이 야기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 구체적 사례(Protection of Biodiversity and Traditional Knowledge (IP/C/W/198)참조)로, 브라질은 인도지역에 서식하는 심황(turmeric) 등에 청구된 특허와 아마존지역의 열대우림지역에 서식하는 약용식물(ayahuasca vine)에 대한 특허청구사례를 들면서, 미생물 및 동식물에 대한 특허인정이 해당 특허대상에 대한 독점권을 인정함으로써 관련 자원의 이용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유전자원 보유국이 아닌 제3국에서 해당유전자원에 대한 특허가 인정될 경우 이는 CBD가 인정하는 유전자원에 대한 자원보유국의 주권에 대한 침해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 특허가 대부분 자원보유국 정부나 지역공동체의 사전승인 없이 부여되고 있으며 유전자원 이용편익의 정당하고 형평성 있는 배분도 특허보유권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결과적으로 브라질은 미생물에 대한 특허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부재, CBD 협정과의 관계에 대한 TRIPs 차원의 입장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TRIPs 협정의 이행은 상당한 마찰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동 마찰소지의 제거와 양 협약의 상호지지적 관계설정을 위해서는 TRIPs 협정의 내용이 CBD협정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27조 3항 (b)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유전자원에 대한 특허가 유전자원보유국의 주권, 이용편익의 공유, 사전승인의 원칙과 같은 CBD 협정의 주요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5) CBD 협정상의 유전자원 접근조항인 제 15조의 1항은 국가가 자신의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갖고 있음에 비추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결정하는 권한은 해당 국가의 정부에 있으며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국내법에 따른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며, 기술에 대한 접근과 기술이전을 규정한 제16조의 5항에는 계약당사국들이 특허권 및 그 밖의 지적소유권이 동 협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권리가 동 협약의 목적을 지원하고 동 협약의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라 협력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전통지식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도 브라질은 상당수의 국가에서 이미 허가되지 않은 생물자원의 탐사문제, 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유전자원에 대한 특허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일부에서는 관련 국내 입법이 진행되고 있음을 상기하고 브라질에서도 2000년 6월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보호 및 이에 대한 접근, 이익의 배분, 관련 보존기술에 대한 접근과 기술이전 등을 규제하기 위한 국내법이 발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브라질은 27조 3항 (b)의 개정을 통해 회원국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영역에서 특허 인정 조건과 관련하여 (a) 유전물질의 원천에 대한 규명, (b) 동 물질을 얻기 위해 이용된 전통지식, (c) 이익의 정당하고 형평하게 분배되고 있다는 증거, (d) 특허물질의 이용과 관련하여 관계국 정부 혹은 전통사회에 대한 사전통고와 승인여부 등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하며, 발견 혹은 자연발생적인 물질들을 특허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토록 하는 제27조 3항 (b)의 해석(interpretative note)이 작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적 일치성이란 측면에서, 이러한 개정은 양 협약의 양립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것이란 입장을 밝히고 일부 국가들에서 이미 이러한 요구조건들이 CBD협정 이행을 위한 국내 입법과정에서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특허심사 과정에서 관련유전물질의 원천에 대한 명시를 요구하는 것이 “법적 행정적 악몽(a legal and administrative nightmare)”이 될 수 있다는 미국의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기존의 특허 인정요건에 비교해 볼 때 지나친 것이 아니란 입장을 분명히 하고있다.

일본은 일부 회원국의 경우 TRIPs 협정이 유전물질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는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주장이 27조 3항 (b)의 검토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특허인정 대상에 대한 선택적 제외문제 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의문이란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관련 쟁점에 대하여 각각 의견을 제시하였다.

#### (i) TRIPs 협정과 CBD 협정과의 일치성

일부 회원국이 CBD와 TRIPs 사이에 유전자원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문제에 관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일본은 CBD와 TRIPs는 그 목적이 전혀 다르고 세부 조항의 이행에 있어서도 상당한 유연성이 보장되어 있어 상호 배타적이지 않아 각각의 적용에 상호 마찰의 소지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국의 경험도 이를 입증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관련 국제논의를 통해 CBD 협정의 이행이 TRIPs 협정에 합치하게 이루어지는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개도국과 선진국의 상호 이익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 (ii) 특허청구시 관련 생물자원의 원천명시의무

동 의무에 대한 일부 회원국의 주장에 대하여 일본은 이 같은 요구가 각 조항의 이

행문제를 개별 회원국의 결정에 위임하고 있는 CBD 협정의 문맥을 고려할 때, 회원국의 의무사항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특히 인도가 TRIPs 협정 제29조 1항과 발명에 사용된 유전자원의 원천에 대한 공표요구와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동 조항이 이와 같은 정보공개를 절대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특허기관이 이를 추구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일본은 이를 반박하면서 29조 1항의 첫 문단은 특허의 자격요건(enablement requirement)을 언급한 것이며, 이 공개요건은 전문 기술 보유자가 그 발명을 수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정도의 공개를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거나 활용이익을 분배할 목적으로 언급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이 같은 목적을 넘어선 주장은 29조 1항의 소관사항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회원국내 특허법령에서는 이 같은 자격요건이 특허신청제도를 통해 보장되고 있다고 확인하면서 일본법에서도 발명에 관련된 미생물에 대한 기술자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특허출원자는 이들 미생물을 유관 국제기구<sup>56)</sup>에 제출하고 관련증명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 특허 출원자는 관련 미생물을 이용하여 어떻게 해당 발명을 실행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정보를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하고, 전통지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논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허청구시 관련 생물자원의 원천명시의무를 담은 새로운 TRIPs 조항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이것은 오랜 협상의 성과로 얻어진 발명자, 특허출원자, 그리고 제3자의 권리·의무관계의 균형을 흐트릴 소지가 있음을 들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일본은 이러한 정보공개요구가 협정 62조 1항의 균형을 깨트리는 것으로 판단하며, 비록 최종판단은 회원국 자신의 결정에 달려있다 하더라도 일본의 관점에서 볼 때 회원국이 출원자에게 특허인정에 필요한 양식과 절차에 따른 요건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합리적인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출원자에게 발명에 사용된 전통지식 혹은 생물자원의 원천을 밝히도록 요구하는 것은 출원자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만약 이러한 정보공개요구가 특정 발명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경우라면 이는 또한 특허인정요건은 모든 발명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27조 1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반하여 앞서 서술한 미생물의 제출의무에 대한 요건은 이것이 29조 1항의 발명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enablement requirement to carry out an invention)으로서 모든 분야 모든 기술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이란 점에서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 (iii) 민간부문 이익배분 의무

일부 회원국이 이익배분과 유전물질에 대한 접근의 허용 그리고 개도국과 유전물질

56) 부다페스트 협약하의 국제수용기구: International Depository Authorities under the Budapest Treaty

을 조사하는 법인체간의 협약(contractual agreements)을 보장하기 WTO 내의 강제메카니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일본은 이는 27조 3항 (b)의 검토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반박하고 TRIPs 내 이윤배분 조항의 신설 제안도 CBD상의 의무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윤배분의 문제가 일반적으로 생물자원을 제공하는 당사국 정부와 이를 이용하고자하는 공공 혹은 민간의 법인체 간의 협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확인하고, 일부회원국이 특허권자가 특허에 관련된 생물자원의 보유국에게 일정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과 같은 금전적인 이익의 분배의무를 국제적으로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 발명특허의 금전적 가치는 발명자의 노력과 특허권자의 상품화 노력에 주로 귀속되는 것이며 생물자원 자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란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접근이 허용되어 이용된 생물자원의 가치에 대한 인정과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자원보유자, 발명자, 특허권자의 이해균형은 당사자간의 합의조건에 따라 정해짐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의견검토 결과 브라질 제안서 24 문단의 기술내용에 대한 상세 질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즉, 동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은 브라질이 생물자원의 약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불법적인 유전자원이 포함된 특허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기 위하여 비용이 많이 드는 법적절차를 밟는데 국가의 자원을 분산시키는 것보다 덜 비용 효율적(less cost effective)인 것이라는 인도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두 번째 문장은 개발도상국이 그들이 보유한 자원에 대하여 해외에서 인정된 모든 특허의 각각을 추적할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첫 번째 문장의 진의는 개별국 차원의 노력보다는 국제적인 해결책의 마련이 보다 더 비용 효율적(more cost-effective) 이라는 의미로 판단될 수 있다. 또한 CBD와 TRIPs는 그 목적이 전혀 다르고 세부 조항의 이행에 있어서도 상당한 유연성이 보장되어 있어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는 일본의 주장은 일견 타당한 것으로 여겨지나, 양 협약의 적용에 상호 마찰의 소지가 없다는 주장은 지나친 것으로 판단된다<sup>57)</sup>.

전통지식과 부존자원이 빈약할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 비해 상당한 기술격차를 가진 우리나라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볼 때, 타국의 생물자원을 이용한 발명의 특허청구요건으로 관련 물질의 원천 혹은 관련 지식의 원천을 기재토록 하는 것은 생물자원의 약탈행위에 대한 방지 등 사회 공익적 관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지지입장을 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익의 공유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 개별 약정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 국제협약상의 의무규정화 방안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하나, 정당하고 형평성 있는 약정체결 능력배양을 위한 개도국 정부 내지는 전통사회에 대한 지원방

57) 이 문제는 한 회원국내에서의 양 협약체계의 이행에 관련된 경우 일본의 주장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서로 다른 회원국사이의 문제일 경우, 양 당사국이 각각 정한 이행방식에 차이가 있을 경우 마찰의 소지는 남아있다 할 것임.

안 등에 대해서는 TRIPs, CBD 등 관련 국제기구가 일정부분 기여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기타 양국의 세부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견제시가 가능하나 CBD와 TRIPs 협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회원 당사국에게 상당수준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의 이해관계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6) 전통지식, 종자에 관한 재배자 권리(farmers' rights) 개념과의 관계

브라질은 전통지식이 일부 산업분야 특히 제약분야에서 관련 약효물질의 사전조사과정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의 절약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27조 3항(b)의 검토와 관련하여 동 쟁점은 (i) 전통지식에 대한 용인되지 않은( unauthorized) 특허부여의 예방, (ii) 전통지식에 대한 별도의(sui generis) 보호제도, (iii) 전통지식에 대한 문서화와 같은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i) 전통지식에 대한 용인되지 않은( unauthorized) 특허부여의 예방

전통지식에 관련된 미생물, 동식물에 대한 용인되지 않은( unauthorized) 특허부여의 방지와 관련하여 브라질은 TRIPs 협정이 회원국들로 하여금 CBD 협정 제8조 j항<sup>58)</sup>에 정한 바와 같은 이익의 분배와 사전승인 요건에 대한 적절한 고려 없이 요구된 특허를 예방할 수 있는 여지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TRIPs 협정에 대한 일정한 개정이 생물자원의 약탈방지 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ii) 전통지식의 보호제도<sup>59)</sup>

일부 선진회원국이 현재 상태에서도 전통지식의 서로 다른 보호수단이 제공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기업과 전통 혹은 원주민 공동체와의 계약(inter partes contracts)을 예로 들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 같은 보호수단이 충분치 않음을 역설하고, 전통 혹은 원주민 공동체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상태에서 사전승인을 결정했는지 또는 계약 당사자간의 이익배분이 정당하고 형평한 것인지에 대한 보장여부가 불분명하다고 강조하였다. 이 외에 자원탐사 기업의 준수항목으로 언급되는 자발적 지침(voluntary guidelines)의 경우에도 적절한 강제수단의 결여라는 실질적인 제약을 갖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브라질은 또한 TRIPs 협정의 어느 것도 CBD 8조 j항에 따라 개별국이 자국내에서

58) CBD 협정 8조 j항은 국내입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취하여 온 원주민 사회 및 현지사회의 지식·혁신적 기술 및 관행을 존중·보전 및 유지하고, 이러한 지식·기술 및 관행보유자의 승인 및 참여하에 이들의 보다 더 광범위한 적용을 촉진하며, 그 지식·기술 및 관행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공유를 장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59) UNCTAD에서 개최된 전통지식, 혁신과 실천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사례와 제도에 관한 전문가 회의가 제시한 제안(Recommendation at the Multilateral Level)에서는 일국이 전통지식에 기초한 특허를 부인한다고 해도 이는 다른 국가에서 관련 특허를 인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함.

전통지식의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하고 있지 않다고 확인하고 일정한 한도 내에서는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현행 법제도 전통지식에 대한 보호수단을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으나 이들 역시 불충분한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지식소유권보호 체제가 제공하는 보호는 적절한 교육의 부족, 인식과 자원 등의 부족과 같은 요인들이나 보다 중요하게는 개념적인 요인들에 의해 제한되고 있는 바, 이는 대부분의 전통적 공동체에서 만들어진 지식의 일부 측면은 TRIPS 협정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란 견해를 표명하면서, 전통지식은 또 공동보유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그 권리의 소유자를 확정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누대에 걸쳐 축적되어 온 것으로서 새로움(novelty)에 관한 보호요건을 적절히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과 함께, 전통지식이 구전에 의해 전승된다는 점도 성문화된 선제기술(documented prior art)을 구성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브라질은 전통지식, 발명품, 관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국가적 경험에 대한 UNCTAD 전문가 회의의 “다국적 차원의 권고<sup>60)</sup>”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

브라질은 또한 전통지식의 다국적 보호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고려하기 위하여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과 CBD, WIPO, FAO, UNCTAD와 같은 다른 조직들 간의 시너지효과는 보다 나은 이해의 구축 그리고 이 이슈에 대한 기본 틀의 개발을 고려하는 일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발전과의 연계측면에서 볼 때, 브라질은 27조 3항 (b)의 검토는 국제적 수준에서 전통지식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 기준 수립의 가능성을 논의하는 적절한 활동이 되는 것으로 본다는 자국 입장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는 이 문제를 국내법화한 국가의 수가 드물다는 점이 전통지식의 사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보장하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체제의 수립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몇몇 나라들의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아직 WTO 회원국 대다수가 TRIPS 협정에 의해 시작된 지적재산권의 최소기준에 대한 합의사항을 국내 입법화 수준으로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결과적으로, 국내적 수준에서의 보호부재가 WTO 회원국들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가장 야심찬 국제조약의 수립과 협상을 방해하진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염두에 두고, 전통지식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국제기준 논의에 노력할 것을 제안하였다.

### (iii) 전통지식의 문서화

브라질은 전통기술의 문서화가 특허당국이 이미 존재하는 기술(先在技術: prior art)

60) 동 권고는 국가적 고유의 시스템은 전통지식을 적절히 보호하는데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 따라서, 전통지식의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메커니즘의 모색이 필요하고, 이는 전통지식의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별도보호 체제의 최소 기준을 검토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점과 전통적, 지역적 그리고 토착적인 공동체들은 공동체 권리를 위한 국제적 체제를 구축하는데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을 확인하고 전통지식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제출된 특허청구를 확인하는데 분명한 기여를 제공한다고 평가하고 스위스(IP/C/M/25, 81문단), 인도(IP/C/W/198, 16, 23문단), 미국(IP/C/W/209, 주제4의 3문단) 등에서 이미 전통지식의 문서화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이 주지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으며, 이런 맥락에서 TRIPS 이사회가 이 목적을 위한 구체적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또한 생물다양성 협약에 따라 토착의 전통적인 공동체의 사전동의 없이 그들의 전통지식이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공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문서화의 방법이 부담스럽거나 고비용이어서는 안된다는 의견과 함께,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자료들이 생물자원 약탈을 손쉽게하는 폐단을 피하기 위하여 동 데이터베이스의 최종의 활용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전통지식, 종자에 관한 재배자 권리(farmers' rights) 개념과의 관계에 대한 일본의 논의내용을 두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 (i) 전통 지식

몇몇 회원국들이 전통지식의 보호방법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전통지식의 보호를 위한 새로운 별도의 보호제도 설립은 주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본은 이것이 27조 3항 (b)의 식물변종의 보호를 위한 별도의 보호제도와는 다른 것이라고 평가하고, 어떻게 이들 이슈가 27조 3항 (b)의 검토작업과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면서 동 검토작업이 특허가능성의 선택적인 배제와 이에 대한 예외로 한정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전통지식의 정의는 무엇이며, 누가 이를 소유하고 있는가와 같은 몇몇 이슈들을 명확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 작업은 여러 사례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다음 단계에서는 특허, 영업비밀, 사적계약 등과 같은 현존 법적보호의 틀 안에서 어떻게 전통지식이 보호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며, 전통지식에 대한 논의는 전통지식을 보호하기 위하여 새로운 지적재산권체제의 확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히고, “지적 재산권과 유전자원, 전통지식과 민간전승에 대한 WIPO 정부간 위원회”에서의 논의결과를 주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일본은 또한 몇몇 회원국들이 제3자의 전통지식에 관련된 물질을 대상으로 특허를 얻고 있는 데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일본을 포함하여, 많은 회원국들의 특허법에서는, 문서에 그 내용이 기재된 발명뿐만 아니라, 특허신청서가 접수되기 이전에 이미 대중에 알려졌거나 다른 지역에서 사용중인 발명까지도 이미 존재하는 기술(先在技術: prior art)로 인정되고 있으며, 대부분 구전되는 전통지식 또한 다수 회원국의 특허법에서 선제기술로 인식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미 존재하는 전통지식과 관련된 발명에 잘못 부여된 특허권은 사후절차를 통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일본은 전통지식이 문서화될 경우 특허심사자들이 해당 전통지식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선제기술인 전통지식에 비하여 새롭고 창의적 특성이 부족하여 청구가 기각되는 발명에 대한 효과적인 검사가 가능해진다는 관점에서 전통지식을 문서화 하려는 몇몇 회원국들의 최근 노력을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ii) 종자에 관한 재배자의 권리(재배자종자권: Farmer's rights)

일본은 수확종자에 대한 재배자의 권리 혹은 “재배자종자권” 개념은 1989년 11월 29일 채택된 FAO 결의안 5/89에서 “재배자종자권은 보존, 개선, 그리고 특히 원천/다양성을 중심으로 식물유전 자원들을 활용가능하게 만든 과거 현재 미래의 작물재배자의 기여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로 서술되고 있으며, 이 개념은 RIUPGR(the Revised International Undertaking on Plant Genetic Resources)의 초안에 도입되었고, 동 초안의 제15조 2항은 재배자종자권을 인정하는 것이 당사국 의무임은 물론 각 당사국은 재배자종자권을 증진시키고 국내법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고 소개하고, 이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WTO 회원국들이 FAO 국제규약(International Undertaking)의 개정논의에 주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상에서 제안된 의견들은 세부적으로 별도의 이견제시가 가능할 것이나 당사국들이 상당수준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제기한 의견임을 감안할 때,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의 이해관계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기술수준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자적 입장을 고려할 때 전통지식의 약탈행위에 대한 방지에 타당한 것으로 지지 입장을 표명할 수 있을 것이고 개도국의 지식보호 및 전통유지에 동 협정이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3. 검토의제 3: 환경목적의 라벨링요건

#### 3.1 각료선언 32조 3항

DDA 검토의제 3번째 항목은 환경목적의 라벨링 요건과 관련된 것으로 각료선언문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표 4-6 Para 32(iii) 환경목적의 라벨링 요건

<< Paragraph 32(iii) >>

CTE는 소관의제에 대한 현행 작업범위 다음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ii) 환경목적의 라벨링 요건

#### 3.2 주요국 입장

##### 스위스 61)

스위스는 라벨링 논의의 의의에 대해서 최근 소비자가 환경친화적 제품에 대해 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경향이 증대하여 환경 마킹과 라벨링은 개도국 제품의 선진국 시장 접근성 확대 기회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국가·지역별로 다양한 환경마킹, 라벨링 요건이 적용되고 있고 이는 정부기관에 의해 보호무역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따라서 TBT 협정에 의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요건 적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TBT 협정상 환경 마킹과 라벨링 규정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제안하였다.

- 기술적 규제/표준으로서의 마킹과 라벨링
  - TBT협정상 기술과 표준 정의에 마킹, 라벨링 요건이 포함되며, 환경 마킹과 라벨링은 비차별, 불필요한 무역 장벽 철폐와 같은 기술과 표준에 적용되는 의무 규정을 따라야 함.
- 요건 적합 심사의 일부로서 마킹과 라벨링
  - 생산자는 요건 적합 평가에 따라 마크를 받을 권리를 가짐

61) (G/TBT/W/162)

스위스의 환경라벨링 관련 공개 질의 사항(Open Question) 의견은 다음 표 4-7로 정리될 수 있다.

표 4-7 환경목적 라벨링 관련 스위스 공개 질의 사항

구분	내용
의무적/자발적 라벨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BT협정상 마킹, 라벨링 요건은 그 자발성 여부에 따라 두 가지 분류로 나누어지지만 이에 따른 의무 사항 차이의 정당화가 문제됨</li> </ul>
제조 과정 및 생산 방법(PPMs)에 따른 마킹과 라벨링 요건에 관한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PMs에 따라 (a)제품 특성, (b)제품 특성에 나타난 PPMs, (c)제품 특성에 드러나지 않는 PPMs로 분류 하지만 그 분류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li> </ul>
마킹과 라벨링의 합리적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BT협정상 기술적 규제는 합리적 목적 필요 범위 내이어야 하고 합리적 목적에 관하여 기만 관행과 같은 포괄적 열거 규정을 둠</li> <li>▪ 소비자 정보가 기술적 규제를 위한 합리적 목적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며 문맥상 기만 관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li> </ul>

#### 캐나다 제안서<sup>62)</sup>

캐나다는 TBT 협약상 라벨링 규정에 대해 TBT 협약은 라벨링을 규율하고 기술적 규제와 표준 정의 내에서 라벨링 조치를 적용하는 것이며 TBT 협약 집행과 관련하여 실제적인 이해를 통한 토론이 효과적일 것이므로 TBT규정을 토론의 기본 틀로 할 것을 다음 표 4-8과 같이 제안하였다.

62) (G/TBT/W/174)

표 4-8 환경라벨링 관련 토론의 기본 틀 제안(캐나다)

구분	내용
라벨링 정책 수단 선택(Choice Policy Instrument for Labell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책 수단은 효과성과 합리적 규제 관행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함</li> </ul>
의무적/자발적 방법 선택시 고려점 (Mandatory/Voluntary Measur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필요성 : 라벨링 조치의 필요성, 최선의 방법 여부</li> <li>방법 설계 : 라벨링 기준 설정 방법과 투명성을 고려</li> </ul>
기술적 규제로서 TBT협약상의 요건(TBT Requirements for Technical Regul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적 규제로서 라벨링은 TBT 협약상의 기술적 규제 일반 적용</li> </ul>
투명성과 적합성 평가 (Transparency and Conformity Assess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효과적 순응을 통한 집행상의 효율성 확보 목적</li> </ul>
라벨링 "표준" (Labelling "Standa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준의 준비(preparation), 채택(Adoption), 적용(Application)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표준제정기구의 참여 필요</li> </ul>
조화와 형평성 (Harmonization and Equivalenc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를 통해 처리 비용(transaction cost) 절감과 용이한 무역이 가능</li> </ul>
제조공정 및 방법과 무관한 제품의 라벨링(npr PPM Labelling <sup>63)</su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히 무역효과와 관련하여 논의</li> </ul>
개도국에 대한 고려(Developing Country Conside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도국의 경우 선진국의 앞선 기술에 대해 경쟁 능력이 제한되어 많은 국가가 라벨링에 관해 유보를 표명하고 있어 개도국의 어려움과 이익에 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함</li> </ul>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 / Geographical indicato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와 관련한 라벨링 사안 연구에 있어서 관련 WTO 포럼들과의 협조 제안</li> </ul>

향후 조치/제안사항으로는 TBT 위원회가 무역과 관련된 모든 라벨링 분류 작업을 사무국에 부과하고 TBT 위원회에 비공식 워크숍 개최 제안하였다.

#### EC 제안서<sup>64)</sup>

EC는 TBT 위원회의 역할로 라벨링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그 요건이 각국별로 상이하여 생산자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기에 TBT상의 라벨링 규정의 적용과 관련 정보와 경험을 교환하여 라벨링 요건에 관한 공통의 이해, 해석 또는 지침을 규정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발적 라벨링과 관련하여 투명성을 증진시키고 의무적 라벨링 계획을 차질 없이 통보하여 결정의 이행을 확보하며, 비정부기관에 의한 자발적 라벨링 계획을 검토하고 이의 실행 강화 방안을 찾도록 제안하였다.

63) Non-product-related (npr) PPMs : 제조공정 및 방법으로 제품의 본질, 특성 또는 질이 변화하지 않는 제품(예:생선)

64) (G/TBT/W/175)

특히 비정부 표준화 기구(Non-Governmental Standardizing Bodies)의 자발적 라벨링은 정부에 의한 것과 유사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 기구들의 관행 규정 준수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국제적·지역적 표준(International and Regional Standards)에 대해 관련 국제 기준의 명확한 규명, 국제기준 개발 작업 지원, 개도국의 국제 기준 사용 촉진, 지역 차원의 라벨링 계획 논의 활성화를 위한 TBT 위원회의 노력을 제안하였다.

형평성(Equivalency) 문제에 대해 형평성은 라벨링 요건으로 인한 무역 장벽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서로 다른 라벨링 요건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국제적 기준 사용 검토와 협약상 형평성의 폭넓은 적용을 주장하였다.

지속적 검토(Keeping Measures under Review)부분에 대해 TBT 협약상 기술적 규제의 상황과 목적의 변화에 따라 재검토가 필요한 바, 위원회가 재검토를 위한 국제적 기준 개발 원리를 결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개도국의 이해관계(Developing Country Concerns)에 있어서 기존 또는 제안된 라벨링 요건에 대한 지속적 정보 제공, 개도국의 수출 시장에서 라벨링 요건 준수 지원 방안, 국제적 라벨링 기준 설정 및 국제기구나 표준화 기관에의 개도국 참여 증진, 그리고 개도국들의 국제적 기준을 적절히 사용토록 하고 그로부터의 이익을 최대화하도록 하는 조치들을 취하도록 제안하였다.

EC의 향후 조치로써 2002년 6월의 비공식 모임에서 라벨링에 관한 사무국 보고서(Secretariao paper) 작성/제출 유도하고 이에는 TBT나 다른 WTO 사무국 보고서 검토, TBT나 WTO 결정 재검토, 개도국의 기술 원조 재검토, 국제적 라벨링 활동의 재검토 등이 포함되어야 함을 밝혔다. 또한 개도국의 이해관계와 관심에 맞추어 효과적인 기술적 원조, 국제적 표준과 적합성 평가 시스템 개발 등의 논의 필요성에 대해 라벨링에 관한 비공식 워크숍 개최를 제안하였다.

#### 스위스 제안서<sup>65)</sup>

스위스는 앞선 TBT제안서에서와 마찬가지로 “에코-라벨링”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에코-라벨링”은 여타의 정책에 비해 건전한 정책으로 사적 이해관계자 뿐 아니라 정부는 이 정책이 반영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소비 패턴 도모를 위한 정책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다. “에코-라벨링”은 상품군에서 가장 환경친화적 제품에 부여하는 것으로 이 표시가 없는 외국 제품에 대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국가별 “에코-라벨링” 부여 기준 차이는 무역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국제적 조화 · 형평성 · 상호 공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스위스는 CTE가 수행해야 하는 조치로써 다음의 사항이 검토될 수 있는 조직화된 토론 개최를 제안하였다.

---

65) (WT/CTE/W219)

■ "에코-라벨링"의 정의

- UNEP는 '소비자에게 라벨 부착 제품이 해당 상품군에서 다른 제품에 비해 보다 환경친화적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라 정의함
- 스위스는 이 정의에 자발적 성질의 라벨링 외에 의무적 라벨링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정해져야 하며, 정의와 상관없이 두 가지 모두 환경적 목적을 위한 라벨링의 도하 mandate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

■ 환경라벨링계획과 관련한 특정 무역 이슈의 확인 및 분석

- 환경라벨링계획과 관련한 보고서의 재검토 및 토론을 확인하는 것은 이와 관련한 무역 이슈의 본질을 지적할 수 있음

■ 필요한 조치에 관한 결정

- 관련된 WTO규정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논리모순이나 공개 질문을 제기하고 관련 규정의 이행을 위한 이슈를 검토

향후 조치로써는 CTE가 환경라벨링의 핵심 사안 조기 착수를 제안하며 향후 작업에는 가능하다면 TBT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고 다른 WTO포럼의 작업이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EC 제안서66)**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자발적인 환경라벨링제도 관련 논의가 다른 라벨링제도에 대한 기준이 되거나 WTO 회원국들의 일반 라벨링 관련 권리 및 의무조항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 이러한 제도들은 환경적 목표를 성취하는데 있어 가장 무역친화적 방안이 될 수 있음
- 이미 관련 주제하에 논의가 상당수준 진전되었음
- 1999년의 ISO 14024를 통해 이러한 제도들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도출
- 최근 열린 WSSD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촉진 수단으로 시장기반기제의 사용지지를 천명

개도국 관련사항으로 환경라벨링제도는 개도국에 있어 시장접근의 장애물이자 시장접근의 수단이 될 수 있으며, 개도국이 환경라벨링제도를 시장접근 수단으로 활용하려면 자체 환경라벨링제도의 수립과 해외 수출 시장에 대한 환경라벨링 인증취득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기에 이를 위해 각 국 정부 및 국제기구간 협력 및 조율의 필요성을 강조

---

66) (WT/CTE/W/225)

하였다.

결국 EC 제안 내용은 다음 표 4-9와 같이 환경라벨링 목적의 기본원칙과 WTO 회원국 준수사항을 요약할 수 있다.

**표 4-9 환경라벨링에 관한 EC 제안**

<p><b>A. 기본 원칙</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발적 환경라벨링제도는 WSSD의 성과에 기반, 환경적 목표의 달성에 기여</li> <li>▪ WTO에서 환경라벨링제도가 개도국들이 환경의식수준이 높은 해외시장에 대한 진입 기회를 원활화하는 조치를 마련해야 함을 주장</li> <li>▪ 전과정환경성(LCA)에 기반하는 자발적 환경라벨링제도는 WTO 협정의 권리 또는 의무조항에 적법해야 하며 불필요한 무역장벽화 저지</li> <li>▪ WTO 회원국들은 기존 및 새로운 제도의 통보, 안내 및 홍보에 주력하여 개도국들의 환경라벨링제도의 정의 및 운영내용 이해 극대화</li> <li>▪ 환경라벨링제도에 TBT 모범관행규약의 원칙을 반영하며 운영의 투명성 및 지속적인 재검토과정이 후행되어야 함</li> </ul>
<p><b>B. WTO 회원국 준수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도국 수출시장의 환경라벨링요건 준수에 필요한 기술 지원, 라벨링 관련 국제기구들의 작업 참여 및 자체 라벨링제도 마련을 위한 필수사항을 규명하여 기존의 작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함</li> <li>▪ 선진국에서 개도국의 환경라벨링인증 취득비용 절감을 위한 조치 권장. 개도국의 선진국 환경라벨링 취득 희망 생산자들에게 일부 또는 초기 비용 지원방안 고려를 제안</li> <li>▪ STIC 지원을 통한 개도국 생산자와 선진국간의 자발적 라벨링 규정에 대한 대화 원활화</li> <li>▪ 상이한 환경라벨링제도 간의 협력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법 모색이 필요</li> </ul>

### 3.3 평가 및 대응전략<sup>67)</sup>

개별국 차원의 자율적 환경라벨링이 시장접근 및 무역에 미치는 효과 등이 다뤄지나, 비제품관련생산공정(NPR-PPMS)에 근거한 환경라벨링제도에 대한 국제적 공인을 이끌어내려는 EC를 비롯한 일부 선진국의 입장이 상당한 논란을 야기하는 가운데, TBT위원회에서 논의함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 제기되고 있어 아직 구체적 논의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관련 현안에 대한 지역 및 개별국가의 대응동향 및 ISO를 포함한 국제기구의 논의동향에 대한 조사분석을 포함하여 관련 제도의 시장접근 및 무역억제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의 모색과 TBT 위원회에서의 유관 논의동향에 대한 조사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환경라벨링과 관련한 WTO/CTE 논의 및 TBT 위원회의 논의동향에 대한 세부적 분석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선진국 동향 및 국내 환경라벨링 실시현황에 대한 조사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 장기적으로 이러한 환경라벨링 관련 국내외 국가들과의 비교분석 및 WTO 논의동향을 바탕으로 정부차원의 산업정책기반 구축방안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67) 세부내용은 부록#6 환경목적 라벨링, 부록#7 한국과 EU PPMs 기준비교 참조

## 제 5 장 결론 및 향후과제

2002년 1월 이후 DDA 무역협상위원회(TNC)산하 각 협상기구에서 의제별 협상이 진행중이며, 환경서비스 시장개방협상은 서비스이사회 특별회의에서 既定 의제(Built in Agenda)로 2000년 1월부터 협상이 개시된 상태이다. 환경상품 무역의 자유화는 비농산물시장접근협상그룹에서 다뤄지며, 여타 협상 및 검토의제: 무역환경위원회(CTE) 협상회의에서 토의되고 있다.

DDA 협상의 중간평가 회의인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의 제5차 WTO 각료회의 실패로 현재 DDA 협상 전반에 대한 추진력이 약화된 상태에 있다. 표면적으로 무역원활화 관련 의제(싱가폴 의제) 협상에 대한 선·후진국간의 이견이 각료회의 실패 원인으로 언급되나, 실제로는 농업보조금 감축을 둘러싼 농산물 수출·입국간의 대립이 근본원인이었다. 2004년 3월 현재 제네바 주재 각국 대표부를 중심으로 협상촉진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환경관련 협상을 위해 WTO 무역환경위원회(CTE) 특별회의가 2004년 4월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의제별 쟁점 및 각국의 입장을 정리하면 환경협정이 정한 특정무역의무 조항의 WTO 무역규범 내 수용여부 및 수용방식에 대한 협상인 협상의제 1: MEA 무역규제조치와 WTO 규범의 관계에서는 WTO 규범개정을 포함하는 자동 수용방식을 지지하는 EU, 제한된 범위의 선별수용을 주장하는 개도국, GATT20조 일반예외규정을 활용한 현상유지안을 선호하는 미국 등 입장이 대립된 가운데 협상대상 환경협정 및 특정무역조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올해 4월의 CTE 회의에서도 EC는 MEAs와 WTO규범의 일반적 관계를 정립하자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스위스 및 노르웨이 등이 공감을 표시하였다. 미국, 호주 및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EC제안서의 개념들이 협상의 mandate를 벗어날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무역조치를 배제하고 현재 발효중인 6개 MEAs 상의 특정무역의무를 WTO 규범내 수용하자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EC의 제안서가 CTE협상의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하였다. 협상의제 2: MEA사무국과 WTO위원회간 정보교환절차 협상은 정보교환 활성화를 위한 절차적 문제로 특별한 쟁점없이 진행되고 있다.

환경상품 교역자유화를 논하는 협상의제 3-a의 경우 환경상품 범위 및 자유화 방식이 협상대상이며, 현재 환경상품 목록에 환경친화상품을 포함시킬지 여부가 쟁점이 된 가운데 미국, 일본, 스위스 등의 제안서를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 중이다. 2003년 3차 CTE회의에서 제출된 미국제안서를 중심으로 금년도 1차 CTE회의에서도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APEC 국가들은 환경상품논의 진전측면에서 지지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EC는 환경상품범위의 제한적 작성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는 등

공식적인 입장발표를 미룬 반면, 개도국들은 미국의 환경상품 Core list 기준이 경쟁력 측면에서 개도국에게 불리하다며 반대입장을 취하였다. 또한 중국이 환경상품을 선진국과 개도국별 서로 다른 리스트를 제출하는 방식을 제안하며 주목을 끌었다. 우리나라는 환경상품 논의의 기초로써 APEC list의 유용성을 표명하고 원칙적으로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의 협상참여를 강조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산업의 보호·육성과 환경질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상품 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련 협상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협상의제 3-b: 환경서비스 시장개방 확대의 경우, 서비스 협상일정에 따라 개방요구서('02.6) 및 개방제안서('03.3)를 교환하고 지난 5월과 7월 미국, 일본, EC, 캐나다와 1·2차 양자협상 진행중이다. EU, 미국, 일본 등 13개국이 음용수처리, 폐수 및 폐기물 처리, 토양오염복원 부문 등에서 우리나라의 추가시장 개방을 요구하였고, 우리는 중국, 인도네시아 등 9개 아시아지역의 시장 미개방 국가에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UR 환경서비스 양허계획안에 기재된 대부분의 제한사항을 철폐한 1차 양허제안서를 제출하였다. 2004년 현재 WTO 제5차 각료회의 실패로 2003년 10월 및 12월 예정된 3·4차 협상에서 실질적인 양자협상이 진행되지 않았다.

검토의제 논의동향과 관련 하여 환경조치의 시장접근에 대한 효과 및 무역, 환경, 개발에 대한 무역 규제·왜곡조치의 영향에 대한 환경유해보조금 감축, 생물다양성 협정과 TRIPs(지적재산권) 협정과의 관계 명확화, 환경라벨링과 기술적 무역장벽 해소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나, 여타 DDA 협상기구와 중복논의 우려로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WTO 제5차 각료회의 당시 이들 의제에 대한 협상개시 주장(EU)에 대한 반대 입장이 우세하였으며, 현재까지도 동 의제에 대한 협상전망은 불투명하다. 금년도 1차 CTE 정례회의에서도 검토의제 1번과 관련하여 EC측의 선진국 환경관련 시장규제와 개도국에 대한 지원 두 가지 측면의 접근이 되어야한다는 언급외에 진전된 논의가 없었다. 검토의제 2번째 항목인 TRIPs 협정 유관 조항에 대해서도 EC측의 CBD 당사국 회의결과에 대한 정보제공요청 제안과 브라질의 동 의제에 대한 중요성 강조 발언 외에 특기 사항이 없었으나, 환경목적 라벨링 요건에 대한 3번째 항목 의제에 대해서는 EC가 차후 논의방향을 제시하며 차기 회의에서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임을 나타내었다.

2004년 칩체기로에 있던 DDA 환경의제 협상은 일부 의제에 대해 중국 EC 등의 새로운 제안이 나오며 향후 활성화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협상의제 1과 관련하여 우선 MEAs 동 의제에 대한 향후 논의방식에 대한 공식입장을 다시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본론에서 언급한 논의가 예상되는 다자간 환경협약에 WTO 규범간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논의의 기초가 되고 있는 EC의 STO 범주별 대응입장 첫 번째로, 협상범주가 좁혀지는 경우 대부분 협상국들이 찬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WTO차원의 별도 검토절차 없이 해당 STO의 WTO 합치성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두 번째 범주에 대해(STO-2) WTO자원의 합치성 검토절차를 거쳐 이를 규범체계 내에 수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세 번째 범주에 대해서는 앞선 두

범주보다 논란의 여지가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되나 기본적으로 합치성 검토절차를 거쳐 WTO내에 수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끝으로 네 번째 범주에 대해서도 일정한 WTO 차원의 합치성 검토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수용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협상의제 3-a 환경상품의 시장개방 분석에 대해,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OECD 및 APEC 리스트를 기초로 환경부, 산업자원부 등 실국 검토를 거쳐 도출한 개방가능성 검토자료를 활용하였다. 동 검토결과에 따르면 총 183개 HS 6단위 대상품목 가운데 기술 열위, 가격열위, 범용성 등의 이유로 개방불가로 분류된 품목을 제외하고 69개 품목이 개방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HS 10단위로 세분류하였을 경우 일부 개방이 가능한 품목을 포함하여 총 95개 품목이 개방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아가 본 연구는 개방가능 환경친화상품을 발굴하기 위한 시도도 병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품목별 주요 생산업체 및 관련 단체 등 총 94개 기관 및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 인하 찬반 여부에 대해 설문조사 실시하여 시장개방이 유리한 품목, 점진적 개방가능품목, 개방이 불리한 품목으로 분류한 결과, 청정생산제품의 경우 전체 59종 품목 가운데 34개 품목이 개방가능, 20개 품목이 점진적 개방가능, 5개 품목이 개방불가품목으로 분류되며, 에너지·자원관리물품의 경우 전체 38종 품목 가운데 8개 품목이 개방가능, 6개 품목이 점진적 개방가능, 24개 품목이 개방불가로 분류되었다.

환경상품협상은 환경상품에 대한 정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어 우리나라 교역이익뿐만 아니라 얼마나 국제적으로 지지가능하고 설득력 있는 정의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선 개방불리품목을 제외할 수 있는 근거로서 매우 범용도가 높은 품목을 배제한다거나 Ex 표기로 특정 물품을 명시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차후 우리나라 비교우위 환경상품으로서 수출주도 환경친화제품을 협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제품 분류 및 식별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논리 개발을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협상의제 3b 환경서비스 부문과 관련해서는 먼저, 경쟁력이 취약한 환경서비스 분야의 경우 향후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예측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기술습득을 위한 컨소시엄 형태의 제한적 개방 입장과 개방불가 입장을 유지하는 2가지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이슈화 될 수 있는 공공서비스부문과 관련해서 선진국의 1차 양허제안서 상 공공부문 미개방 의견을 사전 조사, 분석하고 개도국의 환경서비스 시장진출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고려하여 대응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다. 긍정적 효과로는 개도국 환경서비스 분야의 대부분이 공공서비스 분야임을 감안할 때 공공서비스 개방은 국내 환경산업체의 개도국 시장진입을 촉진할 수 있으며 선진 환경서비스의 국내 유입을 통한 환경서비스 수준과 질의 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 공공서비스 개방의 부정적 효과로 고려될 수 있는 점은 선진국에 비해 국내의 낮은 경쟁력을 감안할 때, 국내 및 개도국 시장의 시장잠식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과 WTO 5차 각료회의 협상 결렬로 인해 DDA 서비스협상 전반에 개도국이 참여하지 않은 복수국가 형태의 협

정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실질적인 개도국 시장진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무역과 환경 연계에 관한 WTO 차원의 최근 논의는 회원국간의 첨예한 이견대립으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무역자유화, 경제개발, 환경보호 사이의 시너지 극대화를 추구해야 하며, 적절한 자원관리를 통한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환경보호와 같은 지속가능 개발 목표와 지속적인 무역자유화간에 발생될 수 있는 갈등을 피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환경보호목적의 조치를 보호주의적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국제정세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WTO 도하개발아젠다 협상과 관련 하여 도하개발아젠다 환경협상은 무역확대와 환경보호를 동시에 고려하는 세계경제 지속가능 발전의 시발점이란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교역상품 및 서비스의 환경친화성이 국제무역에서 참여하는 개별국 대외경쟁력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등장하는 국제정세 변화에 직면하여 국내 환경기준 강화와 준수 의무 이행은 추가적 비용부담이 아닌 경제활동의 환경친화성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방안이란 인식이 필요하다. 협상결과의 국내 수용과정에서 취약 부문에 대한 보완정책과 비교우위 분야에 대한 적극적 해외진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에 있으며, 유관부처 및 이해당사자를 망라한 범국가적 공조대응이 요구된다 하겠다.

21세기 새로운 국제 경제질서를 탐색하게 될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에 환경의제가 포함되었다는 점은 그간 경제적 관점을 중심으로 검토되어 온 시장개방협상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외통상정책의 기본 방향에 일정한 수정을 요구한다. 우리나라 환경통상정책의 기본방향은 우선적으로 환경보전과 자유무역의 관계를 상충보다는 보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한 도하개발아젠다 환경협상 대응정책 및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도하개발아젠다와 같은 다자간 무역협상은 물론 최근 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양자간 또는 지역간 무역자유화 협상전반에 대한 제도적 대응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도하개발아젠다에 대한 정부의 대응체계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정점으로 범정부적 협상체제가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협상참여 부처별로 대책반을 설치하고 소관분야 대책안을 마련하여 대외경제실무 조정회의를 거쳐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주요 의안으로 상정하여 결정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 의제 전반에 대한 포괄적 대응체계를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세부 협상의제를 다루는 실무협상대책기구 간의 이견 조정문제를 다룰 종합적인 검토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국제환경협약 또는 국제무역협정 관련 협상을 위한 대외 환경정책 및 통상정책의 수립 시행에 있어, 국내 담당 부처 및 이해관계자와의 정책협의 절차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DDA협상에 대한 이해관계자 단체 및 국민과의 협의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민·관 합동포럼,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서도 적절한 대응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선진국 경제협력기구인 OECD에서는 이미 1994년 환경정책과 무역정책의 조화를 위한 상호 검토지침을 개발 제시한 바 있으나, 아직 국내에서는 이러한 검토지침에 입각한 체계적인 정책협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정책협의를 진행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부분 환경협상 혹은 무역협상에 참여하는 정부부처 협상 담당자를 중심으로 한 대책회의를 통해 검토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심도있는 검토와 그에 기초한 대외 협상대책 및 국내 대응방안의 체계적 도출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세계화를 통해 전통적인 관점의 국가간 경제가 불분명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정책 협의 절차는 비단 대외 환경 및 통상 정책의 수립시행은 물론 국내 환경 및 경제정책의 수립시행에 있어서도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셋째, 국내 환경전담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과제로 시장개방의 확대에 인한 국내환경 영향을 사전예측하고 관련 대응정책 개발을 목표로 하는 “대외통상정책의 환경성 평가절차 수립”을 들 수 있다. 자유무역의 확대 또는 다자간 무역협상에 따른 시장개방의 환경성에 대한 평가는 도하개발아젠다 관련 각료선언의 전문 제6조에 언급된 사안이다. 이 과제는 향후 협상에 임하는 우리나라의 기본 입장을 가늠하는데 필수적인 중요한 기초연구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다. 대외무역 정책의 환경파급효과에 대한 국가차원의 평가절차를 수립 시행 중에 있는 미국, EU 등 일부 선진국의 대응사례가 구체적인 국내 평가절차의 형태와 도입계획 수립에 참고가 될 수 있다.

## 참고문헌

- 강상인 외, 2000, “환경부문을 고려한 국제무역과 내생적 지속성장모형 연구”, 00\_RE04, KEI.
- 강상인, 박준영, 1999, “국제환경규제강화가 국제교역상 시장접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99\_RE14, KEI.
- 곽승준, 2001, 『환경친화상품에 대한 WTP 조사』.
- 김태용, 2004, “2004 국내환경산업시장 전망”, 환경보전.
- 산업연구원, 1999, 『환경·신에너지산업의 발전전략』.
- 산업자원부, 2001, 『2010 산업비전』.
- 외교통상부, 2004, 『환경관련 국제무역규제가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례 분석 및 전략 조사 -국제환경 협약 및 선진국의 환경관련 무역 규제를 중심으로』.
- LG환경연구소, 2001, 『한국의 지속가능한 소비 및 제품증진을 위한 방안』.
- 최낙균, 박순찬, 2002, “DDA 협상의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분석”, 정책연구 02-0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국무역협회, 2002, 『무역통계데이터베이스』.
- 한국은행, 2002, 『환경오염방지지출 추계결과』.
- 환경마크협회, 2003, 『환경마크 인증제품의 시장규모 추정』.
- 환경마크협회, 2003, 『인증제품의 환경편익분석』.
- 환경마크협회, 2003, 『환경마크제품의 환경편익분석』.
- 환경부, 2003, 『환경산업체 통계조사』.

환경부, 2003, 『환경통상분쟁 및 도하라운드 WTO-MEAs 관계정립논의대응방안 연구』 .

환경부, 2003, 『WTO 도하개발아젠다 환경서비스시장 양허방안 연구』 .

환경부, 2002, 『환경통상분쟁 및 도하라운드 WTO-MEAs 관계정립논의 대응방안 연구』 .

환경부, 2002, 『환경서비스 부문 주요 교역국의 영허현황 조사연구』 .

환경부, 2001, 『무역자유화의 환경성 평가에 관한 조사 연구』 .

환경부, 1999, 『환경보호목적의 무역규제에 대한 대응방안 조사 · 연구』 .

OECD, 1994, "Managing the Environment with rapid Industrialisation", Development Centre Studies, Paris.

OECD, 1998, "Assessing Barrier to Trade in Services: Environmental Services", COM/TD/ENV(98) 128.

WSSD, 2002, "Plan of Implementation for 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TO, Nov. 2001, WT/MIN(01)/DEC/1.

WTO, 1994, Trading into the Future, 2nd ed.

WTO, Secretariat

- TN/MA/W/18
- TN/TE/R/(1,2,3,4,5,6,7), TN/TE/8
- TN/TE/W/(6,8,14,17,18,19,24,27,33,34,38)
- WT/CTE/GEN/12, WT/CTE/W/228.

web site;

[www.wtodda.net](http://www.wtodda.net)

[www.ebiusa.com](http://www.ebiusa.com)

[www.kita.net](http://www.kita.net)

[www.oecd.org](http://www.oecd.org)

[www.wto.org](http://www.wto.org)

## 부록#1 : DDA 각료선언문 서언 요지

### 1) 원문

『We strongly reaffirm our commitment to the objective of sustainable development, as stated in the Preamble to the Marrakesh Agreement. We are convinced that the aims of upholding and safeguarding an open and non-discriminatory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nd acting for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and the promo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can and must be mutually supportive. We take note of the efforts by members to conduct national environmental assessments of trade policies on a voluntary basis. We recognize that under WTO rules no country should be prevented from taking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or of the environment at the levels it considers appropriate, subject to the requirement that they are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between countries where the same conditions prevail,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and are otherwis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WTO Agreements. We welcome the WTO's continued cooperation with UNEP and other inter-governmental environmental organizations. We encourage efforts to promote cooperation between the WTO and relevant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nd developmental organizations, especially in the lead-up to 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to be held in Johannesburg, South Africa, in September 2002. < para. 6 WTO Ministerial Declaration 14 November 2001 WT/MIN(01)/DEC/1 >』

### 2) 국문요지

- 현재 세계적인 경제침체 상태에도 불구하고 각 회원국은 WTO가 추구하는 원칙과 목적을 재확인하고, 보호주의 조치를 억제하며 각국 무역정책의 개혁 및 자유화를 계속 추진.
- 국제무역이 빈곤퇴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전제 하에 다자통상체제로부터 생기는 혜택을 모든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 선언문에서 채택되는 모든 작업 계획이 개도국과 최빈국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 무역자유화에 있어 지역무역협정의 중요성도 인정하지만 세계무역규범형성 및 자유화를 위한 유일한 포럼으로서의 WTO의 중요성을 확인.

-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보다 잘 적응하고 세계경제정책 형성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브레튼우즈 기구 및 관련 국제기구들과의 협조를 계속.
- 개방적이고 비차별적인 다자통상체제를 유지하는 것과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증진하는 것은 서로 상호 보완적일 수 있고 또 그래야 함을 확신.
- 각국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수준의 건강, 안전, 환경보호 목적의 조치를 취할 권리를 인정하며, 그러한 조치가 보호주의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
- 국제적으로 합의된 핵심노동기준에 대한 싱가포르 각료 선언문 내용을 재확인하고, 세계화의 사회적 측면에 대한 국제노동기구의 작업에 대해 주목.
- 중국과 대만의 WTO 가입작업이 금번 각료회의에서 마무리됨을 환영하고, 현재 진행 중인 28개국의 가입작업이 최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끝나기를 희망.
- 모든 회원국의 효과적인 활동 참여 및 WTO의 내부적 투명성 증진을 보장할 공동의 책임을 확인하고, 정보 교류 및 대화의 장 제공을 통해 WTO에 대한 일반대중의 이해도를 제고하도록 노력.
- 이러한 고려 하에 넓고 균형적인 작업계획을 추진.

## 부록#2 : DDA 환경서비스 1차 양허제안서

### □ UR양허현황 대비 DDA 1차양허(안) 수정 내용

관련 업종	시장 접근에 대한 제한(M/A)	수정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N/T)	수정	추가 양허	수정
A. 폐수 수탁처리 서비스[9401*]	1) Unbound① 2) 없음 3) <del>총서비스공급자수 25개제한</del> ② 4) 전 분야 기재 제한사항 외 Unbound	없음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전 분야 기재 제한사항 외 Unbound		산업폐수에 국한③	
B. 폐기물수집 처리서비스 [9402*]	1) Unbound① 2) 없음 3) <del>상업적 주체의 설립은 경제적 수요심사에 의함.④</del> <del>영업을 허가한 지방환경청 관할 구역내에서의 폐기물 수집·은반입만 허용⑤.</del> 4) 전 분야 기재 제한사항 외 Unbound	없음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전 분야 기재 제한사항 외 Unbound		산업폐기물에 국한③	
D. 기타 배기가스 정화 및 소음방지 서비스 [9404*, 9405*]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전 분야 기재 제한사항 외 Unbound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전 분야 기재 제한사항 외 Unbound		<del>건설분야</del> 제외⑥	
환경영향평가 서비스 [9409*]	1) 없음 2) 없음 3) <del>상업적 주체의 설립은 경제적 수요심사에 의함.④</del> 4) 전 분야 기재 제한사항 외 Unbound	없음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전 분야 기재 제한사항 외 Unbound		자연경관보호 제외⑦	

### 부록#3: 주요국(22) 1차 환경서비스 양허안

#### 1. 아르헨티나

부문/소부문	시장접근제한	내국민대우 제한	추가양허
<p><u>With the exemption of</u> These commitments do not include public service functions whether owned and operated or contracted out by local, regional or central government</p> <p>이러한 양허안들을 제외하고는 지방, 지역, 또는 중앙정부에 의해 소유되고 운영되거나 또는 계약된 공공서비스 기능들은 포함되지 아니한다.</p>			
A. 폐수관리 (CPC9401)	1) <u>없음</u> 2) <u>없음</u> 3) <u>없음</u>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	1) <u>없음</u> 2) <u>없음</u> 3) <u>없음</u>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	
B. 고형/유해폐기물 관리 - 쓰레기처리서비스 (CPC9401) - 위생과 기타 유사서비스 (CPC9403)	1) Unbounded 2) <u>없음</u> 3) <u>없음</u>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	1) Unbounded 2) <u>없음</u> 3) <u>없음</u>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	

#### 2. 리히텐슈타인(Liechtenstein)

부문/소부문	시장접근제한	내국민대우 제한	추가양허
A. 하수 서비스 (CPC9401)	1) 기술적 실현가능성 회복에 따른 Unbounded 2) <u>없음</u> 3) <u>없음</u> 4) Part I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	1) 기술적 실현가능성 회복에 따른 Unbounded 2) <u>없음</u> 3) <u>없음</u> 4) Part I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	
B. 폐기물 처리 서비스 (CPC9402)	1) 기술적 실현가능성 회복에 따른 Unbounded 2) <u>없음</u> 3) <u>없음</u> 4) Part I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 리히텐슈타인에서 요구되는 상업적 주체	1) 기술적 실현가능성 회복에 따른 Unbounded 2) <u>없음</u> 3) <u>없음</u>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 리히텐슈타인에서 요구되는 상업적 주체	

3. 대만 외 ...(The Separate customs territory of Taiwan, Penghu, Kinmen and Matsu)

부문/소부문	시장접근제한	내국민대우 제한	추가양허
A. 하수서비스(9401) ; 폐기물처리 서비스(9402); 위생과 기타 유사서비스(9403); Others(9404, 9405, 9409)	1) Unbounded*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	
B. 쓰레기 처리서비스 (CPC9402)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	

4. 멕시코

부문/소부문	시장접근제한	내국민대우 제한	추가양허
A. 하수서비스 (CPC 9401)	1) Unbounded 2) 없음 3) federal 수준에서 제한 없음. State 와 municipal 수준에서 Unbounded.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	1) Unbounded 2) 없음 3) federal 수준에서 제한 없음. State 와 municipal 수준에서 Unbounded.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	
C. 위생서비스 (CPC94030)	1) Unbounded 2) 없음 3) federal 수준에서 제한 없음. State 와 municipal 수준에서 Unbounded.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	1) Unbounded 2) 없음 3) federal 수준에서 제한 없음. State 와 municipal 수준에서 Unbounded.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	

5. 뉴질랜드

부문/소부문	시장접근제한	내국민대우 제한	추가 양허
<p><u>다음의 환경서비스 제공관 관련 된 Consultancy (CPC940**)</u></p> <p><u>A: 폐수관리;</u> - 하수 서비스</p> <p><u>B: 고형/유해 폐기물 관리;</u> - 쓰레기 처리서비스; - 위생 및 기타 유사서비스</p> <p><u>C: 대기과 기후의 보호;</u> - 대기질 개선을 위한 배기가스 와 기타 배출물 경감 서비스;</p> <p><u>D: 토양과 물의 정화와 복구;</u> - 오염되고 더럽혀진 토양과 물 의 처리와 복구;</p>	<p>1) <u>없음</u> 2) <u>없음</u> 3) <u>없음</u> 4) <u>수평양허에 기재된 제 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u></p>	<p>1) <u>없음</u> 2) <u>없음</u> 3) <u>없음</u> 4) <u>수평양허에 기재된 제 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u></p>	

6. EC(contain its member states)

<p>부문 또는 소부문</p> <p>(S: 본 제안서는 시 당국, 주 또는 연방 정부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공공기능, 그리고 이들정부에 의해 계약이행된 공공부문을 포함하지는 아니한다.)</p>	<p>시장접근제한</p>	<p>내국민 대우제한</p>	<p>추가양허</p>
<p><b>A. 생활용수와 폐수관리</b></p> <p>A. 폐수 서비스 (CPC9401) <i>하수처리 서비스에 대응됨</i></p>	<p>1) Unbounded*</p> <p>2), 3) 없음</p> <p>4) <b>ICT, BV and CSS-ELP</b>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p> <p><b>CSS-IP: Unbound</b></p>	<p>1) Unbounded*</p> <p>2), 3) 없음</p> <p>4) <b>ICT, BV and CSS-ELP</b>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p> <p><b>CSS-IP: Unbound</b></p>	
<p><b>B. 고형/유해 폐기물 관리</b></p> <p>B. 폐기물 처리 서비스(CPC 9402)</p>	<p>1) Unbounded*</p> <p>2), 3) 없음</p> <p>4) <b>ICT, BV and CSS-ELP</b>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p> <p><b>CSS-IP: Unbound</b></p>	<p>1) Unbounded*</p> <p>2), 3) 없음</p> <p>4) <b>ICT, BV FIN</b>을 제외한 모든 멤버국가에 대해: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p> <p>FIN: 없음</p> <p><b>CSS-EJP</b>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p> <p><b>CSS-IP: Unbound</b></p>	
<p><b>C. Sanitation services</b> (CPC9403)</p>	<p>1) Unbounded*</p> <p>2), 3) 없음</p> <p>4) <b>ICT, BV and CSS-ELP</b>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p> <p><b>CSS-IP: Unbound</b></p>	<p>1) Unbounded*</p> <p>2), 3) 없음</p> <p>4) <b>ICT, BV and CSS-EJP</b>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p> <p><b>CSS-IP: Unbound</b></p>	

부문/소부문	시장접근제한	내국민대우 제한	추가양허
<p><b>C. 대기과 기후의 보호</b> (CPC 9404) 배출가스 정화 서비스와 관련</p> <p><b>D. 토양과 물의 정화와 복구</b> 오염되고 더럽혀진 물의 처리 및 개선 (part of CPC94060) 자연 및 경관보호 서비스 관련</p>	<p>1) FIN: 없음을 제외한 모든 멤버에 대해 Unbounded</p> <p>2) 없음</p> <p>3) S: 자동차와 트럭의 배기가스 통제서비스는 정부의 독점적 소유임. 이러한 서비스는 비-영리적으로 제공되어야 함.</p> <p>4) <b>ICT, BV and CSS-EJP</b>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 <b>CSS-IP: Unbound</b></p> <p>1) FIN: 없음을 제외한 모든 멤버 국가들에 대해 Unbounded</p> <p>2), 3) 없음</p> <p>4) <b>ICT, BV and CSS-EJP</b>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 <b>CSS-IP: Unbound</b> <b>CSS Unbound</b></p>	<p>1) FIN: 없음을 제외한 모든 멤버에 대해 Unbounded</p> <p>2), 3) 없음</p> <p>4) <b>ICT, BV</b> all Member States except FIN을 제외한 모든 멤버국가에 대해: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 FIN: 없음 <b>CSS-EJP Unbounded</b>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section <b>CSS-IP: Unbound</b></p> <p>1) FIN: 자문서비스에 대해 제한 없음을 제외한 모든 멤버 국가들에 대해 Unbounded</p> <p>2), 3) None</p> <p>4) <b>ICT, BV</b> FIN을 제외한 모든 국가: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 FIN: 없음 <b>CSS-EJP</b>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 <b>CSS-IP: Unbound</b></p>	

부문/소부문	시장접근제한	내국민대우 제한	추가양허
<p>E. 소음 및 진동저감 (CPC 9405)</p>	<p>1) FIN: 없음 을 제외한 모든 멤버국가들에 대해 Unbounded</p> <p>2) 없음</p> <p>3) S: 자동차와 트럭의 배기가스 통제서비스는 정부의 독점적 소유임. 이러한 서비스는 비-영리적으로 제공되어야 함.</p> <p>4) <b>ICT, BV and CSS-EJP</b>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 <b>CSS-IP: Unbound</b></p>	<p>1) Unbounded for all Member States except FIN: None</p> <p>2), 3) None</p> <p>4) <b>ICT, BV</b> FIN을 제외한 모든 멤버국가: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 FIN: 없음 <b>CSS-EJP</b>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 <b>CSS-IP: Unbound</b></p>	
<p>F. 생물다양성과 경관보호 자연경관의 개선 및 치료 (검사) 서비스 (part of CPC 9406)</p>	<p>1) FIN을 제외한 모든 멤버에 대해 Unbounded : 자문서비스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FIN: 없음</p> <p>2), 3) 없음</p> <p>4) <b>ICT, BV and CSS-EJP</b>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 <b>CSS-IP: Unbound</b> <b>CSS Unbound</b></p>	<p>1) FIN을 제외한 모든 멤버에 대해 Unbounded : 자문서비스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FIN: 없음</p> <p>2), 3) 없음</p> <p>4) <b>ICT, BV</b> FIN을 제외한 모든 멤버국가: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 FIN: 없음 <b>CSS-EJP</b>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 <b>CSS-IP: Unbound</b></p>	

부문/소부문	시장접근제한	내국민대우 제한	추가양허
G. 기타 환경 및 부수적 서비스 (CPC 94090)	<p>1) FIN을 제외한 국가: 자문서비스에 대해 제한없음</p> <p>FIN: 없음</p> <p>2), 3) 없음</p> <p>4) ICT, BV and CSS-EJP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p> <p>CSS-IP: Unbound</p>	<p>1) FIN을 제외한 국가: 자문서비스에 대해 제한없음</p> <p>FIN: 없음</p> <p>2), 3) 없음</p> <p>4) ICT and BV: 수평양허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 대해 Unbounded</p> <p>FIN: 없음</p> <p>CSS-EJP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p> <p>CSS-IP: Unbound</p>	

7. 이스라엘

부문/소부문	시장접근제한	내국민대우 제한	추가양허
<p><b>A. 하수 서비스</b> (CPC9401) (산업활동은 포함하지 않은)</p> <p><b>B. 폐기물처리 서비스</b> (CPC 9402) (산업활동은 포함하지 않은)</p> <p><b>C. 위생 및 기타서비스</b> (CPC 9403) (산업활동은 포함하지 않은)</p> <p><b>D. 기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기가스 정화서비스 (CPC 9404)</li> <li>- 소음저감서비스 (CPC 9405) (산업활동은 포함하지 않은)</li> </ul>	<p>1) 없음</p> <p>2) 없음</p> <p>3) 없음</p> <p>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p>	<p>1) 없음</p> <p>2) 없음</p> <p>3) 없음</p> <p>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p> <p>Note: The common practice in this sector is to require a local representative</p>	

8. 중국

부문/소부문	시장접근제한	내국민대우 제한	추가양허
(환경적 질 모니터링 및 오염원 검열 배제)			
<p>A. 하수 서비스 (CPC9401)</p> <p>B. 고형폐기물 처리서비스 (CPC 9402)</p> <p>C. 배기가스 정화서비스 (CPC 9404)</p> <p>D. 소음저감 서비스 (CPC 9405)</p> <p>E. 자연과 경관보호 서비스 (CPC 9406)</p> <p>F. 기타 환경보호서비스 (CPC 9409)</p> <p>G. 위생서비스 (CPC9403)</p>	<p>1) 환경자문서비스를 제외하고 Unbound</p> <p>2) None</p> <p>3) 환경서비스에 종사하는 외국계서비스 공급자들은 허락된 주요 외국업체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허가된다.</p> <p>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p>	<p>1) None</p> <p>2) None</p> <p>3) None</p> <p>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p>	

9. 아이슬란드

부문/소부문	시장접근제한	내국민대우 제한	추가양허
A. <u>하수서비스</u> (CPC9401)	1) Unbound* 2) 없음 3) 환경사업의 허가가 요구됨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	1) Unbound* 2) 없음 3) 없음 4) 없음	
B. <u>폐기물 처리서비스</u> (CPC 9402)	1) Unbound* 2) 없음 3) 환경사업의 허가가 요구됨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	1) Unbound* 2) 없음 3) 없음 4) 없음	
C. <u>위생 및 기타유사서비스</u> (CPC 9403)	1) Unbound*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	1) Unbound* 2) 없음 3) 없음 4) 없음	
D. 기타 (CPC 9405)	1) Unbound* 2) 없음 3) 환경사업의 허가가 요구됨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	1) Unbound* 2) 없음 3) 없음 4) 없음	

10. 일본

부문/소부문	시장접근제한	내국민대우 제한	추가양허
{Note: 이러한 분류 및 체계화에 일본의 양허안은 하위분류상 멤버들간 합의와 논의를 통해 추후 수정될 수 있음.}			
<b><u>A. 생활용수와 폐수관리</u></b>	{*하위분류에 대해 멤버들 간 합의 제약하에 있음}	{*하위분류에 대해 멤버들 간 합의 제약하에 있음.}	
a) 하수 서비스 (CPC9401)	1) Unbound*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	1) Unbound*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	
<b><u>B. 고형/유해 폐기물 관리</u></b>	1) Unbound*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	1) Unbound*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	
a) 폐기물 처리 서비스 (9402)			
b) 위생 및 기타 유사서비스 (9403)			
<b><u>C. 대기과 기후의 보호</u></b>	1) Unbound*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	1) Unbound*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	
a) 배기가스 정화서비스(9404)			
<b><u>E. 소음과 진동의 경감</u></b>	1) Unbound*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	1) Unbound*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	
a) 소음저감 서비스 (9405)			
b) 진동경감 서비스 (CPC9401)			

부문/소부문	시장접근제한	내국민대우 제한	추가양허
{Note: The classification and Japan's specific commitment under this sector maybe modified subject to further discussion and consensus among Members on classification}			
<u>F. 생물다양성과 경관보호</u>	1) Unbound*	1) Unbound*	
a) 자연 및 경관보호 서비스 (9406)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	
<u>G. 기타 환경 및 부수적 서비스</u>	1) Unbound*	1) Unbound*	
a) 기타환경보호서비스 (9409)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	

11. 터키

부문/소부문	시장접근제한	내국민대우 제한	추가양허
A. 하수 서비스 (CPC9401)	1) Unbound 2) 없음 3) 없음 4) 없음	1) Unbound 2) 없음 3) 없음 4) 없음	
B. 폐기물 처리서비스 (CPC9402)	1) Unbound 2) 없음 3) 없음 4) 없음	1) Unbound 2) 없음 3) 없음 4) 없음	
C. 위생 및 기타 유사서비스 (CPC 9403)	1) Unbound 2) 없음 3) 없음 4) 없음	1) Unbound 2) 없음 3) 없음 4) 없음	

12. 스위스(Switzerland)

부문/소부문	시장접근제한	내국민대우 제한	추가양허
A. 폐수 관리 (CPC9401)	1) 기술적 실현가능성 회박 에 따른 Unbound 2) 없음 3) 없음 4) Part I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Unbounded	1) 기술적 실현가능성 회박 에 따른 Unbound 2) 없음 3) 없음 4) Part I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Unbounded	
B. 폐기물 관리 (CPC9402+ 9403)	1) 기술적 실현가능성 회박 에 따른 Unbound 2) 없음 3) 없음 4) Part I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Unbounded	1) 기술적 실현가능성 회박 에 따른 Unbound 2) 없음 3) 없음 4) Part I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Unbounded	
C. 대기 및 기후보 호 (CPC 9404)	1) 기술적 실현가능성 회박 에 따른 Unbound 2) 없음 3) 없음 4) Part I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Unbounded	1) 기술적 실현가능성 회박 에 따른 Unbound 2) 없음 3) 없음 4) Part I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Unbounded	
D. 토양과 물의 정 화 및 복구 (part of CPC 9406)	1) 기술적 실현가능성 회박 에 따른 Unbound 2) 없음 3) 없음 4) Part I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Unbounded	1) 기술적 실현가능성 회박 에 따른 Unbound 2) 없음 3) 없음 4) Part I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Unbounded	
E. 소음 및 진동저 감 (CPC 9405)	1) 기술적 실현가능성 회박 에 따른 Unbound 2) 없음 3) 없음 4) Part I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Unbounded	1) 기술적 실현가능성 회박 에 따른 Unbound 2) 없음 3) 없음 4) Part I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Unbounded	
F. 생물다양성과 경 관보호 (part of CPC 9406)	1) 기술적 실현가능성 회박 에 따른 Unbound 2) 없음 3) 없음 4) Part I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Unbounded	1) 기술적 실현가능성 회박 에 따른 Unbound 2) 없음 3) 없음 4) Part I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Unbounded	

13. 태국

부문/소부문	시장접근제한	내국민대우 제한	추가양허
<p>A. 하수체계, 쓰레기처리, 유해 폐기물 관리, 대기오염 및 소음 관리, 위생 및 기타 환경관리 서비스에 관한 환경 Consultancy (CPC9401) 환경보호 및 환경완화 서비스 (CPC9401)</p>	<p>1) None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사항으로</p>	<p>1) Unbound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Unbound</p>	
<p>하수 서비스 (산업폐수처리시스템 포함) (CPC9401)</p>	<p>1) None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사항으로</p>	<p>1) Unbound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Unbound</p>	
<p>B. 폐기물 처리서비스(유해폐기물 관리 및 소각로 포함) (CPC9402)</p>	<p>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사항으로</p>	<p>1) Unbound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Unbound</p>	
<p>C. 위생 및 기타 서비스 (CPC 9403)</p>	<p>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사항으로</p>	<p>1) Unbound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Unbound</p>	

부문/소부문	시장접근제한	내국민대우 제한	추가양허
D. 기타 배기가스 정화서비스(산업의 배출 경감을 포함하여)(CPC 9404)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 된 사항으로	1) Unbound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 된 제한사항 이외는 <i>Unbound</i>	
소음 저감 서비스 (CPC 9405)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 된 사항으로	1) Unbound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 된 제한사항 이외는 <i>Unbound</i>	
자연 및 경관보호서비스 (CPC 9406)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 된 사항으로	1) Unbound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 된 제한사항 이외는 <i>Unbound</i>	
기타 환경보호서비스 (CPC 9409)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 된 사항으로	1) Unbound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 된 제한사항 이외는 <i>Unbound</i>	

14. 캐나다

부문/소부문	시장접근제한	내국민대우 제한	추가양허
<p>A. 하수서비스 (CPC9401)</p> <p>B. 폐기물 처리서비스 (CPC9402)</p> <p>C. 위생 및 기타 유사 서비스 (CPC 9403)</p> <p>D. 기타 배기가스 정화서비스 (CPC 9404)</p> <p>소음저감 서비스 (CPC 9405)</p> <p>자연 및 경관보호서비 스 (CPC 9406)</p> <p>기타 환경적 서비스 (CPC 9409)</p>	<p>1) 없음</p> <p>2) 없음</p> <p>3) 없음</p> <p>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 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p>	<p>1) 없음</p> <p>2) 없음</p> <p>3) 없음</p> <p>4) U수평양허에 기재된 제 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p>	

15. 미국

부문/소부문	시장접근제한	내국민대우 제한	추가양허
<p>A. 생활용수를 포함한 폐수관리 - 폐수 서비스 (민간산업에 의해 도급)</p>	<p>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p>	<p>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없음</p>	
<p>B. 고형 및 유해폐기물 관리 (민간 산업에 의해 도급) - 폐기물 처리 서비스</p>	<p>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p>	<p>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없음</p>	
<p>- 위생 및 유사 서비스</p>	<p>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p>	<p>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없음</p>	
<p>C. 대기 및 기후 보호 - 대기질 향상을 위한 배기가스 및 기타 배출 저감 서비스</p>	<p>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p>	<p>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없음</p>	
<p>D. 토양과 물의 정화 및 복구 - 오염되고 더럽혀진 토양과 물의 처리 및 복구</p>	<p>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p>	<p>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없음</p>	
<p>E. 소음 및 진동 경감 - <u>소음경감서비스</u></p>	<p><u>1) 없음</u> <u>2) 없음</u> <u>3) 없음</u>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Unbounded</u></p>	<p><u>1) 없음</u> <u>2) 없음</u> <u>3) 없음</u> 4) 없음</p>	

부문/소부문	시장접근제한	내국민대우 제한	추가양허
F. 생물다양성 및 경관보호 - 자연 및 경관보호 서비스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없음	
G. 기타 환경 및 부수적 서비스 - 다른 경우로 분류되지 않은 기 타 서비스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없음	

16. 호주

부문/소부문	시장접근제한	내국민대우 제한	추가양허
B.고형/유해폐기물 관리_(9402, 9403)  C. 대기 및 기후 보호 (CPC 9404)  D. 토양 및 물의 정화 및 복구 (CPC 9406**)  E. 소음 및 진동 저감 (9405)  F. 생물다양성 및 경관보호 (9406**)  자연 및 경관보호 서비스  G. 기타환경 및 부수적 서비스(94090)	1) Unbound*	1) Unbound*	

17. 홍콩

부문/소부문	시장접근제한	내국민대우 제한	추가양허
A. 하수 서비스 (CPC9401)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Unbound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Unbound	
B. 폐기물 처리 서비스: 폐기물 및 처리 서비스(가계로 부터의 폐기물, 쓰레기 등의 수집서비스에만 적용) (Part of CPC 9402)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Unbound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Unbound	
C. 위생 및 유사서비스 (CPC 9403)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Unbound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Unbound	
D. 기타 - 배기가스 정화 서비스(CPC 9404) - 소음경감서비스(CPC 9405) - 자연 및 경관보호 서비스(CPC 9406) - 기타 환경보호서비스(CPC 9409)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Unbound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Unbound	

18. 파나마

부문/소부문	시장접근제한	내국민대우 제한	추가양허
(a). 하수 서비스 (CPC94010)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	
(b). 폐기물 처리 서비스(CPC 94020) 오로지: 병원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	
(d) 오로지 배기가스 정화 서 비스 및 소음저감 서비스(CPC 94040 and CPC 94050) 현존 또는 새로운 정화, 개선, 예방, 그리고 모니터링 체계 등의 이행 및 설치 등에 대한 이러한 분야의 컨설팅 활동으로 양허안들 이 제한될 것이다.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	
(e) 자연 및 경관보호서비스	1) 없음	1) Unbound	

19. 폴란드

부문/소부문	시장접근제한	내국민대우 제한	추가양허
D. 기타 환경보호와 관련된 환경컨설팅의 권 고. 배기가스 정화. 소음저감. (CPC 9404**, 9405**)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 조치를 제외하고 Unbound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없음	

20. 슬로바키아(Slovak Republic)

부문/소부문	시장접근제한	내국민대우 제한	추가양허
A. 생활용수 및 폐수관리 폐수 서비스 (CPC9401) 하수처리서비스와 관련 B. 고형/유해폐기물 관리 폐기물 처리 서비스 (CPC9402) C. 위생 및 유사 서비스 (CPC 9403) E. 소음 및 진동저감 (CPC 9405)	1) Unbound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 1) Unbound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 1) Unbound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 1) Unbound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	1) Unbound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 1) Unbound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 1) Unbound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	

21. 체코(Czech Republic)

부문/소부문	시장접근제한	내국민대우 제한	추가양허
<p><u>A. 생활용수 및 폐수관리</u>  <b>폐수 서비스</b>                      하수처리서비스 관련                      (CPC 9401)</p>	<p>1) Unbound*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p>	<p>1) Unbound*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p>	
<p><u>B. 고형/유해 폐기물 관리</u>                      폐기물 처리서비스 관련                      (CPC 9402)                      위생 및 유사 서비스(CPC                      9403)</p>	<p>1) Unbound*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p>	<p>1) Unbound*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p>	
<p><u>C. 대기 및 기후 보호</u>                      배기가스 정화 서비스 관련                      (CPC9404)</p>	<p>1) Unbound*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p>	<p>1) Unbound*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p>	
<p><u>D. 토양 및 물의 정화와 복                      구</u></p>	<p>1) Unbound*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p>	<p>1) Unbound*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p>	
<p>오염되고 더럽혀진 토양과                      물의 처리 및 복구                      (part of CPC 9406)                      자연 및 경관보호 서비스 부                      분과 관련</p>	<p>1) Unbound*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p>	<p>1) Unbound*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p>	
<p>F. 생물다양성 및 경관 보호                      자연과 경관보호                      (part of CPC 9406)</p>	<p>1) Unbound*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p>	<p>1) Unbound*                      2) 없음                      3) 없음                      4) 수평양허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ed</p>	

22. 슬로베니아

부문/소부문	시장접근제한	내국민대우 제한	추가양허
A. 하수 서비스 (CPC9401) (산업활동은 제외)	1) Unbound* 2) 없음 3) 없음 4) Part I 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	1) Unbound* 2) 없음 3) 없음 4) Part I 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	
B. 폐기물 처리서비스 (CPC 9402)	1) Unbound* 2) 없음 3) 없음 4) Part I 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	1) Unbound* 2) 없음 3) 없음 4) Part I 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	
C. 위생 및 기타 유사서비스 (CPC 9403)	1) Unbound* 2) 없음 3) 없음 4) Part I 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	1) Unbound* 2) 없음 3) 없음 4) Part I 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	
D. 기타 - 자연 및 경관보호 서비스 (CPC 9406)	1) Unbound* 2) 없음 3) 없음 4) Part I 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	1) Unbound* 2) 없음 3) 없음 4) Part I 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Unbound	

## 부록#4 : 우리나라 시장개방가능 환경상품리스트(안)

(단위 : 천달러)

순번	매체별 용도	HS코드	상품내역	수출	수입	비고
1	수질오염저감	280110	염소(O)	50	1,560	국내생산 없음
2	"	281410	무수암모니아(O)	0	1,581	"
3	"	283220	아황산암모늄(O)	63	38	
4	"	283525	오르토인산수소칼슘(인산이칼슘)(O)	910	7895	국내생산 없음
5	"	283526	기타 인산칼슘(O)	460	3,955	"
6	자원에너지관리	290511	메탄올(메틸알코올)(O)	3,163	2,493	
7	오염저감	730900	각종 재료용의 철강제 저장조, 탱크, 통(용적 300ℓ 초과)(O)	62,922	13,136	철강제품 '04년 무세화
8	"	731010	철강제 탱크, 통, 드럼, 캔, 상자(용적 50ℓ이상 300ℓ 이하)(O)	6,753	8,862	"
9	"	731021	납땀, 크리핑으로 봉합되는 철강제 통(용적이 50ℓ 미만)(O)	191	1,454	"
10	"	731029	철강제의 기타 탱크, 통, 드럼, 캔, 상자(용적이 50ℓ 미만)(O)	24,765	20,164	"
11	"	732510	非可鍛주철제의 주물제품(O)	289	-	"
12	폐기물처리	851629	전기식의 기타 난방기구와 토양가열기(O)	21,727	7,706	
13	수질오염저감	854389	이온정수기(가정형)(J)	3,598	473	
14	"	"	오존발생기(J)	62	11,912	
15	폐기물 처리	960390	모터를 갖추기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 모프(mop)와 깃면지털이(O)	7,902	3,169	
16	"	847290	서류절단기(A)	704	442	
17	"	851420	기타,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자식의 노와 오븐(J)	187	1,019	
18	"	851490	제851410911호, 제8514209010호 및 제8514301010호의 것(부분품)(J)	233	3,603	
19	자원에너지관리	854140	광전지(J)	65,486	43,089	
20	"	"	기타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및 발광 다이오드(J)	7,899	38,979	
21	폐기물관리	901320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 제외)(J)	1,430	34,407	
22	환경오염측정	902580	수은기압계(다른 기기와 결합되지 않은 것)(J)	-	-	미미한 교역규모
23	"	"	모발습도계(J)	-	-	"
24	"	902590	온도계, 기압계, 고온계, 습도계 액체 비중계 등의 부분품과 부속품(A)	-	-	"
25	"	"	온도센서(A)	1,114	5,889	미미한 교역규모
26	"	"	습도센서(A)	300	645	"
27	"	"	기타센서(A)	39	207	"
28	"	"	9025909000(A)	357	2,481	"
29	"	902610	유량계(J)	1,985	26,909	양허세율 0%
30	"	"	액면계(J)	1,953	12,075	"
31	"	"	액체의 유량 또는 액면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타 기기(J)	1,777	1,990	"
32	"	902620	액체형 압력계(일반형의 것)(J)	171	4,373	"

33	"	"	금속형 압력계(일반형의 것)(J)	1,694	670	"
34	"	"	일반형의 기타 압력계(J)	1,616	12,677	"
35	"	"	기타 압력계(J)	233	4,983	"
36	"	902680	열측정계(J)	61	613	"
37	"	"	풍력계(J)	-	1,677	"
38	"	"	기체, 액체의 변량의 측정, 검사용 기타 기기(J)	1,155	6,199	"
39	"	902690	레벨센서	352	2,896	"
40	"	"	유량, 유속센서(J)	425	9,379	"
41	"	"	압력센서(J)	713	15,277	"
42	"	"	열센서(온도센서 및 열량센서 제외)(J)	331	32	"
43	"	"	기타 센서(J)	174	651	"
44	"	"	9026909000(J)	5,493	6,884	"
45	"	902720	크로마토그래프와 전기영동장치(J)	351	47,172	"
46	"	902740	노출계(J)	152	70	미미한 교역규모
47	"	902750	편광계(J)	11	1,038	"
48	"	"	굴절계(J)	14	1,173	"
49	"	"	비색계(J)	95	3,216	"
50	"	"	조도계(J)	40	570	"
51	"	902780	피에이치 미터(J)	793	3,773	양허세율 0%
52	"	"	열량계(J)	194	2,066	"
53	"	"	점도계(J)	37	5,549	"
54	"	"	팽창계(J)	9	149	"
55	"	902790	마이크로토움(J)	19	1,669	
56	"	"	마이크로토움, 분광계, 노출계, 편광계, 조도계, 열량계의 부분품, 부속품(J)	-	-	
57	"	"	가스센서(J)	503	15,154	
58	"	"	분진, 매연센서(J)	-	-	
59	"	"	분진센서, 마이크로토움 및 이호의 부분품과 부속품(J)	6	129	양허세율 0%
60	"	"	매연센서, 마이크로토움 및 이호의 부분품과 부속품(J)	32	45	
61	"	"	열량센서(J)	12	31	양허세율 0%
62	"	"	기타센서(J)	166	1,839	"
63	"	"	기타(분석용기기, 검사용기기의 마이크로토움 부분품)(J)	-	-	"
64	"	"	가스 또는 매연분석기와 마이크로토움의 것 (J)	150	13,435	
65	"	"	기타, 마이크로토움 및 이호의 부분품과 부속품(J)	1,539	32,333	
66	"	902890	기체, 액체, 전기의 적산용 계기와 그 검사용 계기의 부분품과 부속품(A)	567	3,385	
67	"	903010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 기기(J)	84	6,798	양허세율 0%
68	"	903031	멀티미터(기록장치가 없는 것)(A)	15,635	8,694	
69	"	903039	전압계(기록장치가 없는 것)(A)	447	2,356	
70	"	"	전류계(기록장치가 없는 것)(A)	343	1,311	
71	"	"	회로계(기록장치가 없는 것)(A)	380	825	
72	"	"	저항계(기록장치가 없는 것)(A)	359	2,288	
73	"	"	검류계(기록장치가 없는 것)(A)	25	121	

74	"	"	전압, 전류, 저항, 전력의 측정 검사용의 기타 기기(기록장치가 없는 것)(A)	24,035	72,029	
75	"	903083	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에 한한 검사용 측정용 기기)(A)	1,183	25,690	
76	"	903090	오실로스코우프, 전압계, 전류계, 전항계, 누화계, 만곡율계의 부분품(A)	-	-	
77	"	"	전자기센서(A)	-	200	
78	"	"	방사선센서(A)	1	1,813	
79	"	"	기타센서(A)	166	1,804	
80	"	"	기타(A)	-	-	
81	"	"	반도체웨이퍼 또는 소자 측정 검사용 의 것(오실로스코우프, 전압계, 전류계, 전항계, 누화계, 만곡률계 등의 부분품 포함)(A)	12,222	45,546	양허세율 0%
82	"	"	기타, 오실로스코우프, 전압계, 전류계, 전항계, 누화계, 만곡률계 등의 부분품(A)	11,772	46,467	
83	"	903130	윤곽 투영기(A)	-	-	
84	"	"	기타(윤곽 투영기)(A)	431	3,784	
85	"	903149	광학식 표면 테스터(O)	143	5,752	
86	"	"	광학식 각도계와 앵글게이지(O)	11	507	
87	"	"	광학식 포시미터(O)	-	92	
88	"	"	광학식의 기타 기기(O)	-	-	
89	"	"	기타, 광학식의 기타기기(O)	7,513	47,464	
90	"	903180	금속 탐지기(J)	-	-	
91	"	"	직물검사장치(J)	234	276	
92	"	"	기타 측정기(J)	-	-	
93	"	903190	측정기의 부분품과 부속품(A)	-	-	
94	"	"	반도체 웨이퍼 소자 검사용의 것(A)	188	22	
95	"	"	기타의 것, 진동센서(A)	-	8	
96	"	"	기타(진동센서)(A)	131	1,246	
97	"	"	9031901291(A)	-	2	
98	"	"	기타(하중센서)(A)	38	3,945	
99	"	"	9031901911 (A)	-	43	
100	"	"	기타(기타 센서)(A)	1,546	28,306	
101	"	"	9031909011(A)	13,623	7,787	
102	"	"	기타(측정, 검사용 기기 기타 부분품, 반도체 제조용의 것을 제외함)(A)	6,548	81,599	
103	"	903281	항공기용의 것(액면자동조정기 및 조절기)(J)	-	4	
104	"	"	기타(액면자동조정기 및 조절기, 항공기용을 제외한 것)(J)	45	4,844	
105	"	"	유량자동조정기 및 조절기(J)	-	-	
106	"	"	기타(유량자동조정기, 조절기/항공기용의 것 제외함 기타)(J)	-	-	
107	"	"	기타(J)	2,196	24,927	
108	"	"	액압식, 공기식의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타기기(J)	-	-	
109	"	903289	습도자동조정기(J)	-	-	
110	"	"	전압자동조정기(J)	-	-	

111	"	"	전기적량의 자동조정기기(J)	-	-	
112		"	기타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 기기(J)	-	-	
113	"	903290	부분품과 부속품,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 기기(A)	-	-	
114	"	"	기타,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A)	6,001	93,763	
115	"	903300	제90류의 기계, 기기, 장치 또는 방비용의 부분품과 부속품(A)	7,528	12,483	
116	자원에너지관리	840410	연료절약기(A)	223	1,813	명확한 환경관련
117	대기오염저감	"	과열기(A)	7	186	미미한 교역규모
118	"	"	그을음제거기(A)	18	113	"
119	"	"	가스회수기(A)	-	9	"
120	"	"	기타 보일러용 부속기기	95,982	1,552	교역수지우위
121	"	840420	증기원동기용의 응축기(A)	1	-	미미한 교역규모
122	"	840510	수성가스 발생기(A)	125	97	"
123	"	"	아세틸렌가스 발생기(A)	-	-	"
124	"	"	산소발생기(A)	388	821	"
125	자원에너지관리	841011	동력 1,000킬로와트 이하의수력터어빈(J-A)	-	-	양허세율 0%
126	"	"	기타 수력터어빈과 수차(J)	-	126	생산기반 전무
127	"	841012	동력 1,000KW 초과 10,000KW 이하의 수력터어빈과 수차(J-A)	-	-	양허세율 0%
128	"	841013	동력 10,000KW 초과와 수력터어빈과 수차(JA)	-	-	"
129	"	841090	수력터어빈의 조정기(J-A)	-	-	"
130	"	"	기타 조정기(J-A)	290	14	생산기반 전무
131	"	"	수력터어빈과 수차의 기타 부분품(J-A)	-	-	"
132	"	"	기타 수력터어빈의 부분품(J-A)	323	-	양허세율 0%
133	수질오염저감	841350	기타의 용적형 왕복펌프, 수영장용 펌프(O)	1	7	미미한 교역규모
134	"	"	기타, 기타의 용적형 왕복펌프(O)	-	-	"
135	"	841360	기어펌프, 기타 용적의 회전펌프(J)	-	-	"
136	"	"	베인펌프, 기타의 용적형 회전펌프(J)	-	-	"
137	"	"	스크류펌프, 기타의용적형 회전펌프(J)	-	-	"
138	"	"	기타의 용적용 회전펌프, 수영장용 펌프(J)	25	14	"
139	"	"	기타, 기타의 용적형 회전펌프(J)	-	-	미미한 교역규모
140	"	841370	터빈펌프, 기타의 원심펌프(J)	-	-	"
141	"	"	볼류트 펌프, 기타의 원심펌프(J)	-	-	"
142	"	"	액체펌프, 기타의 원심펌프,수영장용 펌프(J)	61	9	"
143	"	"	기타, 기타의 원심펌프(J)	-	-	"
144	수질오염저감	841381	펌프(J)	-	-	미미한 교역규모
145	"	"	수영장용 펌프(J)	2	453	"
146	대기오염저감	841440	에인용의 바퀴달린 샤프시 위에 장착된 기체압축기(O)	826	7,682	소형제외(1~30력)
147	"	841459	기타 팬(A)	-	-	미미한 교역규모
148	"	841480	기타의 기체펌프(J)	-	-	"
149	폐기물 처리	841780	시멘트용의 비전기식 노와 오븐(J)	-	61	"

150	"	841790	비전기식 공업용,이화학용 노와 오븐의 부분품(J)	9,304	19,892	
151	자원에너지관리	841950	열교환기(J)	-	-	
152	대기오염저감	841960	기체 액화용의 기기(J)	42	3,980	생산기반 전무
153	수질오염저감	842119	기타의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 포함)(J)	1,449	15,152	2년 유예 조건
154	"	842121	물의 여과 및 청정용 기기(가정형의 것)(J)	20,299	51,946	"
155	"	"	수영장용 여과 또는 청정기(J)	70	493	
156	"	"	수영장용 여과 또는 청정기의 기타(J)	8,672	20,966	
157	"	842129	낙농용의 액체용 여과기와 청정기(J)	57	53	
158	"	"	유해성 폐수처리용의 여과기와 청정기(J)	2,924	6,499	
159	"	"	액체용의 기타 여과기와 청정기(J)	9,238	43,258	
160	대기오염저감	842139	제87차량의 배기가스정화용의 원심분리기(J)	11,024	2,980	
161	"	"	유해성 배기가스 처리용의 여과기와 청정기(J)	2,244	9,056	
162	"	"	기체용의 기타 여과기와 청정기(항공기용, 유해성 배기가스 처리용 여과기와 청정기 제외)(J)	7,995	25,201	
163	수질오염저감	842191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 포함)의 부분품(J)	-	-	2년 유예조건
164	"	"	기타,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J)	1,623	9,726	"
165	"	842199	기타, 부분품(J)	-	-	
166	"	"	정수기 교체용 필터(J)	5,269	10,924	2년 유예조건
167	"	"	기타 원심분리기의 부분품(J)	15,462	62,154	
168	폐기물처리	842220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 또는 건조용 기계(J)	651	6,486	
169	오염저감	842490	방제기의 부분품(O)	158	753	미미한 교역규모
170	"	"	기타, 분무용기기의 부분품(O)	-	-	"
171	대기오염저감	"	금속리드의 세척 및 오염물질 제거기, 세척을 위한 분사기의 것(O)	45	179	양허세율 2%
172	"	"	기타, 기타 부분품(O)	0	38	"
173	수질오염저감	842833	벨트형의 기타 연속작동식 엘리베이터(분당속도 240M 미만)(A)	59,712	8,162	
174	"	"	벨트형의 기타 연속작동식 엘리베이터(분당속도 240M 이상)(A)	-	1,389	미미한 교역규모
175	수질오염저감	"	벨트형의 기타 연속작동식 콘베이어(물품, 재료용의 것)(A)	36,765	15,056	
176	"	846291	액압프레스(최고가압 300메트릭톤 초과 1000메트릭톤 이하)(A)	1,503	515	
177	"	"	액압프레스(최고가압 1000메트릭톤 초과)(A)	22	1,511	미미한 교역규모
178	폐기물처리	847410	선별기, 기계식 체분리기와 세척기(A)	2,089	1,997	양허세율 0%
179	"	847432	아스팔트 플랜트(A)	13,470	235	
180	"	847439	콘크리트 혼합기, 역청질과 광물성 재료의 혼합기를 제외한 혼합기와 반죽기(O)	1,401	633	양허세율 0%
181	"	847982	파쇄기와 분쇄기(J)	3,856	19,170	명확한 환경관련

182	청정기술	320910	아크릴중합체를 기제로 한 페인트(에나멜 포함, 수성매질에 용해한 것)(O)	3,240	1,397	
183	"	"	아크릴중합체를 기제로 한 바니쉬(래커 포함, 수성매질에 용해한 것)(O)	373	3,008	
184	"	"	비닐중합체를 기제로 한 페인트(에나멜 포함, 수성매질에 용해한 것)(O)	35	56	
185	"	"	비닐중합체를 기제로 한 바니쉬(래커 포함, 수성매질에 용해한 것)(O)	19	113	
186	"	320990	기타 합성중합체를 기제로 한 페인트(에나멜 포함, 수성매질에 용해함)(O)	1,062	1,112	
187	"	"	기타 합성중합체를 기제로 한 바니쉬(래커 포함, 수성매질에 용해한 것)(O)	458	377	
188	"	"	기타 페인트(에나멜 포함, 수성매질에 용해한 것)(O)	4,288	2,984	
189	"	"	기타 바니쉬(래커 포함, 수성매질에 용해한 것)(O)	4,171	3,898	
190	"	392690	부채, 핸드스크린과 이들의 살 및 자루(플라스틱제의 것)(A)	108	220	
191	폐기물처리	681099	시멘트제품, 콘크리트 제품 및 인조석 제품(보강여부 불문)의 기타- 관(O)	1,182	49	
192	오염물측정	690310	레토트(흑연, 기타 탄소질 함유량이 50% 초과)(A)	-	39	미미한 교역규모
193	"	"	도가니(흑연, 기타 탄소질 함유량이 50% 초과)(A)	-	-	"
194	"	"	기타 도가니(A)	0	986	"
195	"	"	반응그릇(흑연, 기타 탄소질 함유량이 50% 초과)(A)	409	-	"
196	"	"	봉(흑연, 기타 탄소질 함유량이 50% 초과인 내화성도자제품)(A)	-	94	"
197	"	690320	머플(알루미나와 실리카 혼합물이 50% 초과)(A)	-	2	"
198	"	690390	기타 레토트(A)	-	0	"
199	자원에너지관리	700800	유리제의 복층절연 유닛(O)	576	772	
200	오염물측정	701710	석영유리제의 유리제품(이화학용, 위생용, 약제용의 것)(A)	2	1,526	미미한 교역규모
201	오염물측정	701720	이화학용, 위생용, 약제용의 유리제품(A)	-	3	"
	수질오염저감	460120	매트류(식물성재료의 것)(A)	967	13,938	명확한 환경관련
	"	"	발(식물성재료의 것)(A)	3,001	1,127	
204	수질오염저감	560314	침투, 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조필라멘트 부직포)(A)	86,320	823	
205	"	"	기타(인조필라멘트 부직포)(A)	10,281	3,755	
206	"	580190	기타 섬유제의 파일 및 셔니일 직물(O)	917	767	
207	"	591190	공업용의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A)	5,381	9,674	
208	소음진동저감	840991	차량용 소음기-차량용 불꽃점화식 엔진의 부품품(제87류 차량의 것)(J)	64,888		
209	"	"	불꽃 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전용의 것(아웃보우트 모터의	3,492	3,547	

			것)(J)			
210	"	"	불꽃점화식의 기타 피스톤식 내연기관 전용의 부분품)(J)	6,028	2,586	
211	"	840999	철도차량용 압축점화식 엔진의 부분품)(J)	1,240	844	
212	"	"	차량용 압축점화식 엔진의 부분품)(J)	5,485		
213	"	"	기타, 내연기관의 엔진의 전용 부분품)(J)	-	-	
214	"	870892	소음기와 배기관(자동차용의 것)(O)	18,105	1,010	
215	오염복구/정화	890790	부교(인플랫터블식의 부교 제외)(A)	-	1,070	미미한 교역규모
216	"	"	탱크(A)	28	-	"
217	"	"	코오퍼댐(A)	-	-	"
218	"	"	부잔교(A)	-	48	"
219	"	"	부표(A)	124	361	"
220	"	"	수로부표(A)	-	6	"
221	폐기물처리	960350	기타의 브러쉬(기계, 기구, 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것)(O)	4,336	4,056	

※ A : APEC, O : OECD, J : JOINT

## 부록#5 : 우리나라 개방가능 환경친화상품리스트(안)

No	제안자	HS코드	코드설명	해당 환경물품 (Ex)
1	추가	3209	페인트와 바니쉬 (수성매질에 분산, 용해)	저VOC 페인트 및 바니쉬
2	O	320910	기타 페인트와 바니쉬 (수성매질)	수성 페인트 및 바니쉬
3	O	320990	기타 페인트와 바니쉬 (수성매질)	수성 페인트 및 바니쉬
4	O	3506	기타 조제접착제	수성접착제
5	추가	381900	유압제동액, 기타 조제유압전동액	생분해성 유압작동유
6	추가	3921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이트,필름,박,스트립	생분해성 수지제 필름/시트
7	J	48	지와 판지, 제지용펄프, 지 또는 판지의 제품	재활용 종이
8	추가	480710	지와 판지 (내면을 역청물질로 적층한것)	수용성 점착층 종이테이프 및 라벨지
9	추가	4818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지	재생 화장지
10	추가	681310	브레이크라이닝 및 패드	비석면 브레이크 라이닝 및 패드
11	추가	8402	증기보일러와 과열수보일러	콘덴싱 가스보일러
12	J	8415	공기조절기	인버터 타입 에어컨
13	추가	8415	공기조절기	CFC/HCFC 비사용 에어컨
14	J	841590	공기조절기 부분품	에어컨 온도조절기
15	추가	8418	냉장고, 냉동고, 기타 냉장냉동기구	CFC/HCFC 비사용 전기 냉온수기
16	추가	8418	냉장고, 냉동고, 기타 냉장냉동기구	CFC/HCFC 비사용 쇼케이스
17	J	8418	냉장냉동기구	CFC 비사용 냉장고
18	J	842211	가정형 식기세척기	초음파 식기세척기
19	J	842211	가정형 식기세척기	세제절약형 식기세척기
20	J	842211	가정형 식기세척기	물 절약형 식기세척기
21	J	8450	가정, 세탁소형 세탁기	초음파 세탁기
22	J	8450	가정, 세탁소형 세탁기	세제절약형 세탁기
23	J	8450	가정, 세탁소형 세탁기	물 절약형 세탁기
24	J	847170	기억장치	DVD-ROM
25	추가	850910	진공소제기	원심분리형 전기진공청소기
26	J	851650	마이크로웨이브오븐	자원절약형 전자레인지
27	J	851660	기타 오븐,쿠커,보일러링,그릴러,로우스터	유도가열(HI)전기조리기구
28	J	851679	가정용 기타 전열기기	유도가열(HI)전기밥솥
29	추가	852190	기타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 기기	복합기능 비디오기기 (VCR+DVD)
30	J	852812	텔레비전 수신기,모니터 및 영상프로젝터	PDP TV
31	J	852812	텔레비전 수신기,모니터 및 영상프로젝터	LCD TV
32	J	852830	영상 프로젝터	LCD 비디오 프로젝터
33	추가	8544	절연전선, 케이블, 기타 전기절연체	할로겐 비사용 전선케이블
34	J	890120	탱커	이중 유류탱커
35	추가	391510	에틸렌중합체의 웨이스트, 스크랩 등	페 페트병(PET bottle)
36	추가	391520	스테렌 중합체의 웨이스트, 스크랩 등	페 EPS를 감용화한 잉곳
37	J	630900	중고의류 및 기타 중고섬유제품	재활용 원료
38	J	6310	넙마, 끈, 코오디지, 로우프, 케이블의 폐물	재활용 원료
39	O, J	700800	유리제의 복층절연유니트	
40	O, A, J	841919	기타 즉식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비전기식)	태양열 온수기
41	O, J	841950	열교환기	

(O) OECD, (A) APEC, (J) Japan, (추가) 우리나라 추가 제안품목

## 부록#6 : 환경목적 라벨링

### 1. 환경목적 라벨링의 정의

- 환경목적 라벨링 (labelling for environmental purpose)이란 동일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환경성고가 우수한 제품을 소비자가 식별·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정보 수단을 의미함(이하 ‘환경라벨링’이라 칭함)
  - 1991년 OECD 보고서는 “환경라벨링(Environmental labelling)은 라벨이 붙여진 상품이 기능 및 경쟁적인 면에서 유사한 상품보다 좀더 환경친화적인 것으로 인증된 상품이라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설기관 또는 공적기관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수여되는 라벨을 부착하는 제도”라 정의함
  - 1993년 UN무역개발회의(UNCTAD) 보고서는 “환경라벨링(Environmental labelling)은 라벨이 부착된 상품이 동일한 범주의 다른 상품보다 좀더 환경 친화적이라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라벨을 이용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Eco-labelling과 구별함
  - 2004년 WTO CTE 사무국은 환경라벨링을 “라벨링한 제품이 같은 범주의 다른 제품에 비해 보다 환경적으로 건전한 것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사용되는 라벨”이라고 설명
- 도하각료선언에서 규정한 “환경목적의 라벨링 (labelling for environmental purpose)”이란 에코라벨링 또는 Type I 라벨링 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의미의 환경라벨링을 통칭한다고 해석됨(따라서 이하 ‘환경라벨링’이라 칭함)

### 2. 환경라벨링의 유형

- 환경라벨링 제도는 그 법적 강제성 여부에 따라 강제적 라벨링과 자발적 라벨링으로 구분되며, 관할기관에 따라 정부 라벨링과 비정부 라벨링, 기준에 대한 검토구조에 따라 고정적 라벨링과 발전적 라벨링, 적용범위에 따라 국가라벨링과 국제라벨링, 제품무관련 PPMs에 근거한 기준의 사용유무에 따라 제품관련(PR) PPMs 라벨링과 제품무관련(NPR) PPMs 라벨링으로 구분

기 준	구 분	
법적 강제성	강제적 라벨링	자발적 라벨링
관할기관	정부 라벨링	비정부 라벨링
기준검토구조	고정적(static) 라벨링	발전적(evolutionary) 라벨링
적용범위	국가 라벨링	국제 라벨링
NPR-PPMs 기준사용	PR-PPMs 라벨링	NPR-PPMs 라벨링

- OECD와 UNCTAD 연구보고서는 환경라벨링 제도를 '에코라벨'(eco-labels 또는 life-cycle

labels), '단일속성라벨'(single issue labels) 및 '소극적 라벨'(negative labels)의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

- 에코 라벨 : 제품의 전과정(life-cycle) 환경영향을 평가하여 환경친화제품임을 표시하는 라벨(예컨대 환경마크, 친환경농산물마크)
  - 단일속성라벨 : 특정 환경영향단계에서의 제품속성을 표시하는 라벨(예컨대 에너지절약마크, 재활용마크, 산림보호마크 등)
  - 소극적 라벨 : 부정적 환경영향을 가진 제품(유해물질, 독성물질, 유전자조작식품 등)에 대해 경고성 메시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라벨
- 국제표준화기구(ISO)는 ISO 14020시리즈에서 환경라벨링의 유형에 대한 표준을 발전시켜 왔음.
  - 이러한 표준은 라벨링의 발전과 이용에 대한 원칙을 포함함. ISO 14020시리즈의 표준은 LCA에 기초한 자발적 에코라벨링, 자기선언 환경 claims과 적격제품정보 프로필등을 포함함. ISO의 분류에 따라 Type I (제3자 인증), Type II (자기주장), Type III (정보공개)로 분류

유형	Type I	Type II	Type III
명칭	환경표지제도	환경성자기주장	환경성적표지제도
성격	제3자 인증	자기주장정보	제3자 인증 / 자기주장
목적	전과정에 걸친 환경성 우수제품 선별·인증	업체의 기만적 환경성 자기주장 제어	전과정에 걸친 제품의 정량적 환경정보 제공

### 3. 세계 각국의 환경라벨링 운영현황

#### 3.1. 일반 운영 현황

- 환경라벨링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전세계 40여개국에 달하고 있음
  - ISO 14024 (Type I) 에코라벨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약 25개국 정도임 (약 10여개 개도국에서 현재 도입단계)
- 에코라벨링(ISO Type I) 프로그램들은 현재 국제에코라벨링네트워크(Global Ecolabelling Network : GEN)를 구성하여 상호 정보 교류 및 의견 교환
  - ISO 14025 (Type III)에 해당하는 라벨링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스웨덴, 미국, 캐나다 등 5개국이며, 독일, 덴마크, 이탈리아 등 유럽 5~6개 국가는 도입예정임
  - Type III 라벨링은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 성과정보가 허위가 아님을 제3자가 인증하는 자발적 인증제도로 운영되고 있음
- 단일속성라벨링은 에너지라벨, 자동차연비라벨, 재활용라벨, 자연보호라벨 등 매우 다양한 라벨링 프로그램이 각국에서 운영중이나 이에 대한 ISO 국제표준은 없음
  - 단일속성라벨은 제품이 특정한 환경적 우수성이 있음을 표시하는 자발적 인증라벨인 경

- 소극적 라벨링은 대표적으로 유전자조작식품라벨, 기초소재 등에 부착하는 유독성라벨 등이 있음
- 소극적 라벨링은 대부분 국가법률 등에 의해 해당제품이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강제적 라벨링임

### 3.2. ISO 표준상의 환경라벨링 현황

- Type I 에코라벨링
- 개념
  - ISO 14024에서 정의한 Type I 환경라벨링(일명 에코라벨링)은 기업의 자발적 신청에 의하여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폐기 등 전과정(life-cycle)에 걸친 환경영향을 제3자 인증기관이 평가하여 친환경제품임을 인증하는 라벨링
  - 에코라벨링은 제품의 다양한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기 때문에 다중속성(multi-issue) 라벨링이라고도 함.
- 각국 시행현황
  - 에코라벨링의 효시는 1979년 도입된 독일 Blue Angel이며, 이후 일본, 미국, EU 등 선진국 중심으로 도입. 현재 전세계 40여개국(EU 전체를 동일지역으로 볼 경우 약 25개국)에서 시행 중이며, Global Ecolabelling Network (GEN)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국가간 협력증진을 강구중임.

주요국가 Type I 라벨링 운영현황

국가	제도명	시행연도	대상품목수	인증기업수	인증제품수
독일	Blue Angel	1979	88	703	3,788
일본	Eco Mark	1989	64	1,867	5,486
캐나다	Environmental Choice	1990	128	240	7,000*
북구유럽	Nordic Swan	1989	54	431	2,350
EU	EU Flower	1992	20	134	17,888*
미국	Green Seal	1991	40	52	301
대만	Green Mark	1992	77	381	1,576
중국	Environmental Label	1994	46	450	1,425
프랑스	NF Environment	1994	10	100	300
한국	환경표지(환경마크)	1992	84	268	598

※ 인증제품수는 각국의 최신발표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나 시점은 약간씩 다름  
 (\*) 캐나다 및 EU의 인증제품 수는 출고관리단위(SKU)로 집계한 것임

· 운영

- 대부분 국가의 Type I은 ISO 14024에서 정한 국제표준을 따르고 있음
- 또한 주요국가의 에코라벨링은 미국을 제외하고 대부분 정부에 의해 도입되어 민간기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정부정책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
- 예컨데 EU Flower제도는 EU집행위원회에서 직접 관장하는 제도로서 향후 유력한 환경정책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

· 시장지배력

- 현재 에코라벨링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는 독일, 일본, 캐나다, 북구유럽(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등 환경의식이 높은 국가를 들 수 있으며, EU 및 중국은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시장지배력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
- 대상품목별 시장점유율(market share)에 대한 데이터는 현재 발표된 바 없으나, 대체적으로 세제, 페인트, 건설자재류 등에 있어서 에코라벨링의 시장영향력이 큰 것으로 알려짐.
- 최근 각국의 에코라벨링은 가전제품, 자동차, 서비스 품목 등으로 그 적용대상을 넓혀가고 있으며, 또한 환경친화적 공공조달제도, 유해물질관리정책, 생산자재활용책임제도 등 정부규제와 연계되는 특성을 보임

Type I 환경라벨링 예시

 <p>Blue Angel</p>	<p>독일의 Blue Angel은 1979년 세계 최초로 도입된 Type I 에코라벨링으로서 가전제품, 사무기기, 생활용품, 건축자재 등 88개 품목에 대해 적용된다. 현재 3,700여개의 제품이 Blue Angel을 사용하고 있다. 엄격하고 과학적인 인증기준으로 유명하며, 많은 국가의 에코라벨링이 Blue Angel 기준을 참고하고 있다.</p>
 <p>Eco Mark</p>	<p>일본의 Eco Mark는 Blue Angel에 비해 10년 뒤인 1989년에 출발한 후발주자이나 매년 5,000개 이상의 제품이 인증을 받고 있어 가장 활발한 운영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문구류, 화장지, 세제 등 생활용품 중심이었으나 최근 전기·전자제품도 인증대상으로 포괄하고 있다.</p>
 <p>EU Flower</p>	<p>1992년 EU 15개국이 공동으로 EU Flower를 창설하고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 제도를 관장하고 있다. EU Flower는 2000년 의사결정기구 및 인증기준을 전면 혁신하고 강력한 제도적 지원 하에 새로이 추진되고 있다. EU는 에코라벨링을 포함한 친환경제품정책의 일환으로 통합제품정책(IPP)을 구상하고 있다.</p>

◦ Type II 환경라벨링

· 개념

- ISO 14021에서 정의한 Type II 환경라벨링은 기업 스스로 제3자 검증 없이 자사제품이 환경친화적임을 표시하는 라벨, 표시, 기호 등의 자기주장을 의미. ISO 14021에서는 이러한 기업의 자기주장이 소비자 기만적이고 과대, 허위광고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

· 각국 시행현황 및 운영특성

- Type II 환경라벨링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도안하여 자기 제품상에 표시하는 라벨로서 정형화된 제도가 아니므로 시행현황을 파악하기는 불가능.
- 그러나 이미 여러 국가의 기업들이 광고, 선전, 제품 외관 등에 환경친화적임을 암시하는 도형이나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 이에 미국, 캐나다, 일본, 유럽 각국 정부는 근거없는 허위과대광고 성격의 자기주장을 규제하기 위하여 Type II 라벨링에 대한 규제기준을 마련. 우리나라도 표시광고공정화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환경관련표시광고심사지침을 마련하여 운영중임.
- 한편, 미국의 민간단체인 Scientific Certification System은 유일하게 기업이 스스로 주장하는 환경친화성을 검증하는 사업을 운영. SCS의 검증은 그 유형을 불문하고 기업이 주장하는 환경성 주장이 진실한 것인가의 여부만을 검증하여 자기주장 정보의 신뢰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함

Type II 환경라벨링 예시

 <p>SONY</p>	<p>일본 전자메이커 SONY는 자사제품에 대한 기본적 환경정보를 스스로 제작한 Eco Info 도안과 함께 제공한다. 예를 들어 TV의 경우 TV포장재나 매뉴얼에 Eco-Info 『PVC 사용안함, 납, 카드뮴 등 중금속 없음, 100% 재활용 포장재 사용』 등과 같은 자기주장 환경정보를 제공한다.</p>
 <p>NEC</p>	<p>일본 전기전자통신기기 메이커 NEC는 1998년부터 자체적으로 제품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자사의 제품이 자체 환경기준에 부합함을 소비자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자체 제작한 도안인 NEC ECO 라벨을 제품이나 포장재에 부착하여 사용하고 있다. NEC 환경기준은 자원, 에너지, 유해물질, 오염배출 등에서 효율성을 지표로 삼고 있다.</p>

◦ Type III 환경라벨링

· 개념

- ISO 14025에서 정의한 Type III 환경라벨링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제품의 전과정에 걸친 환경영향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라벨링
- 환경친화성 여부에 대한 가치판단없이 정보를 공개하는 형태로, 보통 공개된 정보가 정확한

것인지에 대해서 제3자에 의해 검증을 받고 있음.

· 각국 시행현황

- Type III 환경라벨링은 미국의 민간단체인 Scientific Certification System에서 1992년 세계 최초로 도입. Type III 환경라벨링은 전과정평가(LCA)라는 복잡한 분석기법을 요하므로 일부 선진국에서만 시행.
- 그러나 2003년 ISO 14024 국제표준이 통과되고 Global Environmental Declaration Network (GEDnet)이 결성되어 Type III 라벨링을 도입하고자 하는 국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주요국가 Type III 라벨링 운영현황

국가	제도명	시행연도	대상품목수	인증제품수
미국	Certified Eco-Profile	1992	20	417
일본	Eco Leaf	2002	25	53
스웨덴	Env. Product Declaration	1998	44	53
노르웨이	Miji Varedeklarasjoner	2000	3	12
캐나다	Env. Profile Data Sheet	1996	1	15
한국	환경성적표지	2000	19	50

※ 인증제품 수는 각국의 최신발표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나 시점은 약간씩 다름, 캐나다는 펄프·제지류 1개 품목에 대해서만 Type III 시행

· 운영특성

- Type III 환경라벨링은 제품 전과정평가(LCA)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라벨링 또는 데이터시트 형식으로 공개하는 방식이므로 정보의 내용은 LCA의 특성에 의해 좌우됨.
- 보통 LCA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품생산을 위한 각종 투입물에 대한 환경정보가 필요하며, 이들 투입물들의 환경정보를 제공의 주체가 정부인가 민간기구인가에 따라 구별되는데, 한국, 일본, 스웨덴 등은 국가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인 반면, 미국은 민간기구가 정보를 제공
- Type III 환경라벨링의 대상품목은 가전제품, 사무용기기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일반 생활용품 및 중간재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
- Type III 환경라벨링은 Type I에 비해서 소비자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공개된 환경정보가 전문가 지향적이므로 일반소비자가 이들 정보를 해석하여 환경친화성 여부를 따지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 공공기관 등 전문화된 기관구매자들에게 있어서 이들 제품 환경정보는 유용한 가치판단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 시장지배력

- Type III 환경라벨링은 소수의 국가만이 도입하고 있으며, 도입한 국가에서도 시행 초기단계이므로 인증제품 수가 적으며 따라서 시장지배력이 아직 크지는 않다. 그러나 선진기업들에

게 자사제품의 환경적합성을 홍보하는 수단으로서 최근 각광받고 있다. LCA는 환경영향을 과학적이고 정량적으로 판단하여 제품 환경성과 개선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유용한 도구라고 널리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Type III 환경라벨링 예시

<p><b>Certified Product Declaration</b></p> <p><b>IMPACTS EXPLOITED</b></p> <table border="1"> <tr><td>ELECTRIC ENERGY</td><td>12,286.620</td></tr> <tr><td>FRESH WATER</td><td>113,205.204</td></tr> <tr><td>CO2 EMISSIONS</td><td>1,132.204</td></tr> <tr><td>WOOD PULP</td><td>1,132.204</td></tr> <tr><td>WASTE (Landfill)</td><td>1,132.204</td></tr> <tr><td>WASTE (Water)</td><td>1,132.204</td></tr> <tr><td>WASTE (Air)</td><td>1,132.204</td></tr> <tr><td>WASTE (Soil)</td><td>1,132.204</td></tr> <tr><td>WASTE (Other)</td><td>1,132.204</td></tr> </table> <p><b>ENVIRONMENTAL PERFORMANCE RATING</b></p> <p>BEST ← → WORST</p> <p>U.S. E.C.O. WASHING MACHINE</p>	ELECTRIC ENERGY	12,286.620	FRESH WATER	113,205.204	CO2 EMISSIONS	1,132.204	WOOD PULP	1,132.204	WASTE (Landfill)	1,132.204	WASTE (Water)	1,132.204	WASTE (Air)	1,132.204	WASTE (Soil)	1,132.204	WASTE (Other)	1,132.204	<p>Certified Eco-Profile은 1992년 미국 민간단체인 SCS에서 처음 도입한 Type III 라벨링으로서, 제품의 제조·사용·폐기 전과정에 걸친 환경영향을 수치와 그래프로 표시하여 보여준다. 동 라벨을 통해 제품 1단위당 자원소비, 오염배출, 폐기물 발생현황을 알 수 있다. 기업의 자발적 신청에 의해 SCS가 기업이 공개한 정보가 정확한지를 검증하고 동 라벨사용을 승인한다.</p>
ELECTRIC ENERGY	12,286.620																		
FRESH WATER	113,205.204																		
CO2 EMISSIONS	1,132.204																		
WOOD PULP	1,132.204																		
WASTE (Landfill)	1,132.204																		
WASTE (Water)	1,132.204																		
WASTE (Air)	1,132.204																		
WASTE (Soil)	1,132.204																		
WASTE (Other)	1,132.204																		

미국 Certified Eco-Profile

### 3.3. 기타 환경 라벨링 현황

#### ◦ 에너지 관련 라벨링

##### · 개념

- 에너지 라벨링은 자동차, 전기·전자제품 등 에너지를 사용하는 제품의 에너지 사용효율을 평가하여 우수제품에 대해 라벨을 부여한다거나 효율등급을 표시하는 제도
- 에너지라벨링은 특정 환경측면만을 평가하는 라벨링으로서 대표적인 단일속성(single issue) 라벨링
- 보통 에너지라벨링은 자발적인 경우(기업이 스스로 신청하는 제도)와 강제적인 경우(대상제품은 모두 평가받아야 하는 경우)로 구분

##### · 각국 시행현황

- 보통 강제적 에너지 라벨링으로는 에너지효율 등급표시제도를 들 수 있는데 미국의 Energy Guide, 호주의 Energy Rating, 유럽의 Energy Efficiency Label 등이 이에 해당
- 최근에 들어와 제조업체의 자발적 참가에 기초를 두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에너지절약형 제품생산을 유도하는 자발적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예컨대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Energy Star Program, 유럽 9개국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GEEA, 스위스의 Energy 2000
- 우리나라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하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 사무가전기기 에너지절약마크제도, 고효율기자재인증제도 등을 운영

주요국가 에너지 라벨링 운영현황

국 가	제도명	대상품목수	성 격
미 국	Energy Guide	18	강제적
	Energy Star	36	자발적
호 주	Energy Rating	8	강제적
	Energy Smart	10	자발적
유럽8개국	GEEA	17	자발적
	Energy 2000	15	자발적
E U	Energie Rabelling	7	강제적
일 본	省에너지라벨	5	강제적
한 국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1	강제적
	에너지절약마크	28	자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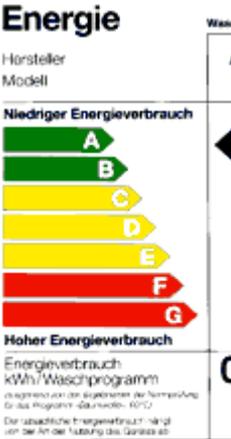
· 운영특성

- 에너지라벨링은 대부분 근거법률에 의거 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강제적 라벨링의 경우 정부에 의한 규제(regulation)이므로 지정품목에 해당하는 모든 제품이 규제대상임.
- 에너지라벨링은 환경목적 라벨링 가운데 그 역사가 가장 오래된 편이고, 소비자 비용지출과 직결되므로 소비자 인지도가 높으며, 따라서 자발적 라벨링이라 할 경우라도 제조업체들의 참여가 활성화.

에너지 관련 라벨링 예시



Energy Star는 미국 환경청(EPA)에서 도입한 절전형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자발적 인증제도로서 현재 일본 통상성과 상호협약 하에 International Energy Star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 EPA Energy Star는 15개 가전 및 사무기기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International Energy Star는 7개 사무용기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EU Energy Label은 1992년부터 EU집행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무적 라벨링제도로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7개 가전품목에 대해 에너지소비효율에 따라 A~G까지 에너지효율등급을 표시하고, 최저효율기준을 적용하여 최저효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제품은 EU내 판매가 금지된다.

◦ 재활용 관련 라벨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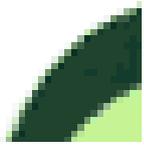
· 개념

- 재활용 라벨링은 상당히 포괄적인 용어로서 제품 및 포장재의 분리수거가 용이하도록 재질을 표시하는 라벨링, 제품 자체가 재활용된 소재를 사용하여 제조된 것임을 표시하는 라벨링, 제품 및 그 포장재가 전문 수거업체에 의해 재활용되는 것임을 표시하는 라벨링 등을 통칭하는 개념
- 분리수거를 위한 재질표시는 정부에 의한 강제적 라벨이나 재활용 소재사용표시 또는 수거가능표시는 자발적 라벨링임

· 각국 시행현황 및 운영특성

- 첫째, 제품 및 포장재의 재질을 분류하여 재활용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표시되는 라벨링은 국제적으로 ISO 11469에 의해 재질분류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세계 각국에서 법에 의해 이를 시행(강제적 라벨링). 주로 금속류, 플라스틱류 제품이나 용기에 대해 그 재질을 표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자원재생공사에 의해 분리배출표시제도로 운영
- 둘째, 재활용 자원을 이용하여 제조된 제품임을 표시하는 라벨링도 많은 국가에서 여러가지 형태로 운영. 일본의 재생지마크는 종이의 고지배합률을 표시하며, 유럽의 FRP Recycling Label은 재활용 유리섬유합성수지제품임을 표시한다. 우리나라는 재활용 소재로 제조된 제품 가운데 품질이 우수한 제품에 대해 기술표준원에서 GR마크를 부여
- 셋째, 제품, 용기, 포장재가 전문 관리업체에 의해 재활용되고 있음을 표시하는 라벨링도 있음. 대표적인 사례로 독일·프랑스의 Green Dot, 일본의 PC리사이클링마크를 들 수 있음. 특히 Green Dot는 공인 재활용전문업체와 약정을 체결하여 제품의 용기나 포장재를 재활용하고 있는 기업의 제품에 대해 부여되는 라벨로서 식품, 음료수, 화장품 등 생활용품 용기나 포장재에 표시. 소비자 인지도가 매우 높으며, 해당업종 기업의 60~70%가 동 라벨을 사용.

재활용 관련 라벨링 예시

	<p>Eco Emballages는 프랑스 용기포장지침에 의거, 지정된 재활용 전문업체와 약정을 체결하여 용기 및 포장재를 수거·재활용하는 기업의 제품에 대해 부착되는 자발적 라벨링제도이다. 동일한 목적으로 독일에서는 Green Dot 제도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2001년부터 프랑스와 독일의 두 제도가 연합하여 동일 로고를 사용하고 있다.</p>
---	--

	<p>일본 재생지마크는 NGO 단체인 폐지제로파트너쉽회의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생지 사용촉진사업으로서, 사무용지, 화장지 등 종이제품의 고지(폐지)배합률을 제품상에 표시하는 라벨링 프로그램이다. 동 단체는 고지배합률이 높게 표시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p>
---	---

◦ 그밖의 환경목적 라벨링

- 최근 환경·안전·보건 관련 소비자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이와 관련된 각종 라벨링이 대거 등장. 정부나 공공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공식제도인 경우도 있으나, 민간단체, 특히 생산자단체에 의한 임의제도 내지 수익사업으로서 운영되는 경우도 다수임. 앞서 살펴본 협의의 공산품 관련 라벨링 이외에 광의의 의미에서 환경보호와 관련한 라벨링들은 다음과 같음.

기타 환경라벨링의 유형

유 형	운 영 특 성	운 영 국 가
유기농산물 라벨링	유기농법으로 재배된 농산물 인증	약 50개국
친환경농산물 라벨링	저농약, 저비료 농산물 인증	약 30개국
유전자조작 라벨링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의무적 표시	약 30개국
산림보호 라벨링	산림자원 보호가능 목재제품 인증	유럽 일부국가
생분해성 라벨링	생분해성 합성수지제품 인증	일본, 유럽 일부
물절약 라벨링	절수형 수도기기 인증	호주 등 일부
친환경에너지 라벨링	풍력, 지열 등 대체에너지 인증	일본, 유럽 일부
동식물보호 라벨링	야생동물 보호노력 기업제품 인증	미국, 유럽 일부

기타 환경목적 라벨링 예시

 <small>FSC Trademark © 1996 Forest Stewardship Council F.A.C.</small> Forest stewardship	1996년부터 비영리민간기구인 Forest Stewardship Council은 지속가능 산림자원관리지침(벌목 및 식수의 효율적 관리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지침)을 운영하여 동 지침을 만족하는 벌목자원을 활용하여 생산된 목재제품에 대해서 FSC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55개국 490여개 벌목 사업장이 FSC인증을 받았다.
--	---

 WWF License	세계야생동식물보호기금(World Wildlife Fund)은 야생동식물 서식지를 보호하고 자연생태계에 영향이 적은 제품에 대해 WWF 트레이드마크를 부여하고 사업이익을 야생동식물 보호사업에 재투자하고 있다. WWF는 인증기준제정 및 인증운영업무를 스위스 환경컨설팅기관인 Groth AG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다.
--	--



Dolphin Safe Label

1990년 도입된 Dolphin Safe Label은 그물을 이용한 참치 어획시 돌고래의 희생을 막기 위하여 돌고래 보호조치를 취한 참치제품에 대해서 부착되는 미국의 자발적 라벨링이다. 미국 정부가 동 라벨을 인증받지 않은 외국 제품에 대해 자국의 “해양포유동물보호법”을 준수한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입금지한 사건으로 유명하다.



Green Pla

일본 Green Pla는 1989년 100여개의 합성수지제조업체에 의해 조직된 일본생분해수지연구회(BPS)에서 운영하는 자발적 인증사업이다. BPS는 일정기준을 통과한 생분해수지원료를 리스트화하고 동 원료로 제조된 문구류, 쓰레기봉투, 포장지 등 최종제품에 Green Pla 라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Water Rating

호주 수도협회(Water Service Association Australia)는 가정 내 물절약 수도기기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꼭지, 샤워헤드, 대소변기,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 물 사용기기의 물절약효과에 따라 5단계의 절수효율등급을 표시하는 자발적 라벨링제도로서 Water Conservation Rating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4. 우리나라 환경라벨링 운영 현황

##### 4.1. 환경마크제도(Type I)

###### 4.1.1. 연혁

- 우리나라 환경마크제도는 환경부에서 1992년 도입하였으며, 1994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음
- 1994년 환경마크협회가 설립되어 환경부가 환경마크제도를 총괄 관리하되 환경마크협회가 실무작업(기준개발, 인증, 사후관리, 홍보)을 위탁 운영하고 있음



###### 4.1.2. 운영절차

- 환경마크제도의 운영절차는 대상품목제안절차, 기준개발절차 및 인증심사절차로 구별
- 대상품목은 기업,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하여 또는 정부의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제안되며, 제안된 품목에 대해서는 일차로 산업계, 소비자, 정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품목 채택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

- 선정위원회에서 환경마크 대상품목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준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증기준을 개발하고 이를 환경부에서 고시함
- 고시된 인증기준에 따라 기업이 인증신청을 하면 환경마크협회에서 일차 서류검증 및 현장 검증을 실시하고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제품 및 산업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한 제품에 대해 인증을 발급함

#### 4.1.3. 운영성과

##### ◦ 인증기준

- 2004년 5월초 현재 환경마크 인증기준은 일회성 소비제품, 내구성 소비제품, 토목건축자재, 산업용자재에 이르기까지 총 95개 품목에 걸쳐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음

환경마크 대상품목

분 류	대 상 품 목
사무용기기·가구 및 사무용품(13개 품목)	인쇄용지, 사무용지, 복사기, 프린터,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토너카트리지, 종이테이프 등
주택·건설용자재·재료 및 설비(24개 품목)	페인트, 단열재, 흡음재, 벽지, 방수재, 절수형 수도기기, 양변기, 형광램프, 램프용 안정기, 가스보일러 등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11개 품목)	화장지, 의류, 가방, 신발, 비누, 세탁용 세제, 주방용세제, 다목적 세정액 등
가정용 기기·가구 (12개 품목)	텔레비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진공청소기, VCR, 냉온수기 등
교통·여가·문화관련 제품(11개 품목)	비석면 운송부품, 공기청정기여과재, 자동차 타이어, 엔진오일, 낚시추 등
산업용 제품·장비 (10개 품목)	유압작동유, 인쇄용 잉크, 산업용 축전지, 양식용 부자, 재보충용 부품 등
복합용도 및 기타 (14개 품목)	유류, 태양전지, 태양력 이용제품, 자가발전장치 사용제품 등 재활용 합성수지제품, 재활용 고무제품, 재활용 목재성형제품 무기성 토목건축자재, 단련용 황동합금, 주물용 황동합금, 슬래그 가공제품 등

- 2003년 3월말 현재 EU Flower는 총 19개 품목에 대하여 인증기준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서비스 품목을 포함한 7개 품목에 대하여 인증기준 타당성 조사 또는 인증기준 개발 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 ◦ 인증제품

- 2004년 5월 초 현재 환경마크 인증제품은 총 1003개 제품(생산업체 367개)이며 이 가운데 건설·주택자재,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 기타 무기재료 등이 주종을 차지하고 있으며, 1999년부터 신설된 가전제품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참여가 미진함
- 개별품목별로 볼 때, 가장 많은 인증이 부여된 품목은 토너카트리지(66개), 무기성 토목건축자재(61개), 화장지(37개), 절수형 수도꼭지(33개)의 순임

## 4.2. 환경성적표지제도(TypeIII)

### 4.2.1. 정의

- 환경성적표지제도는 제품의 전과정(원료취득·제조·사용·폐기단계 등)에 대한 환경정보를 계량화하여 숫자, 도표 등의 형태로 제품에 표시한 것으로, 소비자에게 투명한 제품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평가에 의해 친환경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 4.2.2. 연혁

- 2000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하여 2001년 첫 시행

### 4.2.3. 운영

- 환경성적표지제도의 운영기구는 환경부(운영기관), LCI 정보망 운영기관(환경마크협회), 인증기관(환경관리공단), 교육기관(환경보전협회)으로 구성
- 운영기관인 환경부는 환경성적표지제도 운영관련 법률체계 마련, 환경성적표지 대상제품 및 성적표지 작성지침 고시와 교육기관 및 인증기관 지정 및 관리를 담당
- LCI 정보망 운영기관인 환경마크협회는 LCI 데이터베이스 확충 및 보급과 환경성적표지 제품별 작성지침 개발과 환경성적표지 국제협력활동(GEDnet 등)을 담당
- 인증기관인 환경관리공단은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 및 인증업무, 교육기관인 환경보전협회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 교육훈련을 담당함

### 4.2.4. 대상제품

- 2004년 5월 현재 19개 대상제품에 대해 시행 중

가정용 전기 냉동·냉장고	TFT-LCD 모니터	CRT용 유리	자동차용 휘발유
승용차용 타이어	두루마리 화장지	PDP TV	자동차용 에어필터
PC 내장형 광디스크장치	전자레인지	EP고무	에어컨디셔너
가정용 드럼세탁기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비디오 재생·기록기기
레이저 프린터	휴대전화기	천연가스	

### 4.2.5. 전과정목록분석(LCI) 정보망

- ‘전과정목록분석(LCI) 정보망’이란 제품이나 서비스의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소재 및 인프라의 환경정보를 수록한 데이터베이스.
- 2003년 10월 현재 구축된 LCI 데이터베이스는 총 139개이며, 환경마크협회는 환경성적표

지 대상제품 확대 등에 따른 신규 LCI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기업의 전과정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4.3. 기타 환경라벨링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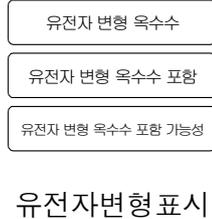
- 이외에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국내에서 운영되는 라벨링 프로그램은 매우 다양함. 그 가운데에서 대표적인 환경라벨링은 다음과 같음

 <p>GR마크</p>	<p>GR(Good Recycled)마크는 재활용제품의 생산·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제품 가운데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인증하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발적 인증제도이다. 폐지, 폐플라스틱, 폐유리 등 17개 분야의 폐자원을 재활용한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KS에 준하는 품질이 입증된 제품에 대해 부여된다.</p>
 <p>에너지절약마크</p>	<p>에너지절약마크는 에너지 소비효율이 우수한 제품에 대해 부착되는 자발적 인증제도로써 산업자원부에서 도입하였으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컴퓨터, 프린터, TV 등 15개 사무가전기기 품목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마크가 부착되며, 25개 산업용 전기전자기기에 대해서는 동일 형태의 고효율기자재마크가 부착된다.</p>
 <p>에너지효율등급</p>	<p>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우리나라 에너지합리화법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강제적 제도로써 자동차, 냉장고, 에어컨, 램프 등 에너지 소비가 많은 11개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은 1~5등급의 에너지효율등급을 구분·표시하여야 한다.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p>
 <p>PET 분리배출</p> <p>분리배출표시</p>	<p>제품 용기나 포장재의 분리수거를 통해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도입하고 자원재생공사에서 운영하는 제도로써 세제, 화장품, 의약품 등의 용기, 금속캔, 유리병, 종이팩, 발포합성수지완충재 등에 의무적으로 표시된다. 각 제품은 제품이나 포장재에 재질을 표시하고 이러한 재질표시에 따라 분리 수거되도록 한다.</p>



친환경농산물마크

우리나라 농림부는 2001년부터 친환경적 방법으로 재배된 농산물에 대해 친환경농산물표시를 인증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의 유형은 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다. 제도운영은 농림부가 주관하되, 인증업무는 농림부에서 인정한 복수의 지역 인증기관에서 담당한다.



유전자변형(GMO)표시는 콩, 콩나물, 옥수수, 감자 4개 품목에 대해 유전자변형 사실을 제품상에 표시하도록 하는 강제적 라벨링 제도로서 현재 농림부에서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7개 품목의 식품에 대해서도 유전자변형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상기 우리나라 환경라벨링 가운데 환경표지제도, 환경성적표지제도 외에도 친환경농산물 표시제도, 유전자변형식품표시 등이 NPR-PPMs를 인증기준으로 포함하고 있음 (유전자변형의 경우 이것이 PR인지 NPR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음)

#### 4.4. 환경마크제도의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 4.4.1. 환경마크 인증제품의 환경편익효과

- LG환경연구소는 대체비용방법(Replacement Costing Method)<sup>68)</sup>을 사용하여 2001년 한국 환경마크인증제품의 환경편익을 분석하고 한국환경마크협회는 2003년 LG환경연구소가 제시한 동일한 모델에 기초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환경편익을 재측정한 바 있음
- 이 분석은 인증제품과 그밖의 기존제품간의 환경성과의 차이를 확인하고, 인증제품의 비용절감효과(예컨대 에너지 비용, 자원비용, 오염복구비용 및 건강상 위험의 절감 등)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따르면 인증제품의 평균환경편익은 제품 소매가의 약 130%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짐

68) 대체비용이란 대체가능한 시장의 상품 및 서비스의 비용절감효과를 확인함으로써 비시장성의 편익을 개선하는 방식. 예컨대 CO2저감의 편익은 CO2 대체가능비용을 확인함으로써 측정할 수 있음

### 인증제품의 환경편익

제 품 군	환 경 효 과	예 상 편 익	
		단 위 당 편 익	가 격 대 비 율
사무용지	폐지 재활용과 자원사용절감	3,490원/박스	69.8%
복사기	에너지 절감 및 사용폐지의 재사용	1,278,050원/대	128.1%
프린터	에너지 절감 및 사용폐지의 재사용	824,550원/대	235.5%
형광등	에너지 절감 및 수은 사용의 절감	3,140원/개	104.7%
수도꼭지	물 절약 및 제품수명 연장	225,200원/개	252.2%
페인트	대기오염 및 유해물질의 절감	1,589원/L	79.5%
가스보일러	에너지 절약과 대기오염물질 절감	392,350원/대	78.5%
합성세제	수질오염 및 독성 화학물 절감	4,580원/kg	286.2%
화장지	폐지 재활용과 자원사용 절감	113원/롤	37.7%
태양열 전구	에너지 절약과 화석연료사용절감	522,620원/개	104.5%
벽돌 및 도로포장재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재사용	30,570원/톤	65.6%

출처 : LG환경연구소(2001) “한국의 지속가능한 소비 및 제품증진을 위한 방안”, 환경마크협회(2003) “인증제품의 환경편익분석”

#### 4.4.2. 인증제품에 대한 산업계의 비용분석

- 환경마크 인증제품의 뛰어난 환경편익에도 불구하고 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들은 그러한 목적에 대한 추가비용을 감수해야 함
- 고려대 박승준 교수는 기업의 고정비용 및 유동비용에 있어서의 각각의 추가비용을 하였는바
- 고정비용은 R&D 투자, 공정 및 디자인 혁신 등에 대한 비용을 유동비용은 제품의 유지관리증가비용, 대체투입물, 적응제품 테스트, 마크사용료 등이 포함된다고 분석
- 박 교수는 환경마크획득으로 인한 제품별 비용부담은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증제품이 다른 기존 제품에 비해 평균 15.5%의 비용이 추가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인증제품의 사회편익은 관련 산업의 비용부담에 비해 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인증제품의 비용 부담

제품군	추가비용	사회편익
형광등	4.3%	104.7%
수도꼭지	9.0%	252.2%
인쇄용지	3.3%	69.8%
가정용 가스보일러	16.8%	78.5%
레이저프린터	8.9%	235.5%
화장지	15.3%	37.7%
세탁세제	51.4%	286.2%

출처 : 곽승준 (2001) "환경친화제품에 대한 WTP 조사", 환경마크협회(2003) "환경마크제품의 환경 편익분석"

- 결론적으로 환경라벨링 프로그램은 한국에 있어서는 상당부분 순 편익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확인되며, 뿐만 아니라 환경마크사용을 원하는 산업계에서는 자발적이지 않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추가적인 비용을 감수하려고 함
- 환경라벨링 프로그램은 산업계 전반에서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는 조치는 아니나, 개별 업체들은 추가비용보다는 환경마크를 사용하여 보다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예측 하에 이러한 자발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함

## 부록#7 : 한국과 EU PPMs 기준 비교

### 1. 한국환경마크의 NPR-PPMs 포함여부

#### 환경마크 PPMs 기준 현황

- 환경마크 84개 대상품목별 환경기준 가운데 제품 자체의 특성에 대한 기준 이외에 PPMs와 관련한 기준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 PPMs와 관련한 환경기준을 가지고 있는 품목은 총 59개에 달하며,
- 이 가운데 NPR-PPMs 환경기준을 가지고 있는 품목도 총 24개에 달함

환경마크의 NPR-PPMs 인증기준

NPR-PPMs 유형	해당품목
폐제품 회수·재활용 시스템 구축	토너카트리지, 복사기, 프린터, 팩시밀리, PC 및 모니터, 노트북 컴퓨터,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진공청소기, 텔레비전, VCR, 휴대전화기, 목제식탁, 태양열 온수기
제조과정에서 대기오염 예방	토너카트리지
제조과정에서 폐기물 적정처리	토너카트리지, 비석면 운송부품
제품 원료 아닌 특정 공정 투입물질 사용금지	인쇄용지, 사무용지, 화장지, 도막방수제,
기타	사무용 목제가구, 가스보일러, 산업용 축전지

#### NPR-PPMs 포함 내용

- 환경마크제도는 ISO 14024 Type I 라벨링 표준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전과정적 관점에서의 환경영향을 인증기준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NPR-PPMs 인증기준을 다수 포함하고 있음
- 환경마크 대상품목 가운데 주요 NPR-PPMs 환경기준은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폐제품 회수·재활용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이며, PR-PPMs는 주로 원료물질 안전성에 대한 기준임
- 단, NPR-PPMs 기준으로서 대기오염 처리, 수질오염 처리, 폐기물 처리 등과 관련한 사항은 국내 환경법규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환경마크 인증기준으로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일반규정으로서 인증업체가 국내 환경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2. EU Flower 제도상의 PPMs 기준과의 비교

- EU Flower 19개 대상품목별 환경기준 가운데 제품 자체의 특성에 대한 기준 이외에 PPMs와 관련한 기준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 1개 품목만 제외한 나머지 18개 품목이 PR-PPMs를 포함하고 있으며,
  - 이 중 NPR-PPMs 환경기준을 가지고 있는 품목도 총 13개에 달함
- EU Flower의 PPMs 기준의 특징은 환경마크와 달리 오염방지체계(폐수처리, 대기오염처리, 폐기물처리)에 대한 기준까지 포함하여 요구하고 있으며, 물질 안전성에 대한 기준이 훨씬 많다는 점임
  - 주요 NPR-PPMs 기준은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적용되는 회수·재활용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과 생산과정에서의 오염배출기준임

EU Flower의 NPR-PPMs 인증기준

NPR-PPMs 유형	해당품목
제조과정에서의 수질 및 대기오염 영향 고형폐기물 적정처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화장지
제조과정에서의 수질 및 대기오염 영향 제조과정에서의 에너지 및 물 소비량, 고형폐기물 적정처리	복사용지
제조과정에서 대기오염 배출기준 제조과정에서 폐기물 발생기준	실내용 페인트
제조과정에서 폐수처리기준 제조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 사용제한기준	섬유제품
제조과정에서 폐수처리기준 제조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 사용제한기준 폐수유출방지 체계 구축	신발
폐수유출방지 체계 구축	침대 매트리스
폐제품 회수·재활용 체계 구축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텔레비전, 진공청소기, 퍼스널 컴퓨터, 휴대용 컴퓨터

### 3. 무역제한 효과 비교검토

- 우리나라 환경마크나 EU Flower 등 대부분의 ISO 14024 에코라벨링은 전과정 환경관리를 지향하므로 제품 자체의 소비특성 뿐만 아니라 원료투입, 생산, 유통, 폐기과정의 환경적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으며, 그 결과 NPR-PPMs에 근거한 평가요소가 다수 포함됨
  - 그러나 NPR-PPMs의 정도는 각 제도마다 상당수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점은 자국 환경관리를 위한 NPR-PPMs인가 아니면 수입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NPR-PPMs인가 하는 점임

- 우리나라의 환경마크의 경우 제조과정에서의 대기·수질·폐기관련 환경관리(site-specific pollution control)는 해당 국내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경마크 인증기준에서 제외되고 있어 외국제품이 우리나라 환경마크를 취득하고자 할 때 자국 법규만 준수하면 됨
  - 그러나 EU Flower는 많은 품목에 있어서 제조과정에서의 오염배출기준이 포함되어 있어 제품생산국의 환경적 특성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배출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즉 NPR-PPMs 기준이 자국 환경보호와는 무관하게 타국의 생산현장에 대한 기준으로서 적용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고의 가치가 있음
  - 예를 들어 “폐기된 제품에 대해 제조업체가 회수·재활용을 책임지라”는 인증기준은 NPR-PPMs이기는 하나 그 제품의 소비자보호 및 환경보호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 그러나 제품 생산시 “수질오염배출을 ○○ppm 이하로 하라”는 인증기준이 외국의 제품 생산 국가에 적용되면 자국 환경보호 또는 자국 소비자보호와는 무관한 기준임

## **Executive Summary**

This study is drawn out to make preparation and future work for the trade and environmental issue of Doha Development Agenda(DDA) negotiation. Trade and environment issue in DDA is consist of two parts; paragraph 31: (I) on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MEAs) and the WTO, (II) on Information exchange & criteria for observer status, (III) on 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 and paragraph 32: (I) on the effect of environmental measure on market access, especially in relation to developing and least developed countries, (II) on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II) on labelling requirements for environmental proposes.

As the result for reviewing and analyzing recent negotiation trend, we can arrange and prepare our position about the core issues which will be expected active discussion like the following states.

Firstly, on the relation to Specific Trade Obligation(STO) in MEAs and WTO rules, we can maintain existing position or move against distinctive strategies for each various STOs if we have to prepare more embodied correspondence unavoidably. However, we are in a position which should exclude the STO in MEAs for their own initiative or volition and follows the WTO investigation procedure without prediction in the result.

Secondly, on the environmental goods, the judgment of environment good based on logical grounds for coping with international pressures will be preceded and developed. After that, we have to make out our proposal of environmental goods in concerning the promotion of export and the view of environmental friendly products.

Thirdly, we can take the restrictive open as a consortium in specific environmental service, especially less competitive environmental service market compared to developed countries. To do this, we will prepare to growing capacity building for acquirement of technological transfer. On public sides, it will be important to find a market abroad through the public market survey and analysis of developing country market simultaneously.

This study also examined the trade potential and the view points of the Korean environmental industries for the purpose of suggesting a desirable policy stance to the free trade of environmental goods led by the Doha Ministerial Declaration since 2001.

According to the statistics and survey results about Korean environmental

industries, the traditional end-of-pipe technologies and goods for pollution and resource management use have a weak foreign market accessibility because of their demerit in technical advancement and the scale of business. The result of the direct questionnaires to the individual manufactures also showed that a large number of the Korean manufacturers wanted government to protect their domestic markets by means of current tariff scheme. On the contrary, several major Korean exporting industries such as electronics, petro-chemicals and building materials expressed their willingness to support free trade measures for the environmentally preferable products.

In addition to the environmental goods, this study also reviewed the industries standpoint about labelling for environmental purposes. Though most corporate respondents said that an environmental labelling program could be a good information tool, at the same time, they were afraid of the proliferation of not-harmonized labelling programs across the borders, which might cause the increasement of exporting industries' compliance cost.

Consequently, it needs to be pointed out that a well-balanced conceptual framework of environmental goods should be a starting point of negotiation even though it might have many difficulties in defining and suggesting specific environmental goods. It needs to entail a long term study on an extended definition of environmental products. At the same time, a harmonization among the different national environmental labelling schemes needs to be sought as a non-tariff measures to facilitate the trade of environmental goods.

Since the Canc